

발간등록번호	11-1490000-000347-01
이 과제는 2008년 노동부의 학술연구 용역사업의 일환으로 연구되었음	

일하는 여성 보육지원 강화 방안

연구책임자: 서문희 (육아정책개발센터)

공동연구자: 김은설 (육아정책개발센터)

장혜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수연 (육아정책개발센터)

연구기관: 육아정책개발센터

노동부

제 출 문

노동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노동부의 『일하는 여성 보육지원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8년 10월

육아정책개발센터 소장

목 차

연구 요약	1
I. 서론	26
1. 연구의 필요성	26
2. 연구 목적 및 내용	27
3. 연구 방법	28
4. 선행연구	32
5. 연구의 범주 등	37
II. 일하는 여성 현황	39
1. 여성의 경제활동	39
2. 여성근로자의 자녀양육 관련 요구	43
3.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45
4. 정책시사점	49
III. 지역사회 보육정책 개요: 일하는 여성 지원 관점	51
1. 보육서비스의 공급 및 운영	52
2. 보육 비용	58
IV. 직장보육 관련 제도의 적절성과 기대효과	67
1. 직장보육 제도 및 의무 이행 현황	67
2. 직장보육시설 지원 제도	76
3. 사업장 보육지원 유형별 현황 및 요구	86
4. 직장보육제도의 기대효과	101
5. 정책시사점	109

V. 직장보육시설 운영·이용 실태와 효과	114
1. 보육에서의 직장보육의 비중	114
2. 직장보육시설 운영	116
3. 이용 실태 및 만족도	140
4. 직장보육시설 이용의 효과	153
5. 정책시사점	157
VI. 외국의 일하는 여성 지원 정책	162
1. 일본의 일하는 여성 보육지원	162
2. 호주의 보육정책과 여성고용	176
3. 미국의 직장보육과 여성고용	184
4. 기타 국가의 일하는 여성 지원 동향	189
VII. 일하는 여성 보육지원 강화 방안	194
1. 정책제안의 기본원칙	194
2. 지역사회 보육정책의 일하는 여성 지원 강화 방안	195
3. 직장보육 지원 강화 방안	208
4. 맺는 말	231
참고문헌	233
Abstract	238
부록	241

표 목 차

〈표 I-3-1〉	사업장의 직장보육 지원 실태 조사내용	29
〈표 I-3-2〉	사업장의 직장보육 지원 실태 조사대상 및 결과	29
〈표 I-3-3〉	직장보육시설 운영 실태 조사내용	30
〈표 I-3-4〉	직장보육시설 이용 실태 조사 내용	31
〈표 I-4-1〉	근로자의 직장보육시설과 보육비 지원 필요성에 대한 의견	33
〈표 I-4-2〉	직장보육시설이 설치되어도 이용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	34
〈표 II-1-1〉	연도별 성별 취업자 수	40
〈표 II-1-2〉	상용근로자 규모별 월평균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2007)	41
〈표 II-1-3〉	상용근로자 규모별 월평균 급여총액(2007)	41
〈표 II-1-4〉	연령별 월평균 임금총액(2007)	42
〈표 II-1-5〉	종사자 규모별 고용보험 적용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2008. 6)	42
〈표 II-2-1〉	정부 영아 양육 지원제도의 문제점	43
〈표 II-2-2〉	영아 양육지원정책 수립 시 중점 사항	44
〈표 II-2-3〉	유자녀 취업 여성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제도	45
〈표 II-2-4〉	가장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육아지원제도	45
〈표 II-3-1〉	여성취업자와 고용보험 적용 여성근로자	46
〈표 II-3-2〉	연도별 산전후휴가 사용현황	47
〈표 II-3-3〉	기업규모별 산전후휴가 사용자 분포	47
〈표 II-3-4〉	연도별 육아휴직 사용현황	48
〈표 II-3-5〉	기업규모별 육아휴직 사용자 분포(2007)	48
〈표 II-3-6〉	연도별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연계	49
〈표 III-1-1〉	보육시설 유형별 보육시설 수 및 비율	52
〈표 III-1-2〉	보육시설과 유치원 이용 아동 수 및 비율(2007)	54
〈표 III-2-1〉	보육사업 예산(2008)	59
〈표 III-2-2〉	영아 기본보조금 지원 현황	60
〈표 III-2-3〉	소득수준별·연도별 재정지원 계획(안)	61
〈표 III-2-4〉	보육료 지원 현황	61
〈표 III-2-5〉	영아와 유아 연령별 모의 취업여부	63
〈표 III-2-6〉	기관 이용 영아와 유아 모의 취업여부	63

〈표 IV-1-1〉	사업장 유형별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사업장 의무 이행 현황	68
〈표 IV-1-2〉	연도별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사업장 의무 이행 현황(2007)	69
〈표 IV-1-3〉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 이행을 저조 이유	70
〈표 IV-1-4〉	사업장 업종 특성	71
〈표 IV-1-5〉	직장보육 의무 제도 필요성에 대한 직장보육시설 이용자 의견	72
〈표 IV-1-6〉	근로자들에게 가장 적절한 보육지원 방식	73
〈표 IV-1-7〉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사업장 기준의 적절성	74
〈표 IV-1-8〉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기준이 부적절한 이유	74
〈표 IV-1-9〉	직장보육시설 운영비 50% 보조 규정의 적절성	75
〈표 IV-2-1〉	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기준	76
〈표 IV-2-2〉	고용보험기금 직장 보육지원 실적	77
〈표 IV-2-3〉	연도별 보육교사 임금지원 현황	77
〈표 IV-2-4〉	직장보육시설 설치 시 용자금 상한액의 적절성	78
〈표 IV-2-5〉	직장보육시설 설치 시 용자금 거치 및 상환기간의 적절성	79
〈표 IV-2-6〉	직장보육시설 설치 시 용자금 이자율의 적절성	80
〈표 IV-2-7〉	직장보육시설 설치 시 무상 지원의 적절성	81
〈표 IV-2-8〉	직장보육시설 설치 운영비 세제 지원의 적절성	82
〈표 IV-2-9〉	인건비 지원 기준의 적절성	83
〈표 IV-2-10〉	인건비 지원 방식의 적절성	83
〈표 IV-2-11〉	유구비품 교체비 지원 방식 적절성에 대한 시설장 의견	84
〈표 IV-2-12〉	시설 운영비 필요경비 인정 세제 지원의 적절성	85
〈표 IV-3-1〉	직장보육시설 설치 연도	86
〈표 IV-3-2〉	직장보육시설 설치 시 애로사항	87
〈표 IV-3-3〉	직장보육시설 설치 시 용자나 무상지원의 도움 정도	87
〈표 IV-3-4〉	직장보육시설 설치 사업장 직원의 요구사항	88
〈표 IV-3-5〉	직장보육시설 설치 사업장의 요구사항	89
〈표 IV-3-6〉	직장보육시설 설치 사업장의 직장보육 관련 계획	89
〈표 IV-3-7〉	직장보육 위탁 시작연도	90
〈표 IV-3-8〉	사업장이 보육시설에 보육료를 지원하는 방법	91
〈표 IV-3-9〉	인근 보육시설 위탁의 주된 이유	91
〈표 IV-3-10〉	인근 보육시설 위탁 이용 사업장 직원의 요구 사항	92

〈표 IV-3-11〉	인근 보육시설 위탁 이용 사업장에 필요한 지원	92
〈표 IV-3-12〉	인근 보육시설 위탁 이용 사업장의 직장보육 관련 계획	93
〈표 IV-3-13〉	보육수당 지급 시작연도	93
〈표 IV-3-14〉	연령별 보육수당 지급 아동 연령 제한 여부	94
〈표 IV-3-15〉	보육수당 지급 아동 수 제한 여부 및 수	94
〈표 IV-3-16〉	아동 연령별 보육수당 차이 여부	94
〈표 IV-3-17〉	정액 및 정률(0세아) 지원시 보육수당 지원액	95
〈표 IV-3-18〉	연령별 보육수당 지원액 평균	96
〈표 IV-3-19〉	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보육수당을 주는 주된 이유	96
〈표 IV-3-20〉	보육수당 지급 사업장 직원의 요구 사항	97
〈표 IV-3-21〉	보육수당 지급 사업장의 계획	98
〈표 IV-3-22〉	직장보육 의무 미이행 이유	98
〈표 IV-3-23〉	의무사업장 직장보육 서비스 미이행 사유	99
〈표 IV-3-24〉	직장보육 의무 미이행 사업장 직원의 의무 이행 요구	99
〈표 IV-3-25〉	직장보육 의무 미이행 사업장의 계획	100
〈표 IV-3-26〉	직장보육 미이행 사업장의 의무 이행 예정 연도	100
〈표 IV-3-27〉	계획이 없는 경우 이유	101
〈표 IV-4-1〉	사업장 특성별 직장보육 지원의 일·가정 양립 지원 효과: 민간	102
〈표 IV-4-2〉	사업장 특성별 직장보육 지원의 일·가정 양립 지원 효과: 전체	103
〈표 IV-4-3〉	직장보육시설 이용자의 직장보육 지원의 일반적 양육 부담 해소 효과에 대한 의견	104
〈표 IV-4-4〉	민간 직장보육 지원 사업장의 직장보육 지원 기대효과 총괄	105
〈표 IV-4-5〉	보육지원 유형별 직장보육 지원의 기대효과 평가 5점 척도	107
〈표 IV-4-6〉	보육지원 유형별 직장보육 지원의 기대효과 평가 5점 척도	108
〈표 IV-4-7〉	직장보육시설 이용자와 사업장의 포괄적 직장보육 지원의 생산성 증대 효과 평가	109
〈표 V-1-1〉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 현황(2007년 12월 말)	114
〈표 V-1-2〉	근로복지공단 설립·운영 직장보육시설 현황	116
〈표 V-2-1〉	직장보육시설의 운영형태	117
〈표 V-2-2〉	전문경영업체의 직장보육시설 경영 현황	117
〈표 V-2-3〉	직장보육시설의 주간 운영일수	118

〈표 V-2-4〉	직장보육시설의 공식적인 운영시간	118
〈표 V-2-5〉	직장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119
〈표 V-2-6〉	시간외 보육 가능 여부	120
〈표 V-2-7〉	직장보육시설의 평가인증 여부	120
〈표 V-2-8〉	정원수 충족 여부 및 미달 이유	121
〈표 V-2-9〉	연령별 현원 수 및 비율	122
〈표 V-2-10〉	직장보육시설 아동 입소순위	123
〈표 V-2-11〉	직장보육시설 이용 아동의 부모 특성	124
〈표 V-2-12〉	직장보육시설 이용 아동 부모 특성별 고용보험 가입 아동 비율	125
〈표 V-2-13〉	아동 1인당 평균 월 보육료 수납액(2008년 5월 기준)	126
〈표 V-2-14〉	아동 1인당 평균 보육료(2008년 5월 기준)	126
〈표 V-2-15〉	아동 1인당 평균 총 보육비(기타 수납액 포함): 2008년 5월 기준	126
〈표 V-2-16〉	정부 재정 지원의 도움 정도	127
〈표 V-2-17〉	정부 재정 지원을 받지 않는 이유	128
〈표 V-2-18〉	직장보육시설의 보건복지가족부의 운영비 지원 항목	128
〈표 V-2-19〉	보건복지가족부 운영비 지원의 도움 정도	129
〈표 V-2-20〉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지원 항목	129
〈표 V-2-21〉	주체별 운영비 부담 비율	130
〈표 V-2-22〉	주체별 아동1인당 운영비 부담액	131
〈표 V-2-23〉	운영비 추가 부담 주체에 대한 견해	132
〈표 V-2-24〉	현 시설에서 보육교사가 근무하는 평균기간	132
〈표 V-2-25〉	직장보육시설 종사자의 사업장 직원 비율	133
〈표 V-2-26〉	직장보육시설 종사자 연봉	134
〈표 V-2-27〉	일반시설과 비교하여 직장보육시설 교사들이 느끼는 급여수준	134
〈표 V-2-28〉	평일 8시간 근로 준수 여부	135
〈표 V-2-29〉	일반시설과 비교하여 직장보육시설 교사들이 느끼는 근무시간	135
〈표 V-2-30〉	보육교사 야간, 주말 근무수당 지급 여부	136
〈표 V-2-31〉	일반시설과 비교하여 직장보육시설 교사들의 평가	137
〈표 V-2-32〉	직장보육시설 운영의 어려움을 1순위로 지적한 비율	138
〈표 V-2-34〉	직장보육시설 운영 개선을 위한 과제를 1순위로 지적한 비율	139
〈표 V-3-1〉	직장보육시설 이용 자녀수	140

〈표 V-3-2〉	직장보육시설 이용 시작 시기	141
〈표 V-3-3〉	현 직장보육시설 이용 기간	141
〈표 V-3-4〉	36개월 이전에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	141
〈표 V-3-5〉	현 보육시설 이용을 위해 대기시간	142
〈표 V-3-6〉	직장보육시설 이용 아동 등원 방법	143
〈표 V-3-7〉	직장보육시설 등원 소요 시간	143
〈표 V-3-8〉	평일 직장보육시설 이용시간	144
〈표 V-3-9〉	현 직장보육시설 선택 이유	145
〈표 V-3-10〉	근처에 자녀를 믿고 맡길 만한 보육시설의 유무	145
〈표 V-3-11〉	직장보육 관련 만족도 총괄	146
〈표 V-3-12〉	사업장 특성별 직장보육 만족도 5점 척도	146
〈표 V-3-13〉	설립유형별 보육시설 이용 만족도	147
〈표 V-3-14〉	현 직장 보육시설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점	148
〈표 V-3-15〉	현 보육시설 이용시 가장 어려운 점	148
〈표 V-3-16〉	직장보육시설에서 가장 개선되기를 바라는 점	149
〈표 V-3-17〉	현 직장보육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직장에 바라는 점	150
〈표 V-3-18〉	시설 특성별 향후 현 직장보육시설 이용 의향	151
〈표 V-3-19〉	아동 연령별 향후 현 직장보육시설 이용 의향(한 자녀 이용)	151
〈표 V-3-20〉	현 직장보육시설을 그만두려는 이유	152
〈표 V-3-21〉	연령별 현 직장보육시설을 그만두려는 이유(한 자녀 이용)	152
〈표 V-4-1〉	현 직장 선택 시 직장보육시설의 영향	153
〈표 V-4-2〉	직장보육시설의 육아와 직장근무 병행에 대한 도움 여부	154
〈표 V-4-3〉	직장보육시설 이용 후 변화	154
〈표 V-4-4〉	직장보육시설 이용 후 변화 5점 척도	155
〈표 V-4-5〉	직장보육시설이 사업주에게 미치는 효과	156
〈표 V-4-6〉	안정적인 보육환경 제공으로 아동의 건강한 발달 도모 여부	157
〈표 VI-1-2〉	일본 동경도 세다가야구 보육소 입소 우선순위 고려 기본 요인	165
〈표 VI-1-3〉	동경도 세다가야구 보육소 입소 조정지수	166
〈표 VI-1-4〉	일본의 양육지원 조성 사업 내용	169
〈표 VI-1-5〉	사업소 내 탁아시설 운영비 지급 한도액	171
〈표 VI-1-6〉	일본의 사업소 내 보육시설수와 아동수	172

〈표 VI-1-7〉	일본의 연도별 사업소 내 보육시설수와 아동수	172
〈표 VI-1-8〉	일본의 육아·개호 지원 사업소 비율(2007)	172
〈표 VI-1-9〉	일본 베이비시터 이용 할인권 발행 한도	175
〈표 VI-1-10〉	일본 베이비시터 이용 할인권 이용한 육아지원사업 실적	175
〈표 VI-2-1〉	호주 사업장 일가족 관련 합의 비율: 2000-2001 평균	177
〈표 VI-2-2〉	호주 사업장 일가족 관련 사항 합의 비율 1997-2001	177
〈표 VI-2-3〉	호주의 CCB 자격요건	182
〈표 VI-2-4〉	호주 시설보육 이용 시 CCB 지원금액	183
〈표 VI-3-1〉	기업 규모별 미국의 아동양육 지원 비율	186
〈표 VI-3-2〉	미국 직장보육시설 행정 지원체제의 특징	188
〈표 VI-3-3〉	미국 보육 구조 및 체계	188
〈표 VII-2-1〉	일하는 여성 지원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보육정책 방안	195
〈표 VII-2-2〉	국·공립보육시설 우선 이용 대상자 선정을 위한 점수 예시	200
〈표 VII-2-3〉	경기도 취업여성 보육지원시 취업 증명	203
〈표 VII-3-1〉	일하는 여성을 위한 보육지원 강화 방안 제안 총괄표	209

그림 목차

[그림 II-1-1]	여성 경제활동참가율(2007)	39
[그림 III-1-1]	개인 양육지원 서비스 이용 비율(2004)	54
[그림 III-2-1]	영아 보육비용 지원 개념	60
[그림 IV-4-1]	전체 직장보육 지원 사업장의 직장보육 지원의 효과성	106
[그림 VI-1-1]	일본 베이비시터 비용 지원 사업 흐름도	174
[그림 VI-2-1]	매월 보육료 감면을 받는 방법	182
[그림 VI-2-2]	년 1회 보육료를 환급받는 방법	182

부 록 표 목 차

〈부표 IV-1-1〉	사업장 노동 관련 단체 구성 및 활동	242
〈부표 VI-2-1〉	시군구 지원 여부 및 효용성	242
〈부표 V-2-2〉	부모 조건별 입소 우선순위 분포	243
〈부표 V-2-3〉	2008년 5월 아동 1인당 평균 월 보육료 수납액	244
〈부표 V-2-4〉	2008년 5월 아동 1인당 평균 월 기타비용 수납액	245
〈부표 V-2-5〉	2008년 5월 아동 1인당 평균 월 수납 총액	246
〈부표 V-3-1〉	사업장 특성별 보육서비스 만족도	247
〈부표 V-4-1〉	사업장 특성별 보육시설 이용 후 변화	248
〈부표 VI-1-1〉	일본의 저출산 대책	249
〈부표 VI-1-2〉	일본의 직장보육시설 사례: 후쿠오카시 Fountain Deli 주식회사	251

연구 요약

I. 서론

1. 연구 목적 및 내용

- ☐ 이 연구는 일하는 여성을 위한 보육 지원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지역사회 및 직장에서의 일하는 여성 보육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둔.
- ☐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내용과 특성을 분석함.
 - 둘째, 사업장에 설치하는 직장보육시설 등 사업장 보육 지원제도의 적절성과 효과성을 파악함.
 - 셋째, 외국의 일하는 여성을 위한 보육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함.
 - 넷째, 지역사회와 직장에서의 근로자 자녀 보육지원 강화 방안과 보육인프라로서의 직장보육시설의 역할 및 발전 방안을 마련함.

2. 연구 방법

- ☐ 기존 자료를 검토하고, 인터넷 검색으로 외국 직장보육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음.
- ☐ 사업장, 직장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이용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직장보육 관련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음.
 - 전화조사를 실시하여 총 772개 사업장의 직장 보육관련 자료를 수집하였음.
 - 191개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자료를 우편조사로 수집하였음.
 - 직장보육시설 이용 아동의 부모 1,170명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음.
- ☐ 정부, 학계, 보육계 등 직장 보육 관련 전문가로 간담회 및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음.

II. 일하는 여성 현황 및 정책시사점

- 우리나라 일하는 여성의 개요 및 정책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연령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여전히 M자를 유지하므로, 출산과 육아기 여성이 일과 가정 양립 지원 정책의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성을 나타냄.
 - 여성 근로자의 임금근로자 비율은 77% 수준이고,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여성근로자는 여성 취업자의 33.1%, 여성 임금근로자의 46.3%에 불과함. 따라서 육아휴직과 직장보육시설 이용 대상이 매우 제한적임. 우선적으로 지역사회 보육인프라가 기본적으로 잘 갖추어져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근로일수나 근로시간은 길지만 급여 수준은 낮음.
 - 육아휴직 대상 여성근로자 중 육아휴직 비율은 34.8%로, 최근에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이기는 하나 아직 낮은 수준임. 이는 영아기부터 보육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어야 함을 시사함.

III. 일하는 여성 지원 관점에서 본 지역사회 보육정책

1. 보육서비스의 공급 및 운영의 문제

- 보육서비스 유형의 다양성이 결여되어 있음. 정부와 민간단체가 가정내 보육을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으로 보기는 어려움.
 - 부모들이 자녀양육 관련 정보를 얻고 상담하며, 부모끼리 교류할 수 있는 오프라인 서비스 및 공간도 부재한 실정임.
- 보육시설 서비스 중심이며, 12시간 종일제로 획일화되어 있음.
 - 아동의 실제 평균 이용시간은 약 6시간 30분이고, 많은 민간보육시설들이 보육료를 종일제와 반일제로 구분하여 수납하고 있음.
 - 취약보육,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포괄적 서비스 제공 체계가 미약함.
- 부모들이 가장 바라는 정책은 양육비 지원과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이지만, 국·공립보육시설 이용 기회는 크게 부족하고 지역 불균형을 이룸.

- ☐ 취업모 자녀가 2008년부터 입소순위 6순위에서 1순위로 조정되었으나, 과거 1~6순위를 모두 1순위로 동일하게 조정하는 등의 이유로 실효성이 낮음.
- ☐ 2007년 말 보육시설이 없는 읍·면·동이 494개이며, 지역별 배치도 격차가 큼.
 - 장애아 및 방과후 전담보육시설 설치도 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2. 보육 비용 지원의 문제 및 과제

- ☐ 보육에 대한 정부 지원의 차이로 부모 부담은 시설 유형별로 차이가 있음.
 - 영아는 민간보육시설 기본보조금 지원으로 부모 보육료가 동일하나, 유아의 경우에는 민간시설이 4~5만원 더 높음. 보육료 이외에 입소료, 현장학습비, 특기 활동비도 수납함.
- ☐ 보육료 지원 시 취업모에 대한 고려가 없음.
 - 맞벌이 가정은 일반 가정에 비하여 5~6만원 더 부담하는 것으로 추정됨.
- ☐ 인건비나 기본보조금 등은 전달방식 때문에 지원금이 교사 인건비나 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에 사용된다는 부모들의 체감도가 낮음(조병구 외, 2007).
- ☐ 표준보육비용은 보육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최소 요인들의 최소 비용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며, 기본보조금의 기준액도 항목별 기준은 명확하지 않음.
- ☐ 보육시설 이용 아동만을 지원함에 따라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함.

IV. 직장보육 관련 제도의 적절성 및 기대효과

1. 직장보육 제도 및 의무 이행 현황

가. 직장보육 관련 법 및 의무 이행

- ☐ 남녀고용평등법 및 영유아보육법으로 직장보육 의무제도를 명시하고 있음.
 -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사업장은 791개소이며, 의무 이행률은 55.6%임.
 - 의무 이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민간사업장의 경우 사업주 비용 부담 46.8%, 정

부 지원 부족 21.9%, 해당 아동이나 이용 희망 아동이 소수 12.5%임.

나. 직장보육 관련 법 조항에 대한 적절성 의견

- ☐ 직장보육 의무 조항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85% 정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음. 사업장 유형별 차이는 거의 없음.
 - 보육지원 방식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식은 직장보육시설 설치 3/4, 거주지 보육시설 보육료 지원 17.6%, 직장 인근 보육시설 비용 지원은 5% 미만임.
- ☐ 의무설치 사업장 기준에 대하여는 민간 의무설치 사업장과 위탁 사업장에서 적절하다는 응답이 70%이고, 의무 미이행 사업장에서는 30.3%만 수준임.
 - 부적절하다는 이유로는 사업장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채 단순하게 근로자 수로만 의무 사업장 여부를 정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0.9%임.
- ☐ 지역사회 보육시설 위탁 이용 시 필요한 비용의 50% 이상을 보조하여야 하는 데에 대하여 민간 사업장 응답자의 61.5%가 부담이 크다고 응답하였음.

2. 직장보육시설 지원 제도

가. 직장보육시설 설치, 운영 지원 개요

- ☐ 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부는 고용보험기금과 일반회계 등으로 설치비 용자, 무상지원, 세제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보건복지가족부는 인건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교재교구비, 영아·장애아 기본보조금을 지원하고, 직장보육시설을 야간보육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 ☐ 2005~2007년 3년간 74개 사업장에 73억원 규모의 설치비를 무상 지원하였고, 22개 사업장에 58억의 용자금을 지원하였으며, 2006년 147개 사업장에 1,309명의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하였음.

나. 직장보육시설 지원 제도의 적절성

1) 설치비 용자 및 무상지원

- ☐ 설치비 용자 규모에 대해서 민간 사업장은 적절하다는 응답과 증액이 필요하

는 응답이 각각 39.5%, 37.6%로 비슷함.

- 융자금 이자율은 적절하다가 과반수이고, 37.5%는 낮추어야 한다고 응답함.
- 융자금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은 전반적으로 연장이 필요하다는 비율이 더 높음.

☐ 직장보육시설 설치 시 시설전환비 최고 1억원(단체 2억원), 교구 및 장비 구입비 최고 5천만원 무상 지원,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의 7%를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민간 사업장은 적절하다는 응답이 1/3이고 증액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과반수임.

2) 운영비 지원

- ☐ 인건비 지원 기준에 대하여 응답 사업장의 29.1%가 적절하다고 응답하였고 34.5%는 무조건 지원, 19.2%는 조건 완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 ☐ 인건비 지원 수준 결정 시점 및 지원 주기에 관하여 보육시설장의 약 50%는 월 단위 또는 평균 보육 아동수로 지원 방식과 기준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였음.
- ☐ 직장보육시설 유구비품 교체비 지원 주기인 5년 단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2.5%는 부적절하다고 응답하였음.
- ☐ 보육시설 운영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주는 세제 지원에 대해서는 적절하다는 응답이 44.4%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 40.6%와 유사함.

3. 사업장 보육 지원 유형별 현황 및 요구

가. 직장보육시설 설치 사업장

- ☐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은 민간 사업장의 경우 비용부담이 38.6%, 공간 확보 21.2%, 법 및 행정상 절차 20.6%로 조사되었음.
 - 민간 직장보육시설 설치비를 한 가지라도 지원 받은 경우 27.3%가 매우 도움이 된다, 64.8%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하여서 제도의 중요성을 나타냈음.
- ☐ 직장에서의 보육 지원과 관련한 직원들의 요구는 운영시간 연장이 26.7%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보육료 인하와 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수당 지급으로 각각 21.0%, 15.2%임. 이외 시설 및 정원 확대 요구가 있는 사업장이 8.1%이었음.
- ☐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민간 사업주 관점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으로 운영비 지원이 57.1%로 가장 많고 다음이 프로그램 지원 11.4% 순임.

☐ 민간 사업장의 58.6%가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응답하였고, 24.8%가 시설 설비나 정원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응답하였음.

- 임의설치 사업장 중 11.2%는 보육시설을 폐쇄하겠다고 응답하였음.

나. 보육시설 위탁 사업장

☐ 위탁 민간 사업장은 보육료의 일정 비율 지원이 83.9%로 가장 많고, 보육아동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체가 6.5%이며, 운영비 형태의 지원이 9.7%임.

- 비율로 지원하는 경우 대부분이 보육료의 50%이고, 최저 30%, 최고 100%임.

☐ 민간 사업장이 인근 보육시설을 위탁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장소확보의 어려움이고 다음이 보육시설 이용 해당 아동이 소수라는 점으로, 이 두 가지 이유가 77.4%임. 그 이외 설치비 부담, 운영비 부담, 시설관리 어려움 등임.

☐ 보육시설 위탁 사업장 직원의 요구의 경우, 민간의 경우 약 1/3은 없다고 응답하였고, 25.8%는 보육료 추가 지원, 16.1%는 보육시설 설치, 9.7%는 운영시간 연장이며, 12.9%는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수당 요구가 있다고 응답하였음.

☐ 사업장이 필요로 하는 지원에 대해서는 61.3%가 운영비 지원, 25.8%가 세제 지원 확대라고 응답하여 이 두 가지 사항이 주요 관심사임을 나타냈음.

☐ 민간 사업장 중 83.9%가 위탁체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하였고,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사업장은 12.9%, 보육수당으로 전환하겠다는 사업장은 소수이었음.

다. 보육수당 지급 사업장

☐ 민간 사업장 중 보육수당 지급 시 연령 제한 22.0%, 아동수 제한 27.1%로 파악되었음. 국가·지자체 사업장은 이러한 제한을 두지 않음.

☐ 수당은 조사된 사업장의 53.4%는 연령별 차이가 없고 46.6%는 차이를 둠. 민간 사업장은 연령별 차이가 없다는 비율이 74.6%로 매우 높음.

-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평균 66,400원으로 산출되었는데, 최대 150,000원, 최소 5,000원으로 사업장별 편차가 큼.

- 연령별로 차이를 두는 경우는 보육료의 50%가 가장 많음.

☐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이유로는 장소확보의 어려

움이 43.9%, 해당 아동이 소수라는 점이 21.1%임.

- ☐ 보육수당 지급 사업장의 직원들 요구는 민간의 경우 49.2%는 없다고 응답하였고, 28.8%가 보육수당의 인상을 희망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보육시설 설치를 희망한다는 응답은 16.9%로 상대적으로 소수이었음.
- ☐ 대다수인 79.7%의 민간 사업장에서 계속 보육수당을 지급할 생각이라고 응답하였고 11.9%만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응답하였음.

라. 직장보육 의무 미이행 사업장

- ☐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 사업장의 의무 미이행 이유는 해당아동이 소수라는 응답이 37.0%로 가장 많고, 다음이 비용부담 25.5%, 24.0%는 회사 특성상 직장보육시설의 설치가 부적절하기 때문으로 응답하였음.
- ☐ 직장보육 의무 미이행 사업장 내에서 직장보육에 대한 직원들의 요구는 민간의 과반수 이상인 56.3%가 없다고 응답하였고, 일부 있음 35.2%, 강함 7.5%로 응답하여 42.7%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 앞으로의 계획은 20.0%가 시설 설치, 11.0%가 수당 지급, 4.0%가 인근 보육시설에 위탁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검토하고 있지 않는 경우, 그 이유로는 대상아동이 소수라는 응답은 민간 사업장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이외 사업장이 보육시설 설치 장소로 부적절, 관리 운영 어려움, 운영비 부담, 설치비 부담 등 다양함.

4. 직장보육제도의 기대효과

가. 포괄적 일과 가정 양립 지원 효과

- ☐ 사업장 직장보육 담당자가 보는 직장보육 지원의 근로자 일과 가정 양립 지원 효과성은 직장보육시설의 설치와 보육수당이 5점 만점에 3.7~3.8점으로 인근 보육시설 위탁 3.4~3.5점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평가함.
 - 민간사업장에서보다 국가·지자체 사업장에서 보다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음.
 - 직장보육시설 설치와 인근 보육시설 위탁 사업장은 각각 실시 방법을 높게 평가하지만 보육수당 지급 사업장은 보육수당의 효과를 높게 보고 있지 않음.

나. 항목별 기대효과

- 민간 직장보육 지원 사업장에서는 직장보육 지원의 효과로 사업의 이미지 제고가 5점 만점에 3.8점으로 가장 높고 직원 직무 만족도 제고 3.7점, 직무 몰입도 제고와 노사관계가 각각 3.6점이며 기업의 생산성 향상 효과와 여성인력 이/퇴직 감소 효과는 3.4점, 우수인력 확보는 3.1점으로 가장 낮음.
 -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사업장에서 비교적 효과가 높다고 응답하였음.
- 직장보육시설 설치 미이행 사업장의 직장보육 지원의 기대효과에 대한 평가는 평균 2.5~3.1점으로 의무 미이행 사업장에서는 직장보육 지원의 효과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음. 주체 특성간의 차이가 거의 없음.
- 직장에서의 포괄적 보육지원이 사업장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효과를 평가한 결과는 민간 직장보육시설 이용자 4.1점 국가·지자체 직장보육시설 이용자 4.3점으로 민간보다 지자체 시설 이용자가 더 긍정적으로 평가함.
 - 사업장 관계자보다는 직장보육시설 이용자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음.
 - 전반적으로 의무보다는 임의 설치 시설 근로자가 더 긍정적으로 평가함.

5. 정책시사점

- 직장보육 관련 법, 제도 및 이행 현황과 이에 대한 사업장 등의 의견 조사 분석 결과를 볼 때 다음과 같은 정책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 직장보육 의무 이행 방법으로 시설 설치 제공 이외에 보육수당 방식, 인근 보육시설 위탁 등이 있는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음.
 -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설치 관련 정보부족과 절차상의 어려움 해소가 필요함.
 - 직장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기준으로 직장보육시설 설치나 위탁 이용 시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운영비의 '50%'에 대한 기준이 필요함.
 - 직장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는 표준보육모형이 마련되어야 함.
 - 교사 인건비 지원 기준의 완화 및 별도 재원 확보 방안을 모색해야 함. 인건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업장은 영세 사업장이고 임의 사업장일 가능성이 큼.
 - 분기별로 분기 말일 아동수를 기준으로 하여 인건비 지원 수준을 결정하는데 인건비 지원 시기 및 기준이 개선되어야 함.

- 직장보육시설에 유구비품 교체비를 5년 단위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직장보육시설장의 82.5%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하여 개선이 요구됨.
- 시설 설치 의무 사업장 미이용 아동 수당 지급 기준 준수가 요구됨.
- 시설 설치 사업장의 설치 시 애로 사항으로 공간확보를 지적한 비율이 높고, 또한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요구가 크므로, 설치 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직장보육시설에 프로그램 지원, 평가인증 조력 등 지역사회 보육시설과 동일한 지원이 필요함.

V. 직장보육시설 운영·이용 실태와 효과

1. 보육에서의 직장보육의 비중

- ☐ 직장보육시설은 320개소로 보육아동 정원 20,783명, 현원 15,124명임. 보육교사 수는 1,926명이고 직원수는 2,650명임.
 - 직장보육시설은 전체 보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보육시설 수, 이용 아동수로 각각 1.0%, 1.5% 수준에 불과함.
 - 정원 충족 비율이 72.8%로 타 유형의 시설에 비하여 가장 낮음.
 - 시설의 규모가 평균 정원 64.9명, 현원 47명임. 시설의 대부분이 실외놀이터가 없어도 되는 50명 미만의 소규모로 설치되었음.
- ☐ 직장보육시설 설치 사업장 근로자 영유아의 약 34%가 이용함.

2. 직장보육시설 운영

가. 운영 일반 현황

- ☐ 조사된 직장보육시설의 운영은 직영이 34.6%이고 위탁 운영이 65.4%임.
 - 민간은 직영과 위탁이 반반인데, 국가·지자체 시설은 위탁이 89.3%로 다수임.
 - 위탁 운영시 위탁체는 학교, 단체, 개인, 보육시설 전문 운영업체 등 다양함. 320개 중 76개를 6개 전문 운영기업(기관)이 운영함.

- ☐ 민간 직장보육시설의 일주일당 운영일수는 5일 56.4%, 6일 40.9%, 7일 2.7%임이고 평일 하루당 운영시간은 평균 11시간 51분임.
- ☐ 민간 직장보육시설 중 야간 보육을 실시한다는 비율이 37.9%, 휴일보육 16.4%, 장애아보육 2.6%, 기타 6.9%로 일반 보육시설에 비하여 실시 비율이 높음.
- ☐ 조사된 민간 사업장 직장보육시설은 23.7%가 평가인증을 받았다고 응답하였음. 국가·지자체 사업장 보육시설은 50.0%로 민간보다 높음.
- ☐ 조사된 민간 사업장 보육시설 중 39.8%는 정원이 충족되었음. 국가·지자체 직장보육시설의 정원 충족률은 51.4%로 민간보다 높음.
 - 정원 미달 이유는 31.9%는 대상 아동 부족, 15.9%는 부적절한 위치로 응답함.

나. 이용 아동

- ☐ 민간 직장보육시설 영아 비율이 40.9%임.
- ☐ 민간 직장보육시설 아동은 어머니만 설치 사업장 직원인 경우가 43.3%로 가장 많고, 부모가 다른 사업장 직원인 경우 12.7%, 지역주민 아동 4.5%임.
 - 민간 직장보육시설은 부모가 모두 해당 사업장 직원인 아동, 어머니만 해당 사업장 근로자인 경우, 아버지만 해당 사업장 근로자인 경우, 어머니나 아버지가 사업장 직원 혹은 비정규 직원인 아동의 순으로 우선순위를 두는 비율이 높음.

다. 보육시설 운영 재정

1) 보육료

- ☐ 기본보육료와 추가 비용을 합한 부모 부담은 0세아 243,000원이고, 만 5세아 154,100원으로 국·공립보육시설 보육료보다 현저하게 낮음.
 - 기본보육료는 0세아 평균 240,900원, 만5세아는 124,600원임.
 - 보육료는 무상보육부터 0세아 최대 417,000원을 수납하는 보육시설도 있음.

2) 정부 재정 지원

- ☐ 노동부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보육시설은 조사된 민간 직장보육시설 중 87.0%이고 13.0%가 받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노동부 인건비 지원 미지원 이유로는 50%는 지원요건 미충족, 28.6%는 고용보험 미 가입사업장, 21.4%는 다른 곳으로부터 지원을 받기 때문이라고 응답함.
- ☐ 민간 사업장 보육시설은 보건복지가족부의 교재교구비를 지원받는 비율이 14.1%이고 영아(장애아) 기본보조금 10.9%, 시간연장 보육비 4.3%이었음.
- 민간 임의설치 시설의 경우 21.9%가 교재교구비 지원을 받고 있음.
- ☐ 지방자치단체의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은 민간 직장보육시설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보면 55.9%가 처우개선비를 지원 받고 21.6%가 급간식비를 지원 받음.

3) 운영비 분담

- ☐ 다음은 직장보육시설이 운영비 분담은 민간 직장보육시설의 경우는 평균 사업주 39.4%, 부모 32.7%, 노동부 23.4%, 기타 4.8%로 나타났음.
- 사업주 지원 비율은 의무설치 사업장이 43.3%로 임의설치 사업장보다 높음.
- 노동부 지원이 없는 국가·지자체 직장보육시설은 사업주 55.1%, 기타 10.1%로 분담 비율이 높아서 부모 분담은 민간과 차이가 없음.
- ☐ 아동 1인당 월 평균 보육소요 액수는 민간 직장보육시설은 평균 523,000원이고, 국가·지자체 직장보육시설은 평균 459,600원임.
- ☐ 운영비 추가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 재원으로는 사업주와 정부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음.

라. 종사자

- ☐ 보육시설 종사자 근무기간은 평균 3.1년으로, 국·공립보육시설 교사 평균 근무기간 6년 5개월에 비하여 짧음.
- ☐ 민간 직장보육시설 시설장의 21.9%, 보육교사의 20.4%가 사업장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보장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 시설장과 경력 2년 보육교사의 연 평균 급여는 민간 직장보육시설의 경우 각각 평균 2616만원, 1702만원임. 이는 국·공립보육시설과 유사한 수준이라 하겠음.
- ☐ 직장보육시설 보육교사가 평일 8시간 근무를 준수한다는 비율은 민간 의무설치 사업장 시설이 47.9%로 높고 임의설치 사업장은 34.2%로 차이를 나타냈음.

- 민간 직장보육시설의 21.1%는 초과근무를 하여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마. 애로사항 및 개선과제

- ☐ 민간 직장보육시설장이 보육시설을 운영하면서 겪는 어려움은 운영비 지원 부족이 31.3%로 가장 많고 아동 확보 18.8%, 시설환경관리 15.2%의 순임.
 - 특히 민간 임의설치 시설에서 운영비 지원 요구가 43.6%로 매우 높음.
- ☐ 사업장의 직장보육시설 운영상 어려움은 재정부담이 48.6%로 단연 우위를 차지하고 그 다음이 해당 아동 부족으로 17.1%임.
- ☐ 직장보육시설 운영 개선을 위한 과제로 민간 보육시설 시설장은 정부의 운영비 지원 확대가 68.4%이고, 다음이 사업주의 관심제고 및 지원확대로 13.2%임.
 - 국가·지자체 설치 시설은 민간 사업장 시설에 비하여 정부의 운영비 지원 확대 비율은 낮고 사업주의 관심제고 및 지원확대 비율은 높음.

3. 이용 실태 및 만족도

가. 이용 일반 현황

- ☐ 민간 직장보육시설 이용 부모 당 이용 아동수는 1명 79.5%이고 2명 20.0%임.
- ☐ 민간 직장시설 최초 이용 시기는 만1세 이후가 88.5%이고 영영아기는 11.5%임.
 - 민간 직장보육시설 이용기간이 2년 이상은 약 30%로 조사되었음.
 - 36개월 이전 아동의 직장보육시설 미이용 이유는, 아동이 너무 어리다는 응답이 44.9%, 17.2%가 대리양육자 이용, 3.6%는 대기상태이었다고 응답하였음.
- ☐ 민간 직장보육시설 이용아동 중 대기기간이 있었다는 비율은 20.2%임.
- ☐ 아동 등원은 민간 직장보육시설은 모와 함께 오는 아동이 과반수 정도이고, 부와 함께 오는 비율은 17.6%임. 부모가 함께 데리고 온다는 비율도 9.7%임.
 - 등원 소요시간은 37.9%가 차량 10~30분, 22.3%는 차량으로 10분 이내임.
- ☐ 보육시설 평일 하루 이용시간은 평균 9시간 34분으로 조사되었음.

나. 직장보육시설 선택 이유 및 만족도

- ☐ 민간 사업장 보육시설의 가장 큰 선택 이유는 신뢰로 52.1%이고, 다음이 등·하원의 편리성으로 26.7%임. 이용자 중 약 1/3은 거주지 인근에 보낼만한 보육시설이 없다고 응답하였음.
- ☐ 직장보육시설 이용자 만족도를 6가지 문항으로 조사한 결과, 민간 시설 이용자 만족도는 5점 척도로 3.8~4.3점 사이에 분포함. 국가·지자체 보육시설 이용자 만족 정도가 민간 직장보육시설 이용자보다 높음.
 - 교사의 질 만족도가 4.3점, 이용시간 4.1점, 프로그램과 보육료 4.0점, 등·하원 방법과 시설 설비 및 환경 만족도는 각각 3.8점임.
- ☐ 현재 민간 직장보육시설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우수한 보육시설 종사자 40%, 시간적 편리함 26.2%로 조사되었고, 그 다음이 낮은 교사 대 아동 비율 12.9%이고, 이외 건강, 위생적 측면, 물리적 환경 등으로 나타남.

다. 요구 및 개선사항

- ☐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민간 직장보육시설 이용자의 55.8%가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있는 경우는 사교육의 어려움, 아이와 함께 출퇴근, 아이의 귀가 시간에 맞추어야 하는데서 오는 상사 눈치보기 어려움을 지적하였음.
- ☐ 민간 직장보육시설 이용자의 요구로는 시설 증·개축 25.9%, 셔틀버스의 개선과 시설 및 교재교구 각각 15.6%, 15.2%, 정원 확충 9.3%임. 운영시간 연장, 프로그램 개선, 종사자 증원, 건강과 섭식, 보육료 인하 등에 대한 요구도 소수 있음.
 - 국가·지자체 직장보육시설 이용자는 증개축과 정원 확충을 희망하는 비율이 민간 직장보육시설에 비하여 높음.
- ☐ 부모가 직장보육시설과 관련하여 바라는 바는 시설 투자 32.7%, 보육료 지원 강화 23.0%, 시설 환경 개선 17.6%, 이용 편의를 고려한 직장 환경 조성 14.1%의 순서임. 특히 민간 임의설치 사업장에서는 보육료 지원 요구가 두드러지게 높음.

라. 계속 이용 의향

- ☐ 민간 직장보육시설 이용자는 63.4%가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이용, 29.9%는 유치원으로 옮길 계획이라고 하였고, 타 보육시설로 옮기겠다는 응답은 5%임.

- 연령별로 1세 때는 집에서 돌볼 예정이라는 비율이 25.0%로 높고 2~4세는 35~40%가 유치원으로의 변경을 생각함.

4. 직장보육시설 이용의 효과

가. 포괄적 근로자 일·가정 양립 지원 효과

- ☐ 대부분의 이용자는 직장보육시설이 직장 선택 시 장점으로 작용하였다고 응답함.
- ☐ 민간 직장시설 이용자의 75.2%가 직장보육시설이 육아와 근무 병행에 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고 17.5%가 조금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음. 국가·지자체 직장보육시설에도 거의 유사하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임.
- ☐ 직장보육시설 이용 이후의 변화를 6가지 문항으로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변화가 있다고 하였는데, 아동 보육에 대한 변화가 직장에 대한 근로자의 변화보다 더 큼.
 - 긍정적 변화가 있다는 비율은 사업장 특성별 차이가 거의 없이 3.8~4.2점 사이에 분포함. 최저는 직장에 대한 애사심과 직무만족도이고 최대는 환경 보육에 대한 만족감임.
 - 전반적으로 민간 임의설치 사업장 이용자가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나. 여성고용 촉진 및 생산성 제고 효과

- ☐ 직장보육시설 이용 부모들은 여성고용촉진에 대해서는 민간의 경우 약 1/3은 효과가 크다고 인식하고 있고, 약 80%의 응답자가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국가·지자체 직장보육시설 이용자도 이와 유사한 경향을 보임. 모두 5점 척도 평균 4.1점 수준임.
- ☐ 생산성 향상에 대해서는 민간 직장보육시설 이용자의 약 30%는 효과가 크다고 보고, 약 88%의 응답자가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5점 평균으로 4.0점임. 국가·지자체 직장보육시설 이용자는 평균 4.2점으로 민간에 비하여 긍정적임.

다. 아동에 미치는 효과

- ☐ 직장보육시설이 안정적 보육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아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해서도 민간 직장보육시설 이용자의 약 83.3%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음. 이 역시 사업장 규모별로 모두 4.2점으로 차이는 거의 없음.

5. 정책시사점

□ 직장보육시설의 운영 및 이용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음.

- 보육에서 1.4%에 불과한 직장보육시설의 비중은 앞으로 더 확대되어야 함.
- 시설 확충 요구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은 확충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함.
- 직장보육시설 위탁은 국·공립보육시설 위탁과 마찬가지로 일정 기준을 법 수준으로 제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직장보육시설의 입소 순위는 소득수준, 가족 상태 등을 고려하여 지원을 더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우선순위가 두어져야 함.
- 민간 직장보육시설의 정원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조사대상의 13%의 시설은 인건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어서,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요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노동부 인건비 정액 지원, 분기별 말일 기준, 해당 아동수에 따라 지원액 삭감 등은 개선이 필요함.
- 기업이나 근로자 모두 시설환경 개선과 관련된 요구가 많고, 시설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함께 조사된 다른 항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아서 개선이 필요함.
- 직장보육시설은 취약보육이나 운영의 탄력성이 큰 장점으로 강화가 필요함.
- 보육프로그램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야 함. 특히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이용하는 아동을 위하여 교육프로그램의 질을 높여야 함.
- 직장보육시설 종사자 계속 근무를 위하여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함.
- 지원 전반의 재검토하여 지원 기준, 부처간 역할 등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 직장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영아보육의 질적인 측면을 높여야 하지만, 가정보육을 희망하는 근로자 요구도 무시할 수 없으므로 지원 방안 검토가 필요함.

VI. 외국의 일하는 여성 지원 정책

1. 일본의 일하는 여성 지원 보육정책

- 일본의 지역사회 보육지원 정책은 취업모를 위하여 야간보육, 재택보육, 오전반, 오후반, 주 2~3일 이용 등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사각지대 없이 골고루 부응하려는 세분화된 탄력성 증진 정책이 시도되어 왔음.
 - 일반 부모를 위하여 광장사업, 지역육아지원센터와 같은 정책도 추진되고 있음.
- 기업체에서의 사업소 보육소 설치·운영 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나, 전체 보육에서 직장보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고, 사업장에서도 육아휴업, 탄력근무제 등의 근로자 지원 수단에 비하여 그 비중은 매우 낮음.
 - 2007년 사업소 조사에 의하면 0.6%의 사업소에 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2.0%의 기업이 보육비용을 보조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2006년 말 현재 직장보육시설은 3,389개소로, 보육아동의 2% 미만을 담당함.

2. 호주의 보육정책과 여성고용

- 호주는 여성노동시장참여 촉진, 노동공급의 증진, 근로형태와 공보육서비스 연계 등 일하는 부모, 특히 취업주부 지원에 초점을 두고 보육지원에 노력을 기울임.
- 고용주와 근로자가 협상하거나 공공정책으로 수행하는 세 가지 중요한 정책 분야는 보육, 휴가, 시간제 근무이며 직장과 가족생활을 병행하는 가족지원으로는 유연노동시간, 아픈 자녀 돌봄휴가, 재택근무 등이 있음.
 - 중요한 근로형태의 하나인 시간제근로는 일하면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호주의 M자형 커브는 완만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음.
- 정부의 보육비용 지원은 시설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보호자에 대한 지원이 주를 이루며, 이는 2000년 7월부터 보육급여(Child Care Benefits, CCB)로 일원화됨.
 - CCB는 소득, 재산, 취업유무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소득이 많더라도 일정액을 지원 받음.

3. 미국의 직장보육과 여성고용

- ☐ 미국 직장보육시설에서의 행정적 지원체제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민간주도의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 범제도적 후원을 통해 중개자와 촉진자로서의 뒷받침에 노력하고 있음.
 - 가정보육지원형, 지역사회 후원형 등 직장보육시설의 운영형태에 또한 다양하여 대규모 기업에서 운영형태에 대한 폭넓은 선택권을 가지고 기업 자체의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 미국의 직장보육시설은 기업 중 약 6%에 설치되어 전문 회사에 맡겨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임. 이용 비용은 1,000불 미만이며, 비용의 20%는 회사에서 지원함.
 - 이외에도 미국 기업들은 육아휴직, 재택근무, 자율 근무 시간제, 자녀양육 보조비 추가지급 등 다양한 제도로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음.

4. 여성 근로자 지원 제도 관련 기타 국가들 동향

- ☐ 모성휴가(출산휴가) 관련
 - 영국은 최장 1년(52주)의 유급 모성휴가를, 캐나다는 노동법에 따라 대개 17주의 출산휴가를 제공하고 있음. 또한 네덜란드는 16주로, 출산전 4-6주, 출산후 10-12주임. 임금 전액을 지급함.
- ☐ 부모휴가(육아휴직) 관련
 - 영국의 부모휴가는 현재 자녀 한 명당 13주임. 네덜란드는 부모 각각에게 13주씩(8세미만 자녀) 부모휴가를 지급하며 무급임. 프랑스는 2001년 아버지 유급 육아휴직을 도입하였음. 캐나다는 출산과 육아 휴가를 합친 기간이 52주 이내로, 육아휴직급여는 출산 휴가에 10주가 추가 제공되며, 부모 중 한 명이 또는 나누어 받을 수 있음. 스웨덴 부모휴가는 16개월로 부모 각각 8개월로 두 달은 서로 이전할 수 없다는 특성이 있음.
- ☐ 부성휴가 관련
 - 영국의 부성휴가는 1주 혹은 연속 2주간이며 유급이며, 네덜란드의 경우 2일을 지급하며, 임금 전액을 지급함.

☐ 탄력근무 관련

- 영국은 6세 이하, 또는 18세 이하의 장애 자녀가 있는 부모들이 고용주에게 노동시간 단축과 근무시간자유선택 등의 탄력근무를 신청할 수 있음. 프랑스의 법정 근무제는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39시간에서 35시간으로 축소됨. 네덜란드도 노동시간 감축을 통하여 파트타임과 유동적인 근무를 시행함.

☐ 생애주기 정책관련

- 네덜란드는 생애주기 법안 시행으로 생애주기저축제도(Life-course saving scheme=levensloopregeling)를 시행하고 있음.

Ⅶ. 일하는 여성 보육지원 강화 방안

1. 지역사회 보육정책의 일하는 여성 지원 강화 방안

가. 보육시설 관련 정책

1)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 ☐ 일하는 여성의 다수가 소규모 사업장 저소득층임을 감안하여 국·공립보육시설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보육 지원을 강화하고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함.

2) 취약보육 서비스 강화

- ☐ 시간연장형 보육은 현재의 인건비 지원방식으로 실시하는 시설의 규모를 늘려나 가야 함.
- ☐ 휴일보육과 24시간 보육은 인건비 지원 방식에서 탈피하여 국·공립보육시설 등을 거점형 시설로 육성하여 이들 시설을 중심으로 역량을 모으는 것이 효율적임.
- ☐ 취업모의 아픈 아동 등을 위한 별도의 긴급 지원체계 마련이 검토되어야 함.

3) 취업모 입소 우선 강화

- ☐ 입소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기준을 정교하게 만들어서 보육이 필요한 아동에게 우선권이 보장되도록 함. 여러 가지 조건을 반영, 점수화하여 점수에 따라 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방법도 필요함.

- 특히 국·공립보육시설은 대기자가 많으므로 우선순위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가 낮은 이용자의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방법 등을 검토할 필요 있음.

4) 이용시간과 비용 이원화

- ☐ 이용시간을 이원화함. 평균 이용시간을 반영하여 5~6시간의 프로그램과 12시간 종일제 아동으로 구분하고, 종일제는 장시간 보육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는 원칙을 적용함.
- 우선은 부모 희망에 따라 이용시간과 비용을 이원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모의 취업, 질병, 가족간호, 구직 등으로 가정에서 자녀를 적절하게 보호하기 어려운 환경과 연계시킴.

5) 취업모 차등보육료 차등 적용

- ☐ 0세아와 만1세아에 한해서는 모의 취업여부를 반영하여 취업모를 더 지원하는 방향으로 지원 비율을 이원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 차등보육료 지원 비율에 취업모는 차등을 두는 방안, 또는 취업모는 중산층이라도 차등보육료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함.

나. 보육시설 이외 정책

1) 가정내 공공 보육서비스 이용가능성 제고

- ☐ 가정내 보육서비스 제도를 시설보육에 대한 보완책으로 위상을 정립함. 시설보육의 대체적 역할과 병행 이용하는 보완적 역할을 모두 수행함.
- 서비스는 종일제, 시간제, 입주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모두 수용함.
- ☐ 현재 시간제 아이돌보미 사업을 위탁 대상, 서비스 유형 등을 확대하는 형태로 발전시키는 것이 적절함.
- 지속 가능한 새로운 일자리로서 자리매김하게 하기 위해 최소한 단시간 근로의 형태로라도 소득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2) 영아 양육수당 취업모 우선 제공

- ☐ 2009년부터 도입이 예정된 저소득층 보육시설 미이용 영아 양육수당을 바탕으로 하되, 취업모 영아 자녀에게 소득수준의 범주를 확대하여 양육수당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함.
- ☐ 예산 제약 시, 연령, 출생순위, 소득 수준, 모의 취업상태 등을 고려하여 선별적 적용이 가능함.

3) 세제지원의 개선

- ☐ 이웃탁아모 등 비공식분야의 보육에 대해서도 취업을 위한 자녀 양육임이 증명되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모색을 검토하여야 함.
- ☐ 현재는 영유아 보육료와 교육비를 연 200만원까지 공제해 주고, 보육수당을 1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하는데, 취업모에 대해서는 보육료와 교육비 전액을 소득 공제해주고 보육수당도 기업이 지급하는 전액을 비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함.
 - 세액 감면제도(Child Care Tax Credit) 도입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4) 다양한 이용시설 설치: 정보 제공, 상담, 시설 이용 등

- ☐ 자녀를 보육하는 부모가 필요한 정보를 얻고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부모가 아이와 함께 가서 이용할 수 있는 아이와 부모를 위한 시설인 자녀양육 지원센터(가칭)를 마련함.
 - 서울특별시의 육아 플라자, 여성가족부의 육아 휴게실의 기능을 포함하되 공간을 보다 확보하여 충분한 오프라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직장보육 지원 강화 방안

가. 직장에서의 보육 지원 확충 방안

- ☐ 직장보육 의무 이행 방법은 시설 설치 제공 이외에 보육수당 방식도 존재하므로 영유아보육법상 의무 이행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음.
 - 의무 미이행 이유로 보육 대상 아동이 소수라거나 사업장의 소재지가 외곽이나 아동 보육에 적절하지 않은 장소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육시설의 설치를

업무에 둔 답변이 많음.

- ☐ 의무 이행 사업장에서 지원 수준도 법으로 정한 수준을 독려하고 지도함.
 - 의무 설치 시설의 운영비 50% 지원, 인근 보육시설 위탁 보육료 50% 지원, 보육 지원단가 50%의 보육수당 지급 등
- ☐ 기존의 지역보육시설을 이용하여 중소기업과 이들을 결연 맺도록 하고 결연된 기업 근로자의 자녀를 우선적으로 보육하게 하는 방법을 권장함. 사업장의 지원이 필요함.

나. 직장보육시설 설치 관련 정책 방안

1) 일반 직장보육시설 설치 확대

- ☐ 용자액 상한선을 증액함. 본 조사에서 이를 요구한 비율은 36.7%이고 근로복지공단 조사에서도 가정 우선적으로 요구한 부분이었음.
- ☐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기준을 적용하여 직장보육시설의 층수와 실외놀이터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함.
 - 사업장에 3층 이하 공간 확보가 용이하지 않고 또한 상시 보육아동 50명이 넘는 경우 실외놀이터가 있어야 하는데 보육시설의 안전을 보장하면서도 용이하게 시설을 설치, 확충하는 방안을 모색함.

2) 중소기업 근로자 밀집지역 직장보육시설 설치 방안

- ☐ 보육시설 운영 전문업체를 통한 설치방안을 모색함.
 - 보육시설 운영 전문업체가 하나의 사업장으로 대표 사업체로 하고 주변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게 하는 방안임.
 - 정부는 중소기업 근로자 보육수요 파악 및 지역 선정, 민간 보육경영업체 설득, 관련 중소기업 고용보험 가입 유도 및 공동 직장보육시설 참여 등을 유도함.
- ☐ 근로복지공단의 보육시설 설치 사업 재개 및 국·공립보육시설화
 - 2006년 설립을 마지막으로 중단된 근로복지공단 보육시설 설치를 재개함.
 - 근로복지공단의 보육시설을 직장보육시설에 포함할 수 있는 방법, 국·공립보육

시설로 운영하는 방법 모색함.

☐ 소규모 직장보육시설 설립 유도

- 소규모의 직장보육시설이 쉽게 설치되고 원활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시설장과 취사부 지원 제한의 개선이 필요

☐ 직장보육 정보 및 설치 절차 상 어려움을 지원함.

3) 기업의 국·공립보육시설 설치 후 위탁 활용

☐ 기업이 보육시설을 설치하여 시·군·구에 무상 임대하여 국·공립보육시설로 운영 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함.

4) 환경 개선비 지원

☐ 직장보육시설 설치 시부터 아동의 안전과 교육적 요소 등을 고려하여 양질의 보 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지만 설치 후에도 지속적인 개· 보수가 요구되므로 이 비용은 일정 부분까지는 무상지원을 하는 방안이 필요함.

다. 직장보육시설 운영 관련 개선 방안

☐ 입소순위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 동일순위의 경우에는 지원을 더 필요 로 하는 아동에게 우선순위를 둬. 모든 아동에 공정한 출발 보장하는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동일수록 질 좋은 보육서비스가 필요함.

☐ 직장보육시설 위탁도 국·공립보육시설 위탁과 마찬가지로 위탁조건을 세밀하게 일정 기준으로 정하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명시함.

- 직장보육시설은 직접 운영하는 사업장보다는 위탁 운영하는 사업장이 65.4% 로 더 많고, 위탁 운영자도 개인으로부터 단체, 전문 위탁업체 등 다양함.

라. 비용 및 재정 지원 개선 방안

1) 직장보육시설 표준보육비용 기준 마련

☐ 운영비는 사실 보육 서비스의 질과 직결되므로 표준 모형이 제시될 필요가 있 음. 현재 대체로 일반보육시설 기준이 있으나 시·군·구의 직접적인 관여가 없는 상태이므로 이 기준을 적용하는지 지도 감독은 미미한 실정임.

- 현재 교사 대 아동 비율 등은 최소 법적 기준을 따르고 있으나, 표준보육비용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시설에 따라서는 교사는 아동 대비 수를 제한하지 않고 인건비를 지원함. 그러나 그 이외 기준은 모호하므로, 최소한 표준보육비용을 지침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2) 직장보육시설 운영비 분담 기준 정립

□ 직장보육시설 정부 재정지원 전반에 대한 역할 정립 등 재정리가 필요함.

- 현재는 노동부, 사업주, 보건복지가족부, 자치단체의 지원이 제 각각 이루어지므로 시설에 따라서는 중복 지원을 받거나 또는 지원에서 제외되는 등 편차가 큼. 부모 부담도 시설마다 다름.
- 수요자 관점에서 최소 운영비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기업주의 지원 의무 수준 및 내용을 규정하고 사업주 분담금인 운영비의 50%의 의미를 명확히 함.

3) 직장보육시설 인건비 지원 방법 개선

□ 직장보육시설에 대해서는 공공보육시설이라는 관점에서 포괄적 접근이 필요함.

- 현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아동만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공공보육시설 인프라로서의 중요성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전체 아동 대비 취업모 자녀 비율을 고려하여 일반회계로 국·공립보육시설에 준하는 지원 등으로 지원 대상 확대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취사부 인건비는 모든 직장보육시설에 지원함. 시설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지원 비용 단가를 낮추어서 시간제로 지원하여 취사부 사용이 가능하도록 함.

- 대상 아동이 적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소규모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도움.

□ 인건비 지원 방식을 개선함.

- 정액보다는 국·공립보육시설 인건비 지원 방식 등과 같이 일정 기준액을 정하고 이에 대한 정률을 지원하도록 방식을 변경하는 것이 더 합리적임.
- 직장보육시설의 예산 집행을 2001년 이전과 같이 월 단위로 실시함.
- 지원아동 기준은 매월 15일 이상 이용 등 일정 기간 이용 아동수로 개선하고, 서류를 간소화함.

- 해당 아동수에 따라 비율로 지원액을 삭감하는 것도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우선 고려하는 방식으로 보기는 어려움. 교사 대 아동 비율 기준이 없는 것과 비교하면 부조리한 측면이 있음.

4) 유구비품비 지원 방법 개선

- ☐ 유구비품비 지원은 지원 주기를 단축하거나 또는 필요한 경우에 신청과 심사 절차를 거쳐서 필요성이 인정되면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유구비품 교체 주기 5년에 대해서는 시설장의 82.5%가 부적절하다고 봄.

5) 직장보육시설에 국고 지원 병행

- ☐ 직장보육시설이 가진 공익성, 공공성을 생각한다면 이를 국·공립보육시설에 준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국고에 의한 환경개선비, 교사 인건비 등의 지원이 직장보육시설에도 일정한 규정을 두고 동일하게 적용되어 현행 노동부 지원과 병행될 수 있다면 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이 확충될 수 있음.

마. 서비스 및 지원

1) 서비스 내용 강화

- ☐ 직장보육시설은 특히 민간 직장보육시설은 일반 보육시설에 비하여 시간연장형 보육비율이 월등하게 높고 이용자들의 이용시간 만족도도 비교적 높으므로, 탄력적 운영의 장점을 살려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여야 함.
- ☐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도 상당수이므로 학교 준비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질도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함.
 - 환경과 특히 프로그램 면에서 지역사회 보육시설과의 경쟁력을 확보하여야 함.

2) 종사자 근무 환경 개선

- ☐ 우선은 8시간 근무를 준수하고 미 준수 시 수당을 지급함.
 - 직장보육시설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은 교사이지만, 이들의 근무환경은 시설 간에 편차가 있으므로, 전반적인 교사 처우와 근무 환경 개선이 요구됨.

- 민간 사업장시설의 경우, 8시간 근로기준 준수 비율이 44.0%이지만 21.1%는 야간 근무를 하여도 수당을 지급하지 못 함.

3) 지역사회 보육과 연계체계 구축

- ☐ 직장보육시설도 지역사회 보육시설과 같이 보건복지가족부, 시·도, 시·군·구 보육정책 대상에 포함시켜야 함.
- 평가인증 조력, 보육 프로그램 지원 등 시·군·구 보육지원 대상에 직장보육시설도 포함시켜 지역사회 보육시설과 동일하게 지원함.
-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주 관점에서 사업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으로는 운영비 지원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프로그램 지원임.

4) 직장보육시설 지원 기능 강화

- ☐ 직장보육지원센터의 사업장의 보육시설 설치, 운영 지원 활동을 강화함.
- 단순한 홍보나 정보를 제공 이상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설치 절차를 지원함.
- 수도권에 직장보육지원센터 추가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정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4차 기본계획에서 여성취업률 2007년 54.8%를 2012년까지 60%로 증가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노동부, 2008).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직장보육시설은 물론 지역사회 보육시설 지원도 영유아를 기르는 여성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돌아가도록 정책방향을 확고하게 설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25세부터 34세의 자녀 출산 및 양육기에 있는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을 높이지 않고는 전체적인 여성취업률을 높이기 어렵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동안 정부는 영유아보육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하여 지역사회와 직장에서의 영유아 보육 지원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영유아를 기르면서 일하는 여성을 위한 정책으로서의 실효성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영유아보육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지역사회 보육정책은 그동안 소득이 낮은 계층의 비용 지원에 중점을 두어 왔고 일하는 여성에 대한 별도의 정책은 없다. 이는 저소득층은 여성이 취업하거나 취업을 하려고 노력한다는 가정에 기초한 것이다. 그러나 이제 영아 보육비 지원 등 지원정책 대상이 전 계층으로 확대되었으므로 일하는 여성에 대한 배려로 보기 어렵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1조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한편 영유아보육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¹⁾,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공동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지역보육시설에 위탁하여 근로자가 이용하게 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직장여성의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유도하기 위하여 고용보험기금으로 설치비 용자 및 무상지원, 인건비 무상지원, 세제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보육교사 인건비의 경우 2006년 147개

1) 의무사업장의 범위는 1995년 5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상시 여성노동자 500인 이상에서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기준을 강화하였음.

사업장 1,309명의 종사자에게 지원금이 지급되었다.

이러한 정책에 힘입어 직장보육시설 의무사업장의 의무 이행률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아직도 시설 설치에 한계를 보인다.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 조사 결과에 의하면 2007년 말 현재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사업장 791개 중 보육시설을 설치했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한 곳은 55.6%인 440개소이며, 미이행 사업장은 44.4%인 351개소이다.

직장보육이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설치 의무사업장에 대한 법적 기준의 부적절성 및 강제성의 부재, 시설 운영 부담에 따른 직장보육 실시 기피, 직장보육 시설 설치 위주의 지원 정책과 지역시설을 선호하는 근로자와의 괴리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지역사회와 사업장의 일하는 여성을 위한 보육 지원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2. 연구 목적 및 내용

이 연구는 일하는 여성을 위한 보육 지원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지역사회 보육과 직장에서의 보육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지역사회 보육정책의 내용과 특성을 분석하고 보육서비스의 실질적 수요자인 취업 여성의 보육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한다.

둘째, 직장보육지원 제도의 적절성과 사업체의 직장보육 지원의 현황과 요구 만족도, 요구도 및 효과성을 파악한다.

셋째, 선진 외국의 일하는 여성을 위한 지원 방안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넷째, 사업장의 직장보육 지원 강화 방안과, 보육인프라에 있어서 직장보육시설 역할 및 발전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중소기업 등 보육 사각지대 근로자의 보육지원을 위한 보육시설 활성화 방안 모색한다.

이로써 근로자의 복지 및 보육 발전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여성취업률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3. 연구 방법

연구 방법은 문헌 및 자료 수집, 설문조사,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 등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가. 국내외 문헌 및 자료 수집, 분석

보육 관련 법·제도, 보육정책의 내용, 조사 관련 사회지표, 기존통계 자료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또한 인터넷 검색으로 외국의 직장보육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

나. 설문조사 실시

사업장 직장보육 담당자, 직장보육시설 시설장, 직장보육시설 이용 아동 부모를 대상으로 직장보육 지원, 이용 실태와 효과성 등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업장 직장보육 담당자와 직장보육시설 시설장 조사는 전수조사이고, 직장보육시설 이용 아동 부모조사는 표본조사이다.

1) 사업장의 직장보육 지원 실태 설문조사

직장보육 지원 실태 설문조사 대상은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사업장 791개소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중소기업 149개소로 총 940개소이었다.

조사는 2008년 6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화조사팀에 의뢰하여 전화조사 방법으로 실시되었다.

조사 내용은 <표 I-3-1>에 제시된 바와 같다. 사업장 현황과 직장보육 관련 제도에 대한 의견을 조사 대상 모든 사업장에 공통적으로 질문하였으며, 사업장의 직장보육 특성에 따라 보육시설 설치 사업장, 인근 보육시설 위탁 사업장, 보육수당 지급 사업장, 보육시설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의 4종으로 구분하여 각각 보육지원 현황과 효과에 관한 문항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총 772개 사업장의 조사가 완료되어 조사 완료율은 82.1%이었다. 조사 완료율은 사업장 특성별로 차이를 보였으며, 의무 미이행 사업장과 임의설치 사업장에서 응답 비율이 낮았다(표 I-3-2 참조).

〈표 1-3-1〉 사업장의 직장보육 지원 실태 조사내용

대상	구분	질 문 내 용
전체 사업장	현황	- 사업장 특성, 근로자 수 및 연령, 소재지, 노동조합 활동 등
	의견	- 직장보육 지원, 직장보육 관련 법 조항에 대한 의견 - 직장보육 시설 설치 의무 미이행이 나타나는 이유
보육시설 설치 사업장	현황	- 현황: 설치 연도, 이용 직원 및 아동수, 설치 및 운영 유형
	설치 및 운영	- 설치 배경 및 애로사항 - 설치 및 운영시 비용 지원 - 운영상 어려움 및 요구되는 지원, 앞으로의 계획
	효과	- 직장보육시설의 긍정적 효과 및 직원 만족도
인근 보육시설 위탁 사업장	현황	- 설치 연도, 이용 직원 및 아동수, 설치 및 운영 유형
	위탁 설치 및 운영	- 설치 배경 및 애로사항 - 설치 및 운영시 비용 지원 현황 - 직장보육시설 미설치 이유, 앞으로의 계획
	효과	- 보육시설의 긍정적 효과 및 직원 만족도
보육수당 지급 사업장	현황 및 배경	- 지원 연도, 이용 직원 및 아동수, 지원 대상, 지원액, 지원 동기 - 직장보육시설 미설치 이유, 앞으로의 계획
	효과	- 보육수당의 긍정적 효과 및 직원 만족도
보육시설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 직원 요구 - 앞으로의 계획 및 이유, 지원 시 기대효과

〈표 1-3-2〉 사업장의 직장보육 지원 실태 조사대상 및 결과

단위: 개소, %

구분	조사대상 사업체	조사 완료 사업체	조사 완료율
전체	940	772	82.1
시설 의무설치 사업장	253	225	88.9
인근 보육시설 위탁 사업장	40	40	100.0
보육수당 지급 사업장	147	148	100.0
의무 미이행 사업장	351	266	75.8
시설 임의설치 사업장	149	93	62.4

조사된 자료는 사업장을 민간과 국가, 의무 및 임의 설치 등 특성별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특히 민간사업장에 대한 정책대안의 기초자료 생산을 위하여 민간 사업장 현황 파악에 주력하였다.

2) 직장보육시설 운영 실태 설문조사

직장보육시설 운영 실태 설문조사 대상은 전국의 의무 및 임의 설치 직장보육시설 총 320개소 전수이었다.

조사는 우편조사 방법으로 실시되었다. 조사표 발송시 반송용 봉투와 함께 노동부와 육아정책개발센터 협조 요청 공문과 조사표 작성 요령을 첨부하였다.

조사 내용은 직장보육시설 현황과 종사자, 시설운영, 비용 및 재정 지원과 관련된 의견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1-3-3>에 제시된 바와 같다.

조사 결과, 총 191개소의 조사가 완료되어 조사 완료율은 59.7%로 다소 낮았다.²⁾ 그러나 전체적인 운영 실태 파악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

조사 자료는 역시 민간과 국가, 의무 및 임의 설치 등 시설 특성별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특히 민간 사업장 보육시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민간사업장 보육시설 관련 정책대안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표 1-3-3> 직장보육시설 운영 실태 조사내용

구 분	질 문 내 용
일반현황	- 사업장 유형 - 시설 설치 및 운영 유형, 시설위치 및 회사와의 거리
이용아동	- 원아수(정원, 현원, 대기아동 수) 및 정원미달 이유 - 보육시설 이용아동 중 직원자녀 비율
종사자	- 종사자 수, 종사자 신분(회사 직원 여부), 처우 및 근무조건 - 보육교사의 현 시설 평균 근무기간, 보육교사 수당 지급 여부 - 일반 보육시설 대비 근무여건
시설운영	- 운영시간 및 운영일수 - 부모들의 시설 선택 이유 및 관심사 - 평가인증 통과 여부 - 보육시설 운영의 애로점
비용 및 재정지원	- 아동 1인당 보육료 - 출처별 월평균 운영비 - 사업주 지원 운영비 항목, 사업주 지원 운영비 인상 희망 비율 - 정부 지원 운영비 항목, 정부지원 운영비 인상 희망 비율 - 부모 납부 보육료 조정에 대한 의견
기대효과 및 관련 의견	- 직장보육의 긍정적 효과 - 직장보육시설 설치 확대, 운영 개선을 위한 의견

2) 시설조사 완료율이 낮은 이유 중의 하나는 사업장 조사가 병행되었기 때문이기도 한 것으로 이해됨. 사업장 조사표를 시설장 관여로 작성하였으므로, 시설조사를 중복조사로 보고 응답을 하지 않은 사례가 일부 발견되었음.

3) 직장보육시설 이용 실태 설문조사

가) 표본추출방법

직장보육시설 이용 실태 설문조사의 모집단은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부모이다. 조사 대상 표본은 이 중 직장보육시설 설치 사업장 근로자로 한정하였고, 조사 대상 규모를 1,000명으로 설정하고 조사가 우편조사임을 감안하여 응답률을 40~50%로 추정하였다. 따라서 1차로 보육시설 선정은 전수로 하기로 하고, 시설에서 응답자 선정은 시설장이 담당하였는데, 전국 320개 보육시설에서 3개 정도의 유효조사표를 기대하고 7명의 부모 선정을 요청하였다. 시설장에게는 연령별로 골고루 포함되도록 선정하여 달라는 지침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시설을 표본으로 선정한 후에 시설에서 다시 이용 아동을 다수 조사하는 방법과 비교하여 시설의 조사협조 부담과 이로 인한 시설의 협조거부 등 위험 부담을 분산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시설장 임의에 의하여 제2단계 추출이 이루어지므로 보이지 않는 시설장의 선택이 영향을 미칠 것이며, 직장보육이용자의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한 정교한 표본 추출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은 본 조사의 한계로 남는다.

나) 조사 내용 등

전국의 직장보육시설 320개소를 대상으로 각 시설을 이용하는 부모 중 직장보육시설 설치 사업장 근로자 7명에게 조사표와 반송용 봉투를 배부하고, 부모가 설문에 응답하여 직접 육아정책개발센터로 우편으로 송부하도록 요청하였다. 그 결과 총 1,093명의 근로자가 조사에 응하였다.

조사내용은 <표 I-3-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아동과 부모의 특성, 직장보육시설 이용 현황, 직장보육시설 이용 만족도 및 요구 등이었다.

〈표 I-3-4〉 직장보육시설 이용 실태 조사 내용

구 분	질 문 내 용
응답자 일반정보	- 아동과의 관계, 직위
아동과 부모의 특성	- 가구 특성: 자녀수(총 수/직장보육시설 이용 아동수), 가족유형, 월 소득 - 자녀 특성: 연령, 장애, 질병 여부 - 근로특성: 주간 총 근무시간, 출근·퇴근 시간, 주말 및 시간외 근무여부

(표 I-3-4 계속)

구 분	질 문 내 용
직장 보육시설 이용현황	- 등원 및 귀가 방법, 이동 시간 - 이용 기간, 최초 이용 시기, 대기 여부 및 대기 기간 - 현 시설 이용 전 육아시설 이용 여부 - 시설 이용 시간, 주말 및 야간 이용 여부 - 총 소비 보육 비용 - 근무시간 중 보육시설 방문 여부 및 이유
만족도 및 요구	- 직장 보육시설 선택 이유 - 만족도(보육료, 교사의 질, 프로그램, 이용시간, 등하원 방법, 환경) - 이용 후 변화(안도감, 만족감, 애사심, 생산성, 자녀의 선호도, 자녀와의 관계) - 직장의 고용안정 효과 - 현 이용 시설의 장점 - 시설에 대한 개선 요구, 직장에 대한 요구 - 계속이용 여부, 타인에 대한 추천 여부
직장 보육시설에 대한 일반적 의견	- 자녀 양육 부담해소에 기여 정도 - 사업장 생산성 증대에 기여 정도 - 직장 보육시설 설치법의 규제와 개선점에 대한 의견 - 최적의 직장 보육지원 방식에 대한 의견 - 보육시설장 및 직장 보육담당자에 대한 건의사항

다. 자문회의 및 간담회(포럼) 운영

정부와 학계 관련 전문가로 단기 작업팀(Task Force Team)를 구성하여 연구 진행과정에서 주제별로 총 5회의 포럼을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 연구에 반영하였고, 이외 직장보육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 조사를 보완하였다.

4. 선행연구

선행연구는 직장보육으로 한정하였다. 지역사회 보육정책 중 취업모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거의 없으며, 기존의 실태와 요구 파악 연구들이 대부분 취업여부를 모의 특성으로 분류하여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선행연구로서의 범주 설정도 애매하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제외하고자 하였다.³⁾

3) 취업모 가구의 육아 실태와 요구에 관한 전국 통계는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04년 전국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보고서를 참조하기 바람.

가. 직장보육 수요 관련

2007년도 영아를 둔 여성 근로자 조사에서는 기업에서의 직장보육시설과 보육비 지원에 대해서는 대체로 필요하다는 응답 이상이 90%이었으며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1% 미만이었다. 사업장 규모별 차이는 뚜렷하지 않다. 기업의 보육비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96.9%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사업장 규모에 따른 큰 차이는 없었다(표 I-4-1 참조).

〈표 I-4-1〉 근로자의 직장보육시설과 보육비 지원 필요성에 대한 의견

단위: %(명)

구분	직장보육시설 설치					보육비 지원				
	매우 필요	대체로 필요	보통	불필요	계(수)	매우 필요	대체로 필요	보통	불필요	계(수)
전체	81.2	13.5	4.4	0.8	100.0(517)	85.7	11.2	2.7	0.4	100.0(518)
19인 이하	84.2	12.3	3.5	-	100.0(171)	87.7	9.4	2.9	-	100.0(171)
49인 이하	76.5	14.3	7.6	1.7	100.0(119)	85.0	11.7	1.7	1.7	100.0(120)
50~299인 이하	79.3	16.3	2.2	2.2	100.0(92)	79.3	14.1	6.5	-	100.0(92)
300인 이상	87.6	8.6	3.8	-	100.0(105)	86.0	13.2	0.9	-	100.0(114)

자료: 서문희·최혜선(2007), 영아보육 종합 대책 방안, 육아정책개발센터.

동 조사에서 직장에 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남은 자리가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29.4%로 가장 높았고 보육료나 시간이 맞지 않아서 23.5%, 거리가 멀어서 14.7% 등이었다.

한편 2002년도 전국 보육실태조사 자료에 의하면 직장에 다니는 보호자의 경우 직장에서 보육시설을 제공하면 이를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부모의 57.3%가 이용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42.7%는 없다고 응답하였다.

직장보육시설이 설치되어도 이용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는 영아는 집 주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더 좋아서, 직장과의 거리가 너무 멀고, 아이를 데리고 출근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다른 기관에 보내기 위해서 순이었고, 유아는 다른 기관에 보내기 위해서가 37.3%로 가장 많았고, 너무 멀어서 18.1%, 집 주변 보육시설이 더 좋아서 17.7%의 순으로 나타나 지역 보육시설을 선호 태도를 알 수 있었다(표 I-4-2 참조).

〈표 1-4-2〉 직장보육시설이 설치되어도 이용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

단위: %(명)

구분	영아	유아	전체
아이를 데리고 출근하는 것이 부담되어서	16.0	13.6	14.5
직장 주변 환경이 안 좋아서	3.8	2.8	3.2
근무시간에 신경이 쓰여서	6.7	6.6	6.5
직장과 집이 너무 멀어서	23.5	18.1	20.2
집 주변 보육시설이 더 좋아서	29.4	17.7	21.9
다른 기관(유치원, 학원 등)에 보내려고	13.0	37.3	28.7
기타	7.6	3.8	5.1
계(수)	100.0(238)	100.0(426)	100.0(661)

자료: 서문희·임유경·박애리(2002). 2002년 전국 보육실태조사 보고.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나. 직장보육에 대한 태도와 만족도 관련

지금까지 수행된 직장보육에 관한 연구들은 이용자의 만족도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취업모들은 다른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취업모보다 보육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성영혜·손지미, 1999). 일반보육시설과 직장보육시설의 보육의 질에 대한 여성근로자의 인식은 비슷하나 직장보육시설이 일반보육시설보다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여성근로자들이 자신의 직장에서 운영하는 보육시설에 자녀를 맡김으로써 심리적, 정서적으로 보다 안정되고 신뢰감을 갖게 되기 때문이라는 보고가 있다(김교성·김경희, 2003; 김리진·윤종희, 2000). 즉, 유아와 부모가 보육시설에 안정적으로 적응해 나감으로써 보육에 대한 만족감이 높아지는 것(권미량·천혜영, 2006)이라고 보는 것이다.

직장보육시설에 대해 만족하는 내용을 알아본 연구들은 직장보육시설 이용자들이 아동과 부모와의 근접성, 물리적 환경(김주미, 1995; 양승주, 1998; 임재택, 1993)과 교육활동 및 교사(성영혜 외, 1999)면에서 만족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직장보육시설의 보육료에 대해서도 만족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황혜신, 2007)는 보고도 있다.

이 외에도 김선애와 한유진(2005)은 소득수준과 직장보육에 대한 만족도와와의 관계를 설명하였는데, 소득 수준이 중간 정도인 집단이 직장보육에 대하여 가장 만족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연구(김혜란, 2006)에서는 소득수준에 따라 만족도를 나타내는 내용에 차이가 있음을 보고되었는데, 고소득 여성근로

자는 프로그램의 질과 시설 환경에 대한 요구가 더 큰 반면, 저소득 여성근로자는 교육시간이나 교육료에 대한 요구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직장보육시설에 대해서 부모가 갖고 있는 태도를 조사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대학교 직원의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태도를 알아본 연구(김선애 외, 2005)에서 응답자들은 직장보육이 직장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업무 효율성에 기여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복지향상에 대한 높은 기대를 나타냈다. 이와 비슷한 결과를 보고한 이순화(2001)의 연구에서도 직장보육을 이용할 경우 심리적으로 안정되며 직장에 대한 소속감이 증가한다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이처럼, 부모의 입장에서는 직장보육이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 부모 출퇴근 시 함께 이동하는 것이 오히려 자녀를 힘들고 피곤하게 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연구도 있다(김선애 외, 2005). 또한 이들의 연구에서는 직장보육에 대한 모와 부의 상반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를 보면, 직장보육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가 아버지의 태도보다 긍정적이었으며, 아버지는 오히려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불편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연구자들은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등원에 대한 아버지의 책임이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그 이유를 해석하였다. 또한 직장보육에 대한 태도가 응답자의 배경에 따라 차이를 나타낸다고 보고한 연구를 보면, 부모의 소득 및 직업에 따라 직장보육에 대한 태도가 다르며(김선애 외, 2005), 남정보다는 여성이, 학력이 높은 근로자 보다는 낮은 근로자가 직장보육시설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음(Schiller, 1982)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직장보육시설에 대해 이용자들이 긍정적인 태도와 높은 만족감을 나타낸다는 연구 결과들은 직장보육시설 확대의 필요성을 지지해주는 기초자료가 된다고 하겠다.

다. 직장보육의 기능 및 효과 관련

그동안 이루어진 직장보육의 기능 및 효과 관련 연구들은 직장보육 지원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사업체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한다는 내용으로 종합될 수 있다.

권미량 등(2006)은 취업모가 겪는 시간갈등을 어떠한 과정을 거치면서 벗어나는지를 심층적인 관찰을 통해 직장보육시설은 취업모를 시간 갈등으로부터 벗어나게 한다는 것을 질적인 연구를 통해 발견하였다. 또한 직장보육시설은 근로자의 직장

생활과 보육을 함께 지원함으로써 생활에 대한 적응을 돕고, 취업모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며, 이것이 곧 업무능력 향상으로 연결되어 장기적으로 투자 비용이 사업장의 이익으로 환원된다고 보고하였다. 김현주(2005)는 여성근로자들이 직장보육 서비스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직장보육 서비스에 만족할수록 직무몰입도와 직무만족도가 향상되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외국의 연구에서도 보고된 바 있는데, Guttaman(1994)은 직장보육이 취업모의 일과 가족을 연결, 통합함으로써 근로자의 만족감, 자기발전, 사업체 기여 등을 가능하게 하고 경영주 측면에서는 근로자의 비생산적 근무태도로 인한 사업체의 생산성 저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직장보육은 회사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향상시켜 직·간접적인 기업 홍보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들(김혜선, 1997; 손지미, 1991; 이기숙·김희진·박은혜, 2002)도 있다. 이 외에도 직장보육의 활성화를 통해 여성인력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도모하고(이기숙 외, 2002), 공동 육아의 의미를 부각시키는(권미량 외, 2006)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연구를 통해 보고되었다.

한편, 직장보육시설 설치 외의 보육수당 지급 방식도 근로자의 노동성과와 기업 성과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김태홍, 2001).

이와 같이, 국내 선행연구들에서 직장보육서비스의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선행연구들에서 직장보육서비스의 효과를 부분적으로 살펴보거나, 연구대상으로 일부직종의 여성근로자들의 포함하고 있거나, 효과를 측정하는 방법이 충분히 정교화 되지 못하는 등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를 직장보육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효과로 평가하기는 이르다(김혜란, 2006)는 지적도 있다.

라. 직장보육 관련 정책연구

직장보육과 관련된 대표적인 정책연구로는 다음의 세 가지 연구(김유경·서문희·임유경, 2003; 김진이, 2001; 이기숙 외, 2002)를 들 수 있다.

보건복지부 보육발전기획단에서 논의된 김진이(2001)의 연구는 직장보육에 대하여 시설 설치 이외에 다양한 지원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접근하였다. 기존 자료를 이용한 논의의 형태이지만 직장보육에 대한 전체적인 접근법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노동부 지원으로 수행된 이기숙 등(2002)의 연구는 연구 범위를 ‘직장탁아시설’의 확충으로 한정된 측면이 있으나 직장보육시설, 사업체, 이용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조사를 통하여 기초 자료 생산에 기여하였고, 직장보육시설의 운영차원, 제도적 차원, 그리고 직장보육시설의 수요자, 공급자, 제도적 지원자의 인식개선 방향으로 나누어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이 연구 결과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요건이 되는 당해 사업장 근로자 자녀 비율을 3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은 정책으로 채택되었다.

김유경 등(2003)의 연구는 규제 준수도 연구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가 직장보육시설 설치 규제에 대한 연구를 추진된 것이다. 이 연구는 영유아보육법으로 정하고 있는 직장보육에 대한 규제집단, 집행공무원 및 제3차 집단의 규제 준수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방안과 직장보육시설 운영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일하는 여성 보육지원이라는 관점에서 지역사회 보육과 직장보육시설을 포함한 직장에서의 보육 지원을 동시에 다룬다는 포괄성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찾을 수 있다.

5. 연구의 범주 등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 보육과 직장에서의 보육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여기서 보육지원은 보육서비스 유사어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여성 근로자를 위한 모성보호나 부모권 등에 대한 정책제언은 연구 범주를 벗어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보육서비스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의 근로 현황 부분에서 보육서비스와의 연관성에 한해서만 이러한 문제를 간략하게 다루고자 한다.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다면 0세아 보육서비스 재공을 위한 정책은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외국의 경우 여성근로자는 출산 후 1년은 대부분 육아휴직으로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기 때문에 보육서비스 제공에 대한 기업의 관심은 낮은 편이다.

본 보고서는 총 7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서론으로 연구목적, 내용, 방법을 기술하고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제2장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현황과 보육지원 관련 요구,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실태 등 일하는 여성 현황을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일하는 여성의 관점에서 지역사회 보육제도를 검토하였다. 제4장에서는 직장보육 관련 제도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기대효과를 살펴보고, 제5장에서는 직장보육시설 운영 및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효과를 살펴보았다. 제6장에서는 일하는 여성을 위한 외국의 지원 정책을 검토하고 정책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는 앞에서 검토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일하는 여성을 위한 보육지원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일하는 여성을 위한 효과적인 보육지원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전체 직장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조사하였으나 조사 완료율이 약 60%에 그쳐 실태를 정확히 제시하는 데 다소 미흡하였다. 그러나 전체적 현황을 파악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일본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경우 직장보육 지원제도 관련 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내용을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지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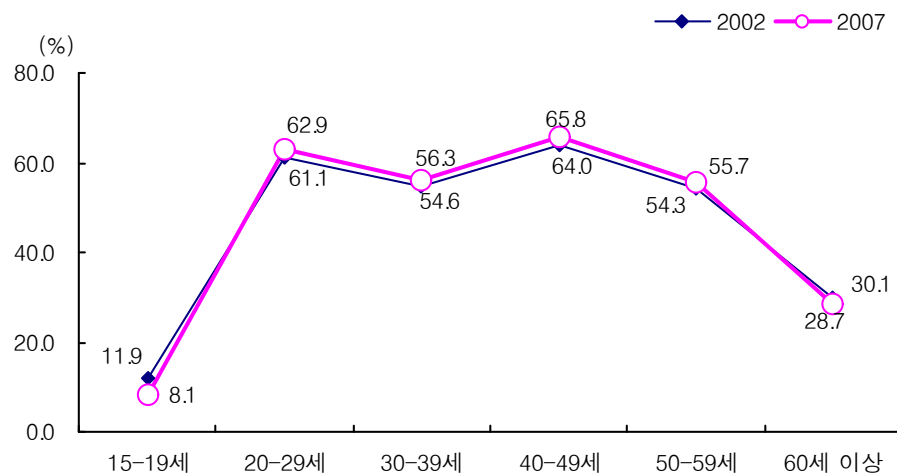
Ⅱ. 일하는 여성 현황

제2장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과 근로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보려고 하였다. 먼저 여성의 경제활동 규모와 제 특성을 알아보고, 다음으로 자녀 양육 지원과 관련한 정부와 기업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였으며,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실태를 제시하였고, 마지막으로 정책시사점을 제시하였다.

1. 여성의 경제활동

가. 여성의 경제활동 특성

2007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0.2%로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은 20대는 40대와 비슷한 62.9%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인 반면, 30대는 56.3%로 상대적으로 낮은 참가율을 보였다. 이는 많은 여성이 결혼 전에는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다가 결혼과 더불어 출산 및 가사에 전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료: 통계청(각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보고서.

[그림 II-1-1] 여성 경제활동참가율(2007)

취업자 수로는 2007년 여성 취업자수는 968만 5천명이고 남성 취업자수는 1357만 2천명이다. 1980년 이후 여성 취업자 수는 꾸준히 증가해 왔다(표 II-1-1 참조).

〈표 II-1-1〉 연도별 성별 취업자 수

단위: 일, 시간

구분	1980	1990	1997	2000	2002	2005	2006	2007
여성 취업자	5,222	7,376	8,731	8,769	9,225	9,526	9,706	9,685
남성 취업자	8,462	10,709	12,483	12,387	12,944	13,330	13,444	13,572

자료 : 통계청(각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보고서.

나. 근로 특성

1) 직종

2007년 여성 취업자의 임금근로자 비율은 68.8%이며 이 중 상용은 28.7%, 임시는 29.9%, 일용은 10.2%이다. 남성 취업자와 비교할 때 임금근로자 중 임시와 일용은 각각 13.5% 포인트, 1.5% 포인트 높은 반면, 상용은 14.0% 포인트 낮다. 이는 상대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취약한 지위에서 취업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 비임금근로자 비율은 31.2%로, 이 중 자영업주는 18.5%, 무급가족 종사자는 12.7%이다.

2007년 여성 취업자 중 전문·관리직 종사자 비율⁴⁾은 19.3%로 전년 대비 0.5% 포인트 상승하였으며,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남성근로자는 24.2%이다.

2) 근로일수 및 시간

〈표 II-1-2〉는 2007년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월평균 총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월평균 근로일수를 보면 평균 22.3일인데, 사업체 규모가 증가하면서 근로일수는 대체로 낮아지는 양상으로, 중소기업 사업체가 대규모 사업체보다 근로일수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월 평균 근로시간을 보면, 전체 평균은 191.5시간인데, 중소기업 사업체의 근로시간이 더 길며, 특히 30인 이상 99인 이하 사업체의 근로시간이 194.7시간으로 가장 길다. 남자가 여자보다 근로시간이 약간 길지만 사업장 규모별 경향의 성별 차이는 거의 없다.

4) 전문·관리직 종사자는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임.

〈표 II-1-2〉 상용근로자 규모별 월평균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2007)

단위: 일, 시간

구분	전체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인 이상
근로일수							
전체	22.3	23.1	22.9	22.3	21.4	21.1	21.3
남	22.2	23.1	23.0	22.3	21.4	21.6	21.3
여	22.3	23.0	22.8	22.5	21.5	21.1	21.2
근로시간							
전체	191.5	189.8	193.1	194.7	192.8	186.3	186.2
남	194.0	192.8	196.2	197.2	196.1	187.4	186.7
여	186.2	185.0	186.5	189.2	184.4	184.0	184.9

주: ()는 주당 근로시간을 의미함.

자료: 노동부(2007).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3) 급여

〈표 II-1-3〉은 2007년 비농 전산업 상용근로자 5인 이상 규모 사업체의 월평균 급여총액을 나타낸 것으로,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급여총액은 2,577천원이다.

〈표 II-1-3〉 상용근로자 규모별 월평균 급여총액(2007)

단위: 천원, %

구분	전체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인 이상
전체	2,577	1,961	2,229	2,460	2,693	3,089	3,747
남	2,919	2,241	2,492	2,736	3,001	3,627	4,241
여	1,839	1,951	1,671	1,823	1,923	2,003	2,545

주: 월평균 임금총액은 정액 및 초과급여액과 특별급여액의 합계임.

자료: 노동부(2007).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재구성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남성 2,929천원, 여성 1,839천원이며,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는 사업장 규모가 커지면서 급여총액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의 급여총액은 300~499인이 3,089천원, 500인 이상이 3,747천원이지만, 10인 미만은 1,961천원이다. 이처럼 사업장 규모가 증가하면서 임금 상승은 여성보다는 남성에게서 훨씬 뚜렷하게 나타난다.

다음 〈표 II-1-4〉는 2007년 여성 상용근로자의 연령별 월평균 급여 총액이다. 30대 근로자의 급여총액이 다소 높기는 하나 평균은 210만원대에 머물고, 그 이외 연령은 200만원 미만으로 나타났다.

〈표 II-1-4〉 연령별 월평균 임금총액(2007)

단위: 원

구분	전체	월 급여총액	년 특별급여액
계	1,839,499	1,581,625	3,094,492
~ 19세	1,464,840	1,237,391	2,729,386
20 ~ 24	1,508,768	1,324,380	2,212,660
25 ~ 29	1,821,768	1,555,755	3,192,154
30 ~ 34	2,162,881	1,818,160	4,136,656
35 ~ 39	2,107,440	1,789,189	3,819,012
40 ~ 44	1,856,694	1,619,563	2,845,574
45 ~ 49	1,765,583	1,543,667	2,662,990
50 ~ 54	1,751,677	1,518,910	2,793,202
55 ~ 59	1,564,537	1,403,437	1,933,205
60세 ~	1,352,256	1,243,847	1,300,906

주: 월평균 임금총액은 정액 및 초과급여액과 특별급여액의 월 환산금 합계임.
 자료: 노동부(2007).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재구성

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표 II-1-5〉는 2008년 고용보험 적용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를 종사자 규모별로 나타낸 것이다.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사업체는 1,284,185개로 전체 사업체의 39.8%를 차지한다. 고용보험 적용 사업체 중 99.7%가 중소기업 사업체이며, 전체 종사자의 73.1%가 중소기업 사업체 종사자이다. 종사자 성별로는 여성이 300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 비율이 더 높아, 남성이 28.1%인데 비하여 여성은 24.7%이다.

〈표 II-1-5〉 종사자 규모별 고용보험 적용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2008. 6)

단위: 개, 천명(%)

구분	전체	중소규모(300인 미만)						대규모(300인 이상)		
		전체	5인미만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전체	300~499인	500인 이상
사업체수	1,284,185 (100.0)	1,279,867 (99.7)	913,991 (71.2)	178,730 (13.9)	130,742 (10.23)	43,486 (3.4)	12,918 (1.0)	4,318 (0.3)	2,125 (0.2)	2,193 (0.2)
종사자수										
전체	9,280 (100.0)	6,784 (73.1)	1,392 (15.0)	965 (10.4)	1,581 (17.0)	1,534 (16.5)	1,311 (14.1)	2,495 (26.9)	440 (4.7)	2,056 (22.2)
남	5,963 (100.0)	4,288 (71.9)	783 (13.1)	590 (9.9)	990 (16.6)	1,020 (17.1)	905 (15.2)	1,675 (28.1)	296 (5.0)	1,379 (23.1)
여	3,317 (100.0)	2,497 (75.3)	610 (18.4)	374 (11.3)	592 (17.8)	515 (15.5)	406 (12.2)	820 (24.7)	144 (4.3)	677 (20.4)

주: ()는 백분율임.
 자료: 한국고용정보원(2008). 고용보험통계.

2. 여성근로자의 자녀양육 관련 요구

가. 자녀양육 지원 정책 관련 요구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나타내듯이 여성근로자들은 자녀 양육 때문에 결혼 후에 취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자녀 양육 문제는 재취업에도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조사한 여성근로자 568명 중 퇴직자가 324명에 이르며, 이들 중 80% 이상이 노동시장 복귀에 긍정적이었는데, 노동시장 복귀 시 가장 장애가 되는 요인의 90% 이상이 육아 문제로 조사되었다.

한편 정부의 영아 양육 지원제도의 가장 큰 문제로는 국·공립보육시설 등 지원시설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27.0%로 가장 높았고, 양육비 지원이 부족하다는 응답도 24.5%로 나타났다. 또한 보육시설 중심의 지원으로 인해 최종 수요자인 부모들의 요구파악이 미흡하다는 응답도 17.7%이었으며 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11.3%이었다.

사업장 규모에 따른 결과를 보면,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가 양육비 지원 미흡, 부모 요구 파악 미흡을 지적한 비율이 다소 높았고, 사업장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경우에는 서비스 관리 미흡을 지적한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는 시설 부족을 지적한 비율이 높았다(표 II-2-1 참조).

〈표 II-2-1〉 정부 영아 양육 지원제도의 문제점

단위: %(명)

구분	양육비 지원미흡	시설 부족	기업 지원부족	관리 미흡	부모요구 파악미흡	기타	계(수)	$\chi^2(df)$
전체	24.5	27.0	11.3	17.7	18.0	1.5	100.0(538)	
19인 이하	27.5	24.7	6.2	16.9	22.5	2.2	100.0(178)	
20~49인 이하	24.8	26.4	15.2	14.4	17.6	1.6	100.0(125)	22.0(15)
50~299인 이하	22.6	28.0	10.8	22.6	15.1	1.1	100.0(93)	
300인 이상	15.7	32.2	16.5	20.0	15.7	-	100.0(115)	

자료: 서문희·최혜선(2007). 영아 양육지원 종합 대책 방안. 육아정책개발센터.

이와 연계하여 정부가 근로자를 위한 양육 지원정책 수립 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을 질문한 결과에서는 보육시설 및 보육서비스의 질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30.7%로 가장 높았고, 양육비 지원 확대 29.7%, 보육시설 확충 19.1%, 부모들의 요

구반영 7.8%, 기업에 대한 지원확대 6.5%, 부모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세제 지원 확대 5.6% 등으로 아이를 대리 양육하는 기관에 대한 질과 양을 개선시키라는 요구가 높았고 기업에 대한 지원보다는 직접적으로 부모에 대한 지원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별로 구분해 보면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근로자는 양육비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비율이 높고, 사업장이 클수록 서비스의 질적 관리를 요구하는 비율이 높은 경향이다(표 II-2-2 참조).

〈표 II-2-2〉 영아 양육지원정책 수립 시 중점 사항

단위: %(명)

구분	양육비 지원확대	시설 확충	세제 지원	기업지원 확대	서비스 질 관리	부모요구 반영	기타	합계	$\chi^2(df)$
전체	29.7	19.1	5.6	6.5	30.7	7.8	0.6	100.0(538)	
19인 이하	32.6	17.4	6.2	5.6	27.5	9.6	1.1	100.0(178)	
20~49인 이하	28.8	20.0	4.0	9.6	28.8	8.0	0.8	100.0(125)	13.7(18)
50~299인 이하	28.0	22.6	6.5	4.3	32.3	6.5	-	100.0(93)	
300인 이상	22.6	18.3	7.0	6.1	39.1	7.0	-	100.0(115)	

자료: 서문희·최혜선(2007), 영아 양육지원 종합 대책 방안, 육아정책개발센터.

일반적으로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미취학 아동 보육과 교육에 부모가 부담하는 총 교육보육비와 기관 이용 비용은 증가한다.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와 취업하지 않은 경우의 소요비용 차이는 정부 지원이 있는 유치원, 보육시설 등 기관 이용 비용에서는 크지 않으나 총 교육보육 비용의 차이는 크며, 소득계층이 높아질수록 심화된다. 소득분위, 거주지, 학력 등을 통제하여 분석하면 이러한 요인들이 동일한 조건에서 취업모 가구는 아동 1인당 평균 59,000원을 더 부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나. 기업에 대한 양육지원 요구

다음은 기업에 대한 근로자의 요구를 알아보고자 한다. 2007년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유자녀 취업 여성에게 도움이 되는 기업의 지원 제도에 대한 질문에서 직장보육시설이 59.1%로 과반이상의 응답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 다음은 육아휴직제도 14.3%이었으며, 육아를 위한 근무시간 단축, 육아수당 지급, 배우자 출산 휴가제 등은 10% 미만으로 나타났다(표 II-2-3 참조).

〈표 II-2-3〉 유자녀 취업 여성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제도

단위: %

구분	직장보육시설	육아휴직제도	육아를 위한 근무시간 단축	육아수당 지급	배우자 출산휴가제	(수)
2007	59.1	14.3	9.3	7.8	7.6	(1,000)
2006	55.2	14.4	10.7	8.9	9.3	(1,000)

자료: 노동부(2007). 남녀고용평등 의식 조사.

〈표 II-2-4〉 가장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육아지원제도

단위: %(명)

구분	시차 출근제	파트 타임제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 운영	직장 보육시설	보육비 지원	산모 수유실	산전후 휴가	육아 휴직	기타	계
전체	7.5	3.0	6.2	6.0	36.2	25.0	1.5	2.4	10.8	1.5	100.0(536)
19인 이하	9.1	3.4	4.0	7.4	31.8	29.5	0.6	2.8	8.0	3.4	100.0(176)
49인 이하	7.2	1.6	8.0	9.6	32.8	24.0	4.0	2.4	9.6	0.8	100.0(125)
50~299인 이하	5.4	3.2	6.5	4.3	45.2	17.2	2.2	2.2	14.0	-	100.0(93)
300인 이상	7.8	3.5	7.0	1.7	41.7	19.1	-	2.6	15.7	0.9	100.0(115)

주: 회사 $\chi^2(df=22.0(15))$

자료: 서문희·최혜선(2007). 영아 양육지원 종합 대책 방안. 육아정책개발센터.

한편 보다 세분화된 육아지원 방법들을 제시하며 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해 가장 효과가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 기업의 지원제도에 대한 조사를 했을 때에도 직장보육시설이 36.2%로 가장 높았으며, 보육비 지원 25.0%, 육아휴직 10.8% 등으로, 탄력근무제도 등 부모의 근무시간을 조정하기보다는 더 직접적인 시설 및 재정 지원을 더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가 소규모일수록 보육비 지원 요구 비율이 높아지고 규모가 클수록 직장보육시설 설치에 대한 요구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특기할 만하다(표 II-2-4 참조).

3.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가. 산전후휴가

1) 산전후휴가 적용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는 여성근로자가 임신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산후에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하여 90일간의 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산전후휴가 기

간 90일 중 최초 60일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고, 이후 30일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한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경우에는 2006년 1월부터 90일분의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산전후휴가는 현재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여성근로자로 한정되어 있다. 2007년말 기준 여성 취업자는 약 969만명이며 이중 임금근로자는 694만명이다. 그러나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여성근로자는 약 321만명으로 전체 여성 취업자의 33.1%이고 여성 임금근로자의 46.3%에 불과하다.

즉, 제도적으로 산전후휴가를 보장받고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여성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전체 여성 임금근로자의 44.5%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표 II-3-1〉 여성취업자와 고용보험 적용 여성근로자

단위: 천명

구분	고용보험적용 사업체 수	고용보험적용 여성근로자	취업자	
			여성취업자	여성 임금근로자
2002	826	2,339	9,225	5,857
2003	846	2,391	9,108	5,970
2004	1,003	2,557	9,364	6,237
2005	1,148	2,757	9,526	6,391
2006	1,176	2,960	9,706	6,645
2007	1,288	3,209	9,685	6,936

자료: 한국고용정보원·중앙고용정보원(각년도). 고용보험통계연보.

2) 산전후휴가 사용률

산전후휴가 수급자는 2007년에 60,694명으로 증가하였고, 지급총액이 역시 크게 증가하여 2007년 기준 1324억원이 지급되었다(표 II-3-2 참조).

한편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에 의하면, 대기업을 포함한 전체 수급자는 2005년 41,104명에서 2006년에는 48,972명, 2007년 58,368명으로 증가했지만, 중소기업인 우선지원대상 기업 근로자의 산전후휴가 급여 수급자는 2006년 25,602명으로 2005년 17,446명에 비해 46.7%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 수급자 중 우선지원대상 기업 근로자의 비율은 2005년 42.4%에서 2006년에는 51.7%로 절반을 넘었다.

〈표 II-3-2〉 연도별 산전후휴가 사용현황

단위: 명(%), 백만원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인원	전체	22,711	32,133	38,541	41,104 (100.0)	48,972 (100.0)	58,368 (100.0)
	우선지원대상 기업 근로자	-	-	-	17,446 (42.4)	25,602 (51.7)	
	지급총액	22,602	33,522	41,610	46,041	90,886	132,412

자료: 노동부(2008). 2008 노동백서.

기업규모별로는 1,000명 이상 사업장 종사자의 비율이 25~26%로 높다. 그러나 여성 취업자의 48.5%가 5명 미만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으며, 100명 이상 사업장에 고용된 비율은 11.4%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영세 규모 사업장 취업자의 산전후휴가 사용 가능성은 대규모 사업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표 II-3-3 참조). 이처럼 2002년 이후 산전후휴가 이용자 규모가 증가하였으나 아직도 그 비율은 낮다.

〈표 II-3-3〉 기업규모별 산전후휴가 사용자 분포

단위: 명(%)

구분	5명 미만	5~9	10~29	30~99	100~299	300~999	1,000~	계(수)
2006	13.0	9.3	13.2	12.7	12.4	12.7	26.6	100.0(49,539)
2007	14.9	10.1	13.8	13.4	11.7	11.4	24.6	100.0(60,964)

자료: 한국고용정보원(2006). 2006년 고용보험통계연보.

나. 육아 휴직 사용

1) 사용 비율

육아휴직제도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지원과 직장 및 가정생활의 양립, 출산장려와 아동복지 제고, 그리고 남성의 가족책임 분담과 성평등 확립을 위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육아휴직제도는 2001년 도입 이후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전체 육아휴직 수급자는 2005년 10,700명에서 2006년에는 13,672명으로 27.8% 증가했고, 2007년에는 6만명 이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성별 수급자 현황을 보면 여성의 비율이 2007년 98.5%로 절대 다수이며 남성의

비율은 2% 미만이다. 그러나 절대 수로는 적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자 수가 같은 기간 동안 조금씩이나마 증가하고 있음은 고무적인 현상이다.

〈표 II-3-4〉 연도별 육아휴직 사용현황

단위: 백만원, 명

기간	지급액	인원			월급여액	평균 육아휴직 일수	
		전체	여성	남성		여	남
2001	5	25	23	2	20만원	185일	293일
2002	3,087	3,763	3,685	78	20만원	178일	146일
2003	10,576	6,816	6,712	104	30만원	195일	158일
2004	20,803	9,303	9,122	181	40만원	209일	186일
2005	28,242	10,700	10,492	208	40만원	211일	185일
2006	34,521	13,672	13,440	230	50만원	216일	191일
2007	60,989	21,185	20,875	310	50만원		

자료: 한국고용정보원·중앙고용정보원(각년도). 2006년 고용보험통계연보 및 고용평등심의관실.

육아휴직 사용비율을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1,000명 이상 대기업의 사용비율이 2006년 44.1%, 2007년 41.2%로, 육아휴직 사용자의 대기업 집중도는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인다. 여성취업자가 2006년 기준으로 11.9%가 고용되어 있는 5명 미만 사업장의 육아휴직 사용비율은 2006년 12.1%, 2007년 14.2%에 불과한 실정이다(표 II-3-5 참조). 그러나 최근에 우선지원대상 기업 근로자의 육아휴직은 증가하고 있다.

〈표 II-3-5〉 기업규모별 육아휴직 사용자 분포(2007)

단위: 명(%)

구분	5명 미만	5~9	10~29	30~99	100~299	300~999	1,000~	계(수)
2006	12.1	7.5	8.7	6.7	8.4	12.4	44.1	100.0(13,672)
2007	14.2	8.3	9.1	7.8	8.2	11.2	41.2	100.0(21,185)

자료: 한국고용정보원(2006). 2006년 고용보험통계연보.

2) 산전후휴가제도와의 연계

육아휴직자의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산전휴가자 대비 비율을 보면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2002년 산전후휴가 이용자 대비 육아휴직자 비율은 16.6%에 불과했으나,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이용자가 점차 증가하고 육아휴직 이용자 비율도 2007년 36.3%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다.

〈표 II-3-6〉 연도별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연계

단위: 명, %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산전후휴가	22,711	32,133	38,541	41,104	49,972	58,368
육아휴직	3,763	6,816	9,303	10,700	13,670	21,185
육아휴직/산전후휴가	16.6	21.2	24.1	26.0	27.9	36.3

자료: 노동부(2008). 2008 노동백서.

참고로 중앙공무원의 육아휴직 현황을 보면 2007년 1,723명으로 2006년 대비 37.7%가 증가했으나 육아휴직 대상자 중 실제 이용률은 6.3%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공무원 역시 산전후휴가가 끝나고 육아휴직으로 이어지는 연속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정책시사점

우리나라 일하는 여성의 특성에서 찾을 수 있는 정책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출산과 육아기 여성이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이 보다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함을 나타낸다. 변하지 않고 M자로 나타나는 연령별 여성의 경제활동률로 보아, 육아와 출산이 여전히 취업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우선적으로 지역사회 보육 인프라가 기본적으로 잘 갖추어져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제시된 자료를 보면 여성 근로자의 임금근로자 비율과 고용보험가입 비율이 낮아서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의 대상이 매우 제한적임을 나타낸다. 즉, 여성근로자 중 육아휴직 대상도 제한적이고, 직장보육시설 이용 대상도 매우 제한적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역사회 보육이 기본적 인프라로서의 기능을 잘 수행하여야 한다.

셋째, 중소기업 밀집지역 등에도 이들 근로자를 위한 직장보육시설이 설치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또한 이미 설치된 임의설치 사업장 시설에 보다 많은 지원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근로일수나 근로시간은 길지만 근로자 급여 수준이 낮다. 이러한 결과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보육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대기업 중심으로 추진되는 직장보육시설이 보다 보편화될 수 있는 정책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지역사회 영아보육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와 지원이 중요하다. 출산한 여성 근로자 중 육아휴직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근로자도 많지만, 대상자 중에서도 육아휴직을 하는 비율이 낮다. 이는 영아기부터 보육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어야 함을 나타낸다.

Ⅲ. 지역사회 보육정책 개요: 일하는 여성 지원 관점

최근 수년간 보육은 양적으로 크게 팽창하였다. 보육시설과 보육시설 이용 아동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수도 증가하여, 2007년의 경우에도 보육시설 이용 아동의 80% 이상이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보육에 대한 정부의 커다란 관심과 예산의 뒷받침이 있다.

이렇게 정부가 강력한 보육정책을 추진하게 된 데는 여성의 사회참여와 아동 조기교육 욕구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여성인력의 활용 필요성 및 기혼여성의 취업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시대적 변화와 함께 아동에 대한 조기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영유아에게 적정한 환경과 전문적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를 건전하게 육성하고 이와 함께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의 지원을 통하여 가정복지증진을 도모할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최근에 급격한 출산수준의 감소도 자녀양육지원 정책을 강화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여성의 사회활동 확대에도 불구하고 자녀양육과 가사노동에 대한 책임이 여성에게 편중된 사회적 분위기는 여성의 출산기피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 일부 개선되고 있기는 하지만 전통적인 이분화된 성역할로 자녀를 둔 취업여성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보육정책 중에서 일하는 여성을 정책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정책은 거의 없다. 과거 우리나라 등 세계 각 국가의 보육정책은 전통적으로 국가 노동 및 가족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으며, 여기에 여성복지적 관점 및 저소득층 지원 관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사업 범주와 대상, 예산 등이 양적으로 확대되고 보편주의적 보육정책이 추진되면서 그 안에서 대부분 저소득층이라고 추정되는 여성근로자의 보육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보육의 다양성, 수요자 중심 정책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였으나, 야간연장보육 지원이 확대되었을 뿐, 여성 근로자를 위한 세밀한 정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나라 보육정책은 일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일하는 여성을 위한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시각에서 보육시설의 설치, 운영, 재정지원 등 지역사회 보육정책의 현황을 살펴보고 가능한 일하는 여성 지원 관점에서 문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1. 보육서비스의 공급 및 운영

가.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개요

1) 설치

현재 제도권 보육은 보육시설에서의 보육으로 국한되어 있다. 보육시설은 국·공립, 법인, 법인외, 민간, 직장, 가정, 부모협동 보육시설로 구분된다.

영유아보육법에서 국·공립보육시설은 취약 및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우선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취약계층 아동의 보육 받을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아동과 그 보호자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정부가 설치비를 지원하는 국·공립 및 법인 보육시설은 취약지역에 우선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설치비는 중앙정부가 평당 건축비 단가의 1/2만 지원한다.⁵⁾

2005년부터 개정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 신고제가 인가제로 전환되었다. 민간보육시설의 경우 1998년에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되었던 것을 다시 인가제로 환원하였고, 가정보육시설도 법 제정 이후 신고제이었던 것을 2005년부터 인가제로 바꾸어 설치 규정을 강화하였다. 시설 설치는 1층을 원칙으로 하고 1층 사용에 한하여 3층까지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 현황을 보면 2007년 현재 30,856개소의 보육시설에서 약 110만명의 아동이 보육을 받고 있다. 민간 개인과 가정보육시설이 아동의 85%를 담당하고 있다(표 III-1-1 참조).

〈표 III-1-1〉 보육시설 유형별 보육시설 수 및 비율

단위: 개소, %

구 분		계	국·공립	법인	민 간			부모 협동	가정	직장
					소계	법인외	민간 개인			
시설수	개소	30,856	1,748	1,460	14,083	1,002	13,081	61	13,184	320
	비율	100.0	5.7	4.7	45.6	3.2	42.4	0.3	42.7	1.0
아동수	현원	1,099,933	119,141	118,211	668,390	55,906	612,484	1,444	177,623	15,124
	비율	100.0	10.8	10.7	60.8	5.1	55.7	0.2	16.1	1.4
	이용률	81.8	88.1	81.6	82.0	81.9	82.0	81.9	78.5	72.8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08). 보육통계.

5) 2008년 지원단가는 m²당 1,201,300원이며 최대 396m²까지 지원함.

2) 운영

보육시설은 오전 7시 30분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12시간 종일제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부모부담 보육료는 국·공립 등 인건비 지원시설 보육료를 기준으로 하고, 영아는 시·도 지사가 정하기는 하지만 대체로 정부지원단가를 적용하며,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유아는 시·도지사가 상한선을 고시한다.

입소순위를 보면, 1순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차등보육료 2층 포함),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장애 부모),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이다. 2순위는 기타 한부모·조손 가족, 입양된 영유아,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대상 영유아 중 기타 저소득층(3~4층)의 영유아, 세자녀 이상 가정의 영유아, 결혼이민자의 자녀이다. 3순위는 1순위, 2순위 이외의 영유아이다(여성가족부, 2008).

3) 이용

만5세 이하 전체 아동 중 보육시설 이용 아동 비율은 연령별로 최소 0세아 15.3%, 최고 만3세아 50.0%로 총 36.7%의 아동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을 모두 합할 경우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비율은 만5세아가 14.6%로 가장 낮고, 0세아는 84.7%로 가장 높다(표 III-1-2 참조).

그러나 우리나라는 유치원과 보육시설 이외에 학원 이용률이나 개인에 의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낮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아의 경우는 학원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고, 영아는 조부모 등의 혈연, 또는 파출부 등의 타인과 육아부담을 나누고 있다. 특히 0세아는 개인에 의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다(그림 III-1-1 참조).

영아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부모 본인이 돌보거나 가까운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안심이 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다. 유아의 경우는 초등학교 준비를 위한 인지 학습과 특기교육이 주된 이유로 파악된다.

〈표 III-1-2〉 보육시설과 유치원 이용 아동 수 및 비율(2007)

단위: 명, %

구분	전체아동수 (A) ¹⁾	시설 이용 아동수(B)		미이용 아동수 (A-B)	모취업률 ⁴⁾ (2004)
		보육시설 ²⁾	유치원 ³⁾		
총계	2,832,282(100.0)	1,038,615(36.7)	535,060(19.1)	1,258,607(44.2)	34.8
0세	449,027(100.0)	68,908(15.3)	-	380,119(84.7)	20.2
1세	439,640(100.0)	122,663(27.9)	-	316,977(72.1)	24.5
2세	449,410(100.0)	222,258(49.5)	-	227,152(50.5)	35.9
3세	476,281(100.0)	237,919(50.0)	93,005(19.5)	145,357(30.5)	43.4
4세	490,314(100.0)	207,305(42.3)	170,726(34.8)	112,283(22.9)	40.1
5세	527,610(100.0)	179,562(34.0)	271,326(51.4)	76,722(14.6)	4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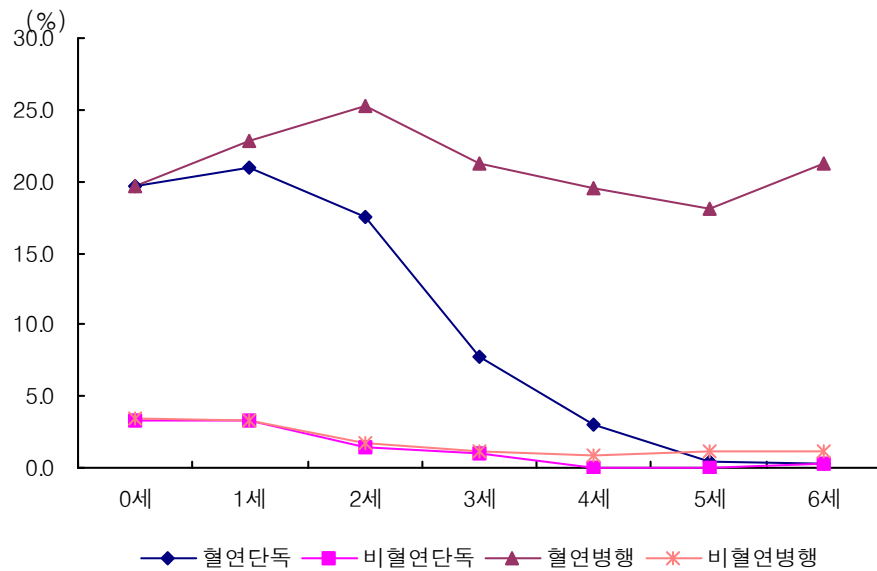
주: 보육시설 이용 아동수는 6세 아동을 제외하여 전체 통계와 다소 상이함.

자료: 1) 통계청·KOSIS.(2007). 연령별추계인구.

2) 보건복지가족부(2008). 보육통계.

3)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2007). 2007 교육통계분석자료집.

4) 서문희 외(2005). 전국 보육교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 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 서문희 외(2005). 전국 보육·교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 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그림 III-1-1] 개인 양육지원 서비스 이용 비율(2004)

나. 보육서비스 공급 및 운영의 문제

1) 서비스 유형의 다양성 결여

보육서비스 공급 및 운영의 첫 번째 문제로 서비스 유형의 다양성이 결여된 점을 들 수 있다. 서비스 자체가 보육시설 서비스로 한정되어 있어서 전반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다양성이 부족하다.

현재 가정내 보육서비스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으며, 이러한 제도 부재로 인해 가정내 보육을 희망하는 부모의 요구에 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노동부(2005)가 직장여성의 영아보육 실태를 조사한 결과 70.9%가 조부모나 친인척이 키운다고 응답하여 조부모에 대한 보육 의존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부와 민간단체가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가정내 보육을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보건복지가족부 시간제 아이돌보미, 경기도 가정보육교사, 한국여성노동자협회 보육도우미, YMCA 베이비시터 등이 이에 해당된다. 교육시간은 경기도 가정보육교사⁶⁾를 제외하고는 40~144시간까지로 다양하다. 영리사업인 베이비시터 소개업은 중산층에서 주로 이용한다. 직업안정법에 의한 소개업체로 약 100여개 업체가 중산층 지역 중심으로 영업하고 있으며, 반나절 정도의 초단기 교육을 이수한 후 일자리를 소개해 주며, 수수료는 노동부 고시로 이용료의 10%이다.

한편, 외국의 가정보육시설에서는 대부분 6명 이하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으며, 영국, 호주, 일본 등은 별도의 시간제 일시보육시설을 두고 있다.

또한 특수한 이용시설이 없어, 부모들이 자녀양육 관련 정보를 얻고 상담하며, 부모끼리 교류할 수 있는 오프라인 서비스 및 공간이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비해 일본, 스웨덴 등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의 경우에는 아동보육 이외의 오프라인 서비스가 보편화되어 있다.

2) 보육시설 서비스의 다양성 부족

가) 종일제로 획일화

보육시설은 미취업모 자녀도 함께 이용하지만 제공하는 서비스는 이용시간과 비용 12시간 한 가지로 규정되어 있다.

아동의 실제 평균 이용시간은 6시간 30분 정도이다. 영유아의 등원 및 하원 시각

6) 경기도 가정보육교사는 보육교사 자격자 임.

으로 산출한 기관 이용시간 분포는 5시간 이하 및 5~6시간이 각각 14.6%, 19.1%로 30% 이상이다. 보육 영아 모 중 취업모 비율은 70% 정도가 되는 데 비하여 종일제 보육아동 비율은 그 1/2에 불과하다(서문희·최혜선, 2007). 이러한 결과는 여성의 취업이 상근 종일제보다는 비정규나 시간제 형태의 부정형적인 취업이 많고, 또한 집에 조부모 등 다른 가족이 있을 경우가 있으므로 취업모라고 하여도 모두 자녀의 종일제를 희망하는 것은 아님을 나타낸다. 한 조사에서는 부모들은 오후 2~3시까지는 시설, 그 이후는 가정내보육을 가장 바람직한 유형으로 선호하였다(서문희 외, 2007).

사실상 많은 민간보육시설들이 보육료를 종일제와 반일제로 구분하여 수납하고 있는 실정이다.⁷⁾ 따라서 정부 지원이 모두 종일제를 기준으로 적용된다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물론 보육시설 운영비나 종사자의 처우에 필요한 운영비 확보 차원에서는 운영비 감소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나, 단시간 이용하는 미취업모 자녀 0세아에게 월 40만원에 가까운 비용이 지원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나) 취약보육 불충분

취약보육으로 방과후 보육, 장애아 보육 등 특정 아동 대상 보육과 시간제 일시 보육, 야간, 24시간 및 휴일보육 등 특수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별도 유형의 시설을 두고 지원하고 있으나 매우 한정적이다. 방과후 보육 아동수는 2만여명 수준에 불과하고, 장애아보육시설의 경우에는 통합보육시설이 213개소로 아동이 1,540명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시간연장형, 24시간, 휴일보육시설은 각각 2867개소, 148개소, 81개소이다.

취약보육은 정부 지원 시설보다는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의 비율이 높고, 그 중에서도 가정보육시설이 시간제 등 특수보육을 더 많이 하고 있다.

다) 수요자 요구별 맞춤 서비스 부족

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동 보육서비스에 국한되어 있다. 저소득층은 단순한 아동 보육서비스보다는 가정에서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고 나가서 환경 변화까지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는 아

7) 보육시설에서는 통상 종일제는 12시간을 기준으로 저녁 7시 정도까지의 보육을 의미하고, 반일제는 오후 2~3시 정도까지의 보육을 의미함.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에서 “종일제”라 함은 1일 8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 보육과 유아교육의 이러한 차이를 감안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보육에서의 반일제를 연장제 개념으로 기술하였음.

동과 가정을 위한 충분한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

또한 이용 비용도 제한되어 일부 고소득층의 고품질 서비스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는다. 고품질 서비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기존 보육서비스 이상 수준의 것을 희망하는 수요자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3) 선호하는 국·공립보육시설 이용 기회 불평등

2007년 12월 현재 보육시설은 국·공립보육시설 5.7%, 법인보육시설 4.7%로 정부 인건비 지원시설은 모두 10.4%이고, 이들 시설 이용 아동은 전체 보육아동의 약 21.5%이다.

부모들이 가장 바라는 정책은 양육비 지원과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이다(노동부, 2005; 서문희 외, 2005). 2004년 이후 정부는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기존 유휴 공간 활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하였으나 큰 성과를 얻지 못하였다. 이는 중앙정부의 설치비 지원이 건축비의 일부에 한정되어 있어서 실제 소요되는 비용과는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며⁸⁾, 또한 한정된 보육수요 문제로 민간보육시설 등의 반대가 심하여 재정적 여력이 없는 지방정부가 적극적 설치 의지를 갖지 못하는 것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부족한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한 정책 부재로 아동에 따라 이용 기회가 불균형을 이루며, 국·공립보육시설에 한번 입소한 아동이 자발적으로 나가기 전까지는 다른 아동의 이용이 불가능하다.

4) 입소순위 적용 정책 부재

보육시설 입소 우선순위가 명목상으로 제시되고 있고, 취업모 자녀가 2008년부터 입소순위 6순위에서 1순위로 조정되었으나, 과거 1~6순위를 모두 1순위로 동일하게 조정하는 등 1순위에 매우 많은 조건들이 동시에 제시되고 있어서 실효성이 거의 없다.

또한 보육시설 정원이 모두 충족되었을 경우에는 우선순위가 낮은 아동이 보육시설을 다니고 있어도, 입소 우선순위가 아무런 작용을 하지 못하여, 대기 아동 명단에 아동의 이름을 올리는 일 이외의 조치가 불가능하다.

8) 중앙과 시도의 건축비 분담 이외의 부지비, 설계비, 감리비 등 이외 비용은 모두 시군구가 부담하여야 하며, m²당 건축비 지원단가도 실제와는 차이가 남.

5) 보육시설 지역 배치 불균형

보육시설 설치에서 지역별 불균형성이 나타난다. 2007년 말 현재 보육시설이 없는 읍·면·동이 494개이며, 지역별로 격차가 크다. 특히 경상도와 전라도 지역 면 중에서 보육시설이 없는 비율이 높다⁹⁾.

보육시설이 설치된 지역도 지역별로 격차가 크다. 2004년도 조사 자료이지만 전체 235개 시·군·구 중 아동수 대비 보육 공급률은 최대 72%, 최소 15%로 시·군·구에 따라서 57% 포인트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보육과 교육을 모두 합하면 영유아 인구대비 공급률은 전국 평균 56%이다. 그런데 시·군·구별로는 최대 141%에서 최소 33%, 이용률은 최대 99%에서 최소 27%이다.

또한 도·농간 차이도 있다. 읍·면에 위치한 보육시설이 도시지역에 위치한 보육시설에 비하여 만3~5세 아동 정원은 상대적으로 많고 영아보육시설의 정원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는 이용률의 차이로 이어진다(김은설·이정원·지성애·이세원, 2007; 서문희·이미화·김은설·이세원, 2006).

설치 유형별로는 농어촌에는 민간보육시설의 설치가 저조하며, 법인보육시설이 많고 국·공립보육시설은 상대적으로 적다. 이는 정부에서 건축비만 지원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어려운 지방정부가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이를 법인에 의존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으로 풀이된다.

장애아 및 방과후 전담보육시설의 설치도 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읍·면 아동의 접근성은 낮다.

2. 보육 비용

가. 보육비용 지원 개요

2008년도 보육예산은 총 1조 4000여억원이고 이 중 97%가 보육료, 인건비, 교재교구비 등 지원으로 보육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지원금이다.

정부의 보육 운영비 지원은 시설별 인건비 지원과 보육료 지원으로 구분한다.

9) 총 494개 읍·면·동인데, 전라도 151개 면, 경상도 195개 면임.

〈표 III-2-1〉 보육사업 예산(2008)

단위: 백만원, %

구 분	영유아 보육료	인건비	영아 기본보조금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	보육시설기 능보강	보육 인프라 구축 등	계
'08 예산	807,851	299,383	254,763	14,364	24,039	17,180	1,417,780
비율	57.0	21.1	18.0	1.0	1.7	1.2	100.0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08). 내부자료.

1) 보육시설별 지원

보육시설에 대한 시설별 지원은 국·공립 및 법인 중심의 인건비 지원과 프로그램별 지원으로 구분된다. 종사자 인건비의 경우에는 유아교사 인건비의 30%, 원장과 영아전담교사 인건비의 80%를 지원하고¹⁰⁾, 추가 지원으로 농어촌 및 폐광지역, 도서벽지 보육시설에는 보육교사 및 취사부 각 1명씩 인건비 100%를 지원하며, 이외 차량운영비를 개소당 월 20만원(종교시설 부설 설치비 지원시설 포함)씩 지원한다.

프로그램별 지원에는 영아, 장애아, 시간연장형, 휴일, 방과후보육이 해당된다. 영아보육에 대한 지원으로 2004년 이전에 지정된 전담시설에는 원장과 교사 인건비 이외에 취사부 인건비를 지원하고, 농어촌 시설의 경우에는 차량운영비를 지원한다.

이외 민간 일반보육시설에 대해서는 교재교구비를 1998년부터 지원하였으며, 2006년부터는 이를 직장보육시설에도 지원하고 있으며, 농어촌 소재 보육시설에는 차량운영비를 월 20만원 지원한다.

한편 세제지원으로 지방세법시행령¹¹⁾에 의하여 보육시설 운영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 또는 소지한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 등을 비과세 처리하고,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보육시설에서 보육용으로 구입하는 기자재의 특별소비세를 면제하고 있다.

2) 부모 보육료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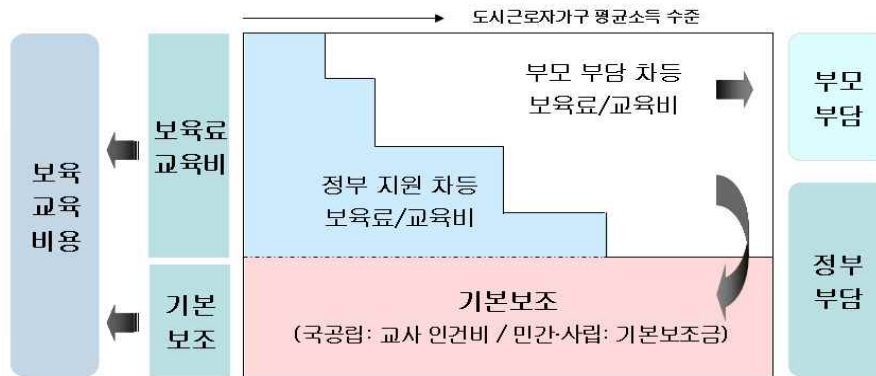
가) 민간시설 영아 기본보조금

현재 정부는 보육료·교육비 차등 지원과는 별도로 민간보육시설에 다니는 모든 영아에 대하여 연령별로 일정한 금액을 기본보조로 지원하고 있다. 영아에 대한 지원은 2002년 하반기에 영아 10명이상 보육하는 가정보육시설에 시설별로 40만원¹²⁾

10) 2004년 이전에는 각각 45%, 90%에서 2005년부터 축소 조정되었음.

11) 제79조 제1항, 제94조 제1항, 제126조 제1항, 제136조, 제194조 6제2항, 제207조임.

을 처음 지원한 데서 시작된 이후¹³⁾, 2006년부터는 기본보조금으로 명칭을 바꾸고 지원 기준도 상향 조정하였으며, 부모 부담 보육료 기준을 국·공립보육시설 수준과 통일하였다(그림 Ⅲ-2-1 참조).



[그림 Ⅲ-2-1] 영아 보육비용 지원 개념

<표 Ⅲ-2-2> 영아 기본보조금 지원 현황

단위: 명, %

구분	총계	국·공립	법인	민간		부모 협동	가정	직장
				법인외	민간개인			
지원인원	305,202	-	151	1,352	155,929	401	147,032	330
비율	100	-	0.05	0.44	51.09	0.13	48.18	0.11

주: '08년도 예산: 2,297억원, 지원대상: 0~2세 영아 253,751명, 지원단가: 0세(340천원), 1세(164천원), 2세(109천원)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표준보육행정시스템.

영아(장애아) 기본보조금은 노동부 인건비 지원이 없는 직장보육시설도 지원한다.

2007년 말 영아보육 지원 현황은 <표 Ⅲ-2-2>와 같다. 2007년 말 보육통계를 기준으로 하면 해당 영아 중 민간 시설은 86.6%, 가정보육시설은 97.2%가 기본보조금을 지원을 받는다.¹⁴⁾

12) 자부담 10%가 포함된 것으로 실제로는 36만원임.

13) 그 후 2003년에 민간보육시설로 확대하였고, 2004년에 반별로, 2005년에 아동별로 전환하여 지원 수준을 다소 확대하였음.

나) 보육료 차등 지원

보육료 차등지원 제도는 특정 기준의 소득계층 이하 아동의 보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부모의 보육료를 정부가 대신 내주는 제도이다. 1991년 시설 운영지원에 탁아급식비를 포함하여 지원한 이래 1992~2003년도에는 차상위 계층까지 지원하였으나 2004년 이후부터 점차 그 대상과 지원 수준을 상향 조정하였다. 중장기 보육발전계획안에 의하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까지로 확대할 방침이다(표 III-2-3 참조).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은 소득 이외에도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즉 '소득인정액'으로 하고 있다.

〈표 III-2-3〉 소득수준별·연도별 재정지원 계획(안)

단위: %

구분	소득수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기준)	지원 비율							
		2003년 이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1층	법정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2층	차상위 계층	40	60	80	100	100	100	100	100
3층	50%까지	-	40	60	70	80	80	80	80
4층	60%까지	-	-	30	40	50	60	60	60
	70%까지	-	-	-					
5층	100%까지	-	-	-	-	20	30	30	30
6층	130%까지	-	-	-	-	-	-	30	30

자료: 여성가족부(2006). 중장기 보육발전계획안: 새싹 플랜.

〈표 III-2-4〉 보육료 지원 현황

단위: 명(%)

구분	계	저소득차등 보육료	두자녀이상 보육료	만5세아무상 보육료	장애아 아동지원
아동수 (비율)	859,353 (100.0)	586,836 (68.3)	109,599 (12.8)	145,303 (16.9)	17,615 (2.0)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08). 보육통계.

2007년 12월 현재 보육아동 86만명이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으며, 전체 아동 중 보육료 지원아동은 30.7%이고, 무상보육아동 비율은 14.6%이다(III-2-4 참조).

14) 2007년 말 기준 민간보육시설 이용 영아수는 180,140명, 가정보육시설 이용 영아수는 151,305명임.

다) 무상보육 등

초등학교 취학 직전 연령인 만5세 아동에 대해서는 1999년 하반기부터 보육료와 교육비를 지원하였으며, 점차 그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여 2006년 현재는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의 가구까지 지원하며, 장애아 무상보육은 2003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또한 2005년부터는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수준까지 해당하는 가구 자녀가 보육시설과 유치원에 2명 이상 취원하는 경우 둘째아 이상은 비용을 지원한다.

라) 육아비용 세제지원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에 근거하여 1999년부터 유치원 및 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일부 금액을 특별 공제하고 있다. 공제액 한도는 2004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증액되었으며, 미술학원, 태권도 학원, 바둑 학원을 포함하였다. 이러한 조세 지원방식으로 과표기준액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되므로 실제로 혜택을 받는 금액은 과표기준액별로 차이가 있다.

나. 문제 및 과제

1) 시설유형별 부모 부담 차이

지역사회 보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종사자 인건비 중심의 시설별 지원과 보육료 지원으로 이원화되고 있는데, 이와 연동하여 보육시설 이용비용 지원은 시설 유형별로 차이가 있다. 국·공립, 법인 및 영아전담시설은 인건비를 원장 및 영아교사 80%, 유아교사 30% 지원하고 그 이외 비용을 부모부담으로 하여 소득계층별 차등 지원한다. 민간보육시설에 다니는 영아에게는 기본조보금과 차등보육료로 나누어 지원하고, 유아에게는 차등보육료로만 지원한다. 영아의 경우에는 민간보육시설 기본보조금 지원으로 부모가 내는 보육료가 국·공립보육시설과 동일하나, 유아의 경우에는 4~5만원의 차이가 난다. 시설들은 정한 보육료 이외에 입소료, 현장학습비, 특기활동비도 수납한다. 이러한 비용은 특히 민간보육시설에서 많이 받는다.

저소득층 보육을 위한 국·공립보육시설이 제한된 상황에서 민간보육시설 이용자는 지역별로는 보육료와 지원금 차액을 부담하여야 하고, 추가 비용도 국·공립시설의 2배 정도를 부담한다.

2) 보육료 지원 시 취업모 미고려

보육료 지원 시 취업모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것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첫째, 현재 지원체계에서 취업모가 제외되는 경우 많은데, 맞벌이 부부들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맞벌이 가정에서 아동보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반가정에 비하여 아동 1인당 평균 59,000원 정도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서문희 외, 2006).

둘째, 보육료 지원 조건에 소득수준만을 고려하고 그 이외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데, 가장 쟁점이 되는 요인은 모의 취업상태이다. 2004년도 전국 보육·교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아동 모의 취업률은 아동구분별로 영아의 모 25.4%, 유아의 모 38.2%로 영유아 전체 모의 취업은 33.3%로 조사되었다. 이는 2002년도 전국 보육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취업률 영아의 모 23.8%, 유아의 모 37.9%, 영유아 전체 31.7%에 비하여 취업률이 약간 높아진 비율이다(Ⅲ-2-5 참조).

한편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중 취업모 아동 비율은 영아 59.5%, 유아 49.0%로 조사되었다. 유치원 이용아동보다 보육시설 이용아동의 취업모 비율이 더 높다. 그러나 미취업모의 자녀도 상당수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다(Ⅲ-2-6 참조).

〈표 Ⅲ-2-5〉 영아와 유아 연령별 모의 취업여부

단위: %(명)

구분	영아				유아				전체
	0세아	1세아	2세아	소계	3세아	4세아	만 5세 이상아	소계	
취업	20.4	24.0	32.2	25.4	37.4	35.4	40.3	38.2	33.3
미취업	79.6	76.0	67.3	70.4	60.3	61.3	56.5	58.9	64.9
모부재	0.0	0.0	0.5	6.2	2.3	3.4	2.8	2.9	1.8
계	100.0 (358)	100.0 (388)	100.0 (422)	100.0 (1,168)	100.0 (441)	100.0 (506)	100.0 (837)	100.0 (1,784)	100.0 (2,952)

자료: 서문희 외(2005). 전국 보육·교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 보고. 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표 Ⅲ-2-6〉 기관 이용 영아와 유아 모의 취업여부

단위: %(명)

구분	영아 보육시설	유아 보육시설	유아 유치원
취업	59.5	49.0	32.4
미취업	39.7	48.3	64.5
모부재	0.8	2.8	3.1
계	100.0(131)	100.0(688)	100.0(482)

자료: 서문희 외(2005). 전국 보육·교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 보고. 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시설 위주의 지원

가) 수혜자를 거치지 않는 전달 방식

정부 지원에 대한 부모 체감도는 지도 감독 체계가 잘 이루어지지 상태에서 부모와 지역사회 모니터링 기능이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정부지원금 중 인건비나 기본보조금이 보육료라는 인식이 낮은데다가, 정부의 부모 보조금을 시설에서 바로 수령하는 전달방식 때문에 부모들이 정부 지원의 수혜자라는 인식이 낮고, 시장에서 부모의 소비자 주권도 제약을 받는다고 평가된다. 또한 이러한 전달방식으로 인해 교육과 보육의 중복 지원, 지불 정산 등 행정적인 업무 과중의 문제가 발생된다.

나) 재정 지원과 서비스 질적 수준 연계 미흡

민간시설의 경우 정부 지원금이 교사 인건비나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에 사용된다는 부모들의 체감도가 낮다. 영아 기본보조금의 경우 2007년에 교사 인건비 등 몇 가지 조건¹⁵⁾을 제시하여 지원과 서비스 개선을 연계하였다. 그 결과 부분적으로는 효과가 있었으나 부모의 만족도나 예산 시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성과를 가져왔다고 보기 어렵다(조병구 외, 2007). 증가하는 보육 영아수와 가정어린이집의 설치가 이를 나타내는 증거로 인용되기도 한다.¹⁶⁾

다) 지원 대상자 파악의 어려움

보육료를 지원 받기 위해서는 시·군·구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과 동일한 자산조사에 기초하여 소득인정액을 파악하고 지원 여부 및 수준을 결정하여야 하는데, 이 때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하여 월 평균 소득으로 인정한다.

차상위계층까지는 가구 소득 규모 파악이 용이하겠지만 보육료 지원단계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까지로 확대되어 계층 간의 차이를 분명하게 구별해 내기 어렵고¹⁷⁾, 소수의 읍·면·동주민센터 인력이 아동 가구의 자산조사라는 과도한 업무를

15) 2007년부터 적용된 기본보조금 지급조건은 보육교사 전원이 4대 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 모든 교사에게 시·도지사가 정하는 보육교사 최저기준 보수 수준 이상을 지급, 시·도지사가 고시한 보육료 상한선 준수, 총 정원 및 교사 대 아동비율 준수, 총 정원 및 혼합반 운영비 지원 기준은 연령이 낮은 아동 기준 적용,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보고, e-보육에 의한 아동 및 교사관리와 보조금 신청, 2007년 인상분의 50% 이상을 교사 인건비에 사용 등임. 인상분 규정은 2008년에도 적용됨.

16) 가정어린이집은 영아 중심 보육기관으로, 2007년 말 현재 13,184개소로 2005년 말 11,346개소에서 1,838개소가 증가하였음. 같은 기간 동안 어린이집은 총 2,489개가 증가하였음.

감당하기 어렵다.

라) 지원 단가의 불합리성: 표준보육비용

현재 정부가 사용하는 단가의 합리성의 문제이다. 정부 지원단가는 1999년 표준보육단가체계에 기초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999년 전까지는 중앙정부가 산출방식과 기준비용을 제시하였으나 1999년 이후부터는 중앙 정부의 보육료 지원단가는 물론 시·도가 제시하는 보육료 상한선도 아무런 산출방식을 제시하지 않은 채 기준비용만을 제공하고 있다. 기본보조금의 기준이 되고 있는 금액도 2004년도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에 기초한 것이지만 명확한 항목별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표준보육비용¹⁸⁾에는 포함되어야 할 항목이 제대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 특히 근로기준법 준수나 대체교사 등 교사 근무환경 변수가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지역이나 시설규모별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않은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또한 표준보육비용 산정 기준이 보육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요인들의 최소한의 비용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며 민간보육시설의 설치 및 임대 등 투자비용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 민간보육시설 투자 부분 회수는 곧 영리성을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보육료 자율화 등과 함께 보다 많은 논의와 합의를 필요로 한다.¹⁹⁾

마) 비용 지원의 사각지대

보육시설 이용 아동에 대하여만 지원이 이루어짐에 따라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영아는 가정에서 개인에 의한 서비스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에 대한 지원은 아주 없다. 영유아의 10% 이상이 이웃 탁아모나 조부모가 돌보고 있다. 특히 0세아는 조부모에 의한 보육 비율이 매우 높다. 그러나 이들 비공식보육은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다.

혈연 및 비혈연 지원서비스 비용은 소득계층과 비례한다. 비용을 지불하고 양육

17) 보육료 지원 대상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까지 확대될 예정인데, 이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짐.

18) 표준보육단가는 1992년도에 산정되어 중앙정부가 제시하다가 2000년부터는 보육료 정부지원단가만을 중앙정부가 제시하고 보육료 상한기준은 시·도가 정하도록 위임하였음. 그러나 사실상 보육료 정부지원단가는 정부지원시설 보육료이고 과거 중앙에서 제시한 표준보육비용이 각 시·도의 보육료 상한선에 기준으로 이용되고 있음.

19)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에 관한 법률을 개인 보육시설 설치 운영자에게 적용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는 없으므로, 논란의 여지가 있음.

지원을 받는 비율은 비혈연과 혈연 모두 전체적으로 소득 분위가 높아질수록 비율이 높아진다. 그러나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 3분위가 최저인 변형된 U자 형태를 나타낸다(서문희 외, 2006). 이는 저소득층의 혈연 지원서비스는 상당수가 무급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결과로, 이 같은 현상은 무급으로 육아지원을 하는 조부모 등에 대한 지원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영아는 소득분위가 증가할수록 대체로 비용은 증가하고 소득 대비 비율은 감소하여, 이 역시 기회와 더불어 질과 내용에서 차별성을 감지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정부의 지원체계에 대하여 아동간의 형평성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아동을 보육하고 교육하는 데 드는 비용이라는 관점에서 동일하게 지원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바) 육아비용 세제 지원의 불합리성

보육시설 이용에 따르는 비용 지원이 대부분이고 이외의 자녀양육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은 미미하다. 현재 채택하고 있는 소득액공제제도는 보육료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효과가 있으나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실제로 혜택을 받는 금액 수준이 매우 낮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현재 세율은 1천만원 이하는 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는 18%,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는 27%, 8000만원 초과는 36%이다. 그런데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양육비 공제여부에 따라 세금의 차이는 과표기준액 1000만원일 경우에 7,425원, 8000만원일 경우에 12만 3천원의 차이가 난다.

둘째, 앞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면세계층은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과표기준액이 높을수록 더 많은 정부 지원을 받게 되는 문제가 있다.

셋째, 과표기준액은 근로자의 연간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 그리고 필요 경비 공제를 제외한 소득으로 실제 소득세가 부과되는 기준이 되므로, 과세표준은 근로자의 실제 소득과 많은 차이가 있다. 동일한 소득이 있는 가구라도 공제액 정도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형평성의 문제 등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소득액공제와 보육료 지원이 별도로 실시되고 있다. 보육료 지원이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이라면 보육료 소득공제는 세금을 내는 일정소득 계층 이상을 위한 정책임이 묵시적으로 인정되어 왔다. 그러나 보육료 지원 대상이 확대 되었으므로 지원정책을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IV. 직장보육 관련 제도의 적절성과 기대효과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 직장보육제도에 대한 적절성과 기대효과를 알아보았다. 먼저 제1절에서는 직장의 근로자 보육지원 제도, 이러한 제도 이행 현황 및 제도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제2절에서는 사업장의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 지원 현황과 제도의 적절성을 살펴보았다. 제3절에서는 직장보육 지원 유형별 사업장 요구를 파악하였고, 제4절은 직장보육 지원의 기대효과를 다루었고, 마지막으로 정책시사점을 도출하였다.

1. 직장보육 제도 및 의무 이행 현황

제1절에서는 사업장 직장보육 담당자 조사와 직장보육시설 이용자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법으로 정하고 있는 직장보육시설 설치 등 직장의 근로자 보육지원 제도, 실제 실시 현황, 그리고 제도의 적절성을 검토하였다.

가. 직장보육 관련 법

남녀고용평등법 제21조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유, 탁아 등 육아에 필요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은 영유아보육법에 준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영유아보육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²⁰⁾ 다만 공해 등의 위험시설이 있거나 보육대상 아동수의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공동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지역 보육시설을 위탁하여 근로자가 이용하게 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37조와 동법 시행령 25조에서는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 사업장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업주

20) 의무사업장의 범위는 1995년 5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상시 여성노동자 500인 이상에서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기준을 강화하였음.

는 “그 보육시설 운영비 및 수탁 보육 중인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50% 이상을 보조”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시행규칙 제8조는 수탁 지급 시 정부 지원단가의 50% 이상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에 대한 벌칙조항은 없다.

나.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의 이행

1) 이행 현황

다음의 <표 IV-1-1>은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 조사 결과로, 상시 근로자 500명, 또는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인 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지원 의무 사업장의 의무 이행 현황을 나타낸다. 이에 의하면 2007년 말 현재 상시 근로자 500명, 또는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으로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사업장은 791개소이다. 이 중에 영유아보육법이 정한 바와 같이 보육시설을 설치했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한 곳은 55.6%인 440개소이며, 미이행 사업장은 2007년 44.4%인 351개소이다. 의무이행 사업장 440개 중 실제로 시설을 설치한 경우는 253개소,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는 147개소, 그리고 다른 보육시설에 위탁한 경우는 40개소이다.

<표 IV-1-1> 사업장 유형별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사업장 의무 이행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의무사업장	이 행				미이행
		계	설치	수당	위탁	
전체	791 (100.0)	440 (55.6)	253 (32.0)	147 (18.6)	40 (5.1)	351 (44.4)
국가기관	47 (100.0)	36 (76.6)	35 (74.5)	- (0.0)	1 (2.1)	11 (23.4)
지자체	142 (100.0)	138 (97.2)	69 (48.6)	68 (47.9)	1 (0.7)	4 (2.8)
학교	67 (100.0)	35 (52.2)	10 (14.9)	21 (31.3)	4 (6.0)	32 (47.8)
민간 (공사 등 포함)	535 (100.0)	231 (43.2)	139 (26.0)	58 (10.8)	34 (6.4)	304 (56.8)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08). 보건복지가족부 자체 조사 자료.

사업장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자체는 133개 기관 중 131개 기관이 설치하여 98.5%로 이행 비율이 가장 높고, 국가기관이 42개 중 26개로 61.9%, 공사를 포함한

민간 사업장이 531개 중 186개로 35.0%, 학교는 69개 중 22개로 31.9%로, 학교와 민간 부문의 이행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러한 시설 의무설치 사업장의 시설 설치 등 의무 이행은 최근에 크게 증가한 것이다. 의무 이행 비율은 2005년 38.4%에서 2007년 말에는 55.6%로 증가하였고, 특히 시설 설치 사업장이 21.6%에서 32.0%로 확대되었다(표 IV-1-2 참조).

〈표 IV-1-2〉 연도별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사업장 의무 이행 현황(2007)

단위: 개소(%)

구 분	의무사업장	의무이행 사업장				미이행 사업장
		계	설치	수당	위탁	
2007년	791	440	253	147	40	351
	(100.0)	(55.6)	(32.0)	(18.6)	(5.1)	(44.4)
2006년	775	365	199	132	34	410
	(100.0)	(47.1)	(25.7)	(17.0)	(4.4)	(52.9)
2005년	787	302	170	105	27	485
	(100.0)	(38.4)	(21.6)	(13.3)	(3.4)	(61.6)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08). 보건복지가족부 자체 조사 자료.

그러나 아직 직장보육 지원 의무 사업장의 의무 이행 수준은 낮은 편이며, 그동안 이것의 주된 이유로 영유아보육법 상 의무 미이행에 따른 벌칙 조항의 부재를 들어왔다(김유경 외, 2003; 이기숙 외, 2002).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벌칙 조항 이외에 의무설치 사업장의 의무 이행률이 저조한 이유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표 IV-1-3〉에 제시된 본 연구 조사 결과를 보면 민간사업장의 경우 사업주 비용 부담이 46.8%로 비율이 가장 높고, 정부 지원 부족이 21.9%이며, 해당 아동이나 이용 희망 아동이 소수라는 응답이 12.5%이었다. 이외에 사업주 인식 부족이 5.1%를 차지하였다. 여기서는 직장보육서비스 지원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장의 응답이 가장 의미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실제로 이들 중 42.8%가 사업장의 비용부담을 지적하였고, 20.1%는 정부의 지원 부족을 이유로 들었으나 21.0%는 해당아동이 소수이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여 다른 사업장과 비교하여 아동이 소수라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응답은 의무 이행을 시설 설치로 동일시하는 경향으로 영유아보육법 상 직장보육 의무 이행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함을 알 수 있다.

국가·지자체 사업장을 포함한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도 이러한 전반적 경향은 변함이 없다. 특히 의무설치 사업장에서는 사업주의 인식 부족을 지적한 비율이 12.0%로 다소 높아져, 직장보육시설이 설치된 국가·지자체 직장보육 담

당자들이 민간 사업주의 인식 부족이 의무 이행을 저조의 주요 이유로 보고 있음을 나타냈다.

〈표 IV-1-3〉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 이행을 저조 이유

단위: %(개소)

구분	사업주 인식 부족	정부 지원 부족	사업주 비용 부담	아동 소수	설치 기준 규제	직원 합의 부족	기타	모름	계(수)
민간 사업장	5.1	21.9	46.8	12.5	5.2	1.9	4.3	2.2	100.0(534)
시설 의무설치	6.3	21.3	48.8	5.5	8.7	2.4	2.4	4.7	100.0(127)
위탁	6.1	24.2	54.5	3.0	6.1	3.0	3.0	-	100.0(33)
보육수당	3.4	18.6	55.9	11.9	3.4	1.7	3.4	1.7	100.0(59)
미이행	3.1	20.1	42.8	21.0	4.8	0.7	6.6	0.9	100.0(229)
시설 임의설치	9.3	29.1	45.3	4.7	2.3	3.5	2.3	3.5	100.0(86)
전체 사업장	7.8	22.2	46.6	10.5	4.4	1.9	4.3	2.3	100.0(772)
시설 의무설치	12.0	17.8	48.9	4.9	5.3	1.8	4.4	4.9	100.0(225)
위탁	5.0	25.0	52.5	2.5	7.5	5.0	2.5	-	100.0(40)
보육수당	9.5	20.3	52.0	8.1	3.4	2.7	3.4	0.7	100.0(148)
미이행	3.0	24.1	41.0	19.9	4.5	0.8	5.6	1.1	100.0(266)
시설 임의설치	9.7	29.0	46.2	4.3	2.2	3.2	2.2	3.2	100.0(93)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직장보육에 관한 사업장 조사」 결과임.

2) 직장보육 지원 유형별 사업장 특성

다음은 직장보육 설치 의무 사업장과 임의설치 사업장의 업종 및 근로자 근무 특성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조사에는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사업장 이외에 임의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사업장과 해당 보육시설도 포함하였다. 현재 임의설치 시설은 67개소로, 전체 직장보육시설 320개 중 20.9%를 차지한다.

먼저 <표 IV-1-4>는 조사된 직장보육 의무설치 대상 및 임의로 보육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총 772개소의 업종 특성을 나타낸다. 여기서는 사업장을 민간 사업장과 국가·지자체 사업장을 포함한 전체 사업장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업종을 살펴보면, 민간 사업장은 사무직 중심 19.3%, 생산직 중심 44.8%, 서비스업 중심 31.1%로 조사되었다. 시설 설치 사업장은 사무직 중심 사업장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의무설치 사업장에서 이러한 경향이 더 높고, 임의설치 사업장은 생산직 중심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다. 위탁 사업장은 서비스업 중심 비율이

높고, 직장보육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장은 61.1%가 생산직 중심의 사업장이다.

국가·지자체 사업장을 포함하여 전체 사업장을 보면 국가·지자체 사업장이 사무직 중심이므로 사무직 중심 39.6%, 생산직 중심 31.1%, 서비스업 중심 25.9%로, 민간 사업장만을 볼 때와는 크게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 시설 의무설치 사업장, 임의설치 사업장 및 수당 지급 사업장은 사무직 중심 사업장 비율이 높고, 위탁 사업장과 직장보육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장은 사무직 비율이 낮다. 위탁 보육시설 이용 사업장은 서비스업 중심 비율이 높고 의무 미이행 사업장은 53.0%가 생산직 중심의 사업장이다.

다음으로 조사된 민간 사업장 근로자의 근로 특성을 보면, 야간근무나 교대근무 등 근무시간이 불규칙한 사업장의 비율이 54.8%이고 정시 출퇴근을 원칙으로 하는 사업장이 43.2%이다. 시설 설치 사업장이 정시 출퇴근 비율이 높고, 위탁, 보육수당 및 의무 미이행 사업장이 근무시간이 불규칙한 비율이 높다(표 IV-1-4 참조).

〈표 IV-1-4〉 사업장 업종 특성

단위: %(개소)

구분	업종				근로 특성				계(수)
	사무직 중심	생산직 중심	서비스업 중심	기타	정시 출퇴근	잡은 야간근무	교대근무 등 불규칙	기타	
민간 사업장	19.3	44.8	31.1	4.9	43.2	2.1	54.8	-	100.0(533)
시설 의무설치	32.3	29.9	35.4	2.4	50.8	3.2	46.0	-	100.0(126)
위탁	3.0	18.2	75.8	3.0	18.2	-	81.8	-	100.0(33)
보육수당	16.9	30.5	44.1	8.5	37.3	-	62.7	-	100.0(59)
미이행	12.2	61.1	20.5	6.1	35.8	1.3	62.9	-	100.0(229)
시설 임의설치	26.7	43.0	26.7	3.5	65.1	4.7	30.2	-	100.0(86)
$\chi^2(df)$		90.5(12)**				na			
전체 사업장	39.6	31.1	25.9	3.4	59.4	1.7	38.9	3.4	100.0(772)
시설 의무설치	61.3	16.9	20.4	1.3	71.9	2.2	25.9	1.3	100.0(225)
위탁	15.0	15.0	67.5	2.5	30.0	-	70.0	2.5	100.0(40)
보육수당	58.8	12.2	25.7	3.4	75.0	-	25.0	3.4	100.0(148)
미이행	17.3	53.0	24.4	5.3	41.7	1.5	56.8	5.3	100.0(266)
시설 임의설치	31.2	39.8	25.8	3.2	67.7	4.3	28.0	3.2	100.0(93)
$\chi^2(df)$		195.3(12)*				na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01$ 을, *는 $p < 0.05$ 를, na는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직장보육에 관한 사업장 조사」 결과임.

조사된 전체 사업장 근로자의 근로 특성으로는 정시 출퇴근을 원칙으로 하는 사

업장과 잦은 야간근무나 교대근무 등 근무시간이 불규칙한 사업장의 비율이 대체로 60:40로 민간에 비하여 정시 출퇴근 비율이 높다. 시설 설치 사업장과 수당 지급 사업장에서 정시 출퇴근이 원칙이라는 사업장의 비율이 높다. 인근 보육시설 위탁 사업장은 근무시간이 불규칙하다는 사업장의 비율이 70%로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 이는 사업장 업종 특성과도 같은 맥락이다(표 IV-1-4 참조).

즉, 사무직 중심이고 정시 출퇴근 중심인 사업장이 보육시설 설치비율이 높고, 생산직 중심이고 교대근무 등 근무시간이 불규칙한 사업장은 시설 설치에 물론 의무 이행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한편으로 사업장의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회 등 근로자 단체 활동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나 시설 설치 의무이행 여부 및 방법과는 뚜렷한 연관성을 찾기 어려웠다(부표 IV-1-1 참조).

다. 직장보육 관련 법 조항 적절성에 대한 의견

1) 직장보육 지원 의무 및 방법

현재 영유아보육법은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의무적인 근로자 일·가정 양립 지원 방법으로 직장보육시설 설치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있고 차선택으로 인근 보육시설 위탁이나 보육수당 지급을 채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IV-1-5>와 <표 IV-1-6>은 직장보육시설 이용자 조사에서 나타난 의무 규정 및 직장보육시설 설치 우선 조항이 적절한지를 알아보고자 한 조사 결과이다.

<표 IV-1-5> 직장보육 의무 제도 필요성에 대한 직장보육시설 이용자 의견

단위: %(명)

구분	불필요	보통	어느 정도 필요	반드시 필요	계(수)
민간 소계	0.4	2.0	11.9	85.8	100.0(641)
의무설치	0.2	1.1	11.4	87.2	100.0(437)
임의설치	0.5	3.9	12.7	82.8	100.0(204)
국가 소계	0.2	2.5	11.0	86.3	100.0(446)
의무설치	0.3	2.9	11.2	85.5	100.0(339)
임의설치	-	0.9	10.3	88.8	100.0(107)
전체	0.3	2.2	11.5	86.0	100.0(1087)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직장보육시설 이용자 조사」 결과임.

먼저 <표 IV-1-5>를 보면 의무설치 조항의 필요성에는 85~86%의 대다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으며, 사업장 유형별 차이는 거의 없다.

다음 <표 IV-1-6>를 보면 세 가지 유형의 보육지원 방식 중에서 직장보육시설 설치가 가장 바람직하다는 비율이 3/4이고 이외 거주지 보육시설 보육료 지원이 17.6%이며 직장 인근 보육시설 비용 지원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5% 미만이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우선 조항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조사 대상자가 직장보육시설 이용자임에도 약 1/4은 보육료 지원 방식을 선호하였다는 것은 근로자의 욕구가 다양함을 의미하며, 따라서 정책도 다양성을 필요로 함을 시사한다.

<표 IV-1-6> 근로자들에게 가장 적절한 보육지원 방식

단위: %(명)

구분	직장 보육시설 설치	거주지 보육시설 이용료 지원	직장 인근 보육시설 이용료 지원	기타	계(수)	$\chi^2(df)$
민간 소계	73.4	19.2	4.9	2.5	100.0(631)	16.2(9)
의무설치	72.9	21.1	3.7	2.3	100.0(431)	
임의설치	74.5	15.0	7.5	3.0	100.0(200)	
국가 소계	78.0	15.4	4.1	2.5	100.0(441)	
의무설치	80.0	14.3	3.0	2.7	100.0(335)	
임의설치	71.7	18.9	7.5	1.9	100.0(106)	
전체	75.3	17.6	4.6	2.5	100.0(107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직장보육시설 이용자 조사」 결과임.

2) 의무 사업장 기준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대상 기준을 설정한 조항에 대해 사업장 직장보육 담당자의 의견은 어떠한가?

<표 IV-1-7>은 사업장 직장보육 담당자의 의무설치 사업장 기준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을 나타내는데, 민간사업장에서는 50.1%가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직장보육서비스 지원 특성별로는 차이를 보인다. 민간 보육시설 의무설치 사업장과 인근 시설에 위탁을 주고 있는 사업장에서 적절하다는 응답이 70% 수준으로 높고, 의무 미이행 사업장에서는 그 반 정도인 30.3%만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국가·지자체 사업장을 포함하여 전체 사업장을 보면 전반적으로 적절하다는 응답 비율

이 증가되어서 민간에 비하여 국가·지자체 사업장에서 적절하다고 보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IV-1-7〉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사업장 기준의 적절성

단위: %(개소)

구분	민간 사업장				전체 사업장			
	적절	부적절	모름	계(수)	적절	부적절	모름	계(수)
전체	50.1	45.8	4.1	100.0(533)	54.3	40.9	4.8	100.0(771)
시설 의무설치	74.8	20.5	4.7	100.0(126)	73.3	22.2	4.4	100.0(225)
위탁	69.7	24.2	6.1	100.0(33)	72.5	22.5	5.0	100.0(40)
보육수당	50.8	47.5	1.7	100.0(59)	56.8	40.5	2.7	100.0(148)
미이행	30.3	67.5	2.2	100.0(229)	32.8	62.6	4.5	100.0(265)
시설 임의설치	58.1	32.6	9.3	100.0(86)	58.1	32.3	9.7	100.0(93)
$\chi^2(df)$	94.0(8)**				101.3(8)**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0.01$ 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직장보육에 관한 사업장 조사」 결과임.

〈표 IV-1-8〉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기준이 부적절한 이유

단위: %(개소)

구분	기준 완화 필요	기준 강화 필요	사업장 특성 미반영	보육은 국가 책임	사업주 부담 과다	자율권 부여 필요	실효성 낮음	기타	계(수)
민간 사업장	2.6	7.7	50.9	8.1	17.9	6.8	1.3	4.7	100.0(234)
시설 의무설치	4.2	16.7	16.7	8.3	37.5	12.5	-	4.2	100.0(24)
위탁	-	-	37.5	12.5	25.0	12.5	-	12.5	100.0(8)
보육수당	-	15.4	34.6	3.8	30.8	7.7	-	7.7	100.0(26)
미이행	0.7	4.0	60.7	10.0	14.0	4.7	1.3	4.7	100.0(150)
시설 임의설치	15.4	15.4	46.2	-	7.7	11.5	3.8	-	100.0(26)
전체 사업장	3.0	10.2	44.3	7.9	17.4	8.2	3.0	6.2	100.0(305)
시설 의무설치	4.2	31.3	12.5	12.5	20.8	10.4	2.1	6.3	100.0(48)
위탁	-	-	33.3	11.1	22.2	22.2	-	11.1	100.0(9)
보육수당	3.4	8.6	31.0	3.4	20.7	12.1	8.6	12.1	100.0(58)
미이행	0.6	3.7	59.3	9.3	16.0	4.9	1.2	4.9	100.0(162)
시설 임의설치	14.3	17.9	42.9	-	10.7	10.7	3.6	-	100.0(28)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직장보육에 관한 사업장 조사」 결과임.

민간 사업장의 경우 의무설치 사업장 기준이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로는 사업장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채 단순히 근로자 수로 의무 사업장 여부를 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50.9%로 가장 높다. 그러나 이 역시 직장

보육서비스 지원 특성별로 사업장간 차이가 크다. 의무 미이행 사업장의 60.7%, 임의설치 사업장 46.2%, 인근보육시설 위탁 이용 사업장의 37.5%가 각각 사업장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채 단순히 근로자 수로 의무 사업장 여부를 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응답한 반면, 시설 의무 및 임의 설치 사업장과 수당 지급 사업장은 16.7%만이 이러한 응답을 하였다. 한편 사업장 전체로 보면 약간의 차이는 있는 바, 특히 의무설치 사업장에서 기준 강화 요구가 31.3%로 민간 의무설치 사업장 16.7%보다 높아서, 기준 강화를 요구하는 국가·지자체 사업장이 상대적으로 많음을 나타냈다(표 IV-1-8 참조).

3) 직장보육시설 및 위탁 보육시설 운영비 50% 지원

다음으로 <표 IV-1-9>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육시설 운영비 및 영유아 수탁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50% 이상을 보조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대한 적절성을 조사한 결과이다.

〈표 IV-1-9〉 직장보육시설 운영비 50% 보조 규정의 적절성

단위: %(개소)

구분	민간 사업장					전체 사업장				
	적절하다	적다	부담 크다	기타	계(수)	적절하다	적다	부담 크다	기타	계(수)
전체	35.8	2.1	61.5	0.6	100.0(533)	42.2	4.0	53.2	0.6	100.0(771)
시설 의무설치	53.5	2.4	44.1	-	100.0(127)	60.0	6.2	33.3	0.4	100.0(225)
위탁	51.5	3.0	45.5	-	100.0(33)	57.5	2.5	40.0	-	100.0(40)
보육수당	33.9	1.7	64.4	-	100.0(59)	39.9	4.7	54.7	0.7	100.0(148)
미이행	24.5	1.7	72.9	0.9	100.0(229)	27.8	2.3	69.2	0.8	100.0(266)
시설 임의설치	35.3	2.4	61.2	1.2	100.0(85)	37.0	3.3	58.7	1.1	100.0(9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직장보육에 관한 사업장 조사」 결과임.

민간 사업장 응답자의 61.5%가 부담이 크다고 응답하였고 35.8%가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적절하다는 비율은 실제 당사자인 의무설치 사업장과 위탁 사업장에서 50% 이상으로 높고 의무 미이행 사업장에서는 24.5%로 비교적 낮았다. 그러나 의무설치 사업장에서도 44.1%는 재정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국가·지자체 사업장을 포함하여 보면 적절하다는 비율은 다소 증가하고 부담이 크다는 응답은 감소한다. 이는 민간과 국가 사업주의 차이, 그리고 이로 인한 재정 지원 주체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하겠다.

2. 직장보육시설 지원 제도

가. 직장보육시설 설치, 운영 지원 개요

남녀고용평등법과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는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사업장을 포함하여 직장여성의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는 고용보험기금과 일반회계 등으로 설치비 용자 및 무상지원, 운영비 무상지원 및 세제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표 IV-2-1 참조).

설치비는 최대 5억까지 용자해 주고 시설전환비와 유구비품비를 일부 기업주 자부담을 조건으로 무상으로 지원하며 설치비의 7%를 세액 공제한다. 또한 운영비로 노동부가 시설장, 교사, 취사부 등 인건비를 월 80만원 기준으로 무상지원하며, 보건복지가족부는 인건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설에는 교재교구비, 영아 장애아 기본보조금을 지원하고, 직장보육시설을 야간보육 인건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또한 세제 지원으로 사업주가 지원한 운영비를 부동산소득 및 사업소득 총수입금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다.

〈표 IV-2-1〉 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기준

지원종류	지원내용
설치비 용자 (고용보험기금)	- 연리: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사업주단체 1%, 대기기업 2% • 최고 5억, 5년 거치 5년 균등상환
설치 무상지원 (고용보험기금)	- 기업규모, 영아·장애아시설 설치여부 등에 따라 소요비용의 50~80%까지 차등지원 • 시설전환비 한도는 1억원, 단체의 경우 2억원. - 유구비품비는 교재교구, 장비구입 비용으로 설치시 최고 5천만원 • 5년 주기로 계속 지원 • 자부담 우선지원대상기업 20%, 기타 기업 60%
운영비 무상지원 (고용보험기금, 일반회계)	- 보육교사, 시설장, 취사부 1인당 월 80만원 지급 • 시설장은 아동 20명, 취사부는 아동 40명 기준 • 보육교사는 배치기준 초과 시에도 현원대로 지원 - 교재교구비, 영아, 장애아 기본보조금(이상 운영비 지원 시설 제외), 시간 연장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세제지원	- 직장보육시설 신축, 구입시 취득 금액의 7% 공제, - 운영비를 부동산소득 및 사업소득 총수입금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 - 보육시설 설치 운영을 목적으로 부동산 취득시 부동산 관련 세제 면제 - 보육시설에서 보육용으로 구입하는 기자재 특별소비세 면제

자료: 직장보육시설지원센터(2008). URL: <http://www.escac.or.kr>.

<표 IV-2-2>는 2005년 이후 최근 3년간 고용보험기금에 의한 보육지원 실적이다. 이를 보면 3년간 73개 사업장에 73억원 규모의 설치비를 무상 지원하였고, 22개 사업장에 58억원의 설치비 용자금을 지원하였다. 교사 인건비 지원도 2006년 147개 사업장에 1,309명의 종사자 인건비, 2007년 152개 사업장에 1,267명의 인건비를 지원하였다.

<표 IV-2-2> 고용보험기금 직장 보육지원 실적

단위: 개소, 명, 백만원

구분	설치비 무상지원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설치비 용자	
	사업장	금액	사업장	인원	금액	사업장	금액
2005	20	1,393	129	907	5,952	9	2,657
2006	33	3,245	147	1,309	8,106	4	511
2007	21	2,675	152	1,267	10,429	9	2,700

주: 2007년은 교사 지원 사업장 및 교사수는 연구자 추정치임
 자료: 여성가족부(2006). 직장보육서비스 제공 실태 조사결과.
 여성가족부(2007). 2006년 12월말 직장보육지원 이행현황 및 지원제도.

<표 IV-2-3> 연도별 보육교사 임금지원 현황

단위: 개소, 명, 백만원

연도	사업장	교사(인원)	지원금액	1인당 지원기준
1997	65	1975(216)	1,187	월 40만원
1998	69	2,785(253)	1,645	"
1999	317(95)	2,862	2,029	월 55~60만원
2000	357(98)	3,496	2,483	"
2001	340(105)	1,528(506)	2,403	"
2002	322(92)	1,511(483)	2,483	월 60~65만원
2003	345(96)	1,700(549)	2,918	월 65만원
2004	401(119)	2,262(748)	4,128	"
2005	449(129)	2,863(907)	5,952	월 70만원
2006	537(147)	3,854(1,309)	8,106	월 80만원
2007	609(152)	4,918(1,267)	10,429	"

주: 1) 2002년 7월부터 '직장보육시설지원금'에서 '보육교사지원금'으로 명칭 변경됨.
 2) 1999~2000은 월지급 연건수, 2001년 이후는 분기지급 연건수임.
 3) ()는 사업장 및 교사수임. 2007년은 연구자 추정치임.
 자료: 노동부(각년도). 고용보험백서.

<표 IV-2-3>은 1997년 이래 고용보험기금에 의한 시설장, 보육교사, 취사부 인건비 지원을 보다 상세하게 나타낸 것이다. 2003년 이후에 지원 대상이 크게 증가하

였음을 알 수 있다. 지원 기준도 1997년 월 40만원부터 시작한 이후 계속 증액되어 현재 월 80만원이다.

이러한 지원정책 추진 시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고용 근로자 300명 이하의 광업, 건설업, 운수·창고·통신업 분야 기업이나 500명 이하의 제조업 직종의 기업, 그 외 100명 이하의 일반 중소기업을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지정하여 그 이외 기업과는 차별화된 지원을 한다.²¹⁾ 융자금 이자율과 유구비품비 자부담 비율에 적용한다.

나. 직장보육시설 지원 제도의 적절성

다음은 고용보험기금을 이용한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와 운영비 지원, 그리고 세제 지원의 적절성에 대한 사업장 직장보육 담당자 의견 조사 결과이다.

1) 설치비 융자

정부는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보험기금으로 설치비를 융자해 주고 있다. 융자금 상한액은 5억원이고,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은 각각 5년이며, 융자금 연 이자율은 우선지원 대상 기업 1%, 대기업 2%이다. 이러한 융자금 및 조건에 대하여 사업장 직장보육 담당자는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표 IV-2-4〉 직장보육시설 설치 시 융자금 상한액의 적절성

단위: %(개소)

구분	민간 사업장					전체 사업장				
	증액 필요	적절	잘 모름	기타	계(수)	증액 필요	적절	잘 모름	기타	계(수)
전체	37.6	39.5	16.1	6.7	100.0(534)	36.7	39.2	18.8	5.3	100.0(772)
시설 의무설치	34.6	48.8	14.2	2.4	100.0(127)	32.4	47.1	18.2	2.2	100.0(225)
위탁	36.4	36.4	21.2	6.1	100.0(33)	30.0	37.5	25.0	7.5	100.0(40)
보육수당	39.0	35.6	16.9	8.5	100.0(59)	41.9	35.1	19.6	3.4	100.0(148)
미이행	42.8	32.8	16.2	8.3	100.0(229)	41.7	31.6	18.8	7.9	100.0(266)
시설 임의설치	27.9	47.7	16.3	8.1	100.0(86)	26.9	49.5	16.1	7.5	100.0(93)
$\chi^2(df)$	17.1(12)					28.6(12)**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01$ 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직장보육에 관한 사업장 조사」 결과임.

21) 이는 재정적 기반이 안정적이고 근로자에 대한 복지 개념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대기업과 달리,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서 국가 지원의 우선 대상으로 두고 구체적인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임.

먼저 용자금 상한액에 대해서는 <표 IV-2-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민간 사업장만을 대상이나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비율 차이는 거의 없다.

민간 사업장을 중심으로 보면 적절하다는 응답과 증액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각각 39.5%, 37.6%로 비슷한 비율을 보인다. 그러나 사업장 특성별로 다소 차이가 있어서 적절하다는 응답은 의무 및 임의설치 사업장이 각각 48.8%, 47.7%로 다른 사업장에서 보다 비율이 높고, 한편으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보육수당 지급 및 미이행 사업장이 각각 39.0%, 42.8%로 타 사업장보다 비율이 높다. 이러한 응답으로 볼 때, 5억 규모 이상의 용자를 희망하는 하는 사업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006년 근로복지공단 조사에 의하면 평균 설치비가 5억 3400만원이다.

용자금 거치기관과 상환기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적절하다는 응답보다는 연장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더 높다. 민간사업장을 중심으로 기술하면 보육시설 의무설치 사업장에서는 거치기간이나 상환기간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조사된 반면에 임의설치 사업장에서는 둘 다 연장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는 시설 임의설치 사업장의 상대적인 재정상 어려움을 나타내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표 IV-2-5 참조).

<표 IV-2-5> 직장보육시설 설치 시 용자금 거치 및 상환기간의 적절성

단위: %(개소)

구분	거치기간				상환기간				계(수)
	연장 필요	적절	잘 모름	기타	연장 필요	적절	잘 모름	기타	
민간 사업장	44.8	38.4	13.9	3.0	48.1	36.0	12.9	3.0	100.0(534)
시설 의무설치	40.2	46.5	13.4	-	45.7	43.3	11.0	-	100.0(127)
위탁	54.5	21.2	24.2	-	51.5	27.3	21.2	-	100.0(33)
보육수당	40.7	42.4	11.9	5.1	39.0	44.1	11.9	5.1	100.0(59)
미이행	42.8	37.6	15.7	3.9	45.9	34.5	15.7	3.9	100.0(229)
시설 임의설치	55.8	32.6	7.0	4.7	62.8	26.7	5.8	4.7	100.0(86)
$\chi^2(df)$	na				na				
전체 사업장	43.7	38.0	16.2	2.2	49.2	33.2	15.4	2.2	100.0(772)
시설 의무설치	37.8	46.2	16.0	-	47.6	38.7	13.8	-	100.0(225)
위탁	47.5	27.5	25.0	-	45.0	32.5	22.5	-	100.0(40)
보육수당	44.6	37.2	16.2	2.0	49.3	31.8	16.9	2.0	100.0(148)
미이행	42.9	35.3	18.0	3.8	45.9	32.3	18.0	3.8	100.0(266)
시설 임의설치	57.0	31.2	7.5	4.3	64.5	24.7	6.5	4.3	100.0(93)
$\chi^2(df)$	30.0(12)**				28.1(12)**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01$ 을, na는 빈도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부적절함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직장보육에 관한 사업장 조사」 결과임.

다음으로 <표 IV-2-6>은 직장보육시설 설치 시 융자금에 대한 이자율 적절성에 대한 의견을 나타내는데, 민간 사업장을 별도로 분리한 경우와 전체 사업장을 분석한 경우가 대체로 유사한 경향을 나타낸다. 민간 사업장을 중심으로 보면 적절하다는 응답이 과반수이고, 37.5%는 더 낮추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이외 10.7%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 사업장의 직장보육 지원 특성별로는 시설 의무설치 사업장에서 적절하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고 더 낮추어야 한다는 응답은 23.1%로 가장 낮는데, 인근 보육시설을 위탁 이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이와는 반대 양상을 보였다. 이는 인근 보육시설을 위탁 이용하는 사업장에서 직장보육시설 설치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하였으나 비용 등 설치에 따른 어려움 때문에 인근 보육시설을 이용하게 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유추할 수 있다.

〈표 IV-2-6〉 직장보육시설 설치 시 융자금 이자율의 적절성

단위: %(개소)

구분	민간 사업장					전체 사업장				
	더 낮추어야	적절	잘 모름	기타	계(수)	더 낮추어야	적절	잘 모름	기타	계(수)
전체	37.5	50.7	10.7	1.1	100.0(534)	35.6	51.0	12.4	0.9	100.0(772)
시설 의무설치	33.1	57.5	9.4	-	100.0(127)	27.1	60.9	12.0	-	100.0(225)
위탁	48.5	36.4	15.2	-	100.0(33)	52.5	32.5	15.0	-	100.0(40)
보육수당	35.6	55.9	8.5	-	100.0(59)	37.8	49.3	12.8	-	100.0(148)
미이행	37.1	48.0	12.2	2.6	100.0(229)	36.8	46.6	13.9	2.6	100.0(266)
시설 임의설치	41.9	50.0	8.1	-	100.0(86)	41.9	50.5	7.5	-	100.0(93)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직장보육에 관한 사업장 조사」 결과임.

이와 같은 결과는 근로복지공단(2007)의 직장보육시설 설치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융자금 지원사업 개선 요구 조사에서 융자금 증액을 34.0%로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였고, 다음으로 융자지원 상환조건 및 이율조정 24.3%, 지원서류 간소화 20.9%, 토지매입비 포함 15.0%로 나타났던 것과 다소 차이를 보인다.

2) 설치비 무상 지원

정부는 직장보육시설 설치 시 시설전환비와 교재·교구 및 장비구입 비용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시설전환비는 최고 1억원(단체 2억원)이고, 교구 및 장비 구입비 최고 5천만원이다.

보육시설 설치 초기 이러한 설치비 무상지원에 대하여 전체적으로는 증액되어야 한다는 비율이 과반수를 넘고 1/3 정도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는데, 이 또한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사업장에서 적절하다는 응답은 가장 높고 증액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가장 낮았다. 민간 사업장을 별도로 분리하여 살펴보아도 전체 사업장을 분석한 경우와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IV-2-7 참조).

근로복지공단(2007)이 직장보육시설 설치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원사업 제도개선 요구 조사에서도 무상지원 사업이 26.2%로 60%를 나타낸 운영비 지원사업 다음으로 높았다.

〈표 IV-2-7〉 직장보육시설 설치 시 무상 지원의 적절성

단위: %(개소)

구분	시설전환비				교재교구, 장비 구입비				계(수)
	증액 필요	적절	잘 모름	기타	증액 필요	적절	잘 모름	기타	
민간 사업장	54.3	33.7	10.3	1.7	54.9	32.0	11.0	2.1	100.0(534)
시설 의무설치	52.0	41.7	6.3	-	58.3	36.2	5.5	-	100.0(127)
위탁	60.6	24.2	15.2	-	60.6	24.2	15.2	-	100.0(33)
보육수당	47.5	39.0	11.9	1.7	45.8	39.0	11.9	3.4	100.0(59)
미이행	55.9	29.3	12.7	2.2	54.1	28.8	14.8	2.2	100.0(229)
시설 임의설치	55.8	33.7	7.0	3.5	55.8	32.6	7.0	4.7	100.0(86)
전체 사업장	52.1	33.8	12.8	1.3	50.1	34.5	13.9	1.6	100.0(772)
시설 의무설치	45.8	43.1	11.1	-	43.6	45.3	11.1	-	100.0(225)
위탁	57.5	25.0	17.5	-	52.5	25.0	20.0	2.5	100.0(40)
보육수당	51.4	32.4	15.5	0.7	50.0	32.4	16.2	1.4	100.0(148)
미이행	55.3	28.6	13.9	2.3	53.4	28.2	16.5	1.9	100.0(266)
시설 임의설치	57.0	32.3	7.5	3.2	55.9	33.3	6.5	4.3	100.0(93)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직장보육에 관한 사업장 조사」 결과임.

3) 세제 지원

직장보육시설 설치비 세제 지원으로 설치비의 7%를 세액공제 해준다. 이러한 설치비 세제 지원에 대해서는 민간 사업장의 경우 전체적으로는 적절하다는 응답이 1/3이고 증액이 필요하다는 응답 54.9%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다. 적절하다는 응답은 보육수당 지급 사업장에서 가장 높았고 증액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가장 낮은 반면에 임의설치 사업장에서는 그와 반대로 적절하다는 응답이 낮고 증액

이 필요하다는 비율은 58.1%로 가장 높다(표 IV-2-8 참조).

국가·지자체를 포함한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보면, 민간 사업장을 별도로 분리한 경우에 비하여 증액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다소 낮고 모른다는 비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표 IV-2-8〉 직장보육시설 설치 운영비 세제 지원의 적절성

단위: %(개소)

구분	민간 사업장				전체 사업장			
	증액 필요	적절	잘 모름	계(수)	증액 필요	적절	잘 모름	계(수)
전체	54.9	33.5	11.6	100.0(534)	50.9	34.3	14.8	100.0(772)
시설 의무설치	54.3	37.0	8.7	100.0(127)	45.3	41.8	12.9	100.0(225)
위탁	60.6	30.3	9.1	100.0(33)	55.0	32.5	12.5	100.0(40)
보육수당	47.5	40.7	11.9	100.0(59)	50.0	31.8	18.2	100.0(148)
미이행	55.0	31.9	13.1	100.0(229)	53.4	30.8	15.8	100.0(266)
시설 임의설치	58.1	29.1	12.8	100.0(86)	57.0	31.2	11.8	100.0(93)
$\chi^2(df)$	4.8(8)				10.3(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직장보육에 관한 사업장 조사」 결과임.

4) 운영비 지원

가) 인건비 지원 기준 및 방식

직장보육시설에는 보육교사와 아동 20인 이상 시설의 시설장, 아동 40인 이상 시설의 취사부 인건비가 지원되는데, 그 기준은 시설 이용 아동 중 직장보육시설 소속 사업장 근로자 자녀가 1/3이상, 또는 사업장 근로자 자녀가 1/4이상이고 고용보험 가입자 자녀가 1/2이상인 경우로 하고 있다.²²⁾ 지원금은 보육 아동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녀 아동수 비율만큼 감액하여 결정된다.²³⁾ 보육교사는 배치기준을 초과한 경우라도 고용보험법령상 지원요건을 충족한다면 현원대로 지원한다. 이는 보육 서비스의 질적 제고와 보육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먼저 인건비 지원 기준에 대하여 조사된 사업장 직장보육 담당자의 의견은 다양

22) 2008년부터 사업장 근로자 자녀가 1/4이상이고 고용보험 가입자 자녀가 1/2이상 조건이 추가되었음.

23) 금액 산출 공식은 지원금액=노동부장관 고시금액×보육교사 등의 수×(1-(고용보험피보험자 자녀가 아닌 자의 수/전체 보육아동수))임.

하여, 응답 사업장의 29.1%가 적절하다고 응답하였고 34.5%는 무조건 지원하여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19.2%는 조건을 완화하여야 한다고 한 반면에 5.2%는 조건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하였다(표 IV-2-9 참조).

직장보육 지원 특성별로는 시설 의무설치 사업장과 보육수당 지급 사업장에서 인건비 지원 기준이 적절하다는 응답 비율이 높고, 인근 보육시설 위탁 사업장에서 조건을 강화할 필요성이 높다는 응답 비율이 높으며, 임의설치 사업장에서 조건완화를, 임의설치 사업장과 미이행 사업장에서 무조건적인 인건비 지원을 요구하는 비율이 높다.

〈표 IV-2-9〉 인건비 지원 기준의 적절성

단위: %(개소)

구분	적절	조건 강화 필요	조건 완화 필요	무조건 지원해야	기타	계(수)	$\chi^2(df)$
민간	23.8	6.2	11.0	42.9	16.1	100.0(534)	na
시설 의무설치	28.0	7.4	16.0	33.7	14.9	100.0(175)	
위탁	25.9	11.1	7.4	44.4	11.1	100.0(54)	
보육수당	29.5	6.7	5.7	39.0	19.0	100.0(105)	
미이행	17.0	3.6	10.8	51.0	17.5	100.0(194)	
시설 임의설치	-	-	-	100.0	-	100.0(6)	
전체	29.1	5.2	19.2	34.5	12.0	100.0(772)	51.0(16)**
시설 의무설치	38.6	6.1	20.0	25.0	10.4	100.0(280)	
위탁	27.4	8.3	20.2	34.5	9.5	100.0(84)	
보육수당	32.1	5.1	16.1	32.1	14.6	100.0(137)	
미이행	18.5	3.5	18.1	45.7	14.2	100.0(254)	
시설 임의설치	17.6	-	41.2	41.2	-	100.0(17)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01$ 을, na는 빈도 분포상 유의도 검증이 부적절함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직장보육에 관한 사업장 조사」 결과임.

〈표 IV-2-10〉 인건비 지원 방식의 적절성

단위: %(명)

구분	적절함	월 단위로 변경 필요	평균 아동수로 기준 변경	월 단위 방식, 평균 아동수로 기준 변경	기타	잘 모르겠음	(수)
전체	37.4	24.2	10.1	15.2	6.1	7.1	100.0(99)
민간 의무설치	39.4	27.3	6.4	16.7	6.1	4.5	100.0(66)
민간 임의설치	33.3	18.2	18.2	12.1	6.1	12.1	100.0(33)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직장보육시설 시설장 조사」 결과임.

다음 <표 IV-2-10>은 시설장, 교사, 취사부 인건비 지원 수준 결정 시점 및 지원 주기에 관한 보육시설장의 의견을 나타낸 것이다. 현재 인건비는 분기별로 지원되며, 분기 말일 아동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직장보육시설장의 37.4%는 적절하다고 응답하였으나 약 50%는 월 단위 또는 평균 보육 아동수로 지원 방식과 기준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지급 방식은 과거 월 단위 지급에서 2001년 이후 분기 단위로 변경된 것으로, 행정 편의적인 면이 우선시되고 월 단위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는 보육시설 운영에는 지장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파악된다.

나) 유구비품 교체비용 지원

노동부는 직장보육시설에 영유아보육에 필요한 교재교구, 비품, 실내외 놀이기구, 장비 등 유구비품 교체비를 5년 단위로 지원하고 있는데, <표 IV-2-11>은 유구비품 교체비 지원을 받은 직장보육시설장이 현재의 5년 간격의 지원방식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 결과를 나타낸다. 그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단지 17.5%만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고 82.5%는 부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부적절하다는 응답은 의무설치 사업장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근로복지공단(2007)의 직장보육시설 지원사업 고객만족도 조사에서도 전체의 53.4%의 사업체가 유구비품 교체비 신청횟수 확대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나, 유구비품 교체비용 지원 주기의 단축이 시급함을 드러낸다.

한편 부적절하다고 응답한 경우 적절한 지원 주기를 조사하였는데, <표 IV-2-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3년을 지정한 비율이 53.9%로 가장 높고 다음이 2년 23.7%, 1년 17.1%의 순이다. 그러나 보육시설 의무 및 임의설치 여부별로는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

<표 IV-2-11> 유구비품 교체비 지원 방식 적절성에 대한 시설장 의견

단위: %(명)

구분	적절성			부적절하다는 경우 적정 주기				
	적절함	부적절	계(수)	1년	2년	3년	4년	계(수)
전체	17.5	82.5	100.0(103)	17.1	23.7	53.9	5.3	100.0(76)
민간 의무설치	15.4	84.6	100.0(65)	16.3	22.4	53.1	8.2	100.0(49)
민간 임의설치	21.1	78.9	100.0(38)	18.5	25.9	55.6	-	100.0(27)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직장보육시설 시설장 조사」 결과임.

이외 시설장 간담회 등을 통하여 파악한 바에 의하면, 교재교구 지원과 관련하여 문제로 인식되는 사항은 교구 및 장비 구입비 지원 시 자부담액이 우선지원 대상기업 20%, 기타 기업 40%로 기업주와 공동부담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부담을 준다는 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원을 받아 구입한 교재교구 중 파손된 교재교구에 대한 관리 기간이 길어서 보관 장소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문제로 지적하여 이에 대한 개선을 희망하는 요구가 높았다.

다) 운영비 세제지원

보육시설 운영비를 부동산소득 및 사업소득 총수입금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해주는 세제 지원에 대해서는 민간 사업장을 전체적으로는 적절하다는 응답이 44.4%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 40.6% 보다 높다. 여기에서 특이한 점은 의무설치 사업장과 임의설치 사업장의 의견 차이이다. 의무설치 사업장에서는 적절하다는 응답이 높고 증액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낮은 반면에, 임의설치 사업장에서는 이와 반대로 적절하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비율은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IV-2-12 참조). 이는 앞에 제시된 직장보육시설 설치 사업장 간에 의무인지 임의인지에 따른 설치비 세제 지원 적절성에 대한 의견 차이와 마찬가지로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한편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보면 설치비 세제 지원에서와 같이 전반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감소하고 모르겠다는 응답의 비율이 증가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사업장별 차이가 유의하여 국가·지자체 사업장과 민간 사업장의 의견이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표 IV-2-12〉 시설 운영비 필요경비 인정 세제 지원의 적절성

단위: %(개소)

구분	민간 사업장				전체 사업장			
	개선필요	적절	잘 모름	계(수)	개선필요	적절	잘 모름	계(수)
전체	40.6	44.4	15.0	100.0(534)	37.0	43.3	19.7	100.0(772)
시설 의무설치	39.4	48.0	12.6	100.0(127)	29.3	51.1	19.6	100.0(225)
보육시설 위탁	42.4	48.5	9.1	100.0(33)	40.0	47.5	12.5	100.0(40)
보육수당	32.2	47.5	20.3	100.0(59)	39.2	35.8	25.0	100.0(148)
의무 미이행	40.2	43.2	16.6	100.0(229)	38.7	41.0	20.3	100.0(266)
시설 임의설치	48.8	38.4	12.8	100.0(86)	46.2	40.9	12.9	100.0(93)
$\chi^2(df)$	7.0(8)				17.3(8)**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01$ 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직장보육에 관한 사업장 조사」 결과임.

3. 사업장 보육지원 유형별 현황 및 요구

제3절에서는 사업장 직장보육 담당자 조사를 중심으로 직장보육시설 설치 사업장, 보육시설 위탁 이용 사업장, 보육수당 지급 사업장, 직장보육 의무 미이행 사업장 등 직장보육 지원 여부 및 유형별로 사업장의 보육 지원 현황과 요구를 파악하였다.

가. 직장보육시설 설치 사업장

1) 설치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309개 사업장이 조사에 응답하였는데, 이들 사업장의 시설 설치 연도 응답 결과를 보면 52%의 사업장이 2003년 이후에 보육시설을 설치하였다. 특히 임의설치 사업장의 시설 설치는 2007년도에 많이 추진되었다(표 IV-3-1 참조).

〈표 IV-3-1〉 직장보육시설 설치 연도

단위: %(개소)

구분	1995년 이전	1996-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계(수)
전체	11.3	26.8	4.2	4.2	9.7	7.4	8.4	10.0	12.9	3.9	100.0(306)
의무설치	11.5	23.7	5.5	5.9	10.9	7.9	9.5	10.5	9.1	4.5	100.0(220)
임의설치	11.1	34.5	1.1	-	6.7	7.8	5.6	8.9	22.2	2.2	100.0(8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직장보육에 관한 사업장 조사」 결과임.

〈표 IV-3-2〉는 직장보육시설 설치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나타내는데, 민간 사업장은 비용부담이 38.6%로 단연 우위를 차지하고 그 다음이 공간 확보로 21.2%이며, 법 및 행정상 절차가 20.6%로 조사되었다. 이 외에 정보부족이라는 지적이 7.9%를 차지하고 기타 인력확보, 위탁체 선정, 노사관계 등을 지적한 비율은 각각 5% 미만이다. 설치 주체별 차이를 비교해 보면 민간은 절차, 국가·지자체는 공간확보, 대학은 비용부담을 어려움으로 지적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의무설치 여부별로는 차이가 있어서, 의무설치 사업장에서 공간 확보를 지적한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이 비용부담인 반면에 임의설치 사업장에서 비용부담이라는 응답이 46.1%로 매우 높고 절차를 지적한 비율도 25%이고 정보부족도 14.5%로 의무설치 사업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IV-3-2〉 직장보육시설 설치 시 애로사항

단위: %(개소)

구분	비용 부담	절차	정보 부족	공간 확보	인력 확보	위탁체 선정	노사 관계	계(수)
설치 주체								
민간	38.6	20.6	7.9	21.2	4.2	4.2	3.2	100.0(189)
국가·지자체	30.3	3.9	10.5	52.6	1.3	1.3	-	100.0(76)
대학	50.0	16.7		33.3	-	-	-	100.0(6)
설치 의무 여부								
의무설치	32.8	12.3	6.2	41.0	2.6	2.6	2.6	100.0(195)
임의설치	46.1	25.0	14.5	2.6	5.3	5.3	1.3	100.0(76)
전체	36.5	15.9	8.5	30.3	3.3	3.3	2.6	100.0(277)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직장보육에 관한 사업장 조사」 결과임.

한편 조사된 민간 직장보육시설 설치 사업장 중 설치비와 관련된 용자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다는 사업장은 설치비 용자 18.2%, 시설전환비 무상지원 17.9%, 유구 비품비 무상지원 30.0%, 설치비 세액공제 10.7%로 조사되었다.²⁴⁾ 한 가지라도 지원 받은 경우 시설 설치에 도움이 되는 정도는 <표 IV-3-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27.3%가 매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고, 64.8%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여서 정부의 설치비 지원이 직장보육시설 확충에서 중요한 요인임을 나타낸다.

〈표 IV-3-3〉 직장보육시설 설치 시 용자나 무상지원의 도움 정도

단위: %(개소)

구분	매우 도움이 됨	어느 정도 도움	별 도움이 안 됨	계(수)	$\chi^2(df)$
전체	27.3	64.8	7.8	100.0(128)	
의무설치	14.5	72.5	13.0	100.0(69)	15.6(2)**
임의설치	42.4	55.9	1.7	100.0(59)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0.01$ 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직장보육에 관한 사업장 조사」 결과임.

2) 요구

직장보육 담당자 조사를 통하여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의 직원과 사업자의 요구를 파악하였다.

먼저 직장에서의 보육 지원과 관련하여 직원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를 질문한

24) 모른다는 응답비율이 높아서 현황 파악의 의미가 없으므로 표 제시는 생략함.

결과를 보면, <표 IV-3-4>에 제시된 바와 같이 민간 사업장의 23.3%가 없다고 응답하였고, 76.7%가 요구사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4〉 직장보육시설 설치 사업장 직원의 요구사항

단위: %(개소)

구분	보육료 인하	시간 연장	미이용 아동수당	확대	질적수준 및 체계확립	기타	없음	계(수)
설치 주체								
민간	21.0	26.7	15.2	8.1	2.4	3.3	23.3	100.0(209)
국가·지자체	15.2	19.6	23.9	7.6	1.1	9.8	22.8	100.0(92)
대학	14.3	14.3	42.9			14.3	14.3	100.0(7)
설치 의무 여부								
시설 의무설치	15.5	21.8	21.4	10.9	1.4	6.4	22.7	100.0(220)
시설 임의설치	28.1	30.3	11.2	-	3.4	3.4	23.6	100.0(89)
전체	19.1	24.3	18.4	7.8	1.9	5.5	23.0	100.0(309)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직장보육에 관한 사업장 조사」 결과임.

구체적 요구사항으로는 운영시간 연장에 대한 요구가 26.7%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보육료 인하와 시설 미이용 아동 수당 지급으로 각각 21.0%, 15.2%로 조사되었다. 이외 시설 및 정원 확대 요구가 있다는 사업장이 8.1%이었다. 국가·지자체 사업장에 비하여 민간에서는 보육료 인하와 시간연장 요구가 높고, 대학에서는 미이용 아동에 대한 수당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다.

의무 사업장 여부별로는 직장보육시설 임의설치 사업장에서 보육료 인하와 직원들의 보육시설 운영시간 연장 요구가 각각 28.1%, 30.3%로 의무설치 사업장의 25.5%, 21.8%보다 높고, 미이용 아동 수당 지급요구는 의무설치 사업장에서 비교적 높다.

다음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주 관점에서 사업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을 조사한 것이다. 민간 사업장은 운영비 지원이 57.1%로 가장 필요한 지원이라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는 프로그램 지원으로 11.4%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외 일부 사업장에서 개·보수비 지원, 세제 감면, 설치기준 완화, 시설 운영기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국가나 지자체보다 민간, 대학에서 운영비 지원과 설치기준 완화 요구가 높다. 가장 요구도가 높은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는 시설 임의설치 사업장이 의무설치 사업장보다 더 요구도가 높다. 시설 임의설치 사업장에서는 프로그램 지원 요구도 상대적으로 많다(표 IV-3-5 참조).

〈표 IV-3-5〉 직장보육시설 설치 사업장의 요구사항

단위: %(개소)

구분	운영비 지원	개부수비 지원	세제감면 확대	설치기준 완화	운영기술 지원	프로그램 지원	기타	없음	계(수)
설치 주체									
민간	57.1	6.2	6.7	9.0	5.2	11.4	1.0	3.3	100.0(209)
국가·지자체	50.0	12.0	-	4.3	6.5	14.1	4.3	8.7	100.0(92)
대학	71.4	-	-	14.3	-	14.3	-	-	100.0(7)
설치 의무 여부									
의무설치	53.6	10.0	4.1	9.5	5.0	10.5	2.3	5.0	100.0(220)
임의설치	59.6	2.2	5.6	3.4	6.7	16.9	1.1	4.5	100.0(89)
전체	55.3	7.8	4.5	7.8	5.5	12.3	1.9	4.9	100.0(309)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직장보육에 관한 사업장 조사」 결과임.

3) 앞으로의 계획

〈표 IV-3-6〉은 직장보육시설 설치 사업장이 앞으로 직장보육시설과 관련하여 별도의 계획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이다.

〈표 IV-3-6〉 직장보육시설 설치 사업장의 직장보육 관련 계획

단위: %(개소)

구분	시설 및 정원 확충	축소 운영	현 상태 유지	폐쇄 후 다른 방법 강구	이전 등 개선	미정 (모름)	계(수)
설치 주체							
민간	24.8	3.8	58.6	5.2	1.9	5.7	100.0(209)
국가·지자체	38.0	2.2	56.5	1.1	2.2	-	100.0(92)
대학	42.9	-	42.9	-	-	14.3	100.0(7)
설치 의무 여부							
시설 의무설치	30.9	2.7	60.9	0.9	2.3	2.3	100.0(220)
시설 임의설치	24.7	4.5	49.4	11.2	1.1	9.0	100.0(89)
전체	29.1	3.2	57.6	3.9	1.9	4.2	100.0(309)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직장보육에 관한 사업장 조사」 결과임.

그 결과를 보면 민간 사업장의 58.6%가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응답하였고, 24.8%가 시설 설비나 정원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하였으며, 축소하여 운영하거나 폐쇄하고 다른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사업장은 소수에 불과하였다. 정원 확

충계획은 국가·지자체 38.0%, 대학 42.9%로 민간 사업장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의무설치 사업장에서는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시설 및 정원을 확충하겠다는 응답 비율이 임의설치 사업장보다 높으며, 반면에 보육시설을 폐쇄하고 다른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응답은 임의설치 사업장에서 11.2%로 조사되었다. 이는 임의설치 시설 중 일부가 매우 불안정한 운영 상태에 있음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나. 보육시설 위탁 사업장

1) 위탁 실태²⁵⁾

<표 IV-3-7>은 인근 보육시설 위탁사업장으로 조사된 37개 사업장의 보육지원 시작연도를 나타낸다. 앞에서 살펴본 직장보육시설 설치와 마찬가지로 2004년 이후부터 인근 보육시설을 위탁하여 이용하기 시작하였다는 사업장 비율이 높다.

<표 IV-3-7> 직장보육 위탁 시작연도

단위: %(개소)

구분	1995 이전	1996-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계(수)
민간	3.2	25.8	3.2	3.2	6.5	19.4	9.7	16.1	9.7	-	100.0(31)
국가·지자체	-	50.0	-	-	-	-	-	-	-	50.0	100.0(2)
대학	-	25.0	-	25.0	-	-	-	-	50.0	-	100.0(4)
전체	2.7	27.0	2.7	5.4	5.4	16.2	8.1	13.5	13.5	2.7	100.0(3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직장보육에 관한 사업장 조사」 결과임.

인근 보육시설을 위탁, 이용하는 경우 보육비용을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표 IV-3-8>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지원 방법은 정액과 정률, 그리고 운영비 형태의 지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사업장 특성별 차이가 커서 민간 및 대학에서는 국가나 지자체보다 비율로 지원하는 비율이 높다. 민간 사업장은 정률제 지원으로 연령별 보육료의 일정 비율을 지원한다는 응답이 83.9%로 가장 많고, 다음이 정액 지원으로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아동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한다는 사업장이 6.5%이며, 운영비 형태의 지원이 9.7%이다. 비율로 지원한다는 경우에 지원 비율은 대부분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보육료의 50%이고 일부가 그 이상 또는 그 이하 비율을 적

25) 조사된 37개 사업장 중 31개소가 민간 사업장임. 따라서 제표에서는 사업장 특성별로 제시된 논의는 생략함.

용하는데, 최저는 30%, 최고 100%이다.

〈표 IV-3-8〉 사업장이 보육시설에 보육료를 지원하는 방법

단위: %(개소)

구분	연령별 보육료의 일정 비율 지원	아동당 일정 금액을 일괄 지원	운영비로 지원	계(수)
민간	83.9	6.5	9.7	100.0(31)
국가·지자체	50.0	50.0	-	100.0(2)
대학	75.0	25.0	-	100.0(4)
전체	81.1	10.8	8.1	100.0(37)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직장보육에 관한 사업장 조사」 결과임.

민간 사업장이 인근 보육시설을 위탁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장소확보의 어려움으로 조사되었고, 그 다음이 보육시설 이용 해당 아동이 소수라는 점으로, 이 두 가지 이유를 응답한 비율이 77.4%이다. 이 외에도 설치비 부담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9.7%이고 운영비 부담과 시설관리의 어려움이 각각 6.5%로 나타났다(표 IV-3-9 참조).

〈표 IV-3-9〉 인근 보육시설 위탁의 주된 이유

단위: %(개소)

구분	장소 확보 어려움	설치비 부담	해당아동 소수	운영비 부담	설치 절차 복잡	시설관리 어려움	계(수)
민간	48.4	9.7	29.0	6.5	-	6.5	100.0(31)
국가·지자체	50.0	-	50.0	-	-	-	100.0(2)
대학	25.0	-	75.0	-	-	-	100.0(4)
전체	45.9	8.1	35.1	5.4	-	5.4	100.0(37)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직장보육에 관한 사업장 조사」 결과임.

2) 요구

사업장 직장보육 담당자를 대상으로 보육시설 위탁 사업장 직원의 직장 보육 관련된 요구도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민간은 약 1/3은 없다고 응답하였고, 25.8%는 보육료 추가 지원, 16.1%는 보육시설 설치, 9.7%는 운영시간 연장을 요구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12.9%는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수당 요구가 있다고 응답하였다(표

IV-3-10 참조).

한편, <표 IV-3-11>은 사업장이 필요로 하는 지원에 대해 조사한 것이다. 그 결과를 보면, 지원 요구가 없다는 민간 사업장은 6.5%이고 나머지 93.5%는 지원에 대한 요구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구체적인 요구사항으로는 전체의 61.3%가 운영비 지원을 요구하였고 25.8%가 세제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 두 가지 사항이 보육시설 위탁 사업장의 주요 관심사항을 나타냈다.

〈표 IV-3-10〉 인근 보육시설 위탁 이용 사업장 직원의 요구 사항

단위: %(개소)

구분	보육료 추가 지원	운영시간 연장	미이용 아동 수당 지급	보육시설 설치	기타	없음	계(수)
민간	25.8	9.7	12.9	16.1	-	35.5	100.0(31)
국가·지자체	50.0	-	-	-	50.0	-	100.0(2)
대학	25.0	-	-	-	50.0	25.0	100.0(4)
전체	27.0	8.1	10.8	13.5	8.1	32.4	100.0(37)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직장보육에 관한 사업장 조사」 결과임.

〈표 IV-3-11〉 인근 보육시설 위탁 이용 사업장에 필요한 지원

단위: %(개소)

구분	운영비 지원	세제감면 확대	기타	없음	계(수)
민간	61.3	25.8	6.5	6.5	100.0(31)
국가·지자체	100.0	-	-	-	100.0(2)
대학	25.0	25.0	-	50.0	100.0(4)
전체	59.5	24.3	5.4	10.8	100.0(37)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직장보육에 관한 사업장 조사」 결과임.

3) 앞으로의 계획

보육시설 위탁 사업장의 앞으로의 계획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는 민간 사업장의 다수인 83.9%가 계속 위탁체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응답한 사업장은 12.9%에 불과하였으며, 보육수당으로 전환하겠다는 민간 사업장은 없었고, 전체적으로도 매우 소수로 나타났다.(표 IV-3-12 참조).

〈표 IV-3-12〉 인근 보육시설 위탁 이용 사업장의 직장보육 관련 계획

단위: %(개소)

구분	계속 위탁	시설 설치	수당으로 전환	모름	계(수)
민간	83.9	12.9	-	3.2	100.0(31)
국가·지자체	50.0	-	50.0	-	100.0(2)
대학	50.0	-	25.0	25.0	100.0(4)
전체	78.4	10.8	5.4	5.4	100.0(37)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직장보육에 관한 사업장 조사」 결과임.

다. 보육수당 지급 사업장

1) 보육수당 지급 실태

직장에서의 근로자 보육지원 방법으로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장의 실태와 요구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조사된 사업장 중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장은 총 148개소이다.

먼저 <표 IV-3-13>은 이들 사업장에서 보육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한 연도의 분포를 나타낸 것으로, 다른 보육지원 방법과 마찬가지로 2004년 이후에 실시하였다는 분포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민간 사업장은 28.7%가 2000년 이전부터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V-3-13〉 보육수당 지급 시작연도

단위: %(개소)

구분	1995년 이전	1996-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계(수)
민간	3.6	25.1	7.1	10.7	10.7	7.1	-	16.1	12.5	7.1	100.0(56)
국가·지자체	-	-	3.0	7.6	9.1	12.1	31.8	25.8	9.1	1.5	100.0(66)
대학	-	-			9.5	19.0	-	19.0	42.9	4.8	100.0(21)
전체	1.4	2.1	4.2	7.7	9.8	11.2	14.7	21.0	15.4	4.2	100.0(143)

주: 시작연도 무응답 사업장 3개소는 제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직장보육에 관한 사업장 조사」 결과임.

민간 사업장은 보육수당 지급 시에 아동 연령이나 아동수를 제한하는 사업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제한하는 사업장은 22.0%, 아동수로 제한하는 사업장은 27.1%로 파악되었다(표 IV-3-14, 표 IV-3-15 참조).

〈표 IV-3-14〉 연령별 보육수당 지급 아동 연령 제한 여부

단위: %(개소)

구분	전체 영유아	유아 이상	영유아 연령제한	계(수)
민간	71.2	6.8	22.0	100.0(59)
국가·지자체	73.1	26.9	-	100.0(67)
대학	36.4	40.9	22.7	100.0(22)
전체	66.9	20.9	12.2	100.0(148)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직장보육에 관한 사업장 조사」 결과임.

〈표 IV-3-15〉 보육수당 지급 아동 수 제한 여부 및 수

단위: %(개소)

구분	제한		제한하는 경우 아동수			
	비율	(수)	1명	2명	3명	계(수)
민간	27.1	(59)	18.8	62.5	18.8	100.0(16)
국가·지자체	-	(67)	-	-	-	-
대학	22.7	(22)	-	100.0	-	100.0(5)
전체	14.2	(148)	14.3	71.4	14.3	100.0(21)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직장보육에 관한 사업장 조사」 결과임.

〈표 IV-3-16〉 아동 연령별 보육수당 차이 여부

단위: %(개소)

구분	차이 없음(정액제)	차이 있음(정률제 등)	계(수)	$\chi^2(df)$
민간	74.6	25.4	100.0(59)	17.7(2)**
국가·지자체	38.8	61.2	100.0(67)	
대학	40.9	59.1	100.0(22)	
전체	53.4	46.6	100.0(148)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01$ 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직장보육에 관한 사업장 조사」 결과임.

아동연령을 제한하는 사업장들의 연령 제한 유형은 만5세만 지원하는 경우, 유아만 지원하는 경우 등으로 다양하다. 아동수를 제한한다는 경우는 2명까지로 하는 비율이 62.5%로 가장 많고, 1명인 사업장도 18.8%를 차지한다. 그러나 국가·지자체 사업장은 이러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보육수당은 얼마를 지급하는가? 수당 책정 시 연령별 차등을 두는 경우와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조사된 148개

사업장의 경우 53.4%는 연령별 차이를 두지 않고 46.6%는 차이를 두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사업장 유형별로 차이가 있어서 특히 민간 사업장에서 연령별로 차이가 없다는 비율이 74.6%로 39~41% 수준인 타 사업장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다(표 IV-3-16 참조).

연령별 차이가 없다는 것은 정액제를 의미하고, 차이가 있다는 경우는 보육료 등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표 IV-3-17>은 정액 및 정률 지원 시 지원 금액을 조사한 것이다. 일정 금액을 지원한다는 경우에 그 액수는 평균 66,400원으로 산출되었는데, 최대 150,000원, 최소 5,000원으로 사업장별로 편차가 크다. 연령별로 차이를 두는 경우는 대체로 보육료를 기준으로 연령별 정액 또는 정률로 지원하고 있는데 보육료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장도 있으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정부 지원단가인 국·공립보육시설 보육료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장이 가장 많다. 정률제 지원의 경우 0세아를 기준으로 지원하는 금액은 178,900원 수준이다. 민간 사업장 지원 금액은 140,500원으로 상대적으로 적다.

〈표 IV-3-17〉 정액 및 정률(0세아) 지원시 보육수당 지원액

단위: 천원(개소)

구분	정액					정률(0세아)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수)
민간 ^a	67.1	36.1	5.0	150.0	(38)	140.5	76.9	40.0	253.0	(14)
국가·지자체 ^b	68.7	25.4	30.0	120.0	(26)	191.4	15.8	186.0	264.0	(41)
대학 ^c	54.5	32.1	25.0	100.0	(7)	181.2	25.8	108.0	223.2	(12)
전체	66.4	32.0	5.0	150.0	(71)	178.9	42.9	40.0	264.0	(67)
F		0.5					9.2**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01$ 을 의미함. 사후검정(Tukey) 결과 a와 b, c 집단의 차이가 유의도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직장보육에 관한 사업장 조사」 결과임.

다음에 제시된 <표 IV-3-18>은 보육수당 금액을 응답한 138개 사업장의 보육수당을 사업장 유형 및 연령별로 평균을 낸 것이다. 아동 연령이 많을수록 수당 금액이 줄어드는데, 연령이 어릴수록 표준편차가 커서 사업장별로 차이가 큼을 알 수 있다. 또한 사업장 유형별 차이도 민간에 비하여 국가·지자체 및 대학에서 지원 금액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영아에게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분석되었다. 즉, 민간 사업장은 정액 비율이 높는데 그 금액이 적어서 결국 지원 수준이 낮다고 하겠다.

〈표 IV-3-18〉 연령별 보육수당 지원액 평균

단위: 천원(개소)

구분	0세아	1세아	2세아	3세아	4세아	5세아	(수)
민간 ^a	86.9	83.1	78.7	74.0	72.2	72.8	(52)
국가·지자체 ^b	143.8	129.6	111.6	84.9	79.2	79.2	(67)
대학 ^c	134.5	120.7	103.1	80.0	74.9	73.5	(19)
전체	121.1	110.8	98.1	78.0	75.9	75.9	(138)
(표준편차)	67.8	57.0	44.3	29.1	27.0	26.7	
최소	5.0	5.0	5.0	5.0	5.0	5.0	
최대	264.0	228.9	189.0	150.0	150.0	150.0	
F	12.6**	11.6*	9.2**	2.2	1.1	0.9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01$ 을, *는 $p < 0.05$ 를 의미함. 사후검정(Tukey) 결과 0, 1, 2세아 모두 a와 b, c 집단간 차이가 유의도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직장보육에 관한 사업장 조사」 결과임.

〈표 IV-3-19〉 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보육수당을 주는 주된 이유

단위: %(개소)

구분	공간확보 어려움	설치비 부담	해당아동 소수	운영비 부담	절차 복잡	시설관리 어려움	회사 특성상 부적절	직원간 형평성	기타	계(수)
민간	43.9	7.0	21.1	3.5	1.8	5.3	7.0	8.8	1.8	100.0(59)
국가·지자체	55.2	10.4	16.4	10.4		1.5		3.0	3.0	100.0(67)
대학	40.9	4.5	22.7	13.6	4.5	9.1	4.5			100.0(22)
전체	48.6	8.2	19.2	8.2	1.4	4.1	3.4	4.8	2.1	100.0(148)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직장보육에 관한 사업장 조사」 결과임.

민간 사업장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직장보육 지원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시설을 설치할 장소 확보의 어려움이 43.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보육시설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이 소수라는 점이 21.1%이었다. 그 외에 설치비 부담과 운영비 부담이 각각 7.0%, 3.5%이며, 회사 특성상 보육시설 설치가 부적절함, 지원 간 형평성, 시설관리 어려움 등이 수당을 주는 이유로 제시되었다. 보육수당 지급 사업장의 경우에도 인근 보육시설에 위탁하는 사업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직장보육시설 설치 장소확보의 어려움과 보육시설 이용 해당 아동이 소수라는 점을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IV-3-19 참조). 다른 유형의 사업장과 비교해 보면, 민간 사업장의 경우 시설을 설치할 공간 확보가 어렵다는 비율은 비교적 낮고 회사 특성상 부적절하다거나 직원간의 형평성을 이유로 든 비율이 다소 높다.

2) 요구

다음의 <표 IV-3-20>은 직장보육 의무 사업장 중 보육수당 지급 사업장의 직장보육 지원과 관련된 직원의 요구를 조사한 결과이다.

<표 IV-3-20> 보육수당 지급 사업장 직원의 요구 사항

단위: %(개소)

구분	수당 인상	보육시설 설치	보육시설 위탁	기타	없음	계(수)
민간	28.8	16.9	5.1	-	49.2	100.0(59)
국가·지자체	74.6	10.4	1.5	4.5	9.0	100.0(67)
대학	45.5	4.5	-	22.7	27.3	100.0(22)
전체	52.0	12.2	2.7	5.4	27.7	100.0(148)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직장보육에 관한 사업장 조사」 결과임.

민간 사업장 응답자의 49.2%는 직장보육과 관련하여 직원의 요구사항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28.8%가 보육수당의 인상을 희망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보육시설을 설치를 희망한다는 응답은 16.9%로 상대적으로 소수이었다. 그런데 이 응답은 사업장 유형별로 큰 차이를 보여 민간 사업장에서는 요구사항이 없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국가 및 지자체 사업장에서 수당 인상 요구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IV-3-20 참조).

3) 앞으로의 계획

<표 IV-3-21>은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사업장의 앞으로의 계획을 조사한 결과이다.

대다수인 79.7%의 민간 사업장에서 앞으로도 계속 보육수당으로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응답하였고 11.9%만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이 있음을 밝혔다. 인근 보육시설을 위탁 이용할 계획이라는 사업장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앞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민간 및 대학에 비하여 국가와 지자체 사업장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국가·지자체 사업장 중 25.4%가 보육시설 설치 계획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IV-3-21〉 보육수당 지급 사업장의 계획

단위: %(개소)

구분	수당 지급	시설 설치	보육시설 위탁	모름	계(수)
민간	79.7	11.9	1.7	6.8	100.0(59)
국가·지자체	67.2	25.4	1.5	6.0	100.0(67)
대학	90.9	4.5	-	4.5	100.0(22)
전체	75.7	16.9	1.4	6.1	100.0(148)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직장보육에 관한 사업장 조사」 결과임.

라. 직장보육 의무 미이행 사업장

1) 미이행 이유

본 조사에서는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 사업장이지만 직장보육시설 설치, 인근 보육시설 위탁 이용, 보육수당 지급 중 어떤 하나의 방식으로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그 이유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민간 사업장은 보육시설 이용 해당아동이 소수라는 응답을 37.0%로 가장 많이 하였고 다음이 비용부담 25.5%, 24.0%는 회사 특성상 직장보육시설의 설치가 부적절하기 때문으로 응답하였다. 인식부족이나 벌칙조항의 부재 때문으로 응답한 사업장은 소수이다(표 IV-3-22 참조). 사업장 특성별 차이가 있어서 민간에서 회사 특성상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러한 이유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직장보육 의무 이행 방법을 시설 설치로 한정하여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3-22〉 직장보육 의무 미이행 이유

단위: %(개소)

구분	비용 부담	해당아동 소수	사업주 인식 부족	회사 특성상 부적절	벌칙조항 부재	기타	계(수)
민간	25.5	37.0	3.5	24.0	5.5	4.5	100.0(200)
국가·지자체	60.0	20.0	-	10.0	-	10.0	100.0(10)
대학	50.0	40.9	-	4.5	-	4.5	100.0(22)
전체	29.3	36.6	3.0	21.6	4.7	4.7	100.0(232)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직장보육에 관한 사업장 조사」 결과임.

<표 IV-3-23>은 여성가족부가 2005년 및 2006년도 직장보육 의무 미이행 이유를 조사한 결과인데, 직장보육 수요와 예산 부족이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나, 이 역시 위에서 살펴본 바와 유사하다.

<표 IV-3-23> 의무사업장 직장보육 서비스 미이행 사유

단위: %(개소)

구분	예산부족	장소 미확보	예산부족 및 장소 미확보	수요 부족	기타	계
2005	22.5	17.5	6.0	31.5	22.5	100.5(515)
2006	41.7	23.4	-	33.2	1.7	100.0(410)

자료: 여성가족부(2007). 2006년 직장보육시설 설치 등 현황 실태 조사 결과.

2) 요구 및 앞으로의 계획

<표 IV-3-24>는 직장보육 의무 미이행 사업장 내에서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에 대한 직원들의 요구 정도를 파악한 결과이다. 조사 결과, 민간의 과반수 이상인 56.3%가 없다고 응답하였고, 일부 있음 35.2%, 강함 7.5%로 응답하여 42.7%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직원들의 의무 이행 요구가 있다는 비율은 대학에서 가장 높았다.

<표 IV-3-24> 직장보육 의무 미이행 사업장 직원의 의무 이행 요구

단위: %(개소)

구분	강함	일부 있음	없음	모름	계(수)
민간	7.5	35.2	56.3	1.0	100.0(199)
국가·지자체	10.0	50.0	40.0	-	100.0(10)
대학	4.5	63.6	27.3	4.5	100.0(22)
전체	7.4	38.5	52.8	1.3	100.0(231)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직장보육에 관한 사업장 조사」 결과임.

한편 앞으로의 계획은 10.5%의 민간 사업장은 아무런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54.5%의 사업장이 구체적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20.0%가 시설설치, 11.0%가 수당 지급, 4.0%가 인근 보육시설에 위탁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타 유형의 사업장과 비교해 보면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비율은 국가·지자체와 대학이 각각 40.0%, 36.4%로 민간보다 상대적으로 높다(표 IV-3-25 참조).

<표 IV-3-26>은 앞으로 직장보육 의무이행 계획이 있다는 경우, 계획 이행 연도를 질문한 결과로 민간 사업장은 과반수는 2012년 이후 및 미정 등으로 조사되었고 약 40% 정도가 2010년까지는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즉, 전체 의무 미이행 사업장 중 가까운 시일 안에 의무 이행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은 약 1/3 정도가 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국가·지자체에 비하여 대학이나 민간 사업장의 의무 이행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표 IV-3-25> 직장보육 의무 미이행 사업장의 계획

단위: %(개소)

구분	수당 지급	시설 설치	보육시설 위탁	방법 미정	없음	계(수)
민간	11.0	20.0	4.0	54.5	10.5	100.0(200)
국가·지자체	-	40.0	-	40.0	20.0	100.0(10)
대학	18.2	36.4	4.5	22.7	18.2	100.0(22)
전체	11.2	22.3	3.9	51.1	11.6	100.0(233)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직장보육에 관한 사업장 조사」 결과임.

<표 IV-3-26> 직장보육 미이행 사업장의 의무 이행 예정 연도

단위: %(개소)

구분	설치 중 2008	2009	2010	2011	2012 이후	검토중/ 미정	모름	계획 없음	계(수)
민간	14.9	16.2	9.5	6.8	9.5	20.3	20.3	2.7	100.0(74)
국가·지자체	50.0	50.0	-	-	-	-	-	-	100.0(4)
대학	17.6	23.5	5.9	5.9	11.8	23.5	11.8	-	100.0(17)
전체	16.8	18.9	8.4	6.3	9.5	20.0	17.9	2.1	100.0(94)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직장보육에 관한 사업장 조사」 결과임.

한편으로 직장보육 의무 이행 방법으로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경우에 그 주요 이유로는 대상아동이 소수라는 점이 민간 사업장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사업장 입지나 환경 등이 보육시설 설치 장소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13.4%이고, 관리 운영 어려움이 11.6%이며, 운영비 부담 9.8%, 설치비 부담 8.0%로 비용 부담이 17.8%로 조사되었다. 국가나 대학과 비교해 보면, 이들은 이유가 각각 두 가지에 집중되는데 비하여 민간은 다양한 이유들이 제기되었다(표 IV-3-27 참조).

〈표 IV-3-27〉 계획이 없는 경우 이유

단위: %(명)

구분	설치비 부담	운영비 부담	장소 부적절	대상아동 소수	절차 복잡	관리운영 어려움	기타	계(수)
민간	8.0	9.8	13.4	50.0	0.9	11.6	6.3	100.0(112)
국가·지자체	-	25.0	-	25.0	-	-	50.0	100.0(4)
대학	-	-	20.0	80.0	-	-	-	100.0(5)
전체	7.4	9.9	13.2	50.4	0.8	10.7	7.4	100.0(121)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직장보육에 관한 사업장 조사」 결과임.

4. 직장보육제도의 기대효과

제4절은 전반적 직장보육제도에 대한 기대효과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보육지원 유형별로 일반적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 지원에 대한 사업장의 기대효과를 알아보았고, 이어서 각 직장보육 지원 유형별로 해당 사업장에 미치는 효과성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의무 미이행 사업장 직장보육 담당자의 직장보육 지원 유형별 기대효과를 파악하였다.

가. 포괄적 일과 가정 양립 지원 효과

사업장의 직장보육 담당자가 보는 직장보육 지원이 근로자 일과 가정 양립 지원에 미치는 포괄적 효과성을 지원 방법에 따라 직장보육시설 설치, 인근 보육시설 위탁, 보육수당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표 IV-4-1>는 민간 사업장의 의견이고 <표 IV-4-2>는 국가·지자체 사업장을 포함한 조사 대상 전체 사업장의 의견을 나타낸다.

이 두개의 표를 비교해 보면 모든 유형의 사업장이 지원 방법에 대해서는 직장보육시설의 설치와 보육수당이 5점 만점에 3.7~3.8점으로 인근 보육시설 위탁 3.4~3.5점에 비하여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 지원 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비율이 민간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경우에 비하여 긍정적인 응답이 다소 높음을 알 수 있다. 즉, 민간 사업장에서보다 국가·지자체 사업장에서 보다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IV-4-1〉 사업장 특성별 직장보육 지원의 일·가정 양립 지원 효과: 민간

단위: %(개소), 점

구분	전혀 도움 안됨	도움 안됨	보통	어느 정도 도움됨	많은 도움됨	계(수)	5점 평균
직장보육시설 설치							
전체	5.0	10.9	25.0	30.9	28.4	100.0(525)	3.7
시설 의무설치 ^a	0.8	1.6	14.2	25.2	58.3	100.0(127)	4.4
위탁 ^b	3.2	9.7	32.3	22.6	32.3	100.0(31)	3.7
보육수당 ^c	7.0	7.0	28.1	40.4	17.5	100.0(57)	3.5
미이행 ^d	8.0	20.4	30.7	32.0	8.9	100.0(225)	3.1
시설 임의설치 ^e	2.4	2.4	21.2	32.9	41.2	100.0(85)	4.1
$\chi^2(df)/F$	137.7(16)**						34.6**
인근보육시설 위탁							
전체	6.0	14.3	27.5	36.0	16.2	100.0(517)	3.4
시설 의무설치 ^a	3.3	8.1	22.8	39.0	26.8	100.0(123)	3.8
위탁 ^b	—	—	21.9	37.5	40.6	100.0(32)	4.2
보육수당 ^c	6.9	6.9	32.8	43.1	10.3	100.0(58)	3.4
미이행 ^d	8.0	23.1	30.2	32.0	6.7	100.0(225)	3.1
시설 임의설치 ^e	6.3	10.1	25.3	36.7	21.5	100.0(79)	3.6
$\chi^2(df)/F$	68.6(16)**						14.7**
보육수당							
전체	2.7	9.4	20.0	42.7	25.2	100.0(524)	3.8
시설 의무설치 ^a	2.4	4.8	16.7	43.7	32.5	100.0(126)	4.0
위탁 ^b	—	6.3	15.6	43.8	34.4	100.0(32)	4.1
보육수당 ^c	—	8.5	27.1	39.0	25.4	100.0(59)	3.8
미이행 ^d	4.0	14.2	22.2	42.2	17.3	100.0(225)	3.6
시설 임의설치 ^e	2.4	4.9	15.9	45.1	31.7	100.0(82)	4.0
$\chi^2(df)/F$	29.4(16)*						6.3**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01$ 을, *는 $p < 0.05$ 를 의미함. 사후검정(Tukey) 결과, 직장보육시설 설치는 d와 a, b, c, e 집단의 차이, a와 b, c 집단의 차이, c와 e 집단의 차이가, 위탁은 d와 a, b, e 집단의 차이, b와 c, e 집단의 차이가, 그리고 보육수당은 d와 a, b, e 집단의 차이가 각각 유의도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직장보육에 관한 사업장 조사」 결과임.

구체적으로 먼저 <표 IV-4-1>를 통하여 민간 사업장의 의견을 보면 일·가정 양립 지원에 매우 도움이 된다는 비율은 직장보육시설 설치, 인근 보육시설 위탁, 보육수당이 각각 28.4%, 16.2%, 25.2%로 인근 보육시설 위탁이 다소 낮고, 도움이 된다는 비율까지 포함하면 도움이 된다는 비율은 각각 59.3%, 52.2%, 67.9%로 보육수당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인근 시설 위탁이 가장 낮았다. 한편으로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은 각각 15.9%, 20.3%, 12.1%로 이 역시 인근 보육시설 위탁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즉, 보육시설 위탁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표 IV-4-2〉 사업장 특성별 직장보육 지원의 일·가정 양립 지원 효과: 전체

단위: %(개소), 점

구분	전혀 도움 안됨	도움 안됨	보통	어느정도 도움됨	많은 도움됨	계(수)	5점 평균
직장보육시설 설치							
전체	4.7	9.7	22.8	29.6	33.1	100.0(759)	3.8
시설 의무설치 ^a	1.3	1.8	12.4	22.7	61.8	100.0(225)	4.4
위탁 ^b	2.6	10.5	31.6	21.1	34.2	100.0(38)	3.7
보육수당 ^c	7.7	8.5	26.8	31.7	25.4	100.0(142)	3.6
미이행 ^d	7.3	19.8	29.4	34.7	8.8	100.0(262)	3.2
시설 임의설치 ^e	2.2	2.2	19.6	32.6	43.5	100.0(92)	4.1
$\chi^2(df)/F$							47.8 ^{**}
인근보육시설 위탁							
전체	5.8	13.3	27.2	37.9	15.9	100.0(747)	3.5
시설 의무설치 ^a	2.3	7.8	22.6	44.2	23.0	100.0(217)	3.8
위탁 ^b	-	5.1	23.1	33.3	38.5	100.0(39)	4.1
보육수당 ^c	9.1	10.5	31.5	34.3	14.7	100.0(143)	3.4
미이행 ^d	7.6	21.8	30.5	34.4	5.7	100.0(262)	3.1
시설 임의설치 ^e	5.8	9.3	23.3	40.7	20.9	100.0(86)	3.6
$\chi^2(df)/F$							17.5 ^{**}
보육수당							
전체	2.2	7.7	20.9	42.2	27.0	100.0(756)	3.8
시설 의무설치 ^a	1.4	3.2	19.9	41.2	34.4	100.0(221)	4.0
위탁 ^b	-	5.1	15.4	43.6	35.9	100.0(39)	4.1
보육수당 ^c	0.7	6.9	20.7	39.3	32.4	100.0(145)	4.0
미이행 ^d	3.8	13.4	24.8	42.4	15.6	100.0(262)	3.5
시설 임의설치 ^e	3.4	4.5	14.6	48.3	29.2	100.0(89)	4.0
$\chi^2(df)/F$							11.1 ^{**}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01$ 을 의미함. 사후검정(Tukey) 결과, 직장보육시설 설치는 d와 a, b, c, e 집단의 차이 a와 b, c 집단의 차이, c와 e 집단 차이가, 위탁은 d와 a, b, e 집단의 차이, a와 c 집단 차이가, 그리고 보육수당은 d와 a, b, c, e 집단의 차이가 각각 유의도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직장보육에 관한 사업장 조사」 결과임.

그러나 이러한 전체적인 비율은 응답한 사업장 구성에 따른 영향으로 볼 수 있어서 대표성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보육지원 유형별로 나누어 세부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표 IV-4-1>을 보면 직장보육시설 설치 사업장과 인근 보육시설 위탁 사업장에서는 자사 사업장에서 채택한 직장보육 지원 방법이 다른 지원 방법에 비하여 매우 도움을 준다는 응답 비율이 높다. 직장보육시설 설치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 설치가 많은 도움을 준다는 비율이 의무설치 사업장 4.4점, 임의설치

사업장 4.1점으로 평균 3.7점보다 높다, 인근 보육시설 위탁 사업장은 위탁 방법이 4.2점으로 평균 3.4점에 비하여 0.8점이나 높다. 그러나 보육수당의 경우에는 보육수당 지급 사업장이 타 사업장보다 보육수당의 효과를 높게 보고 있지는 않다.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은 직장보육 의무 미이행 사업장에서 세 가지 직장보육 방식 모두에서 효과성에 대한 평가가 가장 약하다는 점과 보육수당에 대한 평가가 가장 높다는 점이다. 이는 의무 미이행 사업장의 심리적인 방어기제의 작동, 그리고 가장 가능성이 높은 이행 방법인 수당에 대한 주관적 가치 부여 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표 IV-4-2〉는 국가·지자체 사업장을 포함한 조사된 전체 사업장의 의견으로 전체적으로는 민간 사업장의 의견과 유사한 양상이지만 상대적으로 다소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부모들 조사에서도 직장에서의 근로자 보육 지원이 근로자의 실제 양육부담 해소에 기여하는 지에 대하여서는 대략 85% 정도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표 IV-4-3 참조).

〈표 IV-4-3〉 직장보육시설 이용자의 직장보육 지원의 일반적 양육 부담 해소 효과에 대한 의견

단위: %(명)

구분	전혀 도움 안됨	그다지 도움 안됨	보통	어느 정도 도움이 됨	매우 도움이 됨	계(수)	$\chi^2(df)$
민간	1.3	5.2	8.9	30.8	53.9	100.0(640)	
의무설치	1.4	5.1	8.5	29.7	55.4	100.0(435)	
임의설치	1.0	5.4	9.8	33.2	50.7	100.0(205)	
국가	1.3	3.8	7.2	31.7	56.0	100.0(445)	7.2(12)
의무설치	1.2	3.0	7.7	32.5	55.6	100.0(338)	
임의설치	1.9	6.5	5.6	29.0	57.0	100.0(107)	
전체	1.4	5.1	8.5	29.7	55.4	100.0(108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직장보육시설 이용자 조사」 결과임

나. 항목별 기대효과

1) 직장보육 지원 사업장의 기대효과

다음은 시설 설치, 보육수당 지급, 보육시설 위탁 이용 등의 방법으로 자사 사업

장 근로자의 보육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장 보육 담당자를 대상으로 구체적 항목에 대한 사업장 관점에서의 직장보육 지원의 기대효과를 조사한 결과이다. 조사된 항목은 사업체 이미지 제고, 기업의 생산성 향상, 우수 인력 확보, 여성인력 이/퇴직 감소, 직원의 직무만족도 증가, 직원의 직무몰입도 증가, 노사관계 개선의 일곱 가지 항목이다.

〈표 IV-4-4〉 민간 직장보육 지원 사업장의 직장보육 지원 기대효과 총괄

단위: %(개소), 점

구분	전혀 없음	거의 없음	보통	어느 정도 있음	매우 큼	계(수)	5점척도 평균
민간 사업장							
사업체 이미지 제고	3.0	7.6	23.9	37.5	27.9	100.0(301)	3.8
기업의 생산성 향상	4.7	17.9	25.9	34.9	16.6	100.0(301)	3.4
우수 인력 확보	27.3	23.6	32.6	24.3	12.3	100.0(301)	3.1
여성인력 이/퇴직 감소	6.6	19.5	20.9	33.4	19.5	100.0(301)	3.4
직원의 직무만족도 증가	2.3	9.0	27.6	38.2	22.9	100.0(301)	3.7
직원의 직무몰입도 증가	3.3	12.0	27.9	37.2	19.6	100.0(301)	3.6
노사관계 개선	10.0	7.0	20.6	39.2	23.3	100.0(301)	3.6
전체 사업장							
사업체 이미지 제고	2.6	7.6	25.2	36.2	28.4	100.0(497)	3.8
기업의 생산성 향상	4.0	15.3	23.9	36.8	19.9	100.0(497)	3.5
우수 인력 확보	10.7	20.4	31.9	25.4	11.7	100.0(496)	3.1
여성인력 이/퇴직 감소	11.9	20.7	19.3	32.6	15.5	100.0(497)	3.2
직원의 직무만족도 증가	2.2	7.6	25.8	40.8	23.5	100.0(497)	3.8
직원의 직무몰입도 증가	4.0	10.1	26.8	39.2	19.9	100.0(497)	3.6
노사관계 개선	10.5	6.9	20.2	41.6	20.8	100.0(495)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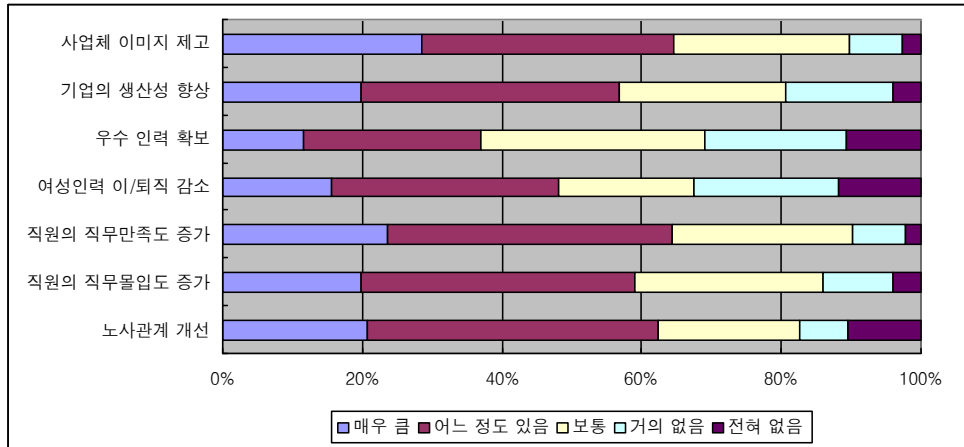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직장보육에 관한 사업장 조사」 결과임.

민간 사업장 조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보면 직장보육 지원의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는 응답은 조사된 일곱 가지 항목 중에서 사업의 이미지 제고, 직원의 직무 만족도 제고, 노사관계 개선의 3개 항목이 약 20% 이상이고, 효과가 있다는 비율도 이들 3개 항목에서 60%를 넘는다. 반면에 우수인력 확보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36.6%이고, 여성인력 이직 및 퇴직의 감소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42.9% 수준으로 타 항목에 비하여 약간 낮다.

5점 척도로는 사업의 이미지 제고가 3.8점으로 가장 높고 직원의 직무 만족도 제고가 3.7점, 직무 몰입도 제고와 노사관계가 각각 3.6점이고 기업의 생산성 향상 효

과와 여성인력 이/퇴직 감소 효과는 3.4점이며 우수인력 확보는 3.1점으로 가장 낮다(표 IV-4-4 참조).



[그림 IV-4-1] 전체 직장보육 지원 사업장의 직장보육 지원의 효과성

전체 조사 대상 사업장을 보면 민간 사업장과 비교하여 분석결과가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한 항목 여성인력 이·퇴직 감소에 대해서는 민간 사업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항목별 기대효과의 차이는 민간 사업장과 거의 유사하다(표 IV-4-4, 그림 IV-4-1 참조).

다음의 <표 IV-4-5>에서는 각 항목에 대하여 사업장의 직장보육 지원 형태별 효과성에 대한 의견 차이 여부를 제시하였다. 민간 사업장은 5점 평균 척도로 보면 7개 항목이 모두 통계적으로 직장보육 지원 특성별로 사업장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고, 전체 사업장은 노사관계 개선을 제외한 6개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직장보육 지원 특성별로 사업장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민간 사업장을 중심으로 내용을 항목별로 보면 노사관계 개선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사업장에서 효과가 높다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이 임의설치 사업장이다. 기업의 생산성 향상은 의무 또는 임의로 보육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에서 타 사업장에 비하여 효과가 높다고 응답하였다.²⁶⁾ 인근보육시설 위탁이나 보육수당은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다. 직장보육시설 임의설치 사업장이 설치 의무가

26) 조사 문항에 따른 백분율 분포는 부록에 수록하였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육시설을 설치한 데는 이러한 효과를 크게 기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IV-4-5〉 보육지원 유형별 직장보육 지원의 기대효과 평가 5점 척도

단위: 점(개소)

구분	사업체 이미지 제고	기업의 생산성 향상	우수 인력 확보	여성인력 이/퇴직 감소	직원 직무 만족도 증가	직원 직무 몰입도 증가	노사 관계 개선	계(수)
민간 사업장								
전체	3.8	3.4	3.1	3.4	3.7	3.6	3.6	100.0(301)
시설 의무설치 ^a	4.1	3.6	3.4	3.7	4.1	4.0	3.9	100.0(127)
위탁 ^b	3.4	3.1	2.7	2.9	3.5	3.4	3.5	100.0(33)
보육수당 ^c	3.4	2.9	2.6	2.8	3.2	2.8	3.4	100.0(57)
시설 임의설치 ^d	3.8	3.6	3.2	3.5	3.5	3.6	3.3	100.0(84)
F	8.2**	7.3**	9.5**	11.7**	13.3**	20.6**	5.2**	
전체 사업장								
전체	3.8	3.5	3.1	3.2	3.8	3.6	3.6	100.0(497)
시설 의무설치 ^a	4.0	3.7	3.2	3.3	4.0	3.9	3.6	100.0(223)
위탁 ^b	3.3	3.1	2.7	2.9	3.4	3.4	3.5	100.0(40)
보육수당 ^c	3.6	3.4	2.8	2.9	3.6	3.3	3.6	100.0(144)
시설 임의설치 ^d	3.8	3.6	3.3	3.5	3.5	3.6	3.4	100.0(90)
F	10.0**	4.5**	5.9**	6.5**	11.5**	13.0**	1.2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01$ 을 의미함. 민간사업장의 경우 사후검정(Tukey) 결과, 사업체 이미지 제고는 a와 b, c, d 집단의 차이, 기업의 생산성 향상은 a와 c, d 집단의 차이, 우수 인력확보는 a와 b, c, d 집단의 차이, 여성인력 이/퇴직 감소는 a와 b 집단 차이, 직무 만족도 증가와 직무 몰입도 증가는 a와 b, c, d 집단의 차이, 노사관계 개선은 a와 c 집단의 차이가 각각 유의도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직장보육에 관한 사업장 조사」 결과임.

2) 직장보육 의무 미이행 사업장 의견

다음의 <표 IV-4-6>은 직장보육시설 설치 미이행 사업장의 직장보육 지원의 기대효과에 대한 평가 5점 척도이다.²⁷⁾ 이 표를 보면 평균이 2.5~3.1점으로 의무 미이행 사업장에서는 실제 의무 이행이나 임의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에 비하여 직장보육 지원의 효과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민간 사업장이나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분석한 점수의 차이가 거의 없어서 주체 특성간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민간 사업장 분석 자료를 구체적으로 보면 사업체 이미지 제고, 직원의 직무만족

27) 조사 문항에 따른 백분율 분포는 부록에 수록하였음.

도 제고, 노사관계 개선은 5점 척도에서 모두 평균 3점 이상으로 비교적 효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한 반면에 우수인력 확보와 생산성 향상 효과는 2.6, 2.7점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였다. 직원의 직무몰입도 평가도 3.0점 미만이다. 전반적인 효과성 평가는 의무 이행 및 임의 시설 설치 사업장에 비하여 낮게 평가하였지만, 항목별 차이는 이들 사업장과 유사하다.

〈표 IV-4-6〉 보육지원 유형별 직장보육 지원의 기대효과 평가 5점 척도

단위: 점(개소)

구분	사업체 이미지 제고	기업의 생산성 향상	우수 인력 확보	여성인력 이/퇴직 감소	직원 직무 만족도 증가	직원 직무 몰입도 증가	노사 관계 개선	계(수)
민간 사업장								
시설 설치	3.3	2.7	2.6	3.0	3.2	2.9	3.2	100.0(301)
위탁	3.0	2.6	2.5	2.9	3.1	2.8	3.1	100.0(127)
보육수당	3.3	2.7	2.7	2.9	3.1	2.8	3.2	100.0(33)
전체 사업장								
시설 설치	3.3	2.8	2.6	3.0	3.2	2.9	3.2	100.0(497)
위탁	3.0	2.7	2.5	2.8	3.1	2.8	3.1	100.0(223)
보육수당	3.2	2.7	2.7	2.9	3.1	2.8	3.2	100.0(40)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직장보육에 관한 사업장 조사」 결과임.

3) 직장보육시설 이용자 의견

〈표 IV-4-7〉은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부모들과 사업장 담당자가 직장에서의 포괄적 보육지원이 사업장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는지 평가한 결과이다.

이를 보면 첫째, 사업장 관계자보다는 직장보육시설 이용자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매우 도움이 된다는 비율만 비교해 보면 시설 의무설치 사업장 24.7%, 시설 임의설치사업장 18.9%, 미설치사업장 4.0%인데 비하여 이용자는 41.5%가 매우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고 있고 5점 척도로는 최소 0.4점 이상의 차이를 보인다. 둘째, 민간 직장보육시설 이용자 4.1점 국가·지자체 직장보육시설 이용자 4.3점으로 민간보다 지자체 시설 이용자가 더 긍정적으로 평가함을 알 수 있고, 셋째로는 국가와 민간 직장보육시설 모두 의무보다는 임의로 설치한 보육시설 근로자가 생산성 향상 기여 효과에 대하여 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표 IV-4-7〉 직장보육시설 이용자와 사업장의 포괄적 직장보육 지원의 생산성
증대 효과 평가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도움 안됨	그다지 도움 안됨	보통	어느 정도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계(수)	5점 척도
직장보육시설 이용자							
민간 소계	2.2	3.8	13.1	43.7	37.2	100.0(639)	4.1
의무설치	2.8	4.4	12.4	43.3	37.2	100.0(436)	4.1
임의설치	1.0	2.5	14.8	44.3	37.4	100.0(203)	4.2
국가 소계	1.8	3.8	7.9	38.9	47.6	100.0(445)	4.3
의무설치	2.1	4.1	8.8	39.2	45.7	100.0(339)	4.2
임의설치	0.9	2.8	4.7	37.7	53.8	100.0(106)	4.4
전체	2.0	3.8	11.0	41.7	41.5	100.0(1084)	4.2
$\chi^2(df)$	22.8(12)*						
사업장 담당자							
시설 의무설치	2.2	13.0	25.1	35.0	24.7	100.0(223)	3.7
시설 임의설치	6.7	8.9	16.7	48.9	18.9	100.0(90)	3.6
미설치	11.5	28.8	34.1	21.7	4.0	100.0(226)	2.8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0.05$ 를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직장보육시설 이용자 조사」 결과임.

5. 정책시사점

직장보육 관련 법, 제도 및 이행 현황과 이에 대한 사업장 등의 의견 조사 분석 결과를 볼 때 다음과 같은 정책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의무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전반적인 의무 이행률의 제고이다. 사업체 조사 결과 의무설치 사업장 기준이 부적절하다는 비율이 40.9%이고, 기준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사업장 특성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44.3%이다. 즉, 보육 대상 아동이 소수라거나 사업장의 소재지가 외곽이나 아동 보육에 적절하지 않은 장소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대체로 보육시설의 설치를 염두에 둔 답변이다. 그러나 직장보육 의무 이행 방법으로 시설 설치 제공 이외에 보육수당 방식도 존재하므로 영유아보육법상 의무 이행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직장보육 지원 의무 기준이 기업의 규모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영유아 수가 소수라도 의무를 이행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보다는 직장보육 지원 의무로 개념을 다시 정리할 필요도 있다.

둘째, 직장보육 의무 이행 사업장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독려 지도가 필요하다.

이는 의무 이행 기준에 대한 문제이다. 직장보육 의무 이행 사업체의 경우에도 그 내용을 보면 법으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장이 상당수이다. 보육시설을 설치한 경우나 인근 보육시설 위탁 시 운영비 지원의 수준, 보육수당 지급 시 금액이 법으로 정한 수준에 미달하는 사업장이 매우 많다. 특히 보육수당은 지급 실태를 보면 정액, 정률 등 지원 기준이 일정하지 않고, 대상도 연령이나 아동수로 제한하는 등 다양하며 그 액수도 제 각각이다. 일정금액을 지원한다는 경우에 그 액수는 평균 66,400원으로 산출되었는데, 최대 150,000원, 최소 5,000원으로 사업장별 편차가 크고 연령별로 차이를 두는 경우는 대체로 보육료를 기준으로 지원하지만 그 액수 역시 차이가 많다. 따라서 일정한 최소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지도할 필요가 제기된다.

셋째, 보육시설 설치 용자액 상한성 확대가 필요하다.

직장보육시설 설치 시 설치금 용자액 상한선이 5억이다. 시설 토지비 매입에 대한 지원은 없으므로 일정 규모 이상을 신축건물로 지어서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 실제 기업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규모는 매우 크다. 따라서 그 상한선을 상향 조정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직장보육시설 설치 관련 정보나 절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민간 사업장은 비용부담, 공간 확보 이외에 법 및 행정상 절차와 정보부족을 지적한다. 특히 임의설치 사업장에서 절차와 정보 부족을 지적한 비율이 각각 25%, 14.5%로 의무설치 사업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았다. 직장보육시설지원센터가 직장보육 의무 설치 사업장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직장보육 지원도 보다 적극 지원하여야 함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다섯째, 직장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직장보육시설이나 위탁 이용 시 보육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50%를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고용보험기금 등에 의한 인건비 지원여부에

따라 부모의 부담은 큰 차이가 난다. 영세한 사업장일수록 인건비 지원이 어려워 부모 부담이 커진다. 따라서 수요자 관점에서 최소 운영비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기업주의 지원 내용을 다시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재처럼 정부 지원단가 수준으로 보육료를 수납하고(직장보육시설지원센터, 2007), 인건비를 지원받고, 또 사업주가 50%를 지원하고 하는 각각의 규정들에 대한 면밀한 상호 연계성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사업주가 지원하여야 하는 운영비 50%라고 할 때 노동부 지원을 포함하는 지 등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여섯째, 운영비 지원 기준을 산출하기 위한 직장보육의 최저 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

보육시설 운영비는 사실 보육 서비스의 질과 직결되는 데, 표준 모형 없이 운영비를 50% 지원하라고 하므로 운영비 50%의 기준이 마련되어 이를 지원한다고 하여도 서비스 수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아동 보육에 소요되는 운영비 수준은 많은 차이가 난다. 따라서 부모 관점에서 최소한의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는 보육모형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교사대 아동비율에 대한 제제는 없다. 보육교사로 등록되면 아동 대비 수를 제한하지 않고 인건비가 지원되는 것이다. 이 부분도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일곱째, 교사 인건비 지원 기준의 완화 및 별도 재원 확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현재 시설장과 교사의 인건비 지원 기준은 직장보육시설에 사업장 근로자 자녀가 1/3이상, 또는 사업장 근로자 자녀가 1/4이상이고 고용보험 가입자 자녀가 1/2이상이면 교사 인건비를 지원한다. 이러한 지원 기준에 대하여 조사된 민간 사업장의 23.1%가 적절하다고 응답하였고 60.1%는 지원조건을 완화하거나 무조건 지원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업장은 영세사업장이고 임의 사업장일 가능성이 더 크므로 전체 아동 대비 근로자 자녀 비율, 또는 국·공립시설에 준하는 지원 등으로 지원 대상 확대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이 경우 일반회계로의 지원 방안도 적극 모색되어야 한다. 특히 임의설치 사업장은 11.2%가 폐쇄를 검토하고 있어서 재정 부담완화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을 나타냈다.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주 관점에서 사업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으로는 운영비 지원이 다.

여덟째, 인건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야 한다.

현재 시설장은 아동 20인 이상, 취사부는 40인 이상이 지원 대상이고 이기 때문에 소규모 보육시설에는 시설장과 취사부 인건비 지원을 하지 않는다. 이러한 기준은 개선되어야 한다. 아동 20인 미만 시설에는 원장과 취사부 인건비가 모두 지원되지 않으므로 사실상 교사가 이 두 가지 역할을 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기준은 소규모 직장보육시설의 운영을 어렵게 하므로, 대상아동이 적은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이 직장보육시설의 설치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아홉째, 인건비 지원액 결정 방식 및 주기가 개선되어야 한다.

우선, 인건비 지원방식은 분기별로 말일 아동수를 기준으로 하여 인건비 지원 수준을 결정하는데 이에 대하여 민간 직장보육시설장의 약 50%는 월 단위 또는 평균 보육 아동수로 지원 방식과 기준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였다. 직장보육시설의 예산 집행이 월단위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지원도 2001년 이전과 같이 월 단위로 실시되어야 한다. 아동수 기준도 3개월마다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보육아동이 3개월 단위로 등록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역사회 보육시설 지원 방식과 같이 매월 15일 이상 이용 아동수 등 일정 기간 이용 아동수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원 금액은 고용보험 대상 아동수에 따라 비율로 결정되는데, 이러한 방식도 지나치게 경직된 방식이므로 재고할 필요가 있다.

열째, 유구비품비 지원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노동부는 직장보육시설에 유구비품 교체비를 5년 단위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직장보육시설장의 82.5%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부적절하다는 응답은 임의설치 사업장에서 더 높게 조사되었다. 교재교구 등 유구 비품은 종류에 따라서 사용 가능한 기간이 1년에서 5년까지로 매우 다양하다. 그러므로 지원 주기를 두어서 일괄 지원하기 보다는 필요한 경우에 신청과 심사 절차를 거쳐서 필요성이 인정되면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구 및 장비 구입비 지원시 우선 지원 대상기업 20%, 기타 기업 40%인 자부담은 기업주에게 많은 부담을 주므로 지원 액수를 낮추더라도 자부담 비율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원을 받아 구입한 교재교구 중 파손된 교재교구에 대한 보관 기간이 줄

여서 장소 등의 문제로 어려움이 없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열한째, 보육시설 설치 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직장보육시설 설치 사업장의 경우 설치 시 애로 사항으로 비용부담과 더불어 공간확보를 지적한 비율이 높고, 또한 시설 확충에 대한 요구가 매우 크다. 민간 직장보육시설 설치 사업장 중 24.8%가 시설 확충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직장보육시설들이 대부분 보육시설 설치 기준상 층수 제한과 50인 이상 시설 어원이 놀이터 규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직장보육시설 설치 기준을 검토하여 보육시설의 안전을 보장하면서도 용이하게 시설을 설치, 확충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열두째, 직장보육시설 프로그램 지원 등 지역사회 보육시설과 동일하게 보육정책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주 관점에서 사업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으로는 운영비 지원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프로그램 지원이다. 특히 시설 임의설치 사업장에서는 프로그램 지원 요구도 상대적으로 많다. 이는 보육서비스 내용에 대한 지원을 의미한다. 노동부가 재정적 지원을 담당하고 있으나, 보육내용이나 안전 등에 대한 지도나 감독은 한계가 있다. 재정적으로도 노동부 지원에서도 제외되는 경우에는 시설에 따라서는 사각지대가 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직장보육시설도 지역사회 보육시설과 같이 보건복지가족부, 시·도, 시·군·구 보육정책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V. 직장보육시설 운영·이용 실태와 효과

제5장에서는 우리나라 직장보육시설의 운영과 이용 현황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제1절에서는 직장보육시설의 위상을 검토하고 제2절에서는 직장보육시설 조사를 중심으로 보육시설의 운영 측면을 살펴보았다. 제3절에서는 직장보육시설 이용자 조사에 기초하여 이용 측면을 살펴보고 제4절에서 직장보육시설의 효과성을 검토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이를 토대로 정책시사점을 추출하였다.

1. 보육에서의 직장보육의 비중

가. 직장보육시설

우리나라에서 직장보육시설은 320개소로 보육아동 정원 20,783명, 현원 15,124명이다. 보육교사 수는 1,926명이고 직원수는 2,650명이다(표 V-1-1 참조).

〈표 V-1-1〉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 현황(2007년 12월 말)

단위: 명, 개소, %

구 분		계	국·공립	법인	민 간			부모 협동	가정	직장
					소계	법인외	민간 개인			
시설수	개소	30,856	1,748	1,460	14,083	1,002	13,081	61	13,184	320
	비율	100.0	5.7	4.7	45.6	3.2	42.4	0.3	42.7	1.0
아동수	정원	1,344,132	135,302	144,845	815,096	68,268	746,828	1,764	226,342	20,783
	비율	100.0	10.1	10.8	60.7	5.1	55.6	0.1	16.8	1.5
	현원	1,099,933	119,141	118,211	668,390	55,906	612,484	1,444	177,623	15,124
	비율	100.0	10.8	10.7	60.8	5.1	55.7	0.2	16.1	1.4
	이용률	81.8	88.1	81.6	82.0	81.9	82.0	81.9	78.5	72.8
직원수	인원	169,402	15,613	15,947	90,687	7,674	83,013	345	44,160	2,650
	비율	100.0	9.2	9.4	53.5	4.5	49.0	0.2	26.1	1.6
시설당	아동수	36	68	81	47	56	47	24	13	47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08), 보육통계.

이러한 직장보육시설 현황을 통하여 몇 가지 특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보육 전체에서 직장보육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보육시설 수, 이용 아동수로 볼 때 각각 1.0%, 1.5% 수준에 불과하다. 어느 정도가 적정 수준인지에 대해 명확히 말 할 수는 없으나 공공보육시설이라는 관점에서 최소 현재의 두배 수준인 아동수의 3% 보육 수준까지는 지속적 확충이 필요하다. 둘째, 정원 충족 비율이 72.8%로 타 유형의 시설에 비하여 가장 낮다. 시설의 입지, 서비스의 질 등을 개선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시설의 규모가 평균 정원 64.9명, 현원 47명이며, 시설의 대부분이 실외놀이터가 없어 50명 미만의 소규모로 설치되었다.

다음으로 직장보육시설이 설치된 경우 보육 대상 아동의 어느 정도가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하는지를 알아보았다. 2007년도 조사(근로복지공단, 2007)에서는 대상아동의 33.4% 정도가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직장보육시설 미이용 이유는 앞의 선행연구에서도 제시한 바와 같이 타 교육기관 이용, 환경이 더 좋은 보육시설 이용, 집과의 거리, 동반 출퇴근 부담 등이다(제1장 표 I-4-1 참조).

나. 근로복지공단 보육시설

기업이 직접 설치, 지원하는 시설은 아니지만 기업의 기여로,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보육시설로서 근로복지공단의 복지진흥기금과 고용보험기금에서 운영하는 보육시설²⁸⁾을 들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이 설립하고 운영하는 보육시설은 전국 각지의 공업단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위치하고 있고, 1996년 창원에 최초의 근로복지공단 보육시설이 설립된 이래 2006년까지 총 24개가 설립되었다. 근로자복지진흥기금으로 운영하는 보육시설은 저소득층 자녀를 입소 우선순위로 두고 있으나, 고용보험기금에서 운영하는 16개 보육시설²⁹⁾에서는 입소 우선순위를 맞벌이 가정에 우선함으로써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우대 혜택을 명백히 두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은 2003년 이후 공식적으로 종료되어 이미 계획된 2006년 경기도 고양시 보육시설 설립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확충되지 않고 있다.³⁰⁾

28) 2008년까지 복지진흥기금과 고용보험기금으로 나뉘어 각각 소속 보육시설을 지원하고 있으나 2009년부터는 고용보험기금으로 통합될 예정이다. 이들 보육시설은 보육시설 설립유형 중 ‘법인 외 단체’로 분류됨.

29) 2008년부터 노동부 위탁운영비로 지원함.

30) 대부분이 100%가 넘는 정원충족율과 수요자의 만족도가 높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보육지원 방안으로 인식됨. 그러나 전체 연간 30억에 이르는 추가지원 비용을 근로복지공단이 단독으로

〈표 V-1-2〉 근로복지공단 설립·운영 직장보육시설 현황

단위: 명, %

재원	지역	아동현황		설립일	지역	아동현황		설립일
		정원	입소율			정원	입소율	
복지 진흥 기금	창원	228	101.3	96년 2월	인천	89	100.0	99년 3월
	안산	173	102.9	97년 7월	천안	79	100.0	99년 3월
	서울	121	103.3	99년 2월	대전	79	100.0	00년 11월
	청주	188	100.0	99년 10월	포항	102	103.9	02년 3월
고용 보험 기금	대구	106	114.2	00년 11월	군포	161	103.1	02년 1월
	동해	89	105.6	00년 11월	조치원	102	101.0	02년 3월
	광양	79	96.2	01년 3월	울산	156	100.0	02년 12월
	수원	177	100.0	01년 3월	진해	151	100.0	02년 12월
	정읍	102	94.1	01년 3월	남동	168	99.4	04년 3월
	경주	123	100.0	01년 10월	제주	121	100.0	05년 11월
	부산	146	102.7	02년 2월	군산	107	98.1	05년 12월
	부천	194	99.5	02년 3월	고양	148	100.0	06년 3월

자료: 근로복지공단(2008). 근로복지공단 내부자료.

2. 직장보육시설 운영

제2절에서는 조사된 191개 직장보육시설 시설장조사 자료를 토대로 운영 일반현황, 이용자 특성, 재정, 종사자, 애로사항 등으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가. 운영 일반 현황

1) 운영 형태

직장보육시설은 공동 및 단독으로 설치할 수 있는데, 조사된 시설 중 민간의 15.5%, 국가·지자체의 21.3%가 공동보육시설이라고 응답하였다.³¹⁾

조사된 직장보육시설의 운영 방식을 보면 직영이 34.6%이고 위탁 운영이 65.4%로 나타났다. 사업장 유형별로 차이가 있어서 민간의 경우 직영과 위탁이 반반이며,

출연하고 있는 부담이 있음.

31) 설치자로 공동 대표를 두는 경우보다는 실제 공동사용인 경우가 많아서 그 개념이 분명하지는 않음. 2007년 근로복지공단 조사에서는 민간 사업장 직장시설은 12.6%가 공동 설치로 조사되었음.

위탁 운영 비율을 설치의무를 기준으로 보면 의무설치 시설이 58.7%로 임의설치 시설 41.3%보다 높다. 국가·지자체 직장보육시설은 위탁이 89.3%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며 임의설치 시설³²⁾의 위탁운영 비율이 더 높다(표 V-2-1 참조).

위탁 운영 시 위탁체는 학교, 단체, 개인, 보육시설 전문 운영업체 등으로 다양하다. 민간 직장보육시설 중 위탁 운영하는 경우 46.5%가 전문 운영업체를 이용하고 25.0%는 대학에 위탁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국가·지자체 위탁운영 직장보육시설이 전문 업체에 위탁하는 비율은 민간에 비하여 높지 않다.

〈표 V-2-1〉 직장보육시설의 운영형태

단위: %(개소)

구분	운영형태			위탁운영시 위탁체					
	직영	위탁	계(수)	전문 업체	대학	법인 단체	교육청	기타	계(수)
민간 소계	50.0	50.0	100.0(116)	46.5	25.0	1.8	-	26.8	100.0(56)
의무설치	41.3	58.7	100.0(75)	50.1	26.2	2.4	-	21.5	100.0(42)
임의설치	65.9	34.1	100.0(41)	35.7	21.4	-	-	42.8	100.0(14)
국가 소계	10.7	89.3	100.0(75)	9.0	31.3	15.0	9.0	35.9	100.0(67)
의무설치	12.1	87.9	100.0(58)	5.9	35.3	19.6	3.9	35.3	100.0(51)
임의설치	5.9	94.1	100.0(17)	18.8	18.8	-	25.0	37.6	100.0(16)
전체 $\chi^2(df)$	34.6	65.4	100.0(191)	26.0	28.5	8.9	4.9	31.8	100.0(123)
			38.4(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직장보육시설 시설장 조사」 결과임.

〈표 V-2-2〉 전문경영업체의 직장보육시설 경영 현황

단위: %(개소)

구분	푸른 보육경영	삼성 복지재단	모아맘	핸즈 코리아	한솔	킨더 솔레	계
수	26	13	24	5	4	4	76

자료: 각 업체 홈페이지

〈표 V-2-2〉는 전문운영업체의 운영하는 시설 규모를 나타낸다. 조사 등을 통하여 파악된 운영업체는 6개인데, 이들 6개 업체가 320개 보육시설 중 23.6%인 76개 보육시설을 경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업체는 정부 지침에 의하여 비영리를 원칙으로 하므로 대부분 기업 안에 비영리 법인 형태의 가구를 두어서 운영을 전담하도록 한다.

32) 국가·지자체 임의설치 시설은 초등학교에 설치된 보육시설이 다수임.

위탁 운영 시 위탁기간은 일정하지 않은데, 보통 1~3년이 가장 많고 특히 1년으로 하는 경우는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경우가 많다.³³⁾

2) 운영일수 및 평일 운영시간

민간 직장보육시설의 주당 운영일수는 5일이 56.4%이고 6일이 40.9%이며 7일은 2.7%에 불과하다. 이러한 결과는 의무설치 사업장과 임의설치 사업장간의 차이가 없다. 국가·지자체 직장보육시설은 민간 사업장에 비하여 운영일수는 적고 의무설치 사업장과 임의설치 사업장간의 차이는 크다. 일요일 운영은 민간 의무설치 시설이 유일하다(표 V-2-3 참조).

〈표 V-2-3〉 직장보육시설의 주간 운영일수

단위: %(개소)

구분	5일	6일	7일	(수)
민간 소계	56.4	40.9	2.7	100.0(116)
의무설치	56.9	38.9	4.2	100.0(75)
임의설치	55.2	44.7	-	100.0(41)
국가 소계	75.0	25.0	-	100.0(75)
의무설치	83.6	16.4	-	100.0(58)
임의설치	47.1	52.9	-	100.0(17)
전체	63.7	34.6	1.6	100.0(191)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직장보육시설 시설장 조사」 결과임.

〈표 V-2-4〉 직장보육시설의 공식적인 운영시간

단위: (개소)

구분	평균	표준편차	(수)	F
민간 소계	11시간 51분	1시간 59분	(116)	2.7 [*]
의무설치 ^a	12시간 10분	2시간 1분	(75)	
임의설치 ^b	11시간 16분	1시간 49분	(41)	
국가 소계	11시간 55분	58분	(75)	
의무설치 ^c	11시간 58분	1시간 4분	(58)	
임의설치	11시간 46분	31분	(17)	
전체	11시간 53분	1시간 40분	(191)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05$ 를 의미함. 4가지 유형간 차이를 나타냄. 사후검정(Tukey) 결과, a와 b, b와 c간의 차이가유의도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직장보육시설 시설장 조사」 결과임.

33) 위탁기간을 1년으로 하고 자동 연장하는 경우, 이는 대체로 사업체의 전결권 수준에 따른 행정편의와 비정규직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됨.

한편 직장보육시설의 평일 운영시간을 보면, 민간의 경우 평균 11시간 51분인데, 의무설치 시설의 운영시간이 임의설치 시설에 비하여 50분 정도 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지자체 직장보육시설 운영시간은 민간 의무설치 시설 운영시간보다 짧고 임의설치 시설 운영시간보다는 길다(표 V-2-4 참조).

3) 보육서비스

직장보육시설의 취약보육 실시 비율을 보면 우선 일반 보육시설에 비하여 실시 비율이 높아서 직장보육시설이 지역사회 보육시설에 비하여 근로자에 대한 일·가정 양립 지원 기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2007년에 실시된 한 조사에 의하면 야간보육 실시 비율은 국·공립보육시설이 10% 수준이고 가정보육시설이 22% 수준으로 나타났다며, 휴일보육 실시 비율은 3% 정도로 조사되었다(서문희 외, 2007).

취약보육 실시 비율은 민간 직장보육시설에서 높게 나타났는데, 민간은 임의설치 시설이 높고, 국가·지자체 직장보육시설은 의무설치 시설이 높다. 민간 직장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취약보육 보육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야간 보육 37.9%, 휴일보육 16.4%, 장애아보육 2.6%, 기타 6.9%이다. 시설 특성별로는 야간보육과 휴일보육은 임의설치 시설이 각각 46.3%, 29.3%로 의무설치 시설 33.3%, 9.3%에 비하여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V-2-5 참조).

〈표 V-2-5〉 직장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단위: %(개소)

구분	야간 보육	휴일보육	장애아보육	기타	(수)
민간 소계	37.9	16.4	2.6	6.9	(116)
의무설치	33.3	9.3	2.7	5.3	(75)
임의설치	46.3	29.3	2.4	9.8	(41)
국가 소계	34.7	6.7	2.7	12.0	(75)
의무설치	36.2	8.6	3.4	12.1	(58)
임의설치	29.4	-	-	11.8	(17)
전체	36.6	12.6	2.6	8.9	(191)
$\chi^2(df)$	5.1(6)	17.4(6)**	na	na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01$ 을, na는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직장보육시설 시설장 조사」 결과임.

〈표 V-2-6〉은 직장보육시설 이용 부모를 대상으로 취약보육 이용 가능성을 조사한 결과이다. 민간 직장보육시설의 경우 야간보육 이용이 가능하다는 응답이

37.0%로 시설장 조사에서 나타난 실시 비율 37.9%와 유사한 양상을 나타낸다. 토요일 보육은 가능하다는 비율은 40.0%로 비교적 높고 일요일 보육은 약 10% 정도의 응답자만이 이용 가능하다고 하였다. 야간보육과 휴일보육은 임의설치 시설 이용자의 이용 가능하다는 응답 비율이 현저하게 높다.

한편으로 국가·지자체 사업장 보육시설을 포함한 전체 직장보육시설을 대상으로 보면 야간보육은 이용 가능성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토요일, 일요일 보육은 상대적으로 이용가능하다는 응답이 낮다.

〈표 V-2-6〉 시간의 보육 가능 여부

단위: %(개소)

구분	야간보육			토요일보육			일요일보육			계(수)
	가능	불가능	모름	가능	불가능	모름	가능	불가능	모름	
민간 소계	37.0	49.3	13.7	40.7	49.2	10.1	10.7	74.8	14.5	100.0(635)
의무설치	34.3	53.1	12.6	38.5	52.5	8.9	10.8	77.1	12.2	100.0(435)
임의설치	43.0	41.0	16.0	45.5	42.0	12.5	10.5	70.0	19.5	100.0(200)
국가 소계	38.8	49.1	12.1	25.8	60.9	13.3	4.5	80.9	14.6	100.0(446)
의무설치	41.2	46.5	12.4	17.6	69.4	12.9	5.6	80.3	14.1	100.0(340)
임의설치	31.1	57.5	11.3	52.4	33.3	14.3	0.9	83.0	16.0	100.0(106)
전체	37.7	49.2	13.0	34.6	54.0	11.4	8.1	77.4	14.5	100.0(1081)
$\chi^2(df)$	13.0(6)*			79.4(6)**			22.1(6)*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0.01$ 을, *는 $p<0.05$ 를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직장보육시설 이용자 조사」 결과임.

〈표 V-2-7〉은 직장보육시설의 평가인증 상태를 나타내는데, 조사된 민간 사업장 직장보육시설의 23.7%가 평가인증을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표 V-2-7〉 직장보육시설의 평가인증 여부

단위: %(개소)

구분	받은	신청 중	미신청	(수)	$\chi^2(df)$
민간 소계	23.7	17.5	58.8	100.0(114)	
의무설치	26.0	20.5	53.4	100.0(73)	
임의설치	19.5	12.2	68.3	100.0(41)	
국가 소계	50.0	22.2	27.8	100.0(72)	
의무설치	49.7	23.6	27.3	100.0(55)	
임의설치	52.9	17.6	29.4	100.0(17)	
전체	33.9	19.4	46.8	100.0(186)	21.4(6)**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0.01$ 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직장보육시설 시설장 조사」 결과임.

설치 의무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의무설치 사업장 보육시설이 26.0%를 차지하여 임의설치 사업장 보육시설 19.5%에 비하여 평가인증을 받은 비율이 높다. 국가·지자체 사업장 보육시설은 전체의 50.0%가 평가인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³⁴⁾

4) 정원 충족 여부

〈표 V-2-8〉에 따르면 조사된 민간 사업장 보육시설 중 39.8%는 정원이 충족되었고 60.2%는 정원 미달이다. 정원 미달 이유로 31.9%는 이용 대상 아동 부족으로, 15.9%는 보육시설이 부적절한 위치에 소재하기 때문에 정원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국가·지자체 직장보육시설의 정원 충족률은 51.4%로 민간보다 높고, 정원 미달 이유도 이용 대상 아동 부족 16.2%, 부적절한 위치 21.6%로 민간 사업장 보육시설과는 차이를 보였다. 그런데 국가·지자체 사업장 시설 중 임의설치 시설의 정원 충족률은 70%로 의무설치 시설 45.6%에 비하여 높다.

〈표 V-2-8〉 정원수 충족 여부 및 미달 이유

단위: %(개소)

구분	이용 대상 아동 부족	불편한 위치	환경 열악	낮은 부모 만족도	기타	정원 충족됨	계(수)
민간 소계	31.9	15.9	4.4	0.9	7.1	39.8	100.0(113)
의무설치	27.8	13.9	5.6	1.4	9.7	41.7	100.0(72)
임의설치	39.0	19.5	2.4	-	2.4	36.6	100.0(41)
국가 소계	16.2	21.6	2.7	4.1	4.1	51.4	100.0(74)
의무설치	19.3	22.8	3.5	3.5	5.3	45.6	100.0(57)
임의설치	5.9	17.6	-	5.9	-	70.6	100.0(17)
전체	25.7	18.2	3.7	2.1	5.9	44.4	100.0(187)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직장보육시설 시설장 조사」 결과임.

나. 이용 아동

1) 아동규모 및 연령 구성

본 조사에서 아동 규모는 민간 시설이 평균 49명, 국가·지자체 시설이 평균 82명으로 전체 62명으로 다소 높게 산출되었는데, 이는 소규모 시설의 무응답률이 높기

34) 2008년말 현재 평가인증을 받은 직장보육시설은 모두 106개소로 전체 평가인증 보육시설 8,220개소의 1.3%이며 직장보육시설 중에서는 25.6%임.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집계한 2007년 말 보육통계상 직장보육시설 이용 아동의 연령 분포는 영아 41.4%, 유아 58.6%로 나타났다.³⁵⁾ 본 조사 결과³⁶⁾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민간 직장보육시설 영아의 비율이 40.9%로 조사되었다. 의무설치 시설이 43.8%로 민간 임의설치 시설 35.9%보다 높다. 국가·지자체 시설은 의무설치 30.5%, 임의설치 46.2%이다(표 V-2-9 참조).

이러한 직장보육시설의 영아 비율은 전체 보육아동 중 영아 비율인 37.6%에 비하여 다소 높고, 국·공립보육시설 27.6%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치이다.

〈표 V-2-9〉 연령별 현원 수 및 비율

단위: 명, %

구분	현원 수						현원 비율					
	0세	1세	2세	3세	4세이상	계	0세	1세	2세	3세	4세이상	계
민간	1.0	6.0	11.7	14.0	16.2	48.9	2.8	13.9	24.2	27.1	32.0	100.0
의무설치	1.0	7.3	14.3	16.6	17.6	57.2	2.1	15.5	26.2	28.6	27.6	100.0
임의설치	1.0	3.4	6.7	9.1	13.6	33.8	3.9	11.1	20.9	24.3	39.8	100.0
국가	2.3	7.4	24.9	17.6	29.8	82.0	1.5	10.4	22.1	27.5	38.5	100.0
의무설치	2.8	7.8	29.1	19.4	34.4	93.5	1.6	9.2	19.7	28.1	41.4	100.0
임의설치	0.4	6.2	10.5	11.5	14.1	42.7	1.2	14.5	30.5	25.3	28.5	100.0
전체	1.5	6.5	16.9	15.4	21.6	61.9	2.3	12.5	23.5	27.2	34.5	100.0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직장보육시설 시설장 조사」 결과임.

2) 입소 우선순위

〈표 V-2-10〉는 직장보육시설 아동 입소 순위를 나타낸다. 직장보육시설 아동 입소 순위는 시설마다 다른데, 공동 순위를 두는 경우가 많아서 단정 짓기 어렵다.

그러나 조사 결과를 보면 대체로 민간 직장보육시설 우선순위는 부모가 모두 해당 사업장 직원인 아동이 최우선이고 다음이 어머니만 해당 사업장 근로자인 경우, 아버지만 해당 사업장 근로자인 경우이고 어머니나 아버지가 사업장 직원 혹은 비정규 직원인 아동의 순으로 우선순위를 두는 비율이 높다. 다른 사업장 직원이나 지역주민을 입소 우선순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사업장이 각각 56.5%, 65.7%이다. 또한 우선순위에 비정규직 직원을 포함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고 있는 사업장은

35) 0세아 2.2%, 1세아 11.3%, 2세아 27.9%, 3세아 25.8%, 4세아 22.1%, 5세 이상 16.8%임.

36) 조사 시점의 연령으로 3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 보육통계와는 차이가 남.

36.1%이다.³⁷⁾

국가·지자체 직장보육시설을 포함한 전체를 보아도 이러한 경향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표 V-2-10〉 직장보육시설 아동 입소순위

단위: %(개소)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고려하지 않음	계(수)
민간								
부모 모두 사업장 직원	80.6	5.6	0.9	0.9	-	-	12.0	100.0(108)
어머니만 사업장 직원	64.8	28.7	0.9	-	-	-	5.6	100.0(108)
아버지만 사업장 직원	46.3	26.9	18.5	-	-	-	8.3	100.0(108)
어머니나 아버지가 사업장 직원 혹은 비정규 직원	29.6	18.5	2.8	11.1	1.9	-	36.1	100.0(108)
다른 사업장 직원	1.9	15.7	10.2	4.6	11.1	-	56.5	100.0(108)
지역주민	-	7.4	10.2	2.8	2.8	11.1	65.7	100.0(108)
전체								
부모 모두 사업장 직원	81.0	4.5	0.6	0.6	-	-	13.4	100.0(179)
어머니만 사업장 직원	59.8	28.5	1.1	-	-	-	10.6	100.0(179)
아버지만 사업장 직원	48.0	21.8	17.3	0.6	-	-	12.3	100.0(179)
어머니나 아버지가 사업장 직원 혹은 비정규 직원	34.1	17.9	3.9	9.5	1.1	-	33.5	100.0(179)
다른 사업장 직원	1.1	14.0	8.4	3.9	8.4	-	64.2	100.0(179)
지역주민	0.6	7.8	11.7	2.2	2.2	7.8	67.6	100.0(179)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직장보육시설 시설장 조사」 결과임.

2) 부모 특성

직장보육시설 인건비 지원이 시설 이용아동 고용보험 가입 아동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표 V-2-11>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부모의 시설 설치 사업장 직원 여부를 조사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82.2%가 해당 사업장 근로자 자녀로 2007년 근로복지공단 조사 결과 80.8%와 유사한데, 시설 설치 주체 특성별로 차이를 보인다.

민간 직장보육시설은 어머니만 설치 사업장 직원인 경우가 평균 43.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아버지만 설치사업장 직원인 경우 29.8%, 부모가 모두 설치사업장 직원인 경우 8.7%, 부모가 다른 사업장 직원인 경우 12.7%, 지역주민 아동인

37) 각 조건별 응답 분포는 <부표 V-2-2> 참조

경우 4.5%이다. 임의설치 사업장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부모가 모두 설치사업장 직원인 경우는 20.0%로 두드러지게 차이를 보이고, 민간 사업장의 경우 의무설치 사업장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은 아버지만 설치 사업장 근로자인 비율이 높다.

국가·지자체 직장보육시설은 부모가 모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인 비율이 의무설치 시설 17.2%, 임의설치 시설 14.6%로 민간 사업장 보육시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다. 지역사회 아동 비율도 민간이 국가·지자체 직장보육시설이 높다.

〈표 V-2-11〉 직장보육시설 이용 아동의 부모 특성

단위: %(개소)

구분	부모가 모두 설치사업장 직원	어머니만 설치사업장 직원	아버지만 설치사업장 직원	부모가 다른 사업장 직원	지역주민 아동
민간	8.7	43.3	29.8	12.7	4.5
의무설치 ^a	9.8	41.4	36.9	8.3	1.0
임의설치 ^b	7.1	40.7	18.6	20.0	10.6
국가	16.6	41.5	22.6	12.6	8.2
의무설치 ^c	17.2	36.6	26.2	10.7	6.1
임의설치 ^d	14.6	42.0	9.3	15.9	13.7
전체	11.6	39.9	27.3	12.2	5.6
(최대)	(66.7)	(100.0)	(100.0)	(96.9)	(83.1)
(수)	(165)	(166)	(166)	(174)	(175)
F	4.6*	0.3	7.9**	2.5	5.2**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0.01$ 을, *는 $p<0.05$ 를 의미함. 사후검정(Tukey) 결과 부모가 모두 설치사업장 직원은 b와 c, 아버지만 설치사업장 직원은 a와 c, 지역주민 아동은 a와 c, d 집단의 차이가 유의도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직장보육시설 시설장 조사」 결과임.

〈표 V-2-12〉는 직장보육시설 이용자 구분별로 고용보험 가입 비율을 나타낸다. 앞의 〈표 V-2-11〉 내용을 반영하여 민간 사업장 시설이 국가·지자체 시설보다 높고, 의무설치 사업장 시설이 임의설치 사업장 시설보다 높다. 특히 국가·지자체 임의설치 시설 이용자의 고용보험 가입 비율은 60~75% 수준으로 현저하게 낮다.

민간 사업장 시설을 구체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는 부모가 모두 설치사업장 직원은 95.6%가 고용보험 가입자이고, 어머니만 설치 사업장 직원은 92.0%, 아버지만 설치사업장 직원인 경우 94.6%, 부모가 다른 사업장 직원인 경우 87.1%가 고용보험 가입자이다. 민간 임의설치 시설의 경우 아동의 어머니가 직원인 경우 고용보험 가입비율은 85.5%로 의무설치 사업장보다 낮다.

〈표 V-2-12〉 직장보육시설 이용 아동 부모 특성별 고용보험 가입 아동 비율

단위: %(개소)

구분	부모가 모두 설치사업장 직원	어머니만 설치사업장 직원	아버지만 설치사업장 직원	부모가 다른 사업장 직원
민간	95.6	92.0	94.6	87.1
의무설치	94.7	95.7	94.1	85.8
임의설치	98.0	85.5	95.5	88.1
국가	88.9	81.8	88.9	80.0
의무설치	100.0	100.0	100.0	88.9
임의설치	75.0	60.0	66.7	-
전체	94.7	90.7	94.0	85.6
(수)	(73)	(88)	(83)	(45)
F	1.5	3.6*	1.9	1.9

주: *는 통계적 유의도 $\alpha < 0.05$ 를 의미함. 사후검정(Tukey) 결과 a와 c, d 집단의 차이가 유의도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직장보육시설 시설장 조사」 결과임.

이러한 결과는 2007년 근로복지공단이 103개 시설 설치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조사 결과와 유사하다. 이 조사에서는 자사 근로자는 94.9% 타사 근로자는 84.2%가 고용보험 가입자로 조사되었었다.

다. 보육시설 운영 재정

1) 보육료

직장보육시설이 책정한 부모 부담 보육료를 기본 보육료와 추가 비용으로 나누어 산출한 후 이를 합하여 총 부모 부담을 산출하였다.

〈표 V-2-13〉에 제시된 바와 같이 기본 보육료는 0세아 240,900원부터 연령이 높아지면서 점차 낮아져서 만5세아는 124,600원이다. 기본 보육료 이외에 추가 비용은 평균 21,300원인데 이는 연령이 많아지면서 증가하는 경향이다. 기본보육료와 추가 비용을 합한 부모 부담은 0세아 243,000원이고 연령이 높아지면서 점차 낮아져서 만 5세아 154,100원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국·공립보육시설 보육료보다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기업주와 고용보험기금 지원이 부모 부담을 낮추고 있음이다.

시설별 보육료 차이는 크다. 무상보육이 있는가 하면 0세아의 경우 최대 417,000원을 내는 보육시설도 있다. 사업장 유형별로는 연령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관성 있는 경향을 나타내지는 않았다(부표 V-2-3, V-2-4, V-2-5 참조).

〈표 V-2-13〉 아동 1인당 평균 월 보육료 수납액(2008년 5월 기준)

단위: 천원(개소)

구분	기본 보육료		기타 추가 비용		총액		(수)	국·공립시설 보육료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0세아	240.9	125.7	21.3	8.2	243.0	126.3	(55)	372.0
1세아	237.5	97.9	5.5	14.1	241.1	99.5	(151)	327.0
2세아	194.8	79.1	13.1	20.0	205.7	74.0	(173)	270.0
3세아	145.6	61.7	21.3	27.1	166.9	69.0	(177)	185.0
4세아	134.9	56.0	25.3	29.9	159.8	66.4	(163)	167.0
5세아	124.6	59.3	27.5	30.0	154.1	67.9	(107)	167.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직장보육시설 시설장 조사」 결과임.

〈표 V-2-14〉 아동 1인당 평균 보육료(2008년 5월 기준)

단위: 천원(개소)

구분	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금액	(수)	금액	(수)	금액	(수)	금액	(수)	금액	(수)	금액	(수)
민간 소계	240.5	(37)	244.2	(90)	200.2	(105)	150.7	(108)	140.1	(95)	128.3	(57)
의무설치	214.7	(18)	247.1	(59)	205.6	(69)	157.1	(68)	144.7	(60)	137.9	(28)
임의설치	264.9	(19)	238.6	(31)	189.8	(36)	139.7	(40)	132.1	(35)	119.0	(29)
국가 소계	241.8	(18)	227.6	(61)	186.6	(68)	137.7	(69)	127.7	(68)	120.4	(50)
의무설치	259.4	(14)	225.0	(46)	183.8	(51)	135.4	(53)	126.0	(52)	120.6	(44)
임의설치	180.2	(4)	235.7	(15)	194.9	(17)	145.4	(16)	133.0	(16)	119.3	(6)
전체	240.9	(55)	237.5	(151)	194.8	(173)	145.6	(177)	134.9	(163)	124.6	(107)
F	0.9		0.4		0.8		1.4		1.1		0.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직장보육시설 시설장 조사」 결과임.

〈표 V-2-15〉 아동 1인당 평균 총 보육비(기타 수납액 포함): 2008년 5월 기준

단위: 천원(개소)

구분	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금액	(수)	금액	(수)	금액	(수)	금액	(수)	금액	(수)	금액	(수)
민간 소계	241.7	(37)	249.4	(90)	209.7	(105)	169.6	(108)	162.9	(95)	159.6	(57)
의무설치	217.2	(18)	251.4	(59)	214.8	(69)	174.8	(68)	165.1	(60)	168.3	(28)
임의설치	264.9	(19)	245.5	(31)	200.0	(36)	160.7	(40)	159.0	(35)	217.9	(29)
국가 소계	245.7	(18)	228.8	(61)	199.5	(68)	162.7	(69)	155.6	(68)	147.9	(50)
의무설치	260.5	(14)	223.7	(46)	195.6	(51)	160.0	(53)	154.3	(52)	147.9	(44)
임의설치	193.4	(4)	244.3	(15)	211.3	(17)	171.6	(16)	159.9	(16)	148.6	(6)
전체	243.0	(25)	241.1	(151)	205.7	(173)	166.9	(177)	159.8	(163)	171.8	(107)
F	0.7		0.7		0.6		0.6		0.2		0.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직장보육시설 시설장 조사」 결과임.

<표 V-2-14>는 사업장 특성에 따른 연령별 아동 1인당 평균 보육료를 제시한 것이다. 민간 사업장 보육시설에 비해 국가·지자체 사업장에 설치된 보육시설의 보육료가 약간 낮은 경향을 나타내기는 하나, 유의한 차이는 아니다. 의무 및 임의설치 시설의 차이도 연령별로 일관성 있는 양상을 보이지 않는다.

<표 V-2-15>는 월 보육료와 특별활동비 등 기타 수납액을 포함한 총 월 평균 보육비를 나타낸다. 만5세아를 제외하고는 월평균 보육비 또한 민간 직장보육시설과 국가·지자체 직장보육시설 간의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2) 정부 재정 지원

일정한 기준을 맞춘 민간 사업장 직장보육시설에는 노동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노동부 인건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교재교구비와 영아 기본보조금을 지원하고, 노동부 인건비 지원과 무관하게 야간보육이나 장애아통합보육 실시 시 교사 인건비를 지원한다.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지역사회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직장보육시설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도 한다.

먼저 노동부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보육시설은 조사된 민간 직장보육시설 중 87.0%이고 13.0%가 받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원을 안 받는다는 비율은 의무설치 사업장이 9.5%, 임의설치 사업장이 13.0%로 임의설치 사업장에서 인건비 지원을 안 받는다는 비율이 약간 높다(표 V-2-16 참조).

<표 V-2-16> 정부 재정 지원의 도움 정도

단위: %(개소)

구분	지원 받는 비율	지원시 도움되는 정도					(수)
		지원없이 운영 불가	비교적 많은 도움	다소 도움	별 도움 안 됨	전혀 안 됨	
전체	87.0	36.7	35.7	25.5	2.0	-	100.0(98)
민간 의무설치	90.5	27.7	40.0	29.2	3.1	-	100.0(65)
민간 임의설치	80.5	54.5	27.3	18.2	-	-	100.0(33)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직장보육시설 시설장 조사」 결과임.

노동부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지 않는 이유로 50%는 지원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고, 28.6%는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이며 나머지 21.4%는 다른 곳으로부터 지원을 받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표 V-2-17 참조).

〈표 V-2-17〉 정부 재정 지원을 받지 않는 이유

단위: %(개소)

구분	다른 곳에서 인건비 지원 받음	지원 요건 미충족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기타	(수)
전체	21.4	50.0	28.6	-	100.0(14)
민간 의무설치	33.3	33.3	33.3	-	100.0(6)
민간 임의설치	12.5	62.5	25.0	-	100.0(8)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직장보육시설 시설장 조사」 결과임.

다음의 <표 V-2-18>은 조사대상 보육시설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지원받는 보육시설 운영비 항목을 나타낸다. 민간 사업장 보육시설을 중심으로 보면, 교재교구비를 지원받는 비율이 14.1%이고 영아(장애아) 기본보조금 10.9%, 시간연장 보육비 4.3%이다. 민간 사업장 보육시설로 교재교구비나 영아(장애아) 기본보조금 지원 받는 시설은 노동부의 인건비 지원을 받지 않는 시설인데, 임의설치 시설의 경우 21.9%가 교재교구비 지원을 받고 있다. 국가·지자체 사업장 시설은 민간사업장 시설에 비하여 교재교구비나 영아 기본보조금 지원 비율이 낮다.

〈표 V-2-18〉 직장보육시설의 보건복지가족부의 운영비 지원 항목

단위: %(개소)

구분	교재교구비	영아(장애아) 기본보조금	시간연장 보육비	기타	(수)
민간 소계	14.1	10.9	4.3	9.8	(92)
의무설치	10.0	8.3	1.7	11.7	(60)
임의설치	21.9	15.6	9.4	6.3	(32)
국가 소계	5.8	5.8	3.8	3.8	(52)
의무설치	7.9	7.9	5.3	5.3	(38)
임의설치	-	-	-	-	(14)
전체	11.1	9.0	4.2	7.6	(144)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직장보육시설 시설장 조사」 결과임.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보육시설 운영비를 지원받는 경우, 그 지원이 시설 운영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조사하였다. 민간 사업장 시설의 경우 62.9%의 시설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는데, 특히 민간 임의설치 시설에서는 28.6%가 지원 없이 운영이 불가하다고 응답하였다(표 V-2-19 참조).

〈표 V-2-19〉 보건복지가족부 운영비 지원의 도움 정도

단위: %(개소)

구분	전혀 도움 안됨	별로 도움 안됨	다소 도움이 됨	많은 도움이 됨	지원없이 운영 불가	계(수)
민간 소계	14.8	22.2	25.9	14.8	22.2	100.0(27)
의무설치	23.1	23.1	23.1	15.4	15.4	100.0(13)
임의설치	7.1	21.4	28.6	14.3	28.6	100.0(14)
국가 소계	12.5	25.0	37.5	-	25.0	100.0(8)
의무설치	12.5	25.0	37.5	-	25.0	100.0(8)
임의설치	-	-	-	-	-	-
전체	14.3	22.9	28.6	11.4	22.9	100.0(35)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직장보육시설 시설장 조사」 결과임.

〈표 V-2-20〉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항목을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보면, 처우개선비를 지원받는 시설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상해보험 순이다. 민간 직장보육시설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보면 55.9%가 처우개선비를 지원 받고 21.6%가 급간식비를 지원 받는다.

〈표 V-2-20〉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지원 항목

단위: %(개소)

구분	민간			국가			전체
	소계	의무설치	임의설치	소계	의무설치	임의설치	
처우개선비	55.9	55.6	56.4	69.9	66.7	81.3	61.4
환경개선비	0.9	-	2.6	8.2	7.0	12.5	3.8
교재교구비	9.0	8.3	10.3	27.4	33.3	6.3	16.3
급간식비	21.6	23.6	17.9	23.3	28.1	6.3	22.3
시간연장보육비	2.7	1.4	5.1	2.7	3.5	-	2.7
장애아통합보육비	-	-	-	-	-	-	-
상해보험비	4.5	4.2	5.1	13.7	15.8	6.3	8.2
차량운영비	1.8	-	5.1	1.4	1.8	-	1.6
기타	19.8	26.4	7.7	41.1	45.6	25.0	28.3
(수)	(111)	(72)	(39)	(73)	(57)	(16)	(184)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직장보육시설 시설장 조사」 결과임.

그런데 민간 사업장 보육시설보다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업장 보육시설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비율이 더 높다. 특히 기타 항목 비율의 차이가 큰데, 기타 항목으로는 저소득층 보육료, 둘째·셋째아 보육료, 입소료, 정보화기기 및 노후장비 개선

비, 행사운영비, 소독비, 냉난방비 등이 있다.³⁸⁾

3) 운영비 분담

다음은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 분담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표 V-2-21>은 응답자의 응답결과를 기준으로 비용 부담 주체에 따른 운영비 부담 평균 비율을 나타내는데, 전체적으로는 사업주, 부모³⁹⁾, 노동부(민간설치시설)와 보건복지가족부 등 기타(국가·지자체 설치시설) 순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직장보육시설의 경우는 평균 사업주 39.4%, 부모 32.7%, 노동부 23.4%, 기타 4.8%로 나타났다. 사업주 지원 비율은 의무설치 사업장이 43.3%로 임의설치 사업장보다 높다. 사업주와 노동부 고용보험기금 지원을 합하면 의무설치 사업장 65.0%, 임의설치 사업장 59.1%로 전체는 62.8%가 된다.

국가·지자체 직장보육시설은 노동부 인건비 지원이 없으나 사업주가 55.1%를 분담하고, 기타 10.1%로 분담 비율이 높아 부모 분담 비율은 민간과 차이가 없다.

<표 V-2-21> 주체별 운영비 부담 비율

단위: %(개소)

구분	부모	사업주	노동부	복지부, 지방정부
민간 소계	32.7 (80)	39.4 (80)	23.4 (80)	4.8 (80)
의무설치	31.7 (50)	43.3 (50)	21.7 (50)	3.5 (50)
임의설치	34.3 (30)	33.0 (30)	26.1 (30)	7.0 (30)
국가 소계	34.9 (59)	55.1 (59)	- (59)	10.1 (59)
의무설치	35.2 (45)	55.7 (45)	- (45)	12.8 (45)
임의설치	34.1 (14)	55.1 (14)	- (14)	12.8 (14)
전체	33.6 (139)	46.1 (139)	13.4 (139)	7.0 (139)
F/T	0.4	44.3**	7.0**	1.5

주: 1) **는 통계적 유의도 $p < 0.01$ 을 의미함. 사후검정(Tukey) 결과 사업주 지원 비율은 a와 c, b와 c, d 집단간의 차이가 유의도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2) 노동부 이외, 보건복지가족부, 지방정부, 공공단체로부터 지원받는 비용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직장보육시설 시설장 조사」 결과임.

<표 V-2-22>는 실제 금액 조사에 응답한 시설들의 아동 1인당 월 평균 보육소요액을 산출한 것이다. 이를 보면 민간 직장보육시설은 평균 523,000원으로 의무설치 시설이 임의설치 시설에 비하여 6만원 이상 높다. 이 중 부모가 평균 158,000원

38) 지방정부 주요 지원 항목의 유용성은 <부표 V-2-1>에 제시하였음.

39) 부모조사에서 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료는 직장보육시설 조사 결과와는 다소 상이한데, 연령 기준 등이 달라서 비교가 적절하지 않으므로 본문에 제시하지 않음.

을 부담하고 사업주와 노동부가 329,400원을 지원하며, 26,900원을 복지부나 지방정부 등인 지원하는 것이다.

국가·지자체 시설은 1인당 보육비용은 평균 459,600원이며, 임의설치 시설이 의무설치 시설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⁴⁰⁾ 여기는 고용보험기금에 의한 노동부 지원은 없으나 사업주인 국가와 지자체, 그리고 정부 등이 313,200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부모는 민간과 같은 수준의 비용을 부담한다.

그런데 이 금액은 시설의 아동 연령 분포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인 단순한 비교는 무리이다(앞의 표 V-2-9 참조). 사실 민간 의무설치 시설의 영아 비율이 임의설치 시설보다 높다. 국가·지자체 시설은 임의설치 시설이 의무설치 시설보다 높다. 그러나 영아 비율이 가장 높은 시설은 국가·지자체 임의설치 시설인데 1인당 비용은 민간 의무설치 시설이 가장 높아서 상대적인 열악함, 우월함을 유추할 수 있다.

〈표 V-2-22〉 주체별 아동1인당 운영비 부담액

단위: 천원

구분	부모	사업주	노동부	기타	총액
민간	158.7	220.1	119.3	26.9	523.1
의무설치	169.0	236.0	121.5	25.4	546.8
임의설치	142.2	193.6	115.5	29.3	484.5
국가	158.7	271.3	-	41.9	459.6
의무설치	163.7	265.1	-	39.7	445.8
임의설치	140.2	292.0	-	49.6	507.0
전체	158.7	243.1	70.2	33.2	495.2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직장보육시설 시설장 조사」 결과임.

한편, 보육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거나 시설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운영비 추가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사업주와 정부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중앙정부만 부담하거나 사업주, 중앙정부,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사업주만, 부모만 부담하여야 한다는 비율은 미미하다. 민간 설치 시설을 보면 39.1%가 사업주와 중앙정부, 27.8%가 중앙정부라고 응답하였다. 국가·지자체 설치 시설은 민간 시설에 비하여 부모를 지정한 비율이 다소

40) 비용의 분포 비율을 산출하면 앞의 표와 오차가 생긴. 이는 비율 구성에는 응답하고 실제 금액에는 않은 경우가 많아서 분석 대상과 수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높다(표 V-2-23 참조).

〈표 V-2-23〉 운영비 추가 부담 주체에 대한 견해

단위: %(개소)

구분	민간			국가			전체
	소계	의무설치	임의설치	소계	의무설치	임의설치	
사업주	4.3	5.4	2.4	5.6	7.1	-	4.8
중앙정부	27.8	23.0	36.6	16.9	14.3	26.7	23.7
부모	-	-	-	5.6	5.4	6.7	2.2
사업주 + 중앙정부	39.1	35.1	46.3	33.8	37.5	20.0	37.1
사업주 + 부모	3.5	4.1	2.4	5.6	5.4	6.7	4.3
중앙정부 + 부모	3.5	4.1	2.4	5.6	3.6	13.3	4.3
사업주 + 중앙 정부 + 부모	21.7	28.4	9.8	26.8	26.8	26.7	23.7
계(수)	100.0(115)	100.0(74)	100.0(41)	100.0(71)	100.0(56)	100.0(15)	100.0(186)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직장보육시설 시설장 조사」 결과임.

라. 종사자

1) 근무기간

보육시설 종사자 근무기간은 평균 3.1년으로, 일반보육시설 종사자 근무 기간과 크게 다르지 않다(표 V-2-24 참조). 그러나 국·공립보육시설 종사자 근무기간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짧다.

2004년도 전국 보육시설 실태조사에서 교사 전체의 현 시설 근무경력은 2년 11개월이고 국·공립시설 교사 현 시설 평균 근무경력 6년 5개월로 조사되었다(이미화 외, 2005).

〈표 V-2-24〉 현 시설에서 보육교사가 근무하는 평균기간

단위: 년(개소)

구분	민간			국가			전체
	소계	의무설치	임의설치	소계	의무설치	임의설치	
평균	3.0	3.0	2.9	3.3	3.3	3.4	3.1
표준편차	1.6	1.8	1.4	1.6	1.6	1.7	1.6
(수)	(113)	(73)	(40)	(73)	(56)	(17)	(186)

주: $F=0.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직장보육시설 시설장 조사」 결과임.

2) 보육교사 근로 조건

가) 신분

본 조사에서는 종사자 고용안정 측면에서 시설장, 보육교사가 사업장 직원으로서의 대우를 받고 있는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를 보면 사업장 특성별로 차이가 많다(표 V-2-25 참조).

민간 직장보육시설 시설장은 21.9%, 보육교사는 20.4%가 사업장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보장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비율은 의무설치 사업장과 임의설치 사업장의 차이가 커서 임의설치 시설은 5% 미만이고 의무설치 시설은 25% 수준이다. 국가·지자체 시설의 경우는 반대로 의무설치 시설이 5~6%이고 임의설치 시설은 14~15%이다.

〈표 V-2-25〉 직장보육시설 종사자의 사업장 직원 비율

단위: %(개소)

구분	민간			국가			전체
	소계	의무설치	임의설치	소계	의무설치	임의설치	
시설장	21.9	26.8	5.2	5.4	6.3	15.4	19.2
보육교사	20.4	25.0	3.4	4.0	5.9	13.8	17.8
(수)	(113)	(73)	(40)	(73)	(58)	(17)	(188)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직장보육시설 시설장 조사」 결과임.

나) 급여 수준

〈표 V-2-26〉은 시설장과 경력 2년 보육교사의 연 평균 급여인데 민간 직장보육시설의 경우 각각 평균 2616만원, 1702만원이다. 근로복지공단(2007)에서 실시한 직장보육시설 지원사업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월평균 급여가 시설장 220만원, 보육교사 125만원으로 나타난 것과 비교하면 시설장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나, 보육교사의 급여는 다소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차이가 있어서 의무설치 사업장 보육시설 시설장과 교사 급여가 각각 2770만원, 1778만원인데 비하여 임의설치 사업장 시설은 각각 2328만원, 1564만원으로 상대적으로 낮다. 전체적으로 국가·지자체 임의설치 시설이 다소 낮다.

보육사업안내로 정하고 있는 2008년도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을 보면 시설장 10호봉 2544만원, 교사 2호봉 1620만원과 비교해 보면 민간 직장보육시설

시설장과 교사의 급여는 국·공립보육시설과 유사한 수준이라 하겠다. 그러나 보육시설의 대다수가 민간보육시설이므로 일반 보육시설과 비교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는 인식이 많다(표 V-2-27 참조).

〈표 V-2-26〉 직장보육시설 종사자 연봉

단위: 만원(개소)

구분	시설장			경력 2년 보육교사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민간	2616.8	662.1	(101)	1702.6	269.7	(102)
의무설치 ^a	2769.7	628.2	(66)	1778.1	246.5	(66)
임의설치 ^b	2328.4	635.6	(35)	1564.4	258.4	(36)
국가	2672.3	454.1	(69)	1664.5	168.7	(68)
의무설치 ^c	2721.8	431.3	(53)	1680.8	180.8	(51)
임의설치 ^d	2508.4	502.8	(16)	1615.5	98.7	(17)
전체	2639.3	585.8	(170)	1687.4	234.0	(170)
F	5.4**			8.1**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01$ 을 의미함. 사후검정(Tukey) 결과 시설장과 교사 급여 모두 b와

a, c 집단의 차이가 유의도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직장보육시설 시설장 조사」 결과임.

〈표 V-2-27〉 일반시설과 비교하여 직장보육시설 교사들이 느끼는 급여수준

단위: %(개소)

구분	매우 열악	열악한 편	보통	나은 편	매우 나은 편	계(수)
민간	3.5	7.8	33.9	41.7	13.0	100.0(115)
의무설치	4.1	8.1	25.7	47.3	14.9	100.0(74)
임의설치	2.4	7.3	48.8	31.7	9.8	100.0(41)
국가	2.8	6.9	30.6	44.4	15.3	100.0(72)
의무설치	3.6	7.3	32.7	40.0	16.4	100.0(55)
임의설치	-	5.9	23.5	58.8	11.8	100.0(17)
전체	3.2	7.5	32.6	42.8	13.9	100.0(187)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직장보육시설 시설장 조사」 결과임.

다) 근무시간

직장보육시설 보육교사가 평일 8시간 근로시간을 준수하는지를 조사하였다. 대체로 준수한다는 비율은 민간 의무설치 사업장 시설이 47.9%로 높고 임의설치 사업장은

34.2%로 차이를 나타냈다. 국가·지자체 의무설치 시설 35.3%, 임의설치 시설 35.3%이다(표 V-2-28 참조). 즉, 민간 의무설치 시설의 8시간 근무 준수 비율이 가장 높다.

〈표 V-2-28〉 평일 8시간 근무 준수 여부

단위: %(개소)

구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수)
민간	2.6	27.2	27.2	26.3	16.7	100.0(114)
의무설치	1.4	20.5	30.1	31.5	16.4	100.0(73)
임의설치	4.9	39.0	22.0	17.1	17.1	100.0(41)
국가	26.0	32.9	12.3	16.4	12.3	100.0(73)
의무설치	28.6	33.9	10.7	14.3	12.5	100.0(56)
임의설치	17.6	29.4	17.6	23.5	11.8	100.0(17)
전체	11.8	29.4	21.4	22.5	15.0	100.0(187)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직장보육시설 시설장 조사」 결과임.

다른 일반 보육시설과 비교하여 종사자의 8시간 근무 준수에 대해서는 직장보육시설 별로 편차가 적지 않다. 먼저 민간 사업장 보육시설에서는 45.2%가 낮다고 응답하였고 약 20%는 더 열악하다고 응답하였다. 사업장 규모별로 낮다는 응답은 의무설치 시설이 임의설치 시설보다 높다. 8시간 근무 준수 비율과 같은 맥락으로 국가·지자체 의무설치 사업장 보육시설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응답비율이 높다(표 V-2-29 참조).

〈표 V-2-29〉 일반시설과 비교하여 직장보육시설 교사들이 느끼는 근무시간

단위: %(개소)

구분	매우 열악	열악한 편	보통	나은 편	매우 나은 편	(수)
민간	1.7	18.3	34.8	31.3	13.9	100.0(115)
의무설치	2.7	17.6	31.1	32.4	16.2	100.0(74)
임의설치	-	19.5	41.5	29.3	9.8	100.0(41)
국가	12.5	33.3	29.2	16.7	8.3	100.0(72)
의무설치	16.4	40.0	25.5	10.9	7.3	100.0(55)
임의설치	-	11.8	41.2	35.3	11.8	100.0(17)
전체	5.9	24.1	32.6	25.7	11.8	100.0(187)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직장보육시설 시설장 조사」 결과임.

한편 8시간 초과근무 시에 수당을 지급하는가를 조사하였는데, <표 V-2-30>을

보면 민간 사업장 시설의 21.1%의 시설에서는 초과근무를 하여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야간근무를 하고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비율은 민간 임의설치 시설이 29.3%로 의무설치 시설 16.4%보다 높다. 국가·지자체 사업장 보육시설은 의무설치 시설이 26.3%, 임의설치 시설은 11.8%이다.

〈표 V-2-30〉 보육교사 야간, 주말 근무수당 지급 여부

단위: %(개소)

구분	그렇다	아니다	야간근무는 하지 않는다	계(수)	$\chi^2(df)$
민간	51.8	21.1	27.2	100.0(114)	8.5(6)
의무설치	53.4	16.4	30.1	100.0(73)	
임의설치	48.8	29.3	22.0	100.0(41)	
국가	62.2	23.0	14.9	100.0(74)	
의무설치	59.6	26.3	14.0	100.0(57)	
임의설치	70.6	11.8	17.6	100.0(17)	
전체	55.9	21.8	22.3	100.0(18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직장보육시설 시설장 조사」 결과임.

라) 기타 근무조건 일반시설과의 비교

다음 <표 V-2-31>은 직장보육시설장을 대상으로 휴가, 경력인정, 연수기회, 근무 분위기의 네 가지 근무 여건을 일반보육시설과 비교하여 어떠한가를 조사한 결과이다.

민간 사업장 보육시설을 보면 전체적으로 상대적으로 낮다는 응답비율은 최고는 근무분위기 82.6%이고 경력인정은 70.4%, 휴가 63.2%, 연수기회 60.2%의 순으로 대체로 낮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사업장 규모별로는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는데, 휴가를 제외하고는 민간 임의설치 시설에서 긍정적인 응답이 가장 낮다.

한편 국가·지자체 사업장 보육시설은 민간 사업장 시설에 비하여 경력 인정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그 이외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민간 직장시설 교사나 시설장의 약 20%가 사업장 직원이라는 점과 상관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 V-2-31〉 일반시설과 비교하여 직장보육시설 교사들의 평가

단위: %(개소)

구분	매우 열악	열악한 편	보통	나은 편	매우 나은 편	(수)
휴가조건						
민간	4.4	11.4	21.1	35.1	28.1	100.0(115)
의무설치	4.1	6.8	17.6	36.5	35.1	100.0(74)
임의설치	5.0	20.0	27.5	32.5	15.0	100.0(41)
국가	6.9	16.7	33.3	30.6	12.5	100.0(72)
의무설치	7.3	18.2	34.5	29.1	10.9	100.0(55)
임의설치	5.9	11.8	29.4	35.3	17.6	100.0(17)
전체	5.4	13.4	25.8	33.3	22.0	100.0(187)
경력 인정						
민간	4.3	10.4	14.8	28.7	41.7	100.0(115)
의무설치	2.7	12.2	12.2	31.1	41.9	100.0(74)
임의설치	7.3	7.3	19.5	24.4	41.5	100.0(41)
국가	4.2	4.2	18.1	26.4	47.2	100.0(72)
의무설치	3.6	5.5	20.0	25.5	45.5	100.0(55)
임의설치	5.9	-	11.8	29.4	52.9	100.0(17)
전체	4.3	8.0	16.0	27.8	43.9	100.0(187)
연수기회						
민간	7.1	9.7	23.0	36.3	23.9	100.0(113)
의무설치	4.1	9.6	20.5	38.4	27.4	100.0(73)
임의설치	12.5	10.0	27.5	32.5	17.5	100.0(40)
국가	-	4.2	29.2	48.6	18.1	100.0(72)
의무설치	-	5.5	29.1	47.3	18.2	100.0(55)
임의설치	-	-	29.4	52.9	17.6	100.0(17)
전체	4.3	7.6	25.4	41.1	21.6	100.0(185)
근무 분위기						
민간	-	1.7	15.7	50.4	32.2	100.0(115)
의무설치	-	1.4	10.8	54.1	33.8	100.0(73)
임의설치	-	2.4	24.4	43.9	29.3	100.0(40)
국가	-	1.4	15.3	58.3	25.0	100.0(72)
의무설치	-	1.8	16.4	58.2	23.6	100.0(55)
임의설치	-	-	11.8	58.8	29.4	100.0(17)
전체	-	1.6	15.5	53.5	29.4	100.0(185)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직장보육시설 시설장 조사」 결과임.

마. 애로사항

〈표 V-2-32〉는 직장보육시설장이 보육시설을 운영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조사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운영비 지원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30.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시설환경관리, 이용아동 확보의 어려움 순이었다.

민간 사업장 보육시설은 운영비 부족 지원 어려움이 31.3%로 가장 많고 아동 확보 18.8%, 시설환경관리 15.2%의 순이다. 특히 민간 임의설치 시설에서 운영비 지원 요구 비율이 43.6%로 매우 높고 아동 확보도 25.6%로 의무설치 시설 각각 24.7%, 15.1%와 비교하여 많은 차이를 보인다. 국가·지자체 설치 시설운영비 부족, 시설환경 관리, 아동 확보 순으로 민간 사업장 시설과는 좀 다른 경향을 나타냈다.

〈표 V-2-32〉 직장보육시설 운영의 어려움을 1순위로 지정한 비율

단위: %(개소)

구분	민간			국가			전체
	소계	의무설치	임의설치	소계	의무설치	임의설치	
운영비지원 부족	31.3	24.7	43.6	29.2	29.1	29.4	30.4
이용아동 확보	18.8	15.1	25.6	19.4	18.2	23.5	19.0
시설환경관리	15.2	19.2	7.7	26.4	23.6	35.3	19.6
회사와 연계된 운영체계	9.8	11.0	7.7	9.7	10.9	5.9	9.8
부모, 노조의 요구	9.8	12.3	5.1	5.6	7.3	-	8.2
법적·행정적 제약	7.1	6.8	7.7	6.9	7.3	5.9	7.1
프로그램 운영	-	-	-	-	-	-	-
교사확보	3.6	4.1	2.6	1.4	1.8	-	2.7
어려움 없음	4.5	6.8	1.8	-	-	-	3.3
(수)	(112)	(73)	(39)	(72)	(55)	(17)	(184)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직장보육시설 시설장 조사」 결과임.

〈표 V-2-33〉 직장보육시설 운영상 어려움

단위: %(개소)

구분	재정 부담	운영 미숙	아동 부족	책임 부담	인력 채용	확대	대기아	기타	없음	계(수)
설치 주체										
민간	48.6	5.7	17.1	8.1	6.2	2.4	-	4.3	7.6	100.0(210)
국가·지자체	50.0	12.0	8.7	3.3	3.3	1.1	2.2	2.2	17.4	100.0(92)
대학	42.9	-	28.6	-	14.3	-	-	-	14.3	100.0(7)
설치 의무 여부										
의무설치	46.4	8.2	12.7	7.7	5.9	2.7	0.9	4.1	11.4	100.0(220)
임의설치	55.1	5.6	20.2	3.4	4.5	-	-	2.2	9.0	100.0(89)
전체	48.9	7.4	14.9	6.5	5.5	1.9	0.6	3.6	10.7	100.0(309)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직장보육에 관한 사업장 조사」 결과임.

다음 <표 V-2-33>은 사업장 직장보육 담당자가 응답한 직장보육시설 운영상 어려움을 나타내는데, 보육시설장 조사에서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민간 사업장 시설의 경우 재정부담이 48.6%로 단연 우위를 차지하고 그 다음이 해당 아동 부족으로 17.1%가 이를 지적하였다. 의무설치 사업장보다는 임의설치 사업장에서 재정부담과 아동부족을 어려움으로 든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외에 보육시설 운영 미숙, 아동 보육 시 책임 부담, 인력 채용 등을 지정한 비율은 소수이다. 한편 운영의 어려움이 없다는 사업장은 10.7%로, 이는 운영 주체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다. 설치 주체별 특성으로는 대학이 특히 아동부족을 어려움으로 든 비율이 높다.

바. 운영개선 과제

다음 <표 V-2-34>는 직장보육시설 운영 개선을 위한 과제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것이다. 민간 사업장 직장보육시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정부의 운영비 지원 확대가 가장 우선적인 과제라고 응답한 비율이 68.4%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이 사업주의 관심제고 및 지원확대로 13.2%이다. 민간 사업장 규모에 따른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국가·지자체 설치 시설은 민간 사업장 시설에 비하여 정부의 운영비 지원 확대 비율은 낮고 사업주의 관심제고 및 지원확대 비율은 높다.

<표 V-2-34> 직장보육시설 운영 개선을 위한 과제를 1순위로 지정한 비율

단위: %(개소)

구분	민간			국가			전체
	소계	의무 설치	임의 설치	소계	의무 설치	임의 설치	
정부의 운영비 지원 확대	68.4	67.6	70.0	44.6	45.6	41.2	59.0
사업주 관심제고 및 지원확대	13.2	13.5	12.5	31.1	28.1	41.2	20.2
시설환경 개선	7.9	9.5	5.0	17.6	19.3	11.8	11.7
이용 부모의 등하원 지원	4.4	2.7	7.5	4.1	3.5	5.9	4.3
운영시간 연장	1.8	1.4	2.5	-	-	-	1.1
프로그램 개선 및 개발	0.9	-	2.5	2.7	3.5	-	1.6
기타	3.6	2.7	-	-	-	-	1.1
(수)	(114)	(74)	(40)	(74)	(57)	(17)	(188)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직장보육시설 시설장 조사」 결과임.

3. 이용 실태 및 만족도

제3절에서는 직장보육시설 이용자 조사 자료에 기초하여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부모의 일반현황, 만족도 및 요구도를 파악하였다.

가. 이용 일반 현황

1) 아동수 및 연령

직장보육시설 이용 부모 당 이용 아동수를 보면, 민간 직장보육시설의 경우 1명이 이용한다는 비율이 79.5%이고 2명이 이용하는 비율은 20.0%로 평균 1.2명이다.

〈표 V-3-1〉 직장보육시설 이용 자녀수

단위: %(명)

구분	1명	2명	3명	계(수)	평균
민간	79.5	20.0	0.4	100.0(644)	(1.2)
의무설치	81.1	18.7	0.2	100.0(438)	(1.2)
임의설치	75.2	23.8	1.0	100.0(206)	(1.3)
국가	73.8	26.0	0.2	100.0(449)	(1.3)
의무설치	72.8	26.9	0.3	100.0(342)	(1.3)
임의설치	76.6	23.4	-	100.0(107)	(1.2)
전체	76.9	22.7	0.4	100.0(1093)	(1.2)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직장보육시설 이용자 조사」 결과임.

2) 최초 이용 시기 및 이용기간

민간 직장보육시설 최초 이용 시기는 만1세 이후가 88.5%로 다수이고 영영아기는 11.5%이다. 영영아기 이용은 민간 임의설치 시설이 14.4%로 의무설치 시설 이용자 8.6%보다 높다. 국가·지자체 직장보육시설은 민간 직장보육시설에 비하여 이용시기가 다소 늦다(표 V-3-2 참조).

〈표 V-3-3〉은 조사 당시 현 보육시설 이용 기간은 보여준다. 민간 직장보육시설의 약 30%의 아동이 2년 이상 다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임의설치 시설 아동의 이용기간이 다소 길다.

〈표 V-3-4〉는 아동이 36개월이 된 이후에 보육시설을 이용한 경우 36개월 이전에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를 조사한 것이다.

〈표 V-3-2〉 직장보육시설 이용 시작 시기

단위: %(명)

구분	3개월 이전	출산휴가 이후	출산휴가 이후 1세미만	1세이상 2세미만	2세이상 3세미만	3세 이상	계(수)	$\chi^2(df)$
민간	2.4	2.2	6.3	31.5	31.0	26.5	100.0(642)	34.2(15)**
의무설치	2.5	1.1	5.0	35.0	32.5	23.8	100.0(437)	
임의설치	2.4	4.4	7.8	23.4	27.8	34.1	100.0(205)	
국가	1.5	1.5	4.3	29.1	37.3	26.2	100.0(449)	
의무설치	1.5	1.8	3.5	29.8	36.0	27.5	100.0(342)	
임의설치	1.9	0.9	7.5	27.1	42.1	20.6	100.0(107)	
전체	2.1	1.9	5.3	30.4	33.6	26.6	100.0(1091)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0.01$ 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직장보육시설 이용자 조사」 결과임.

〈표 V-3-3〉 현 직장보육시설 이용 기간

단위: %(명)

구분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6개월미만	6개월이상 1년미만	1년이상 2년미만	2년 이상	계(수)	$\chi^2(df)$
민간	1.4	29.4	10.3	31.4	29.5	100.0(640)	18.4(12)
의무설치	1.1	32.4	9.2	31.5	25.7	100.0(435)	
임의설치	2.0	22.9	12.7	31.2	31.2	100.0(205)	
국가	0.2	28.3	7.8	31.6	32.1	100.0(449)	
의무설치	0.3	27.2	7.9	31.0	33.6	100.0(342)	
임의설치	-	31.8	7.5	33.6	27.1	100.0(107)	
전체	0.9	28.9	9.3	31.5	29.4	100.0(1089)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직장보육시설 이용자 조사」 결과임.

〈표 V-3-4〉 36개월 이전에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

단위: %(명)

구분	너무 어려서	거리가 멀어서	대기자	타 사업장 근무	대리양육자 이용	기타	계(수)
민간	44.9	9.0	3.6	12.6	17.4	12.6	100.0(167)
의무설치	45.5	10.9	3.0	5.9	21.8	12.9	100.0(101)
임의설치	43.9	6.1	4.5	22.7	10.6	12.1	100.0(66)
국가	32.5	12.8	9.4	6.8	29.1	9.4	100.0(117)
의무설치	31.6	12.6	10.5	6.3	31.6	7.4	100.0(95)
임의설치	36.4	13.6	4.5	9.1	18.2	18.2	100.0(22)
전체	39.8	10.6	6.0	10.2	22.2	11.3	100.0(284)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직장보육시설 이용자 조사」 결과임.

민간 직장보육시설 이용자는 아이가 너무 어리다는 응답이 44.9%로 가장 많고 17.2%가 대리양육자를 이용하였다고 하였다. 3.6%는 대기상태이었다고 응답하였다. 대리 양육자를 이용한다는 비율은 의무설치 시설이 21.8%이고 임의설치 시설은 10.6%이다.

국가·지자체 직장보육시설 이용자는 아이가 너무 어리다는 응답이 32.5%로 가장 많기는 하지만 대리양육자를 이용하였다는 응답도 29.1%로 높은데, 대리양육자를 이용은 민간 직장보육시설 이용자와 마찬가지로 임의설치보다 의무설치 시설이 월등하게 높다. 이러한 응답은 간접적으로 시설 이용자의 경제적 여건 차이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2) 대기시간

민간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중 보육시설에 입소하기 위하여 대기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은 20.2%이고, 이들 중 4개월 이상을 대기하였다는 응답자 비율은 8.0%이다. 대기하였다는 비율과 대기자의 대기기간이 4개월 이상이라는 비율은 민간 직장보육시설보다 국가 및 지자체가 설치한 직장보육시설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이들 보육시설의 정원 충족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과도 같은 맥락이다(표 V-3-5 참조).

〈표 V-3-5〉 현 보육시설 이용을 위해 대기시간

단위: %(명)

구분	대기하지 않음	1개월 미만	1개월이상 2개월미만	2개월이상 3개월미만	3개월이상 4개월미만	4개월 이상	계(수)
민간	79.8	3.6	3.0	3.4	2.2	8.0	100.0(640)
의무설치	77.3	4.1	3.0	4.1	2.3	9.2	100.0(436)
임의설치	85.3	2.5	2.9	2.0	2.0	5.4	100.0(204)
국가	69.4	5.1	3.3	3.3	2.2	16.5	100.0(448)
의무설치	70.1	5.3	2.9	3.2	2.3	16.1	100.0(341)
임의설치	67.3	4.7	4.7	3.7	1.9	17.8	100.0(107)
전체	75.6	4.2	3.1	3.4	2.2	11.5	100.0(1,088)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직장보육시설 이용자 조사」 결과임.

3) 등하원 시 동반자 및 소요시간

직장보육시설에 오고 갈 때 동반자가 누구인가를 조사하였다. 이는 이용자의 사

업장 근무 특성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그 결과 <표 V-3-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간 직장시설은 근무 모가 과반수 정도로 가장 많고 부가 17.6%이다. 부모가 함께 데리고 온다는 비율도 9.7%이다. 국가·지자체 임의설치 시설도 전체적으로는 민간 직장보육시설 이용자와 유사하다. 그러나 국가·지자체 임의설치 시설은 타 업체 근무 부모와 함께 온다는 비율이 현저하게 높다.

〈표 V-3-6〉 직장보육시설 이용 아동 등원 방법

단위: %(명)

구분	설치사업장 근무 부와 함께	설치사업장 근무 모와 함께	설치사업장 근무 부모 모두 함께	타사업장 근무 부나 모와 함께	부모 외 성인과 함께	혼자 도보 또는 셔틀버스로	계(수)	$\chi^2(df)$
민간	17.6	50.2	9.7	12.2	2.7	7.6	100.0(630)	
의무설치	15.8	47.4	10.0	14.7	2.8	9.3	100.0(430)	
임의설치	21.5	56.0	9.0	7.0	2.5	4.0	100.0(200)	
국가	17.8	50.6	8.5	17.3	3.1	2.7	100.0(445)	
의무설치	20.7	53.3	9.8	11.5	3.6	1.2	100.0(338)	
임의설치	8.4	42.1	4.7	35.5	1.9	7.5	100.0(107)	
전체	17.7	50.3	9.2	14.3	2.9	5.6	100.0(1075)	84.2(15)**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0.01$ 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직장보육시설 이용자 조사」 결과임.

보육시설에 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차량으로 10~30분이 37.9%로 가장 많고, 22.3%는 차량으로 10분 이내가 걸린다고 응답하였다. 사업장별 차이는 거의 없다(표 V-3-7 참조).

〈표 V-3-7〉 직장보육시설 등원 소요 시간

단위: %(명)

구분	도보 10분 이내	도보 10~30분 이내	도보 30분 이상	차량 10분 이내	차량 10~30분 이내	차량 30분~1시 간 이내	차량 1시간 이상	계(수)
민간	18.4	8.6	0.5	21.7	38.2	11.8	0.8	100.0(636)
의무설치	19.5	10.0	0.7	20.0	37.4	11.4	1.2	100.0(431)
임의설치	16.1	5.9	-	25.4	40.0	12.7	-	100.0(205)
국가	16.5	12.2	0.7	23.2	37.4	10.0	-	100.0(449)
의무설치	16.7	13.2	0.3	22.2	37.4	10.2	-	100.0(342)
임의설치	15.9	9.3	1.9	26.2	37.4	9.3	-	100.0(107)
전체	17.6	10.1	0.6	22.3	37.9	11.1	0.5	100.0(1085)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직장보육시설 이용자 조사」 결과임.

4) 평일 이용시간

등원시각과 하원시간으로 산출한 보육시설 평일 하루 이용시간은 평균 9시간 34분으로 조사되었다. 분포를 보면 4시간부터 16시간 이상에 이르기까지 개인 차이가 크다. 국가·지자체 의무설치 시설이 가장 길고 국가·지자체 임의 시설이 가장 짧다(표 V-3-8 참조).

〈표 V-3-8〉 평일 직장보육시설 이용시간

단위: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수)
민간	9시간 29분	1시간 37분	4시간 30분	16시간	(644)
의무설치 ^a	9시간 27분	1시간 41분	4시간 30분	16시간	(438)
임의설치 ^b	9시간 34분	1시간 26분	5시간	13시간	(206)
국가	9시간 41분	1시간 2분	4시간	12시간	(449)
의무설치 ^c	9시간 49분	1시간 1분	4시간	12시간	(342)
임의설치 ^d	9시간 15분	1시간	6시간 40분	11시간 30분	(107)
전체	9시간 34분	1시간 25분	4시간	16시간	(1093)
F			6.4**		

주: **: 통계적 유의도 $p < 0.01$ 을 의미함. 사후검정(Tukey) 결과 c와 a, d 집단의 차이가 유의도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직장보육시설 이용자 조사」 결과임.

나. 직장보육시설 선택 이유

직장보육시설 이용 부모들에게 현재 직장보육시설 선택 이유를 질문하였다. 민간 사업장 보육시설의 가장 큰 선택 이유는 신뢰로 52.1%이고 다음이 등하원의 편리성으로 26.7%이다. 이외 접근성, 프로그램, 시설환경 등은 각각 5% 내외에 불과하다. 이러한 응답은 전 사업장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으로 사업장 주체별, 규모별 차이는 거의 없다(표 V-3-9 참조).

그런데 집 근처에 아이를 보낼만한 보육시설이 있는가 하는 질문에는 이용자 중 약 1/3은 거주지 인근에 보낼만한 보육시설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1/3은 없다고 하였으며 나머지 1/3은 잘 모르겠다고 하였다. 사업장 특성별 차이는 거의 없다(표 V-3-10 참조).

〈표 V-3-9〉 현 직장보육시설 선택 이유

단위: %(명)

구분	등하원 편리	가까움	신뢰	프로 그램	시설· 환경	직장 권유	보육비 저렴	기타	계(수)
민간	26.7	5.5	52.1	4.4	5.0	0.2	5.0	1.2	100.0(641)
의무설치	25.4	5.3	52.6	5.0	5.3	-	5.3	1.1	100.0(437)
임의설치	29.4	5.9	51.0	2.9	4.4	0.5	4.4	1.5	100.0(204)
국가	25.1	2.7	61.7	3.1	3.1	-	3.6	0.7	100.0(447)
의무설치	24.9	2.6	63.0	2.3	2.9	-	3.2	0.9	100.0(341)
임의설치	25.5	2.8	57.5	5.7	3.8	-	4.7	-	100.0(106)
전체	26.0	4.3	56.1	3.9	4.2	0.1	4.4	1.0	100.0(1088)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직장보육시설 이용자 조사」 결과임.

〈표 V-3-10〉 근처에 자녀를 믿고 맡길 만한 보육시설의 유무

단위: %(명)

구분	있음	없음	모름	계(수)	$\chi^2(df)$
민간	35.9	30.3	33.8	100.0(640)	
의무설치	37.5	30.4	32.0	100.0(437)	
임의설치	32.5	30.0	37.4	100.0(203)	
국가	32.1	34.3	33.6	100.0(449)	
의무설치	30.7	33.3	36.0	100.0(342)	
임의설치	36.4	37.4	26.2	100.0(107)	
전체	34.3	32.0	33.7	100.0(1089)	8.2(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직장보육시설 이용자 조사」 결과임.

다. 직장보육시설 이용 만족도

〈표 V-3-11〉은 직장보육시설 이용자 만족도를 보육료, 교사의 질, 프로그램, 이용시간 등하원 방법과 시설 설비 및 환경의 6가지 문항으로 조사한 결과이다. 만족도는 대체로 높다.

구체적으로 보면, 민간 직장시설 이용자는 6가지 항목 중 만족한다는 비율로는 교사의 질에 대한 만족도가 88.3%로 가장 높고, 시설설비 환경 만족 비율이 64.3%로 가장 낮다. 5점 척도를 중심으로 보면 3.8~4.3점 사이에 분포하는데, 6가지 항목 별로 우선순위를 둔다면 교사의 질 만족도가 5점 척도로 4.3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이 이용시간이 4.1점이고, 다음이 프로그램과 보육료 4.0점이며, 등하원 방법과 시설 설비 및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3.8점으로 상대적으로 낮다.

직장보육시설 전체로 보아도 이러한 순서와 경향을 그대로, 민간과 국가·지자체 시설간의 차이가 거의 없다.

〈표 V-3-11〉 직장보육 관련 만족도 총괄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5점 척도
민간							
보육료	0.9	3.3	22.2	44.1	29.4	100.0(639)	4.0(0.9)
교사의 질	0.6	0.8	10.3	47.2	41.1	100.0(640)	4.3(0.7)
보육 프로그램	0.8	1.6	20.2	51.4	26.1	100.0(640)	4.0(0.8)
이용시간	0.9	1.9	13.6	53.4	30.2	100.0(640)	4.1(0.8)
등하원 방법	2.2	6.7	24.7	46.3	20.2	100.0(640)	3.8(0.9)
시설 설비와 환경	1.7	9.5	24.4	39.8	24.5	100.0(640)	3.8(1.0)
전체							
보육료	0.7	2.7	19.5	44.3	32.8	100.0(1087)	4.1(0.8)
교사의 질	0.5	0.5	9.1	46.5	43.5	100.0(1089)	4.3(0.7)
보육 프로그램	0.6	1.5	17.1	51.9	29.0	100.0(1088)	4.1(0.8)
이용시간	0.6	1.5	12.7	51.4	33.8	100.0(1087)	4.2(0.7)
등하원 방법	1.7	6.3	24.1	47.4	20.4	100.0(1088)	3.8(0.9)
시설 설비와 환경	1.4	8.8	24.0	40.7	25.2	100.0(1089)	3.8(1.0)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직장보육시설 이용자 조사」 결과임.

〈표 V-3-12〉 사업장 특성별 직장보육 만족도 5점 척도

단위: 점

구분	보육료	교사의 질	보육 프로그램	이용시간	등하원방법	시설설비와 환경
민간	4.0(0.9)	4.3(0.7)	4.0(0.8)	4.1(0.8)	3.8(0.9)	3.8(1.0)
의무설치 ^a	4.0(0.8)	4.3(0.7)	4.0(0.7)	4.1(0.8)	3.7(0.9)	3.7(1.0)
임의설치 ^b	4.0(0.9)	4.3(0.7)	4.1(0.8)	4.2(0.8)	3.9(1.0)	3.9(1.0)
국가	4.2(0.8)	4.4(0.6)	4.2(0.7)	4.3(0.7)	3.8(0.9)	3.8(0.9)
의무설치 ^c	4.2(0.8)	4.4(0.6)	4.2(0.7)	4.3(0.7)	3.8(0.9)	3.8(0.9)
임의설치 ^d	4.2(0.9)	4.4(0.6)	4.2(0.7)	4.2(0.8)	3.8(0.9)	4.0(0.9)
전체	4.1(0.8)	4.3(0.7)	4.1(0.8)	4.2(0.7)	3.8(0.9)	3.8(1.0)
F	4.7**	2.7*	4.9**	5.2**	2.4	3.4*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0.01$ 을, * $p<0.05$ 를 의미함. 사후검정(Tukey) 결과 보육료는 c와 a, b 집단 차이, 보육프로그램은 a와 c, d 집단 차이, 이용시간은 a와 c 집단 차이, 시설설비와 환경은 a와 d 집단의 차이가 유의도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교사의 질은 사후검정 결과 집단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직장보육시설 이용자 조사」 결과임.

〈표 V-3-12〉는 사업장 특성별 보육시설 만족도 차이를 나타낸다. 6가지 항목

중 등하원 방법을 제외하고는 집단별 5점 척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그 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국가·지자체 보육시설 이용자의 만족 정도가 민간 사업장 보육시설 이용자보다 높다. 보육료와 교사의 질,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국가·지자체 보육시설에서 높고, 이용시간은 국가 의무설치 시설 근로자가 가장 높으며, 시설설비와 환경은 국가·지자체 의무설치 시설에서 가장 높다.⁴¹⁾

〈표 V-3-13〉 설립유형별 보육시설 이용 만족도

단위: 점(개소)

구분	4점 척도 평균	표준편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계(수)
			하한값	상한값	
전체	2.9	0.4	2.9	2.9	(626)
직장	3.0	0.5	2.7	3.2	(19)
국·공립	2.9	0.4	2.9	3.0	(120)
법인	3.0	0.4	2.9	3.1	(50)
법인외	3.0	0.3	2.9	3.1	(50)
민간개인	2.8	0.4	2.8	2.9	(328)
가정	2.9	0.4	2.8	3.0	(59)
F			3.1*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0.05$ 를 의미함.

자료: 한국개발연구원(2007). 「2007년도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대국민 만족도 조사」 원자료

대체로 직장보육시설 이용자의 만족도는 민간보육시설에 비하여 높고 국·공립보육시설 수준이다. <표 V-3-13>은 2007년 KDI에서 실시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취업모의 만족도 조사 결과로, 원장, 교사, 주변환경, 시설설비, 교재교구 및 장비, 내부분위기, 비용, 건강관리, 영양관리, 안전관리, 교육내용, 부모참여, 부모교육 및 상담에 대한 만족도를 4점 척도로 응답한 평균 점수이다.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이용 만족도 점수는 3.0점으로 국·공립, 민간개인, 가정 보육시설 이용 만족도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다음으로, 현재 직장보육시설 이용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조사한 결과이다. 민간 직장보육시설의 경우 첫째가 우수한 보육시설 종사자로 40%이며 두 번째 요인이 시간적 편리함으로 26.2%로 조사되었고, 그 다음이 낮은 교사대 아동 비율 12.9%, 이외 건강, 위생적 측면, 물리적 환경 등이다. 사업장 규모별 차이는 의무설치 사업장에 교사대 아동비율을 지정한 비율이 높다. 국가·지자체 직장보육시설은 민간 사업장 시설에 비하여 건강 위생을 지정한 비율이 다소 높다(표 V-3-14 참조).

41) 각 항목별 만족도 응답 분포는 <부표 V-3-1> 참조

〈표 V-3-14〉 현 직장 보육시설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점

단위: %(명)

구분	종사자	시설 설비	건강· 위생	프로 그램	교사당 아동수	운영 시간	이용 시간	기타	계(수)
민간	40.0	6.3	8.8	2.4	12.9	3.0	26.2	0.5	100.0(637)
의무설치	39.6	6.7	8.1	2.5	15.0	2.3	25.1	0.7	100.0(434)
임의설치	40.9	5.4	10.3	2.0	8.4	4.4	28.6	-	100.0(203)
국가	42.1	11.4	12.5	2.2	8.1	2.0	21.3	0.4	100.0(447)
의무설치	40.2	13.2	12.3	2.6	7.0	1.5	22.6	0.6	100.0(341)
임의설치	48.1	5.7	13.2	0.9	11.3	3.8	17.0	-	100.0(106)
전체	40.9	8.4	10.3	2.3	10.9	2.6	24.2	0.5	100.0(1084)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직장보육시설 이용자 조사」 결과임.

다. 요구 및 개선사항

직장보육시설 이용 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표 V-3-15>에 따르면 민간 직장보육시설 이용자의 45.2%가 별 어려움이 없다고 하였고 55.8%가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있는 경우는 사교육의 어려움, 아이와 함께 출퇴근, 아이의 귀가 시간에 맞추어야 하는데서 오는 상사 눈치보기 어려움을 지적하였다.

〈표 V-3-15〉 현 보육시설 이용시 가장 어려운 점

단위: %(명)

구분	어려움 없음	자녀와 출근 어려움	퇴근 시간 불규칙	사교육	긴 대기 기간	아동귀가 시간에 상사눈치	기타	계(수)	$\chi^2(df)$
민간	45.2	13.3	9.3	14.8	2.7	10.6	4.0	100.0(622)	56.4(18)**
의무설치	40.8	13.4	10.6	13.8	3.8	12.7	4.9	100.0(426)	
임의설치	54.6	13.3	6.6	16.8	0.5	6.1	2.0	100.0(196)	
국가	36.1	13.6	10.0	15.2	5.0	14.5	5.7	100.0(431)	
의무설치	34.4	14.8	10.7	16.0	3.9	16.3	3.9	100.0(327)	
임의설치	41.3	9.6	7.7	12.5	8.7	8.7	11.5	100.0(104)	
전체	41.4	13.5	9.6	15.0	3.7	12.2	4.7	100.0(1063)	

주: **: 통계적 유의도 $p<0.01$ 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직장보육시설 이용자 조사」 결과임.

사업장 규모별로는 민간 임의설치 사업장에서 어려움이 없다는 비율이 높고 의무설치 시설은 아이의 귀가 시간에 맞추어야 하는데서 오는 상사 눈치보기, 퇴근 시

간 불규칙을 지적한 비율이 높다. 국가·지자체 직장보육시설은 민간 직장보육시설에 비하여 어려움이 없다는 비율이 대체로 낮고 아이의 귀가 시간에 맞추어야 하는데서 오는 상사 눈치보기를 지적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표 V-3-16>은 직장보육시설에서 가장 개선되기를 바라는 점을 조사한 결과이다. 민간 직장보육시설 이용자의 가장 큰 요구 사항은 시설 증개축으로 응답자의 25.9%가 이를 희망하였으며 다음이 셔틀버스의 개선과 시설 및 교재교구 개선으로 각각 15.6%, 15.2%가 희망한다고 응답하였고, 다음은 정원 확충으로 9.3%가 희망하였다. 이외 소수이지만 운영시간 연장, 프로그램 개선, 종사자 증원 건강과 섭식, 보육료 인하 등에 대한 요구도 있다.

<표 V-3-16> 직장보육시설에서 가장 개선되기를 바라는 점

단위: %(명)

구분	셔틀버스	운영시간 연장	프로그램 개선	증·개축	종사자 증원	시설, 교재·교구	건강·섭식	보육료 인하	정원 확충	계(수)	$\chi^2(df)$
민간	15.6	7.7	6.6	25.9	6.8	15.2	5.5	7.3	9.3	100.0(632)	58.1(24)**
의무설치	15.3	8.4	7.0	27.4	7.4	13.2	5.1	5.6	10.7	100.0(426)	
임의설치	16.3	6.4	5.9	22.8	5.4	19.3	6.4	10.9	6.4	100.0(196)	
국가	13.6	6.1	5.9	34.5	8.8	10.4	7.5	2.7	10.4	100.0(441)	
의무설치	15.0	6.5	6.5	34.7	7.6	9.7	7.9	2.6	7.9	100.0(335)	
임의설치	8.4	4.7	3.7	31.8	12.1	12.1	5.6	2.8	17.8	100.0(106)	
전체	14.7	7.0	6.3	29.3	7.6	13.1	6.3	5.4	9.7	100.0(1076)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0.01$ 을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직장보육시설 이용자 조사」 결과임.

민간 사업장 규모별로는 의무설치 시설에서는 증개축, 정원확충 요구 비율이 높고 임의설치 시설에서는 시설, 교재교구, 보육료 인하 희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민간 임의설치 시설에서 교재교구 개선 및 보육료 인하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은 것은 이는 시설 운영의 열악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국가·지자체 직장보육시설 이용자는 증개축과 정원 확충을 희망하는 비율이 민간 직장보육시설에 비하여 높다.

<표 V-3-17>에 따르면 민간 직장보육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 부모가 직장에 바라는 바는 시설에 대한 투자 32.7%, 보육료 지원 강화 23.0%, 시설 환경 개선 17.6%, 이용 편의를 고려한 직장 환경 조성 14.1%의 순이다. 특히 민간 임의설치 사업장에서는 시설환경 개선 요구 비율은 낮은 반면에 보육료를 더 지원하여 달라는 요구가 두드러지게 높다. 국가·지자체 직장시설은 두드러지는 차이는 아니지만

보육료 인하요구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고 시설에 대한 투자 요구가 비교적 높다.

〈표 V-3-17〉 현 직장보육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직장에 바라는 점

단위: %(명)

구분	이용편의를 고려한 직장 환경 조성	더 많은 보육료 지원	직장일정과 보육시설 행사 일정 조율	시설 환경 개선	시설에 대한 더 많은 투자	기타	계(수)	$\chi^2(df)$
민간	14.1	23.0	5.7	17.6	32.7	6.9	100.0(612)	27.5(15)*
의무설치	14.8	21.6	4.7	20.5	31.8	6.6	100.0(425)	
임의설치	12.3	26.2	8.0	11.2	34.8	7.5	100.0(187)	
국가	14.5	19.6	4.4	19.9	36.0	5.5	100.0(433)	
의무설치	16.3	19.0	4.5	20.5	36.1	3.6	100.0(332)	
임의설치	8.9	21.8	4.0	17.8	35.6	11.9	100.0(101)	
전체	14.3	21.6	5.2	18.6	34.1	6.3	100.0(1045)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0.05$ 를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직장보육시설 이용자 조사」 결과임.

라. 계속 이용 의향

〈표 V-3-18〉은 현재 이용하는 직장보육시설을 언제까지 이용할 것인지를 조사한 결과로 민간 직장보육시설 이용자의 63.4%가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계속 이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29.9%는 조만간 유치원으로 옮길 계획이라고 하였으며, 타 보육시설로 옮기겠다는 응답은 5%이었다. 민간 의무설치 시설 이용자가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계속 이용하겠다는 의사는 낮고 유치원으로 옮길 예정이라는 응답은 34.1%로 높다. 국가·지자체 직장보육시설 이용자는 민간 직장보육시설 이용자에 비하여 유치원으로 옮길 계획이라는 22.6%로 응답은 낮는데 의무설치 시설이 19.9%인데 비하여 임의설치 시설은 31.1%로 차이가 많다. 이러한 결과는 보육시설 의무설치 사업장이 대기업 중심이라는 점, 보육시설보다 유치원 이용자의 소득계층이 높다는 점 등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표 V-3-19〉는 한 자녀가 이용하는 경우만을 선택하여 연령별 차이를 본 것이다. 이를 보면 민간 직장시설의 경우 1세 때는 집에서 돌볼 예정이라는 비율이 25.0%로 높고 2~4세는 35~40%가 유치원으로의 변경을 생각하며 그 이후에 다시 비율이 줄어든다.

〈표 V-3-18〉 시설 특성별 향후 현 직장보육시설 이용 의향

단위: %(명)

구분	초등학교 입학전까지	타 시설 이용 계획	유치원 이용 예정	학원 등 이용 예정	집에서 돌볼 예정	계(수)
민간	63.4	5.1	29.9	0.9	0.6	100.0(632)
의무설치	58.9	5.8	34.1	0.9	0.2	100.0(431)
임의설치	73.1	3.5	20.9	1.0	1.5	100.0(201)
국가	72.9	3.6	22.6	0.9	-	100.0(443)
의무설치	75.7	3.3	19.9	1.2	-	100.0(337)
임의설치	64.2	4.7	31.1	-	-	100.0(106)
전체	67.3	4.5	26.9	0.9	0.4	100.0(1075)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직장보육시설 이용자 조사」 결과임.

〈표 V-3-19〉 아동 연령별 향후 현 직장보육시설 이용 의향(한 자녀 이용)

단위: %(명)

구분	초등학교 입학전까지	타 시설 이용 계획	유치원 이용 예정	학원 등 이용 예정	집에서 돌볼 예정	계(수)
민간						
1세	62.5	-	12.5	-	25.0	100.0(8)
2세	51.6	9.7	35.5	3.2	-	100.0(31)
3세	54.3	8.6	35.8	-	1.2	100.0(81)
4세	47.7	9.4	41.4	0.8	0.8	100.0(128)
5세	61.5	6.6	31.1	0.8	-	100.0(122)
6세 이상	81.5	0.8	16.0	1.7	-	100.0(119)
국가						
1세	76.9	-	7.7	-	15.4	100.0(13)
2세	53.8	7.7	33.3	5.1	-	100.0(39)
3세	59.6	9.9	29.8	-	0.7	100.0(141)
4세	54.4	6.6	38.1	0.4	0.4	100.0(226)
5세	64.0	5.6	29.4	0.9	-	100.0(214)
6세 이상	80.5	2.1	16.2	1.2	-	100.0(241)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직장보육시설 이용자 조사」 결과임.

이러한 해석은 직장보육시설을 그만 두려는 이유가 무엇인지에서도 나타난다. <표 V-3-20>에 제시된 결과를 보면 민간 직장보육시설 이용자의 경우 질 좋은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5.8%이고 45.9%가 기타⁴²⁾ 이유를 들었

42) 기타는 인지발달, 학습, 특별활동, 초등학교준비 등의 욕구로 이해됨.

다. 국가·지자체 직장보육시설 이용자는 질 좋은 서비스를 희망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0.4%인데 임의설치 시설 이용자는 34.2%로 민간과 같은 수준이고 의무설치 시설이 57.8%로 두드러지게 높다.

〈표 V-3-20〉 현 직장보육시설을 그만두려는 이유

단위: %(명)

구분	직장 이사· 이직	이용 가능시간 부적절	거리가 멀어서	질 좋은 서비스 이용희망	직장 일에 방해	아이가 싫어해 서	기타	계(수)
민간	4.3	0.4	6.0	35.8	0.9	0.4	52.2	100.0(232)
의무설치	1.7	0.6	5.1	36.4	0.6	-	55.7	100.0(176)
임의설치	12.5	-	8.9	33.9	1.8	1.8	41.1	100.0(56)
국가	5.8	0.8	8.3	50.4	0.8	-	33.9	100.0(121)
의무설치	4.8	1.2	8.4	57.8	1.2	-	26.5	100.0(83)
임의설치	7.9	-	7.9	34.2	-	-	50.0	100.0(38)
전체	4.8	0.6	6.8	40.8	0.8	0.3	45.9	100.0(353)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직장보육시설 이용자 조사」 결과임.

〈표 V-3-21〉 연령별 현 직장보육시설을 그만두려는 이유(한 자녀 이용)

단위: %(명)

구분	이사· 이직	이용 시간 부적절	거리가 멀어서	질 좋은 서비스 이용	업무에 방해	아이가 싫어해서	기타	계(수)
민간	5.2	0.5	6.3	37.0	1.0	0.5	49.5	100.0(192)
1세	-	-	-	-	-	-	100.0	100.0(3)
2세	-	-	-	46.7	-	-	53.3	100.0(15)
3세	8.1	-	5.4	37.8	-	-	48.6	100.0(37)
4세	1.5	1.5	4.5	38.8	-	-	53.7	100.0(67)
5세	10.4	-	8.3	39.6	2.1	2.1	37.5	100.0(48)
6세 이상	4.5	-	13.6	22.7	4.5	-	54.5	100.0(22)
전체	4.9	0.7	7.2	40.4	1.0	0.3	45.6	100.0(307)
1세	-	-	-	-	-	-	100.0	100.0(3)
2세	-	-	5.6	44.4	-	-	50.0	100.0(18)
3세	7.0	-	7.0	43.9	1.8	-	40.4	100.0(57)
4세	3.9	1.9	6.8	42.7	-	-	44.7	100.0(103)
5세	7.6	-	6.3	40.5	1.3	1.3	43.0	100.0(79)
6세 이상	2.1	-	10.6	31.9	2.1	-	53.2	100.0(47)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직장보육시설 이용자 조사」 결과임.

아동연령별로 보면 전 연령에 걸쳐서 질 좋은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현 직장보육시설을 그만 두려는 공통된 이유이다(표 V-3-21 참조). 직장보육시설 설치 사업장 근로자가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의 일부도 이러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4. 직장보육시설 이용의 효과

가. 포괄적 근로자 일·가정 양립 지원 효과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에 대한 직장보육시설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직장 선택 시 직장보육시설이 기업의 장점으로 인식 여부, 직장보육시설이 일과 가정 양립에 도움 주는 정도, 직장보육시설 이용 후 변화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다음에 제시된 <표 V-4-1>은 직장보육시설이 직장 선택 시에 기업이 갖는 하나의 장점으로 작용하였는지를 조사한 것이다. 이 결과에 의하면 비해당자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응답자가 직장보육시설이 직장 선택 시 장점으로 작용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표 V-4-1> 현 직장 선택 시 직장보육시설의 영향

단위: %(명)

구분	장점으로 작용	별 작용 못함	해당 없음	계(수)	$\chi^2(df)$
민간	72.1	1.6	26.3	100.0(634)	
의무설치	69.1	1.6	29.3	100.0(433)	
임의설치	78.6	1.5	19.9	100.0(201)	
국가	66.6	2.2	31.2	100.0(446)	
의무설치	67.3	1.8	31.0	100.0(339)	
임의설치	64.5	3.7	31.8	100.0(107)	
전체	69.8	1.9	28.3	100.0(1080)	11.8(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직장보육시설 이용자 조사」 결과임.

다음은 직장보육시설의 이용이 육아와 직장 근무 병행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이를 보면 민간 직장시설 응답자의 75.2%가 직장보육시설의 이용이 육아와 직장 근무 병행에 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고 17.5%가 조금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응답 비율은 국가·지자체 직장시설에도 거의 유사하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표 V-4-2 참조).

〈표 V-4-2〉 직장보육시설의 육아와 직장근무 병행에 대한 도움 여부

단위: %(명)

구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음	보통	조금 도움이 됨	큰 도움이 됨	계(수)
민간	0.3	0.5	6.5	17.5	75.2	100.0(633)
의무설치	0.2	0.7	6.5	17.9	74.7	100.0(431)
임의설치	0.5	-	6.4	16.8	76.2	100.0(202)
국가	0.5	0.2	6.1	16.0	77.3	100.0(443)
의무설치	0.6	0.3	6.2	15.3	77.6	100.0(339)
임의설치	-	-	5.8	18.3	76.0	100.0(104)
전체	0.4	0.4	6.3	16.9	76.0	100.0(1076)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직장보육시설 이용자 조사」 결과임.

〈표 V-4-3〉은 직장보육시설 이용 이후의 근로자의 긍정적 변화를 아이 안전 안도감, 환경 보육에 대한 만족감, 자녀와의 긍정적 관계, 직장에 대한 애사심, 업무 몰입도, 직무만족도 6가지 문항으로 조사한 결과이다. 이 표를 보면 전반적으로 아동보육이나 직장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아동 보육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가 직장에 대한 근로자의 변화보다 더 큼을 알 수 있다.

〈표 V-4-3〉 직장보육시설 이용 후 변화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낮아짐	다소 낮아짐	변화 없음	다소 높아짐	매우 높아짐	계(수)	5점 척도
민간							
아이 안전 안도감	0.5	3.0	11.2	52.2	33.1	100.0(632)	4.1(0.8)
환경 보육에 대한 만족감	0.2	2.9	13.8	50.1	33.1	100.0(632)	4.1(0.8)
자녀와의 긍정적 관계	-	2.1	13.9	55.0	29.0	100.0(632)	4.1(0.7)
직장에 대한 애사심	0.2	1.0	28.1	50.5	20.3	100.0(632)	3.9(0.7)
업무 몰입도	0.2	1.3	22.8	50.4	25.4	100.0(632)	4.0(0.7)
직무만족도	0.2	1.0	31.4	47.0	20.5	100.0(632)	3.9(0.7)
전체							
아이 안전 안도감	0.4	2.7	10.7	51.9	34.3	100.0(1078)	4.2(0.8)
환경 보육에 대한 만족감	0.1	2.7	12.7	51.4	33.0	100.0(1075)	4.2(0.7)
자녀와의 긍정적 관계	-	1.3	14.1	56.8	27.8	100.0(1069)	4.1(0.7)
직장에 대한 애사심	0.2	0.8	29.8	50.4	18.9	100.0(1065)	3.9(0.7)
업무 몰입도	0.2	1.4	21.4	52.5	24.6	100.0(1067)	4.0(0.7)
직무만족도	0.2	1.0	30.1	49.0	19.6	100.0(1065)	3.9(0.7)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직장보육시설 이용자 조사」 결과임.

민간 직장보육시설 이용자 중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비율을 보면, 아동과 보육에 관해서는 자녀의 안전에 대한 안도감 85.3%, 우수한 보육환경에 대한 만족감 83.2%, 자녀와의 긍정적 관계 84.0%로 모두 85% 내외의 비율을 나타낸 데 비하여 직장이나 업무와 관련된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는 비율은 애사심 70.8%, 업무 몰입도 75.8%, 직무만족도 67.5%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국가·지자체 보육시설을 포함한 전체 직장보육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살펴본 경우도 민간 직장보육시설 이용자의 응답 분포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 설치 주체 간에 뚜렷한 차이가 없다.

한편, 직장보육시설 이용 후 변화 정도를 5점 척도로 환산한 결과를 살펴보면 직장에 대한 애사심과 직무만족도가 각각 3.9점으로 최저 점수를 나타냈고, 최고 점수는 안전에 대한 안도감과 우수한 보육환경에 대한 만족감으로 4.2점이다(표 V-4-4 참조).⁴³⁾

직장보육시설 이용 후의 긍정적 변화가 있다는 비율은 의무설치 사업장 여부나 민간, 국가·지자체 등 주체 등 사업장 특성별 차이가 거의 없이 3.8~4.2점 사이에 분포하여서 사업장 특성에 관계없이 대체로 공통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를 지적한다면, 통계적 유의성은 없으나 전반적으로 민간 임의설치 사업장 시설 이용자가 자녀와의 긍정적 관계, 직장에 대한 애사심, 업무 몰입도, 직무만족도 등에서 5점 척도 점수가 가장 높아, 근로자들이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4-4〉 직장보육시설 이용 후 변화 5점 척도

단위: 점

구분	안전에 대한 안도감	환경에 대한 만족감	자녀와의 긍정적 관계	직장에 대한 애사심	업무 몰입도	직무 만족도
민간	4.1(0.8)	4.1(0.8)	4.1(0.7)	3.9(0.7)	4.0(0.7)	3.9(0.7)
의무설치	4.1(0.7)	4.1(0.8)	4.1(0.7)	3.9(0.7)	4.0(0.7)	3.8(0.7)
임의설치	4.2(0.8)	4.2(0.7)	4.2(0.7)	4.0(0.8)	4.1(0.8)	4.0(0.8)
국가	4.2(0.7)	4.2(0.7)	4.1(0.6)	3.8(0.7)	4.0(0.7)	3.9(0.7)
의무설치	4.2(0.7)	4.2(0.7)	4.1(0.6)	3.8(0.7)	4.0(0.7)	3.9(0.7)
임의설치	4.2(0.7)	4.2(0.7)	4.1(0.6)	3.9(0.7)	4.1(0.7)	3.9(0.7)
전체	4.2(0.8)	4.2(0.7)	4.1(0.7)	3.9(0.7)	4.0(0.7)	3.9(0.7)
F	1.9	0.7	0.7	1.5	1.3	1.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직장보육시설 이용자 조사」 결과임.

43) 각 항목별 만족도 응답 분포는 <부표 V-4-1> 참조

나. 여성고용 촉진 및 생산성 제고 효과

다음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사업장에서 나타나는 효과를 직장보육시설 이용부모들이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알아보았다. 조사된 문항은 두 가지로 양육부담 완화로 인한 여성 근로자 고용 촉진 효과와 직원의 근무만족도와 직무 몰입도 향상으로 인한 생산성 증진이다.

<표 V-4-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여성고용촉진은 민간 직장보육시설 이용자는 약 1/3은 효과가 크다고 인식하고 있고, 약 80%의 응답자가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국가·지자체 직장보육시설 이용자도 이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모두 5점 평균으로는 4.1점 수준이다.

〈표 V-4-5〉 직장보육시설이 사업주에게 미치는 효과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없음	거의 없음	보통	비교적 큼	매우 큼	계(수)	5점 척도
여성 고용 촉진							
민간	1.6	1.8	16.6	46.7	33.3	100.0(621)	4.1(0.8)
의무설치	1.4	2.3	16.8	46.0	33.4	100.0(428)	4.1(0.8)
임의설치	2.1	0.5	16.1	48.2	33.2	100.0(193)	4.1(0.8)
국가	0.9	2.9	14.2	46.3	35.7	100.0(443)	4.1(0.8)
의무설치	0.9	2.4	16.3	46.2	34.3	100.0(338)	4.1(0.8)
임의설치	1.0	4.8	7.6	46.7	40.0	100.0(105)	4.2(0.8)
전체	1.3	2.3	15.6	46.5	34.3	100.0(1064)	4.1(0.8)
F							0.6
생산성 향상							
민간	0.6	1.3	19.6	50.2	28.3	100.0(623)	4.0(0.8)
의무설치	0.5	1.2	20.0	49.0	29.4	100.0(429)	4.1(0.8)
임의설치	1.0	1.5	18.6	53.1	25.8	100.0(194)	4.0(0.8)
국가	-	0.7	11.9	45.4	42.0	100.0(443)	4.2(0.7)
의무설치	-	1.5	16.6	49.4	32.5	100.0(338)	4.1(0.7)
임의설치	-	1.9	13.3	41.0	43.8	100.0(105)	4.3(0.8)
전체	0.4	1.4	18.0	49.1	31.1	100.0(1066)	4.1(0.8)
F							3.2*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05$ 를 의미함. 사후검정(Tukey) 결과 d와 a, b 집단간의 차이가 유의도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직장보육시설 이용자 조사」 결과임.

다음으로 생산성 향상에 대한 효과를 보면, 민간 직장보육시설 이용자는 약 30%는 효과가 크다고 인식하고 있고, 약 88%의 응답자가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5점 평균으로 4.0점이다. 국가·지자체 시설 이용자는 평균 4.2점으로

민간에 비하여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특히 국가·지자체 임의설치 시설 이용자가 4.3점으로 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생산성 향상에 대한 집단 간 응답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다.

다. 아동에 미치는 효과

직장보육시설이 안정된 보육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아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민간 직장보육시설 이용자의 약 83.3%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 역시 사업장 규모별에 관계없이 모두 4.2점으로 차이는 거의 없다. 국가·지자체 직장보육시설 이용자는 평균 4.3점으로 민간 직장보육시설 이용자 점수보다는 높은 경향이 있다. 특히 국가·지자체 임의설치 시설 이용자의 경우 4.4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그러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다(표 V-4-6 참조).

〈표 V-4-6〉 안정적인 보육환경 제공으로 아동의 건강한 발달 도모 여부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없음	거의 없음	보통	비교적 큼	매우 큼	계(수)	5점 척도
민간	0.5	0.3	15.9	45.7	37.6	100.0(622)	4.2(0.7)
의무설치	0.5	0.2	15.9	47.4	36.0	100.0(428)	4.2(0.7)
임의설치	0.5	0.5	16.0	41.8	41.2	100.0(194)	4.2(0.8)
국가	-	0.7	11.9	45.4	42.0	100.0(445)	4.3(0.7)
의무설치	-	0.9	12.1	46.7	40.2	100.0(338)	4.3(0.7)
임의설치	-	-	11.2	41.1	47.7	100.0(107)	4.4(0.7)
전체	0.3	0.5	14.2	45.5	39.5	100.0(1067)	4.2(0.7)
F							2.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직장보육시설 이용자 조사」 결과임.

5. 정책시사점

직장보육시설의 운영 및 이용과 관련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가 되는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에서 직장보육의 비중은 현재보다는 더 확대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전체 보육에서 직장보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시설수로 1.0%, 아동수로 1.5%에 불과하다. 직장보육시설의 비중이 어느 정도이어야 하는 바는 공공보육시설

의 배치, 또는 사업체의 보육지원 정도와 관련이 있다. 우리의 경우 보육서비스 공급 구조가 공공시설이 매우 제한적이고 민간개인 위주이기 때문에 직장보육시설이 바람직한 유형의 공공보육시설로서 자리매김하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 또한 직장보육 이외에 기업이 보육지원이 제한적이므로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직장보육시설 신설과 확충이 수월한 제도적·재정적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직장보육시설 이용 부모들의 시설에 가장 바라는 바가 시설 확충이다. 25.9%가 증개축을, 9.3%는 정원 확충을 요구하였다. 민간 직장시설 이용자 중 20% 정도는 대기 기간이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현재도 대기자를 두고 있는 민간 직장시설도 상당수이다. 그러므로 신설, 또는 확충 요구가 있는 보육시설은 시설을 확충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재정적 지원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직장보육시설 규모가 평균 47명이다. 이는 사업장에 3층 이하 공간 확보가 용이하지 않고 또한 상시 보육아동 50명이 넘는 경우 실외놀이터가 이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50명 미만으로 시설을 설치하려 하기 때문이다.

셋째, 직장보육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기준이 필요하다.

직장보육시설은 직접 운영하는 사업장보다는 위탁 운영하는 사업장이 65.4%로 더 많고, 위탁 운영자도 개인으로부터 단체 전문 위탁업체 등 다양하다. 직장보육시설 중 24%가 전문위탁운영업체에 위탁하고 있다. 이들 위탁 기관은 지침으로 비영리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문제를 포함한 제반 사항이 제도화되어 있지는 않다. 직장보육시설 위탁도 국·공립보육시설 위탁과 마찬가지로 위탁기간이나 절차 등에 관한 일정 기준을 정하여서 법 수준으로 제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입소순위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직장보육시설의 입소 순위가 분명하지 않다. 동일순위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 의미가 없다. 또한 일부 보육시설에서 비정규직을 포함한 직원의 아동을 우선순위에 고려하지 않는다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모든 아동에 공정한 출발 보장하는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동일수록 질 좋은 보육서비스가 필요하다. 고용보험 가입자를 우선으로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소득수준, 가족 상태 등을 고려하여 지원을 더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우선순위가 두어져야 한다.

다섯째, 기존 직장보육시설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민간 직장보육시설의 60.2%가 정원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고, 31.9% 시설들이 정원 미충족의 이유로 이용 대상 아동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또한 사업장 직장보육 담당자의 14.9%와 직장보육시설장의 19.0%가 이용아동이 부족하여 보육 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대상아동의 33.4% 정도가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민간 직장보육시설 운영비의 약 40%를 사업주 지원을 통해 충당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위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은 직장보육시설의 재정 자립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기업의 특성으로 볼 때, 직장보육시설 미활성화는 직장보육시설 운영 자체에 지장을 줄 수 있다. 특히, 이는 경제적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직장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직장보육시설의 적절한 수익구조를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정원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직장보육시설 미이용 이유는 타 교육 기관 이용, 환경이 더 좋은 시설 이용, 집과의 거리, 동반 출퇴근 부담 등이므로, 집과의 거리와 동반 출퇴근의 부담이라는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히 프로그램과 환경 면에서 지역사회 보육시설과의 경쟁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여섯째,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민간 직장보육시설이 노동부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었으나, 조사 대상의 13%의 시설은 인건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으며, 그 비율은 임의설치 시설에서 더 높다. 임의설치 시설은 의무설치 시설에 비해 사업장이 비교적 영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지원은 더욱 필요하다. 또한 임의설치 시설의 경우 다른 곳으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비율도 의무설치 시설에 비해 낮아, 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이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들은 운영비 지원 요구가 크다. 민간 사업장 보육시설은 운영비 부족 지원 어려움이 31.3%로 가장 많다. 특히 민간 임의설치 시설에서 운영비 지원 요구 비율이 43.6%로 매우 높다. 이 부분은 두 가지 대립적 관점이 있을 수 있다. 우선 고용보험기금의 효율적 사용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아동만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는 점과 공공보육시설 인프라로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고용보험 기금 사용의 효율성은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국가 전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일곱째, 노동부 인건비 지원 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

인건비 지원은 현재 분기별로 지원하고 지원 기준도 말일 날 아동수로 월 80만원 정액을 해당 아동수에 비례하여 지원한다. 이러한 지원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정액보다는 국·공립보육시설 인건비 방식등과 같이 일정 기준액을 정하고 이에 대한 정률을 지원하도록 방식을 변경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이는 경력이 높은 교사를 채용하도록 유도하는 의미가 있다. 또한 기준일을 분기별 말일로 하는 방안도 지나치게 획일적인 방식이며, 해당 아동수에 따라 비율로 지원액을 삭감하는 것도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우선 고려하는 방식으로 보기는 어렵다. 교사대 아동 비율 기준이 없는 것과 비교하면 부조리한 측면이 있다.

여덟째, 직장보육시설 설비 및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직장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개선점 및 보육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직장에 바라는 점을 보면 시설환경 개선과 관련된 요구가 많다. 시설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함께 조사된 다른 항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다. 직장보육시설 미이용 이유도 환경을 이유로 든 비율이 높다. 따라서 직장보육시설 설치 시부터 아동의 안전과 교육적 요소 등을 고려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는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시설 개·보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한편 설치 이후 개보수비 지원도 요구된다.

아홉째, 취약보육의 지속적 확대가 필요하다.

직장보육시설은 특히 민간 직장보육시설은 일반 보육시설에 비하여 시간연장형 보육비용이 월등하게 높아서 취약보육이나 운영의 탄력성이 큰 장점이다. 이용자들도 이용시간에 대한 만족도가 비교적 높다. 직장보육시설이 이러한 장점을 살려 나가도록 지방정부와 사업장이 지속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열째, 보육프로그램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민간의 경우 현재 이용하는 직장보육시설을 그만두려는 비율이 36.6%이고, 그 이유는 전체의 35.8%가 더욱 질 좋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하였으며, 이들의 다수가 유치원 이용을 희망한다. 현 직장보육 선택 이유나 마음에 드는 점으로 교사와 신뢰가 다수를 차지하지만, 보육프로그램을 꼽은 비율은 매우 저조하였다. 그러나 또 많은 아동은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한다. 이 같은 결

과는 직장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의 질적인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특히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을 위하여 교육프로그램의 질을 높여야 함을 나타낸다.

열한째, 직장보육시설 종사자 근무환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직장보육시설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은 교사이다. 교사에 대한 처우나, 시설장이 느끼는 교육교사 근무조건도 일반 보육시설의 근무와 비교하여 대체로 나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설 간에 편차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간 사업장 시설의 경우, 8시간 근로기준 준수 비율이 44.0%이지만 21.1%는 야간 근무를 하여도 수당을 지급하지 못 한다.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육교사들의 근무여건이 개선되어야 하며, 기본적으로 8시간 근로기준이 지켜져야 한다. 교사의 평균 근무년수가 3년에 불과한 것도 이러한 근무환경을 반영하는 결과이다. 종사자 근무조건 개선은 노동부의 인건비 지원방식의 개선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열두째, 지역사회 보육시설 지원과의 연계 강화 필요하다.

그 동안 직장보육시설 정책은 지역사회 보육 정책과는 별개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노동부 인건비 지원을 못 받는 경우 중앙정부에서 영아 기본보조금, 교재교구비를 지원하고, 지방정부에서도 차등보육료, 교사 처우개선비 등 지원 대상에 직장보육시설을 포함시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서 재정 지원 전반 재검토를 통하여 지원 기준, 부처간 역할 등을 다시 설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편, 평가인증 조력, 보육 프로그램 지원 등 시군구 보육지원 대상에 직장보육시설도 포함시켜 지역사회 보육시설과 동일하게 정책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열셋째, 직장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대안적 지원이 필요하다.

민간의 경우 0세아 중 25%는 직장시설을 그만 두고 집에서 아동을 돌보겠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는 영아는 시설보다는 개별적 보육을 선호하는 일반적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직장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영아보육의 질적인 측면을 높여야 하지만 한편으로 근로자의 요구도 무시할 수 없다.

또한 직장보육시설이 정원 100% 충족으로 대기 아동을 두는 등으로 이용을 희망하여도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미이용 아동에 대한 지원 배려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은 직장시설 설치 사업장에서 시설 미이용 근로자들의 수당 지급요구가 증가하고 있음도 이러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VI. 외국의 일하는 여성 지원 정책

제6장에서는 일본, 호주, 미국 등 외국의 일하는 여성을 위한 자녀양육 지원 정책을 포괄적으로 살펴보고 정책시사점을 도출하였다.

1. 일본의 일하는 여성 보육지원

가. 지역사회 보육

1) 보육제도의 개요

가)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일본의 보육시설은 전통적으로 국가 기준의 인가 보육시설과 인가외 시설로 구분되며, 이외 지방정부가 인정하는 보육시설이 있다. 인가보육시설은 2006년 12월 현재 22,635개소로 공립시설 53.3%, 사립시설 46.7%이다. 일본의 사립시설은 몇몇을 제외하고는 모두 법인보육시설이다. 인가 시설은 약 200만명의 아동이 이용한다. 인가외 보육시설은 2006년 말 현재 사업소내 보육시설 3,389개소, 기타 시설 2,169개소와 베이비호텔 1,620개소, 약 18만명의 아동이 보육 받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외 지방정부 법규로 별도의 기준을 낮게 설정하여 시설이나 가정보육 등을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제도권 밖의 보육서비스를 제도화하고 있다. 이 목적은 대기아동 해소와 이들 기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관리이다. 이렇게 제도화한 보육 서비스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가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 수준이 인가보육시설과는 차별화되어서 보육료 수준은 높다(日本 全國保育團體聯合會·保育研究會, 2006).

이들 시설은 종일제를 기본으로 야간보육, 병아보육 등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취업모 자녀를 위한 시간제보육도 제공한다.

나) 가정내 제택보육

가정내 제택보육으로 보육모에 의한 가정보육, 베이비시터, 에스쿠(エスク) 및 노동청에서 지원하는 지역네트워크인 가정지원센터(family support center)를 통한 보

육 등이 있다.

가정보육제도는 보육자의 집 등에서 소수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형태를 총칭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으로서 요강, 규칙, 조례 등이 존재한다. 이는 1950년부터 인가보육소 보육을 보완하는 제도로, 주로 대도시 및 그 주변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설치되어, 보육소 입소를 기다리는 저연령 대기아들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왔다. 1999년에는 소자녀화대책임시특례교부금의 대상사업으로서 처음으로 국가보조금을 받았다. 또한 2000년도에는 신엔젤플랜(2000~2004년)에 의하여 대기아 해소의 응급책으로서 국가에 따른 가정적 보육사업이 개시되었으며, 2007년 현재도 대기아 해소 방안의 하나로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공공성을 띤 저렴한 비용의 재택 및 방문보육사업이 민간단체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데, 가정지원센터(Family Support Center)와 에스쿠(エスク) 등이 이에 해당된다. 가정지원센터는 노동성에서 1994년에 인구 5만 이상인 시·정·촌에 설치하여 아동을 맡기고자 하는 가구와 맡는 가정을 중개하는 역할을 하는 지역네트워크이며, 에스쿠는 1973년 3월 보육시설 화재사고 이후 뜻있는 여성들이 시작한 비영리 보육자 네트워크이다.

가정내 보육의 또 다른 형태로 영리 베이비시터회사를 통한 서비스로, 2006년 현재 155개 베이비시터회사가 있으며, 약 23,000명의 아동이 이를 이용한다.

다) 필요한 수요에 부응하는 보육서비스의 다양성 강화

일본의 보육제도의 특징 중 하나는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장보육 촉진사업, 아픈 아동, 회복기 아동보육 지원, 전업 주부 아동을 위한 서비스인 일시, 특정보육사업, 휴일보육시설, 22시까지 운영하는 야간 연장형 시설, 지역 자녀 영육지원 사업으로 일명 광장사업, 보육마마 지원사업 등이 이에 해당된다.

라) 정부와 부모의 보육비용의 분담 및 표준보육단가 산정

보육시설에서 입소 아동의 보호 최소한의 유지 등 보육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운영비⁴⁴⁾라고 하고, 이 비용은 보육단가제도를 통하여 일부를 보호자로부터 수납하는데, 이 과정에서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불하게 하고 그 차액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44) 예전에는 조치비라고 불렀음.

부모 부담 보육료는 보육시설 운영비 중에서 1/2는 국가가, 1/2를 보육료로 징수 하도록 하고, 국가 부담 중 1/2는 중앙정부, 1/4는 도도부현, 1/4는 시·정·촌이 부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중앙정부 지침은 부모 보육료 징수 기준을 소득계층에 따라 7계층으로 나눈다. 소득기준은 전년도 세금 납부액을 기준으로 한다. 생활보호 법 피보호세대와 시·정·촌민세 비과세대상(한부모 세대 등) 는 무료이다.

그러나 지방정부 사업으로 실제보호자가 부담하는 보육료 기준 및 전체 보육료 운영 비용에서 보호자의 부담비율은 지방정부마다 각기 다르다. 차등단계도 지역마다 달라서 30단계까지 적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결과로 많은 지역지역에서 실제로 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은 중앙정부 기준보다 크게 낮다.⁴⁵⁾

일부에서 자방자치단체별 격차가 커지고 있는 것을 우려하고 국가기준을 상향조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국가 전반적 개혁 분위기 속에서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최근 동향으로 예산의 절감을 위해 일부 공립시설을 법인 매각, 법인 위탁 등 민영화를 추진하며, 유아교육과 보육 기능이 통합된 인정어린이집을 추진 중이다.

2) 일본 보육정책의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과의 연계성

일본의 보육정책과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과의 연계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복지법 제39조에서 보육 대상을 보육결여 아동으로 우선 정의한다. 아동복지법 제39조 제1항에서 보육소는 일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서 보육에 결여된 영아 또는 유아를 보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항은 보육소는 일일보호자의 위탁을 받아서 보육에 결여된 아동 외의 아동을 보육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둘째, 종일제 인가보육시설은 입소 순위로 보육이 결여되는 아동 우선 입소 정책을 유지한다. 일본의 종일제 보육시설의 경우 철저하게 취업모나 기타 가정 사정으로 보육이 필요한 아동에게만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즉, 취업모 중심의 선별적 보육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일본의 보육시설 입소 순위는 보호자와 가정환경의 다양한 요인을 모두 고려, 합산하여 지수화하여 점수가 높은 순서로 정한다. 지수는 대체로 보육 실시기준지수와 조정지수로 구분된다.

동경도 세다가야구의 경우를 보면, 실시기준 지수는 출퇴근 및 재택 근로, 출산·질병·장애, 개호, 재해, 구직, 기타의 항목으로 유사한 체계로 항목별 10~50점을 부여하여 합산하는 점수제도를 적용한다(표 VI-1-2 참조).

45) 예를 들어 요코하마시의 경우 총 보육시설 운영비 중 보호자 부담은 20.2%임.

〈표 VI-1-2〉 일본 동경도 세다가야구 보육소 입소 우선순위 고려 기본 요인

호	형	보호자(부모)				기준	기간제	
		세 목						
1	출퇴근근무	외근 등	주 5일 이상 근무, 낮에 주 40시간이상			50	-	
			주 5일 이상 근무, 낮에 주 37시간이상			45		
			주 4일 이상 근무, 낮에 주 35시간이상			40		
			주 4일 이상 근무, 낮에 주 30시간이상			35		
			주 3일 이상 근무, 낮에 주 25시간이상			30		
			주 3일 이상 근무, 낮에 주 20시간이상			25		
			주 3일 이상 근무, 낮에 주 16시간이상			20		
2	재택근무	자영	주 5일 이상 근무, 낮에 주 40시간이상			50	-	
			주 5일 이상 근무, 낮에 주 37시간이상			45		
			주 4일 이상 근무, 낮에 주 35시간이상			40		
			주 4일 이상 근무, 낮에 주 30시간이상			35		
			주 3일 이상 근무, 낮에 주 25시간이상			30		
			주 3일 이상 근무, 낮에 주 20시간이상			25		
			주 3일 이상 근무, 낮에 주 16시간이상			20		
			주 3일 이상 근무, 낮에 주 12시간이상			15		
		재택	주 4일 이상, 낮에 주 30시간 이상			20		
			주 3일 이상, 낮에 주 12시간 이상			15		
3	출산 질병 자애	출산	출산전후 보육이 필요			15	5개월	
		질병	1개월 이상 입원			50		
			가정내 요양	상시 외병		50		
				정신성	정신장애 3급 이상			50
					기타			30
				일반	안정 요			30
					치료 요			20
		장애	신체장애 12급, 청각장애 3급 이상, 정신장애3급이상 등			50		
신체장애 3급, 청각장애 4급 이하,			30					
신체장애 4급 이하			20					
4	개호	시설등	주 5일 이상, 낮에 주 30시간 이상			50	-	
			주 5일 이상, 낮에 주 20시간 이상			45		
			주 4일 이상, 낮에 주 14시간 이상			40		
			주 4일 이상, 낮에 주 16시간 이상			35		
			주 3일 이상, 낮에 주 18시간 이상			30		
			주 3일 이상, 낮에 주 12시간 이상			25		
		자택개호	중증장애자 개호			50		
			상시관찰(식사, 배뇨, 목욕 등)하다 필요시			40		
			기타			20		
5	재해	재해로 가옥	손상, 재해복구 등으로 보육불가			50	6개월	
6	구직	취업 개업 예정	주5일 이상 근무, 낮에 주 37시간 이상			30	1개월	
			주4일 이상 근무, 낮에 주 35시간 이상			25		
			주4일 이상 근무, 낮에 주 30시간 이상			20		
			주3일 이상 근무, 낮에 주 25시간 이상			15		
주3일 이상 근무, 낮에 주 12시간 이상			10					
구직	낮에 구직 이유로 외출			10	2개월			
7	기타	취학 등	취학, 기능 습득 등으로 보육 어려움			※①	-	
		부재	사망, 이혼, 행방불명, 구금 벌거 등			50		
		기타				※②		

주: ①은 1번 준용, ②는 1-6번 준용

자료: 東京 世田谷區(2006) 保育サービスのごあんない.

〈표 VI-1-3〉 동경도 세다가야구 보육소 입소 조정지수

기준	환경	지수
1	복지 대상 가구	+10
2	한부모(동거 친인척 없음), 고아	+20
3	한부모로 동거 친인척 있으나 보육은 하지 않음	+10
4	한부모 원거리 취업(동거 친인척 없음)	+3
5	1년 이상 취업 경험	+2
6	출산 및 육아 휴가	+5
7	동생 출산, 육아휴직으로 쉬다가 다시 입소	+20
8	보호자가 자택에서 보육	-6
9	보호자가 자택 이외에서 보육	-1
10	취업 내정자로 1개월 내 취업 개시	+3
11	취업 내정자로 2개월 내 취업 개시	+2
12	취업 내정자로 3개월 내 취업 개시	+1
13	보호자가 심신장애자 수첩 3급 이상	+5
14	보호자가 심신장애자수첩 4급 이상, 정신장애자 보건복지 수첩 소지	+1
15	동일세대내 중증 개호필요 세대원 거주	+2
16	아동이 장애아로 시설이나 병원 다녀야 하므로 부모 취업이 어려운 경우	+10
17	형제자매 산육기에 육아휴업 취득	-5
18	동거조부모(60세 미만) 무직으로 보완적 보육 가능	-6
19	타 형제자매가 입소 중	+5
20	보육실, 보육마마 등 타 서비스 이용하며 대기 중	+6
21	별거 친척이 돌보는 경우	+1
22	유치원을 다니는 경우	+1
23	특별한 사정으로 전원(이사, 전직, 거리 등)	+3
24	지역외 거주자	-5

자료: 東京 世田谷區(2006). 保育サービスのごあんない.

조정기준지수는 생활보호세대, 한부모세대, 부모 구직 중 세대, 휴직으로 일시퇴원 후 재입소 희망, 생계 중심자의 실업 등 다양한 조건에 각각 점수를 부여하여 기본지수에 가산 또는 삭감하는 방법을 사용한다(표 VI-1-3 참조).

순위가 동일할 경우에도 대비하여 4단계를 제시하고 있다. 1단계는 보육실시 기준 지수가 높은 세대, 2단계는 기다린 기간이 긴 아동, 3단계는 부재, 질병장애, 외근, 거택외 자영, 개호, 거택내 근로, 출산, 취업 내정, 취학 등, 구직 등에 유형간 우선순위를 부여, 4단계는 계층 저 순위이다.

보육시설 입소 뿐 아니라 연장보육 대상자 선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실시기준, 조정기준, 동일지수 우선순위를 적용하고 있다. 보육시설 입소 우선순위나 이용 우선순위를 철저히 지키는 이유는 높은 동일제 보육시설 설치 기준으로 인한 보육시

설 추가 설치 어려움에서 오는 공급 부족 현상에서 비롯된다. 지난 수년간 대기아동 감소 정책이 중요한 과제가 되어 왔다.

최근에 대기아동 해소 정책의 일환으로 지자체가 인증하는 소규모 보육시설과 유보가 통합된 형태의 인정어린이집이 설치되면서 일반 아동의 이용도 증대되고 있다.

나. 사업체 보육지원

1) 배경

가)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일과 가정 양립 지원 정책 추진

일찍이 저출산을 경험한 일본은 저출산 해소 대책으로 1994년, 1999년 두 차례의 엔젤플랜에 이어 2002년 소자화대책 플러스원을 제시하고, 2003년에 차세대육성지원대책추진법을 제정하였으며, 2005년에는 자녀양육지원플랜을 발표하였다. 2006년에는 신소자화대책을 발표하였고, 2007년 아동과 가족을 응원하는 일본이라는 타이틀로 검토 회의를 통하여 전략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1994년 엔젤플랜 작성 시 소자화의 배경으로 육아와 일의 양립 어려움을 지적, 소자화 대책의 기본방향과 중점시책을 제시하였다. 1999년 신엔젤플랜은 대체로 엔젤플랜의 기본 시각에 기초하여 계획의 구체성을 강화한 측면이 있다. 2002년 소자화대책 플러스원은 엔젤플랜 등이 보육 중심이었던 것에 비하여 정책 대상과 폭을 넓혀 개인의 선택권과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자녀 기르기 좋은 사회 만들기를 통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적 변화를 보였다.

2005년 12월에 결정한 자녀양육지원플랜은 2004년 6월 소자화사회대책대강에 기초한 것으로, 소자화대책 플러스원에 이어 더욱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접근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대안을 제시하고 2009년까지의 목표를 설정하였다.

연도별 세부정책을 살펴보면, 2006년 신소자화대책은 2005년 자녀양육지원플랜 등 기존 정책을 확대, 강화하고 구체화한 것으로, 자녀지원책을 대학생기까지 포함하고 노동방식의 개혁을 강조하였다. 2007년 대책방안에서는 노동방법 개혁, 포괄적 제도 구축, 사회보장 등 종합적 대응, 지역실정 반영, 효과적 재정투입, 시책의 실효성 확보 등 정책 추진의 내실화, 강화를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상세한 내용은 부록으로 제시하였다(부표 VI-1-1 참조).

나) 차세대육성지원대책추진법에 의한 행동계획 수립 및 지원

일본은 2003년 차세대육성지원대책추진법에 의하여 시·정·촌, 도도부현, 특정사업주, 일반 사업주는 행동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⁴⁶⁾ 사업주는 행동계획 책정지침에 따라서 근로자의 직업 생활과 가정 생활의 양립을 위해 필요한 고용 환경 정비에 관한 행동계획을 책정하여 후생노동대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행동계획에는 계획 기간, 달성 목표, 내용 및 그 실시 시기가 포함되어야 한다. 현재 상시 고용하는 노동자 수가 301인 이상인 사업장은 의무사항이나, 노동자수가 300인 이하 기업에게는 권고사항이다. 그러나 2008년 법 개정안으로 행동계획 수립 의무사업장을 2009년부터 근로자 수 101인 이하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의무 일반 사업주가 제출하지 않는 경우, 후생노동대신은 기간을 정해서 제출을 권고할 수 있다.

사업주가 제출한 행동계획은 후생노동대신이 행동계획의 적절성, 기준에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이를 인정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 지원 기구로 차세대육성지원추진센터와 지역협의회를 두도록 하였다.

행동계획을 수립한 사업주는 2007년 9월 현재 근로자 301인 이상 기업체 13,274개소 중 97.6%인 12,961 업체이며, 300인 이하 기업은 7,811개소가 행동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인정은 2007년 9월 현재 393개소가 신청하여 366개소이고 16개소가 심사 중이다. 행동계획은 21세기 직업재단에 등록하여 공개하고 있는데, 현재 350개 기업이 등록되어 있다.⁴⁷⁾

행동계획 작성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업주를 대상으로 기업 인정 및 표창 제도를 실시한다.⁴⁸⁾

또한 정부가 지원하는 양육지원조성사업 내용은 육아휴업취득자 대체요원 확보 등 일곱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표 VI-1-4 참조).

46) 기본이념으로 차세대육성지원대책은 부모, 기타 보호자가 자녀양육의 일의적인 책임을 진다고 하는 기본적 인식 속에서, 가정 외 장소에서의 자녀양육 의의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자녀양육에 따르는 기쁨을 실감할 수 있도록 배려해서 실시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였음.

47) 일본 노동후생성 홈페이지

48) 표창은 균등·양립 추진 기업에 후생노동성 대신 최우량상을 주고, 균등 추진 기업부분과 가족친화 기업부분으로 구분하여 각각 그 아래에 등급별로 3개씩의 상을 수여한다. 가족친화 기업부분 내용은 육아휴업, 단기근로, 탁아시설이나 비용 지원 등 일 가정 양립 지원, 일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기업 문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VI-1-4〉 일본의 양육지원 조성 사업 내용

구분	지원내용
육아휴업취득자 대체요원 확보, 육아휴업 취득자 원직복귀 사업주(대체요원 확보코스)	최초 중소기업 50만엔, 대기업 4만엔 지원, 이후 각각 15만엔, 10만엔 지원
육아 개호휴업 취득노동자 직장복귀 프로그램 실시 사업주(휴업 중 능력제고 코스)	근로자 1인당 최고 중소기업 21만엔, 대기업 16만엔 지원
미취학 아동 양육 근로자 단시간 근로 등 유연근로제도 실시 및 이용자 발생토록 한 사업주(육아기 유연근무 지원 코스)	육아휴업, 단축근로, 탄력근무, 근무 시작과 종료 시간 조정, 소정아 노동 면제 등 조건별로 중소기업은 25-50만엔, 대기업은 10-40만엔 지원
사업소내 근로자를 위한 탁아시설 설치 사업자(사업소내 탁아시설 설치 운영 코스)	설치, 운영, 증축, 보육유구(교재교구, 장난감) 구입 비용 지원
육아 개호서비스 이용 근로자에 비용보조 사업주(보모비용 등 보조 코스)	근로자가 이용한 육아 개호서비스 비용 중 사업자 부담액의 중소기업 1.2, 대기업 1/3 지원, 상한은 1인당 30만엔 사업소당 360만엔, 5년 한도
양육지원제도 이용이 용이한 직장환경 정비를 계획적으로 추진한 사업주(직장풍토개혁코스)	진전 상태에 따라 50만엔 단위로 추가
남성의 육아 참여 촉진을 모범적으로 조직하여 실시한 사업주(남성근로자 육아참가 촉진)	1년에 50만엔, 2년 한도

자료: 日本 財團法人 21世紀職業財團(2008). URL: <http://www.jiwe.or.jp>

2) 사업소내 탁아시설 설치·운영 지원

노동자를 위한 사업소 내 탁아시설의 설치, 운영 및 증축 등을 실시하는 사업주·사업주단체에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보육유구(장난감) 등 구입 비용의 일부를 보조한다.

가) 예산 지원 조건

(1) 사업소내 탁아시설 조건

사업소내 탁아시설은 아동복지법의 인가와 보육시설에 해당되므로 운영과 보육 내용 등은 도도부현(지역관할 시·도)의 보육행정의 지도 대상이 된다. 예산 지원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주, 사업주단체가 고용하는 노동자를 위하여 사업소 대지 내·근접지, 노동자의 통근경로(역빌딩, 통근에 편리한 장소), 노동자의 거주지 등에 설치하여 지

속적인 이용이 전망될 경우에 한한다. 둘째, 시설 규모는 영유아의 정원이 10인 이상, 영유아 1인당 면적은 7㎡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셋째, 시설은 아동복지시설 최저기준에 의거해 설치·운영되고, 전임 보육사에 의한 개개의 영유아의 생활과 발달에 상응하여 적절한 보육을 실행하고 있어야 한다. 넷째, 사업소 내 탁아시설의 이용자는 초등학교 취학 전⁴⁹⁾ 아동을 양육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2) 수급할 수 있는 사업주·사업주 단체 조건

사업소 탁아시설 지원을 수급할 수 있는 사업주·사업주 단체 조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소 내 탁아시설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재)21세기 직업재단 지방사업소장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둘째, 지방사업소장의 인정을 받은 계획을 토대로, 사업소 내 탁아시설을 설치, 운영 및 증축을 실행하여야 한다. 셋째, 육아·간호휴업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해 육아휴업 및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업에 준하는 조치 및 근무시간단축 등의 조치에 관하여 노동협약 및 취업규칙을 정하여 실행하고 있어야 한다. 넷째, 차세대육성지원대책추진법 제12조를 기초로 일반 사업주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도도부현(관할 시나 도) 노동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상시 고용하는 노동자 수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주가 책정하고 신고해야 한다.

나) 지원 유형 및 지원 금액

사업소 내 탁아시설에 지원되는 비용에는 설치비, 운영비, 증축비, 보육유구 등 구입비가 있다.

설치비는 사업소 내에 탁아시설을 새롭게 설치하는 사업주·사업주단체에게 지급되며, 지원 항목은 신축 및 건물 구입비 등으로, 기존의 건물을 개증축하여 시설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단, 토지 취득에 요한 비용, 기존시설의 해체에 요한 비용은 제외되며, 1사업주 1시설에 한하여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중소기업사업주는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2/3(2007년 1월1일부터 2010년 3월31일까지 조치), 대기업 사업주는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1/2이며, 한도액은 2,300만엔이다.

다음으로, 운영비는 사업소내 탁아시설의 운영을 새롭게 시작한 사업주, 사업주단체로 1사업주 1시설에 한하여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중소기업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인건비)의 2/3(2007년 1월1일부터 2010년 3월31일까지 조치), 대기업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인건비)의 1/2이다. 지급대상기간은 운영개시일로부터 5년이며, 1년간의

49) 해당 아동이 6세가 되는 날이 포함되어 있는 연도의 3월 31일까지로 함.

지급한도액은 운영의 형태, 시설의 현인원의 구분에 상응하여 적용된다.

〈표 VI-1-5〉 사업소 내 탁아시설 운영비 지급 한도액

구분	내용
통상형 1일 11시간 미만 운용	- 15인 미만 379만 2천엔 - 15인 이상 20인 미만 540만엔 - 20인 이상 699만 6천엔
시간연장형 1일의 11시간 이상 운용	○ 시설의 규모에 상응하는 통상형의 지급한도 시간연장 단가의 연장시간수 (<1일의 운영시간-9시간>(최대7시간까지))를 더한 금액 - 15인 미만: 505만 2천엔(379만 2천엔+18만엔×7시간) - 15인 이상 20인 미만: 729만엔(540만엔+27만엔×7시간) - 20인 이상: 951만 6천엔(699만 6천엔+36만×7시간)
심야연장형 야간(22시~5시) 운영	○ 시설의 규모에 상응하는 시간연장형의 지급한도액에 추가 ○ 심야시간의 가산액에 심야시간수(최대7시간)를 더한 금액 - 15인 미만: 533만 2천엔(379만 2천엔+18만엔×7시간+4만엔×7시간) - 15인 이상 20인 미만: 778만(540만엔+27만엔×7시간+7만엔×7시간) - 20인 이상: 1,014만 6천엔
몸이 안좋은 아이 대응형	○ 안정실을 설치해 간호원을 두고 운영하는 곳 - 상기 해당 지급한도액의 165만엔을 더한 금액

자료: 日本 財團法人 21世紀職業財團(2008). URL: <http://www.jiwe.or.jp>

증축비는 기존 시설을 정원 5인 이상의 증가, 증축면적 35㎡이상의 증축하거나 이용정원 2인 이상, 1명당 1.98㎡이상, 면적 3.96㎡이상의 안정실의 증축할 경우에 소요된 총 비용의 2분의 1을 지급하며, 한도액은 1,150만엔이다. 또한 기존의 일정 요건을 갖춘 시설을 한도액 2,300만엔으로 5인 이상의 정원증축 및 건축면적 35㎡ 이상 넘는 개축을 했을 경우에는 이에 소요된 비용에 개축 후에 사업소내 탁아시설의 정원에 대하여 증가한 정원의 비율⁵⁰⁾을 더하여 산출한 금액의 1/2을 지급한다.

보육유구 등 구입비는 사업소 내 탁아시설의 보육유구(장난감)등을 구입한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에 지원되며 한도액은 40만엔이다. 시설의 보육유구 등⁵¹⁾의 구입에 요한 액수로부터 10만엔을 공제한 금액을 지원하며, 수급은 5년에 1회에 한한다.

50) (개축 후 시설의 정원-기존 시설의 정원)/개축 후 시설의 정원

51) 일품의 단가가 원칙적으로 1만엔 이상, 총경비 20만엔 이상의 것으로 지방사무소장이 인정한 것으로 함.

다) 직장보육설치 실태

2006년 말 현재 사업소 내 보육시설은 3,389개소로, 2,126개소는 병원 내 시설이고 1,263개소는 기타 사업체가 설치한 시설이었으며, 아동수는 48,000여명 수준이다.

이와 같은 사업소 보육시설의 규모나 이용 아동수는 2003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이다. 직장보육시설은 아동복지법의 인가와 보육시설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다.

〈표 VI-1-6〉 일본의 사업소 내 보육시설수와 아동수

단위: 개소

구분	2005		2006	
	시설수	아동수	시설수	아동수
전체	3,371	47,752	3,389	47,775
병원 내	2138	35,284	2,126	34,963
기타 사업소	1,223	12,468	1,263	12,812

자료: 日本 全國保育團體聯合會·保育研究會 編(2006, 2007). 보육연보.

〈표 VI-1-7〉 일본의 연도별 사업소 내 보육시설수와 아동수

단위: 개소, 천명

구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시설수	3,455	3,561	3,549	3,603	3,622	3,534	3,445	3,378	3,371	3,389
아동수	52	53	54	54	53	52	50	49	48	48

자료: 日本 全國保育團體聯合會·保育研究會 編(2007). 보육연보.

〈표 VI-1-8〉 일본의 육아·개호 지원 사업소 비율(2007)

구분	육아휴업	탁아시설	육아보조(베이비 시터 보조금 포함)	개호휴업, 간호휴가
전체	40.5	0.6	2.0	30.9
1,000명 이상	56.7	2.2	15.4	57.4
300-999명	47.8	1.4	5.7	44.6
100-299명	47.2	0.9	2.8	39.1
30-99명	37.1	0.4	1.0	26.1

자료: 日本 厚生労働省(2008). 2007年 就労條件總合調査 結果. URL: <http://www.mhlw.go.kr>

2007년 일본 사업소 근로조건 총합조사 결과에 의하면 조사된 4,178개 사업소 중 0.6%에 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2.0%가 베이비시터 이용권을 포함하여 보육비용을 보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세기 직업재단에 행동계획을 등록한 350개 사업소 중에서도 보육소 운영 기업은 4개소에 불과하다.

3) 육아 개호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가) 사업소 보육서비스 비용 지원

사업소가 근로자의 육아 개호서비스 이용 비용을 보조하는데, 민간시설 이용 비용 지원하거나 사업소 내에 설치한 보육시설 인건비나 건물 임차료 등을 지원하는 것, 취업규칙 등에서 사업주가 계약을 하고 실제로 이를 제공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되며, 베이비시터회사와의 계약 시도 포함된다. 이러한 지원에 대하여 정부가 근로자 육아 개호서비스 비용 중 사업자 부담액의 일부를 부담하는데, 중소기업은 1/2, 대기업 1/3을 지원하며, 상한은 연간 1인당 30만엔, 사업소당 360만엔으로 5년 한도이다.

나) 베이비시터 비용 지원

베이비시터 이용에 대한 근로자 지원은 일본 전국베이비시터협회(All-japan Babysitter Association)⁵²⁾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베이비시터 협회 지원사업은 베이비시터 육아지원사업, 쌍생아 가정 육아지원사업, 산전산후 육아지원사업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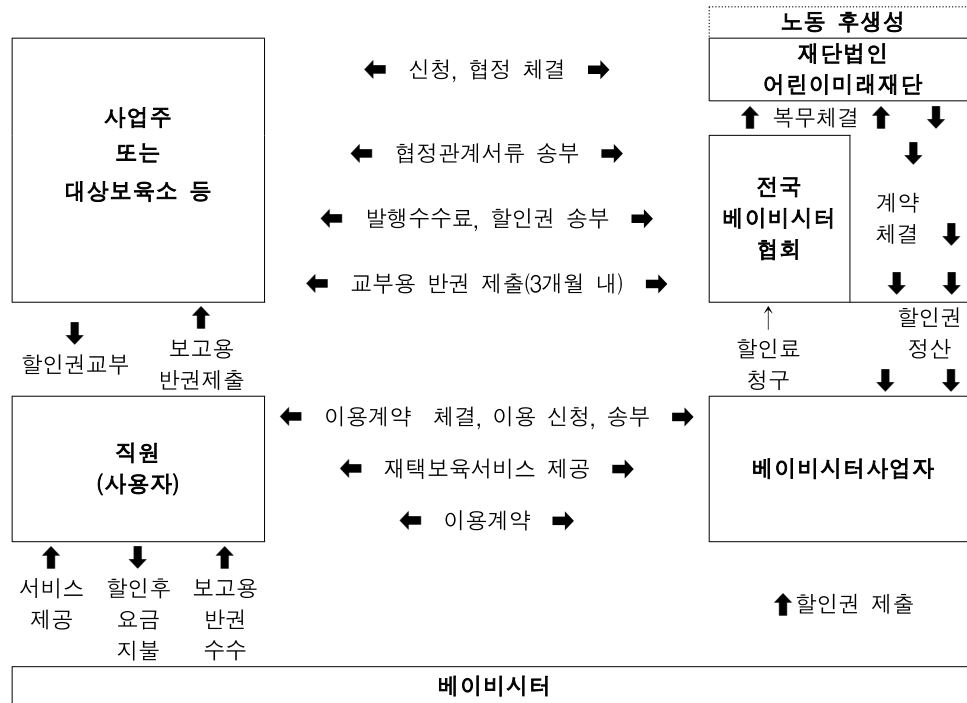
베이비시터 육아지원사업은 협정을 체결한 사업주나 대상보육소 등에 근무하는 직원이 베이비시터를 이용할 때 1일 1회 1,500원, 또는 2,000원의 할인권을 지원하는 하는 제도이다. 쌍생아 가정 육아지원사업은 다태아 부모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로 1일에 9,000엔을 보조하고, 산전산후 육아지원사업은 산전산후 휴가 기간 동안 임신부 건강검진, 산욕기 건강 문제 등으로 베이비시터를 이용할 때 1일 1,500엔을 보조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사업은 아동수당법에 의거하여 정부가 종업원의 취로와 관련된 재택보육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대상에 베이비시터, 가정지원센터(FSC), 가정 보육제공자가 모두 포함된다.

베이비시터 비용에 대한 지원 흐름도는 [그림 VI-1-1]과 같다. 먼저 후생노동성에서 재단법인인 어린이미래재단을 지원하고 어린이미래재단은 베이비시터 육아지원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자금을 조성하며, 어린이미래재단은 사업주 또는 해당 보육

52) 이 협회는 베이비시터회사들의 협회로 1989년에 설립되어 베이비시터 회사 125개가 가입하고 있음. 회사들은 연 20만엔에서 30만엔 정도의 가입비를 내고 있으며, 협회에서는 광고나 베이비시터에 관한 정보제공 이외에는 전혀 도움을 주지 않고 있어서 일부 회사들은 탈퇴하려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음.

소와 협정을 체결하고, 베이비시터협회는 사업주와 협정을 체결하여 협정 기업에 1매당 1,500엔짜리 재택보육 할인권을 수수료 150엔을 받고 납입하며, 베이비시터 회사와는 계약을 체결한다.



자료: 日本 財團法人 こども未来財團(2007), 베이비시터-育児支援事業 実施要領.

[그림 VI-1-1] 일본 베이비시터 비용 지원 사업 흐름도

한편 베이비시터협회와 협정을 체결하여 할인권을 받은 기업이나 해당 보육소는 종업원에게 재택보육 할인권을 교부하고, 할인권을 받은 종업원은 재택보육서비스를 받으며 할인권을 제한 비용을 지불한다. 할인권은 협회를 통하여 재단법인 어린이미래재단이 지원금으로 정산하게 되는 것이다. 이 할인권은 종업원 1인당 하루에 1장을 사용할 수 있다.

협정 대상 및 규모를 보면, 기업 규모에 따라 최소 1,200매부터 최대 4,800매를 지원하고, 보육소는 개소당 1,200매를 지원한다. 지원 단가는 사업주는 1일 1회 1,500엔이고, 연장보육종사자는 2,000엔으로 차등을 둔다.

〈표 VI-1-9〉 일본 베이비시터 이용 할인권 발행 한도

단위: %(개소)

구분	발행 한도	할인액 한도
직원수 1,000명 이하 사업주	1,200매	사업주 1,500엔
직원수 1,001~2,000명 이하 사업주	2,400매	연장보육종사자 2,000엔
직원수 2,001~3,000명 이하 사업주	3,600매	
직원수 3,001명 이상 사업주	4,800매	
대상보육소 1개소 당	1,200매	

자료: 社団法人 全国 ベビーシッター協會(2006). 社団法人 全国 ベビーシッター協會 15年の あゆみ

〈표 VI-1-10〉 일본 베이비시터 이용 할인권 이용한 육아지원사업 실적

단위: 개, 건, 천엔

연도	협정기업수	발행매수	정산매수	조성금액
육아지원사업				
1994	131	8,085	4,268	6,402
2004	880 (2)	127,269 (235)	89,982 (208)	134,973 (416)
2005	974 (1)	139,652 (230)	96,538 (168)	144,807 (336)
2006	1,016	151,898	1,000,843	-
쌍생아육아지원				
1999		452	315	2,765
2004		2,418	1,593	14,818
2005		2,638	1,761	16,542
2006		2,742	1,804	-
산전산후육아지원				
2004		148	109	163
2005		172	103	155
2006		172	116	-

주: ()는 연장보육 대상분으로 별도임.

자료: 社団法人 全国 ベビーシッター協會(2006). 社団法人 全国 ベビーシッター協會 15年の あゆみ

이러한 사업은 1994년에 시작한 이래 계속 규모가 확대되어 왔다. 2006년 통계로는 전국에서 1,016개 기업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조성 금액은 1억 448이다. 발행된 할인가가 모두 사용되지는 않는데, 발행 대비 정산 비율은 2006년 66.5% 정도이다.

다. 일본 일하는 여성 보육지원정책의 함의

일본의 보육지원 정책 사례는 부모들의 다양한 요구에 사각지대 없이 골고루 부

응하려는 세분화된 정책이 특징으로 나타난다. 지역사회보육은 종전에는 일반 취업모 중심의 정책이었으나, 저출산대책이 전개되어 가면서 취업모를 위하여 야간보육, 재택보육 등으로 서비스가 보다 다양화하고 강화되어 가고 근로유형의 다양화에 부응하여 오전반, 오후반, 주 2~3일 이용 등 보육서비스의 탄력성 증진 정책이 시도되어 왔다. 일반 부모를 위하여 광장사업, 지역육아지원센터와 같은 일반 부모지원 정책도 추진되고 있다. 기업체에서의 사업소 보육소 설치, 보육비용 지원 등 직장보육서비스 지원의 비중은 크지 않다. 일·가정 양립지원의 한 수단으로 채택되고는 있으나 육아휴업, 탄력근무제 등의 수단에 비하여 그 비중은 매우 낮다. 이는 공적 보육체계, 차등보육료 등 보육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정책에 대한 시사점은 우선 수요자가 요구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를 선택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기업이 국가 정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려면 이를 어느 정도 강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고, 이에 따라 지원도 수반되어야 한다.

2. 호주의 보육정책과 여성고용

가. 호주 여성고용 지원정책

호주의 공인된 정책목표는 일을 할 것인지 아이를 돌볼 것인지에 대해 부모들이 선택을 하게 하는 것이다. 사회적 지원의 주된 대상은 저소득가족으로, 일을 하지만 낮은 소득을 버는 부모 중 한쪽 부모가 자녀연령 16세에 이를 때까지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여 부모가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의 정책동향은 이전에 비해 일하는 것에 보다 강조점을 두으로써 여성고용촉진을 도모하고 취업에 대한 금전적 인센티브의 제공, 직장복귀 장애요인 제거 등으로 노동시장 유인책을 강화하고 있다.

여성고용촉진을 위한 현 정책들을 보면 먼저 고용주가 제공하는 근로자 가족의 혜택이 있다. 고용주와 근로자가 협상하거나 공공정책으로 수행하는 세 가지 중요한 정책 분야는 보육, 휴가, 시간제 근무이며 직장과 가족생활을 병행하는 가족지원으로는 유연노동시간, 아픈 자녀 돌봄휴가, 재택근무 등이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가족친화적 직장관행의 형성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은 약하며 노사관계의 제도적 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표 VI-2-1 참조).

〈표 VI-2-1〉 호주 사업장 일가족 관련 합의 비율: 2000-2001 평균

단위: %

구분	분류	합의 비율	적용 근로자 비율
가족관련 휴가	가족/돌봄 휴가	27	59
	돌봄 목적의 다른 휴가 이용	19	40
	유급 가족 휴가	3	15
	무급 가족 휴가	9	23
	유급모성/ 일차적 돌봄자의 휴가	7	32
	유급부성/ 이차적 돌봄자의 휴가	4	16
	유급 입양휴가	2	14
	확대된 무급 부성휴가	2	6
	연차휴가 single days 이용	13	23
	탄력연차휴가	6	10
	48/52 휴직	3	17
	다목적 유급 휴가	3	9
	무제한 병가 휴가	1	2
	아동지원		
	아동양육지원 조항들	1	7
기타 가족 친화적 조항들	시간제근로	25	67
	정규시간제근로	7	28
	직무공유(일감 나누기)	3	16
	가족 책임(책무) 조항	3	17
	재택근무	1	10

자료: Australian Dept. of Employment and Workplace Relation. WORKPLACE Agreements Database.

〈표 VI-2-2〉 호주 사업장 일가족 관련 사항 합의 비율 1997-2001

단위: 매년 합의 규정에 대한 %

구분	1997	1998	1999	2000	2001
가족/돌봄자 휴가	30	27	29	24	30
유급 모성 휴가	4	10	9	6	7
유급 부성 휴가	2	3	2	3	5
유급 입양 휴가	2	1	1	2	3
확대된 무급부성 휴가	2	#	1	1	3
48/52 휴직	1	2	2	2	3
시간제근로	16	20	24	23	27
직무공유(일감 나누기)	2	2	2	2	3
재택근무	1	2	1	1	1
자녀양육	2	1	#	1	1
가족책임	2	3	4	4	3
전체	5122	7007	6161	6876	6672

주: # 1%보다 적은 응답

자료: Australian Dept. of Employment and Workplace Relation. WORKPLACE Agreements Database.

자녀 관련 비용은 개별 고용주에 의해 지원되고 있어 출산연령대의 여성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유인책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전반적으로 노동에 따른 세금·혜택 체계와 재정적 인센티브의 제공, 비용지불이 가능한 보육 접근을 통해 비용과 가격구조, 부모 되는 것의 선호도, 비공식적 보육, 시간제 근무 등을 노동시장 기회와 밀접하게 연계시키고 있다. 특히 보육시설의 양보다는 질과 아동발달에 관심을 두고 부모들로 하여금 보육형태를 선택하게 하도록 하고 방과후 보육시설에의 투자 및 기 실행되어 왔던 취업부모를 위한 상점 여는 시간을 보다 활성화하여 여성들이 일을 선택함으로써 발생하는 불만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호주에서 중요한 근로형태의 하나는 시간제 근로인데 시간제 근로는 일하면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특별히 호주가 부모들의 노동공급 장벽 제거에 노력하는 것은 한부모가족들의 빈곤이 심각하다는 사실에 있다. 가구당 평균 가족원수는 1980년부터 떨어지게 되어 2.6명이다. 현실적으로 유자녀가구 중 한부모가족의 비율은 2000년에 이르러 다섯 가구 중 한 가구에 해당된다. 한부모가족의 83%가 엄마만 있는 가정으로 나타나고 있다(AIFS, 2006). 2003년 현재, 호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6.9%이며, 이중 42.2%는 시간제 근로자이다. 6세 미만의 아동을 둔 여성 중 14.5%는 전임 근로자이고, 32.8%는 시간제 근로자이다. 3세 미만의 아동을 둔 여성 중 11.6%가 전임 근로자이고, 30.8%는 시간제 근로자이다. 호주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는 M자형구조를 갖지만(DFACS/DEWR, 2002), 최근의 여성들은 결혼과 동시에 직장을 그만두기보다는 첫 아이가 생길 때까지 직장에 머무는 경향이 있으며, 첫 아이가 생길 때 직장을 그만두는 일도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다. 이러한 까닭으로 호주의 M자형 커브는 완만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3~6세의 유자녀 부부가족 중 부부 두 사람이 모두 전일제로 근무하는 근로형태가 증가하고 있으며 젊은 세대의 가족들이 선호하고 있다. 현재 호주의 영유아 보육·교육에 지출하는 비용은 GDP의 0.45%이며 이는 민간부문 비용 및 육아휴직 비용을 포함한 것이다. 부모부담률은 보육비용의 38%, 교육비용의 22%이다. 육아휴직은 52주이며 대부분 무급이다. 유급 출산휴가는 평균 8주이다.

나. 호주의 보육정책

1) 보육서비스의 종류

호주 보육서비스는 종일제보육, 가정보육, 방과후 보육, 가정내 방문보육 등이 있

고, 교육기관으로 유치원이 있다.

종일제 보육시설(Long Day Care Centers)은 0세 ~ 취학전 아동을 보육하는 보육시설로서 하루에 8시간 이상, 주5일, 연간 48주 운영한다. 73% 정도가 민간부문에 의하여 공급되며, 영리목적의 기업에 의하여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 국제 보육기업인 ABC 보육경영회사가 1,000여개 이상의 시설을 운영한다.

가정보육(Family Day Care)은 가정보육모가 통상 자기 집에서 5 ~ 6명의 아동을 돌보는 것으로서 종일제를 원칙으로 하며 많게는 100명으로 구성된 가정보육센터(Scheme)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가정보육센터(Scheme)는 가정보육모의 채용, 훈련, 지원 및 활동 평가를 하고 보호자에게는 상담 및 정보제공을 하며, 보호자들이 적절한 보육모를 정할 수 있도록 연계도 한다. 가정보육모는 정부에 등록하여야 하며, 지방 FDC조정국(coordination units)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가정보육은 종일보육에 비해 탄력적으로 운영된다는 장점이 있어 교대제로 근무하거나 계절적 취업자 등에 의하여 유용하게 활용된다. 통상적으로 0세~5세 아동을 보육하고, 특별하거나 위급한 상황에서는 5세 이상의 아동을 보육하기도 한다. 가정보육모는 응급처치 교육이수증 외에는 특별한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지 않다.

방과후보육(Outside School Hours Care, OSHC)은 만5세~12세의 초등학교 학생에게 학교시간 전후 보육을 제공하며 방학중에도 운영한다. 국가기준에 따라, 방과후보육의 경우 아동 30명당 1명의 교사 자격소지자가 있어야 한다.

가정내 방문보육(In-Home Care)은 0세~12세의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제공자가 아동의 집을 방문하여 보육하는 것이다. 주로 농촌·산간지역에 살거나, 아동이 쌍둥이거나, 또는 경찰, 소방수, 간호사, 의사 등 부모의 근로시간이 불규칙할 때에 한정하여 활용된다. 부모나 아동이 불치병을 갖고 있을 때에도 사용할 수 있다. 가정내보육센터(Scheme)의 관리를 받으며 방문교사는 응급처치 자격이 있어야 한다.

이외에 일시보육센터(Occasional Care Centers)는 취학전의 아동이 서로 어울려 사회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한다. 지역의 기관이나 단체들이 일시보육을 주로 제공한다. 운영시간은 일정하지 않으며 주로 전업주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탄력적 서비스(flexible services)는 종일보육, 방과후 보육, 일시보육, 이동보육, 농장보육, 24시간 보육 등 다양한 형태를 띠며, 농촌 및 벽지에 살고 있는 보호자들에게 제공된다. 보육이 필요한 시간은 부모와의 협의하에 결정한다. 이동보육(mobile services)은 각 지역을 방문하여 아동을 보육하거나 같이 놀아주는 서비스이다. 장난감이나 비디오를 대여하기도 하고, 건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주변의 아동

들과 같이 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한편 호주는 보육시설에 시설별 지원을 하지는 않지만 장애아 등 요보호자에 대해서는 시설 운영비를 지원한다. 장애아를 위한 종일요양보육이 있으며, 장애아나 병든 아동을 돌보는 부모들에게 휴식을 제공하는 응급보호도 제공한다. 6세 이하의 정신적·신체적 장애아동을 가진 보호자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시키게 하는 조기중재 프로그램이 있으며, 장애아동의 형제·자매 지원 프로그램도 있다.

보육과 교육이 이원화되어 있는 호주에서 유아교육기관인 유치원(Pre-schools)은 만3세~5세 아동을 대상으로 9:00~15:00까지 운영되며 방학기간 중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학생들은 종일제 또는 반일제를 선택할 수 있으며, 유치원 또는 예비초등학교(pre-primary)로 불린다. 학교별로 운영시간, 아동의 연령 등에 있어 차이가 많으며, 조사에 의하면 예비학교는 주로 3세~4세 아동(특히 4세)이 많이 이용한다.

2)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2003년 9월 기준으로 763,000명의 아동이 시설보육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56%는 종일제 보육시설, 16%는 가정보육, 31%는 방과후보육을 이용하고 있다. 이는 2001년 6월과 비교하여 시설 이용 아동이 88,000명 증가한 것이며, 주로 방과후보육을 이용하는 아동의 수가 늘었다. 보육료는 학교부설 유치원을 제외하고는 자율화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주에서 초등학교 입학전 1년 교육은 무상교육이다. 종일제보육센터, 가정보육, 방과후보육에 대해서는 최소 기준으로 국가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나,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1990년대 중반, 사업주가 제공하는 보육서비스가 권장되었으며, 이는 ILO협약 156에 따른 의무사항에 따른 것이다. 1999년 현재 65개의 직장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사업주는 종일제보육센터 또는 가정보육에 위탁하기도 한다.

호주는 인가보육시설 이용시 입소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1순위는 위험에 처하거나 학대, 방임 아동, 2순위가 부모가 모두 취업, 훈련 및 학업 중에 있는 아동, 3순위는 그 이외 기타 아동이며, 동 순위일 경우에는 원주민, 장애인이 있는 가족 아동, 저소득 가정 아동, 다문화 및 이중 언어 가정 아동, 사회적으로 소외된 아동, 한 부모 가정 아동에 우선권을 준다. 보육시설 등에 빈 자리가 없는데 입소 우선순위 아동이 입소를 희망하면 기존 일반 이용 아동을 퇴소시키고(입소시 정책 공지 및 14일전 통보) 입소 우선순위 아동을 입소하도록 한다.

3) 보육관련 정부 지원

보육 관련 정부지원은 시설 지원보다는 보호자에 대한 지원이 주를 이루며, 보호자에 대한 지원은 2000년 7월부터 보육급여(Child Care Benefits, CCB)로 일원화되었다. 보호자에 대한 지원은 소득, 재산, 취업유무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소득이 많더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시설에 대한 직접지원은 가정보육 및 방과후보육 서비스의 설치비, 장비비, 장애아보육 등에 제공되며 그 액수는 미미하다.

대표적인 정부 지원인 보육급여(Child Care Benefits, CCB)는 종전 자산조사를 통해 제공되던 아동보육부조(Child Care Assistance)와 경제활동을 하기 위하여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맞벌이 또는 한부모가족에게 적용되던 보육료 환불제도(Child Care Cash Rebate)를 통합한 것이다. CCB의 지원수준은 연간소득, 재산, 보육의 유형 및 시간, 보호자의 취업여부, 보육에 대한 필요성 등에 의하여 결정되며, 시설보육과 개인에 의한 등록보육에 모두 지원한다. 시설보육(approved care)을 제공하는 보육시설은 종일보육, 가정보육, 가정내 방문보육(in-home care), 방과후보육, 휴일보육, 일시보육 등을 포함하며,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CCB를 받을 수 있다. 등록보육(registered care)은 조부모, 친척, 친구, 이웃, 가정부 등에 의하여 제공되는 보육이며, 보육 제공자는 가족지원국(Family Assistance Office)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은 부모가 보육제공자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하다. 즉 조부모가 무상으로 보육하는 경우에는 등록할 수 없다. 등록보육에 대해서 요건이 맞는 경우 정부에서 일부 재정지원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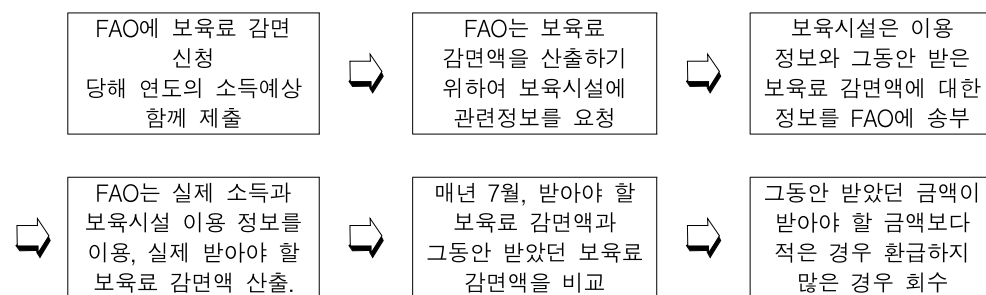
CCB를 받기 위한 자격요건은 첫째, 호주 주민이어야 하며, 둘째, 현재 호주에 살고 있어야 하고, 셋째, 필수적인 예방접종을 완료하여야 한다. 부모는 요건에 따라 아동당 1주일에 20시간, 50시간, 또는 50시간 이상의 CCB 혜택을 받을 수 있다(표 VI-2-3).

CCB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매월 보육료 감면을 받는 방법이고(그림 VI-1-1 참조), 두 번째는 일단 보육료를 지불한 후 나중에 한꺼번에 환급을 받는 방법이다 (그림 VI-1-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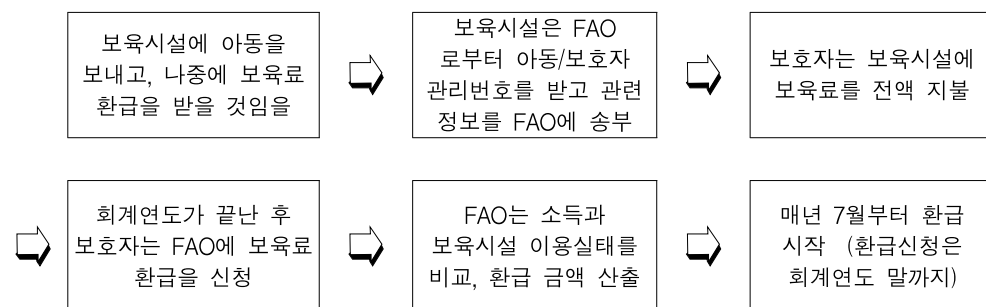
CCB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금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소득에 변동이 있을 때는 즉각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각 회계연도가 끝나면 국세청은 가구의 실제소득을 확인, FAO에게 통보한다. 동 자료에 근거하여 FAO는 CCB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심사한다. 심사후 과다 지출이 이루어졌음이 발견되면 환급절차에 착수한다.

〈표 VI-2-3〉 호주의 CCB 자격요건

구 분	요 건
20시간의 CCB	○ 아동을 보육시설에 보내는 경우, 무조건 20시간의 CCB를 받을 수 있다. 부모 소득, 아동의 연령, 보육시설 이용시간 등과 무관하게 받을 수 있는 최소 급여.
50시간의 CCB	○ 아동을 보육시설에 보내고 다음 요건에 합치할 경우 50시간의 CCB 대상 - 아동을 위한 Carer Allowance (장애아동을 돌보는 부모 또는 후견인에게 지불하는 정부지원)를 받는 경우 - 보호자가 일하는 경우 (풀타임, 파트타임, 비정규직, 자영업,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자원봉사, 직업훈련, 유급휴가, 무급병가, 육아휴직 등) - 보호자가 일하거나 취업을 위한 훈련을 받는 경우 (방학 포함) -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찾는 중인 경우 - 기타장애를 갖고 있거나 또는 장애아/인을 돌볼 경우) ○ 매달 보육료 감면을 받는 경우에만 한정(환급의 경우 제외)하며, 보호자 모두 근로, 공부, 훈련 등으로 아동을 일주일에 50시간 이상 보육할 수 없을 경우에만 제공



[그림 VI-2-1] 매월 보육료 감면을 받는 방법



[그림 VI-2-2] 년 1회 보육료를 환급받는 방법

CCB 금액⁵³⁾은 최고액과 최소액을 기준으로 보호자의 소득수준 및 보육시간, 아동의 취학여부, 보육시설에 보내는 이유 등에 따라 정해진다. 최소액은 보호자의 소득수준 등에 무관하게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서, 시설보육(approved care)의 경우 보호자가 고소득자라도 받을 수 있다. 최소액을 받는 경우에는 소득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2007-8년에는 시설보육을 이용하는 가구의 연소득이 \$35,478 이하이고 모든 조건을 다 충족할 경우 최고액을 받을 수 있다. 등록보육(registered care)을 이용하는 경우 최고액은 시설보육의 최소액에 해당되는 금액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실상 정부가 시설보육을 권장하고 있는 셈이다⁵⁴⁾(표 VI-2-4 참조).

〈표 VI-2-4〉 호주 시설보육 이용 시 CCB 지원금액

구분	아동 수	일주일 당	시간당
최 고 액	1	\$137	\$2.74
	2	\$143.18 (아동1인당)	\$2.86
	3	\$148.99 (아동1인당)	\$2.98
최 소 액		\$23.00	\$0.46

연소득이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부분지원비율 (partial rate)을 적용하여 지원금액을 결정하며,⁵⁵⁾ 기준액은 아동수에 따라 차이가 난다.

아동을 보육시설에 보낸 경우, 1년에 30일까지는 결석을 하더라도 CCB를 받을 수 있다. 특별한 경우⁵⁶⁾를 제외하고는 30일을 초과하여 결석한 경우, 그 기간 중 받은 CCB를 반납하여야 한다. FAO는 결석일수를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하며, 과다 지급한 경우 환급조치를 한다. 2004. 현재 585,600 가구가 보육급여를 받고 있으며, 2002~2003년을 기준으로 한 가구당 보육급여 평균액은 2,046호주달러이다. 아동 1인으로 계산할 경우 평균 \$1,401 호주달러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다. 호주 보육정책의 고용친화적 함의

정책의 목적에서 호주는 여성노동시장참여 촉진, 노동공급의 증진, 근로형태와 공

53) CCB 금액은 일주일 기준이며, \$는 호주달러를 의미함.

54) 아동 1인당 등록보육(registered care)의 최고액은 \$23임.

55) 2007년 연소득이 \$35,478인 경우 최고액, \$131,570(아동 1인의 경우)이면 최소액을 받음.

56) 특별한 경우는 다음과 같음. ① 질병: 병원에서 발급하는 증명서 제출 필요, ② 전염병으로 인한 결석, ③ 보호자의 휴가로 인한 결석, ④ 학교가 문을 닫는 경우, ⑤ 공휴일, ⑥ 법원이 다른 사람에게 아동의 보호를 명령하였을 경우, ⑦ 유치원(preschool)에 재학중인 경우 등임.

보육서비스가 연계되고 있다. 어린 자녀가 있으면서 노동이 가능한 소득지원수급자의 노동시장 재통합을 촉진하고 있다. 아동보육이 필요한 구직자를 위해 아동보육 매칭서비스와 무료보육을 통해서 직장, 교육, 훈련(JET) 프로그램에서 추가자원을 제공한다. '2001년 호주인 함께 일하기(the 2001 Australians Working Together)' 프로그램은 여성의 노동시장 재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보육자원을 증가시켰다.

아동보육 우선 제공 대상은 특별한 요구가 있는 가족, 교육이나 훈련에 참여하기 위해서 아동보육이 필요한 사람 등이다. 그러나 이들 아동을 받아들이는 것은 각 보육시설에 달려있다. 호주에서 사용자 지원금이 아동보육수당(Child Care Benefit)을 통해서 제공되고 있는데 아동보육이 노동시장 참여와 관련된 것이냐에 따라 지원이 가능 시간은 최대 주당 20시간과 주당 50시간으로 나누어 보육지원을 고용 촉진 목적과 연계하였다.

전반적으로 호주의 가족정책들은 전통적인 가족구조의 붕괴나 급격히 늘어나는 여성의 사회진출 같은 사회변화들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1) 유년기와 조기 서비스 프로그램, 2) 과도기 청소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3) 일과 가정의 균형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일하는 부모, 특히 취업주부들의 지원에 초점을 두고 육아/보육지원에 큰 힘을 쏟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유급출산휴가제도(paid maternity leave) 도입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많은 찬반 논의를 불러일으키며 최근 호주가족정책의 주된 이슈로 떠오르고 있음은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고 하겠다.

3. 미국의 직장보육과 여성고용

가. 미국의 일·가족 양립 정책

미국은 1980~1990년대 제조업부분에서 일자리 창출률이 높았다. 미국 노동부는 도제 및 비전통적인 직종에서 여성 법(Women in Apprenticeship and Nontraditional Occupations: ACT)을 1992년에 제정하고 동 법에 의해서 WANTO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WANTO 프로그램은 기업주와 노동조합이 도제를 지원하여 비전통적인 직종에 여성 참여를 촉진시키도록 하는 제도이다. 즉, 지역사회단체에서 재정지원을 하여, 이들 사회단체로 하여금 도제나 비전통적인 직종에 여성채용이나 보육을 증가시키는 사업주나 노동조합을 기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였다.

미국의 일가족양립정책으로 가족휴가(FLMA: Family and Medical Leave ACT)는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 가족휴가를 명문화하고 있는 하나의 연방법은 1978년에 만들어진 PDA(Pregnancy Discrimination ACT)인데 기업이 임신부에게 일시적인 휴가를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미국에서 가족친화적인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조직으로는 노동부의 여성국이 다. 여성국은 1989년부터 여성국 정보센터를 통해서 각종 차별, 성희롱을 포함해서 가족친화적인 제도와 관련된 각종 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업주가 지원하는 보육시설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오고 있다. 또한 최근 여성국은 기업들이 서로 가족친화적인 제도에 대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가상적인 네트워크 회의를 개최할 계획에 있다. 공공부문의 가족친화적인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의 정부조직은 인사관리청 소속의 '가족친화적인 제도지원 사무국'이 있다. 지원사무국은 중앙행정부처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가 다양한 가족친화적인 제도를 사용하도록 선도하고 기술적인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서 지원사무국은 연방 보육지원제도와 원격지 근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육아와 관련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공무원을 지원한다.

또한, 미국 근로자들은 적절한 가격에 양질의 이용하기 편한 보육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1998년 미국 백악관에서 노동부의 '기업보육지원정책'을 발표하였다. 미국 노동부는 기존에 효율적인 보육지원제도와 가족친화적인 제도를 가진 기업들이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의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 간의 보육관련 후견인제도(Business-to-Business Mentoring Initiative on Child Care: BTB)를 도입하였다. 보육관련 후견제도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가하여 보육과 관련된 지식과 경험을 상호 교류,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배경화, 2006).

최근 미국 기업의 가족친화적인 제도의 운영 현황을 조사한 가족과 일 연구소(Families and Work Institute)⁵⁷⁾의 조사 결과, 직장 혹은 직장 근처에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비율은 9%, 보육바우처 혹은 보육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기업비율은 5%, 보육비용 지불만큼의 임금을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도록 하는 부양가족간호지원제도(DCAPs)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비율은 46%이다.

57) <http://familiesandwork.org>

〈표 VI-3-1〉 기업 규모별 미국의 아동양육 지원 비율

단위: %

제공	전체	50~99명	1,000명 이상
지역에 위치한 보육관련 정보제공	35	30	57
직장근처 보육시설 운영	9	7	21
보육바우처 혹은 보육비용 지원	5	5	13
부양가족간호제원제도(DCAPs)	46	37	76
보육수당 지원	9	8	9

자료: Families and Work Institute(2008). 2008 National Study of Employers

나. 미국 직장보육 지원⁵⁸⁾

미국 직장보육시설의 행정적 지원체계를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시기, 법제도적 체계, 운영 및 관리형태 부문으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시기를 보면 미국은 1960년대부터 직장보육사업이 재개되었고 1970년대 후기부터 초에 근로 여성의 증가, 기업체의 단체노동 인력부족, 새로운 인사관리 방법 개발, 가전제품 생산업체의 가족적 이미지 부각시도에 기인하여 기업주의 직장보육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여 직장보육사업이 다시 확산, 급증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더불어 미국 정부는 민간주도의 직장보육사업을 고무, 촉진하는 보육프로그램의 공급 확산을 위한 행정적 지원정책을 연방정부와 주 정부가 추진하게 되었다(이남순, 1999).

특히 미국에서는 1982년 직장보육시설의 수가 406개에서 1986년에는 2천개로 급증하였는데 이는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기업주의 인식증대, 정부의 지원정책, 매스컴 보도 및 조사 연구 활동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서, 미국 내 100인 이상 근로자를 가진 44,000여개의 직장 중 직장보육시설 설치 사업체는 2,500여개(약 6%)로 추정되고 있다(이남순, 1999). 미국 노동부에 의하면 이러한 미국 직장보육시설의 상당수가 병원에 설치되어 있으며, 그 밖에 금융관련 서비스업과 정보관련 서비스업에 보급되어 있다. 직장보육시설을 병원에 집중 설치한 것은 간호 인력의 부족에 따른 것이며, 여타의 기업에서도 주로 숙련직 인력의 확보를 위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John, 1990).

둘째,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지원체계를 보면 주정부에서는 직장보육 사업 운영경

58) 황순욱(2007). 한국직장보육시설과 외국직장보육시설의 지원체계에 대한 비교 분석, 배재대학교 석사학위논문에서 요약 인용함.

비에 대한 면세제도를, 연방정부에서는 직장보육의 교육홍보사업, 중개사업, 보육에 대한 전문 지식 및 기술 지원 사업, 직장보육시설의 시범 운영, 시설설치 추진을 위한 지원사업과 보육관련 정보제공 및 지원, 재정적 지원과 보육관련법 개정 등을 실시해 오고 있다. 미국은 대표적인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한 신자유주의 보육모형을 가지고 직장보육과 교육제도에 있어 다양성, 지방분권주의, 전형적인 교육자치제의 특징을 지닌 철저한 지방분권적 행정체제를 택하고 있다. 따라서 통합된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규정된 틀이 없기 때문에 50개 주가 가지고 있는 의무교육 이전의 영유아 보육서비스에 대한 접근방법이 모두 다르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나정·장영숙, 2002).

미국은 고용주의 보육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행정체제지원을 활용하고 있고 미국의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상업용 복합단지 내에서 근로자를 위한 직장보육시설을 의무화하거나 보육시설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인센티브 제공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셋째, 운영 및 관리형태 측면에서 보면 미국은 민간주도로 직장보육시설이 운영됨에 따라 무엇보다도 영리목적의 대형보육체인이 발달한 것이 특징이다. 미국의 직장보육시설은 회사가 직접 운영하는 것 보다는 전문 회사에 맡겨 운영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이유로 유명한 직장보육시설 운영업체 브랜드가 있을 정도이다. 이들은 전국적인 서비스 망을 확보하고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중 가장 유명한 회사는 브라이트 호라이즌 패밀리 솔루션(Bright Horizon Family Solution)⁵⁹⁾ 이라는 미국 내의 유명한 기업들이 이들의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며 보다 높은 생산성과 매출을 달성하고 있다. 미국에서 이러한 직장보육시설은 보통 1,000달러 미만의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20% 정도는 회사에서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기업차원에서 직장보육에 관련한 정보지원과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안내서비스를 해당 근로자들에게 제공하고 지역보육 간의 연계를 통해 포괄적인 직장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도 상당수 있다. 대다수의 기업들은 대형 보육체인과의 계약 하에 이들 시설들을 이용하는 근로자들에게 보육비에 대한 할인서비스를 제공하는가 하면, 주로 주정부나 연방정부를 통해 지역보육시설을 후원하도록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운영에 활력소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은 기업과 가정보육의 연계도 이루어지고 있다. 가정보육사협회가 보육서비

59) <http://www.brighthorizons.com>

스 이용권을 발행하면 기업이 이를 구입해서 근로자들에게 주는 형태의 고용주 지원 보육서비스를 통해 가정보육도 크게 활성화시켜 나가고 있다.

요약하면 미국 직장보육시설에서의 행정적 지원체제의 특징은,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민간주도의 직장보육사업을 촉진하고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 범제도적 후원을 통해 중개자와 촉진자로서의 뒷받침에 노력하고 있고, 직장보육시설의 운영형태는 대규모 보육관련 기업에서 가정보육지원형, 지역사회 후원형 등 폭넓은 선택 가능성을 제공하고, 기업들이 자체의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표 VI-3-2〉 미국 직장보육시설 행정 지원체제의 특징

구분	특징
정부측면	· 민간주도의 직장 보육 사업 촉진을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나서서 추진 · 정부는 직장보육시설 참여 확대를 위해 중개자와 촉진자로서 법,제도적 후원과 뒷받침에 노력 · 직장보육 중개 사업을 주정부가 직접 나서서 시행
기업측면	· 직장보육사업의 운영형태의 다양성과 선택의 폭 넓음 · 대규모 기업에서 기업자체의 필요에 의해 자발적 참여 · 보육기업들이 직장보육시설 설치, 운영을 전국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추진

〈표 VI-3-3〉 미국 보육 구조 및 체계

외무 교육 연령	아동 연령	이용률 (대상 연령)	국공립 및 비영리 비중	관할 행정 체계	감독 평가 담당	GDP 대비 교육/보육 지출	GDP 대비 교육/보육 지출	보육/ 교육비 부담
6	0~6	26% (0~3) 50% (3~4) 95%(5)	보육 +교육 62% 보육만 24%	분리 이원화	민간 협의회	0.36	(0.4%); \$627/ 아동1인 (0~6세)	5세 정부 부담 (41%)

자료: 장지연 외(2005). 일·가족 양립체계의 선진국 동향과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재구성

다. 미국의 일하는 여성 지원의 함의

미국에서도 여성들이 직장생활, 사회생활에서의 성공과 훌륭한 자녀 양육을 동시에 해 해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미국의 여성들은 우리나라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기업 또한 여성들이 마음 놓고 회사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회사 내에 설치되어 있는 직장보육시설도

이러한 취지로 마련이 되었으며,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가 가족의 문제가 아닌 사회 복지정책 차원에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미국은 대형보육체인으로서의 직장보육시설은 고용주지원 보육서비스를 지역보육과 연계하거나 또는 가정보육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후원형태의 보육사업을 활성화 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직장보육시설 운영 이외에도 미국의 기업들은 풍부한 육아휴직 및 집에서 근무할 수 있는 재택 근무제, 출퇴근 시간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자율 근무 시간제, 자녀 양육 보조비 추가 지급 등 다양한 근무제도로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4. 기타 국가의 일하는 여성 지원 동향 60)

가. 모성휴가(출산휴가) 관련

영국은 근로자가족들을 지원하는 고용법(Employment)에 의하여 부모 중 한 명에게 주어지는 모성휴가를 제공하며 유급이다. 임신한 모든 여성근로자들은 근무 연수에 상관없이 최장 1년(52주)의 모성휴가를 가질 수 있으며, 연속 모성휴가는 두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기간은 26주간의 정규 모성휴가(Ordinary Maternity Leave)이다. 이는 여성이 26주간의 휴가를 끝내고 휴가전과 동일한 직급 등 휴가와 상관없이 동일한 노동조건으로 직장에 복직하는 것을 보장하고 있다. 두 번째 기간은 26주간의 추가 모성휴가(Additional Maternity Leave)라고 부른다. 2008년 10월부터는 정규 모성휴가와 동일한 근로계약상의 혜택들이 추가 모성휴가를 사용한 여성근로자들에게 부여될 예정이다.

또한 여성근로자는 본인이 휴가 중일 때에도 고용주의 보너스 지급의무나 고용주의 연금 납부책임은 계속된다. 임신한 여성근로자들은 정해진 근무연한과 평균 소득 요건을 충족시키고, 고용주에게 정해진 기일 안에 모성휴가 기간과 날짜 등을 고지하면 39주간의 법정 모성임금(Statutory Maternity Pay: SMP)을 고용주로부터 받을 자격이 된다. 이 SMP 수령기간을 12월까지 늘일 계획이며, SMP의 임금대체율은 첫 6주간은 여성근로자의 평균 주급의 90%, 다음 33주간은 고정급, 주당

60) 여기의 내용들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2008년 8월25-26일 개최한 “일과 가족의 양립 국제 심포지움”의 발표사례들을 요약 정리한 것임.

117.18 파운드나 평균 주급의 90%이다. 고정급은 매년 4월에 심사를 걸쳐 결정하며, SMP 규정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최근 고용기록과 수입현황에 근거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여성근로자들은 영국 지역노동사무소에 저수준의 임금대체율을 가진 39주간 모성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모성휴가중인 여성은 자신의 고용주와의 합의하에 자신의 고용계약 조건하에서 10일간 일 할 수 있다.

캐나다 관련 제도는 각 주마다 차이가 있다. 출산휴가는 노동법에서 17주를 규정하고 있는데, 앨버트주 15주, 퀘벡주와 서스캐처원주 18주이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37주의 무급 출산 및 입양휴가에 관한 연방기준을 따르고 있으나, 퀘벡주와 노바스코티아주에서는 52주를 휴가로 제공한다. 퀘벡주와 매니토바주를 제외한 모든 주관할 정부에서는 출산과 육아휴가를 합친 기간이 52주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지방정부 대다수는 부모 모두가 육아 또는 입양휴가 전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앨버트주,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주, 뉴브런즈윅주에서는 이 휴가를 두 부모가 나누어 쓰도록 하고 있다. 휴가가 적용되는 노동자의 근속기간이 매니토바주의 경우 6개월, 앨버트주와 노바스코티아주의 경우 12개월이고, 퀘벡주, 뉴브런즈윅주,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는 특정 근무기간을 요구하지 않는다.

네덜란드는 16주간 모성휴가를 지급하며, 출산전 4~6주, 출산후 10~12주, 임금 전액을 지급한다.

나. 부모휴가(육아휴직)관련

영국의 부모휴가는 현재 자녀 한 명당 13주이다. 12개월 내 최대 4주 이용이 가능하다. 이는 1년 이상의 근무연수를 가진 모든 근로자들에게 부여되고 있으며, 여전히 무급휴가다. 장애 아동이 있는 부모들을 위한 휴가를 15주에서 18주로 늘이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어머니와 아버지 중 누구든 받을 수 있으며, 2001년 신생아의 아버지들을 위한 유급 육아휴직을 도입하였다. 3일의 출산휴가에 11일의 휴가가 더해지게 된다. 육아휴직은 자녀가 3살 될 때까지 휴직할 수 있으며, 무급휴가이며 가족수당기금(family allowance fund)⁶¹⁾에서 자신들의 자녀를 3세까지 돌보는 부모들

61) 국립가족수당기금(CNAF)은 프랑스 가족정책의 핵심 집행기관으로 전국에 123개의 가족수당기금(CAF)을 두고 있음. CAF는 각 가정에 지급할 가족수당과 보조금을 산출해 지급하고 기타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함. CNAF의 가족수당 기금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으며, 태어나는 아이와 산모에게, 가족이 많은 가구, 집이 없거나 편부, 편모가정, 저소득층 가구에 우선 지급함. CAF는 이 외에도 신생아 지원, 여가시간 지원, 지역사회활동지원, 주거비 지원

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가정양육수당은 부모휴가 중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자격조건을 충족시키는 가족 전부에게 지급되므로 대체임금이라기 보다는 가족급여이다. 이는 최저 임금수준 이하의 가족에게 지급되는 정액수당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체의 90%에 가까운 가족들이 수급자격을 가지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출산과 육아 휴가를 합친 기간이 52주를 초과할 수 없으며, 육아 휴직급여는 출산 휴가에 10주를 추가로 제공하며, 부모 중 한 명이 받거나 나누어 받을 수 있다. 입양부모에게도 유사한 휴직급여가 제공되며, 2001년 연방 육아휴직급여는 35주까지 연장되었고, 배우자의 출산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제공되었던 2주 간은 폐지하였다. 또한 최소 업무 시간을 700시간에서 600시간으로 줄여 시간제 노동 또는 불안정한 직업을 가진 여성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대부분의 캐나다 부모들은 출산/육아 휴가급여를 보장받지만, 퀘벡주는 예외적으로 2006년부터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연장된 출산휴가급여 외에도, 퀘벡주는 대기기간을 폐지하고 5주 부성급여 및 7주간 높은 소득대체율(75%에서 최대 57,000)의 급여를 제공한다.

네덜란드는 8세미만 자녀 부모 각각에게 13주씩 부모휴가를 지급하며 무급이다.

스웨덴은 부모보험에 의해 양쪽 부모가 부모휴가급여를 사용해야 하며, 보험은 부모가 경제와 자녀에 대한 책임 공유를 원칙으로 한다. 부모휴가는 16개월로 어머니 8개월, 아버지 8개월이다. 두 달은 다른 부모로 이전할 수 없다. 2개월은 명시된 부모에 의해 사용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 16개월 중 13개월의 급여는 소득과 연계되어 이전 수입 중 80%를 제공받는다. 부모휴가동안 수입손실을 최소화시키는 추가 급여를 얻기 위해 고용주와 단체로 교섭협약을 가진다. 이외 3개월은 일당 6유로 정도의 낮은 정액급여가 주어진다. 노동에 참여하지 않는 부모나 이전 수입이 없는 부모들은 전체 기간 동안 정액요금을 받는다. 부모는 자녀가 8살이 되기 전 원할 때 언제든지 휴가를 사용한다. 또한 휴가를 파트타임으로 사용하고 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스웨덴은 또한 임시부모급여를 지급하는데 이는 0~2세 자녀를 둔 부모 비고용자에게 아픈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 최대 120일까지 휴일을 제공한다. 또한 소득과 연계되어 1일 평균 수입의 80%를 제공한다. 아버지의 날처럼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일반적으로 아버지에게 의해서 사용되는 10일을 포함하고 있다. 부모휴가는 일반적으로 양 부모가 동시에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이 10일은 가정에서 첫 출산

등 지원 함(해럴드경제, '08. 7. 18).

기간 동안 어머니와 자녀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 부성휴가 관련

영국의 부성휴가는 1주 혹은 연속 2주간이며, 부성휴가와 급여(Parental Leave and Pay Allowance)자격이 있는 부모들은 유아를 돌보거나 출산을 앞두고 있는 배우자들을 돌보기 위해 유급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기간 중 낮은 임금대체율이기는 하지만 부성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향후 추가로 도입될 추가 부성휴가(Additional Parental Leave)제도에서는 만약 부인이 복직을 하면 25주간의 추가 부성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중 일부분은 유급이다.

네덜란드의 경우 2일을 지급하며, 임금전액을 지급한다.

라. 탄력근무법(Flexible working law) 관련

영국은 6세 이하의 자녀나 18세 이하의 장애 자녀가 있는 부모들이 고용주에게 노동시간 단축과 근무시간자유선택 등의 탄력근무를 신청할 수 있으며, 2007년 성인을 간호해야 하는 근로자들까지 확대되었다. 이러한 권리는 향후 6세 이상의 아이를 가진 부모에게까지 확대될 계획이다.

프랑스의 경우 법정 근무제는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39시간에서 35시간으로 축소되었으나, 유연노동시간제는 근로자들의 요구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서비스 도는 근로조직의 필요에 따라 고용인에 의해 강요되는 경우도 흔하다.

네덜란드는 노동시간 감축을 통하여 파트타임과 유동적인 근무를 시행하며, 2000년 근로시간 조정법(Working Time Adjustment Act)이 시행되어 사람들에게 근무시간을 증가 혹은 감소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마. 생애주기 정책관련

네덜란드는 생애주기 법안 시행으로 생애주기저축제도(Life-course saving scheme-levensloopregeling)를 시행하고 있다. 생애주기저축제도는 2006년에 소개되었으며, 사람들이 삶의 후반기 무보수 휴가를 위해 돈이나 시간을 저축하는 것을, 특히 그들이 일과 양육 보호를 결합할 때 삶이 바쁜 중반기동안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생애주기저축제도는 사람들이 매년 전체 연봉의 최대 12%까지 저축하는 것을 허락한다. 저장된 금액은 조기은퇴나 안식일 혹은 부모휴가에 사용

된다. 생애주기저축제도는 계획 참여에 따른 세금감면(참여하는 해 마다 183유로), 부모휴가 자금을 위한 계획을 사용하는 참여자에게는 추가감면(법정 최소 임금의 절반 혹은 월 최대 639유로)을 제공한다. 후자는 보수부모휴가를 계획하는 삶들을 장려하기 위한 임시적인 법안이었다. 지급액을 독립된 계좌에 저축되어진다.

바. 정책적 함의

외국 여러나라들은 전반적으로 직장에서 일하는 여성 지원에서 보육서비스 지원 이외에 출산휴가, 육아휴직, 탄력근무제와 같이 일하면서 자녀를 기를 수 있는 근로 환경을 제공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국가의 여성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부모권을 지원하는 제도는 매우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개발되어 있다. 이러한 제도는 점차 부성에게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즉, 단순한 여성근로자 보호로부터 가족친화적 기업으로의 진전을 나타낸다.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제도적으로 초보적인 단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육아휴직이나 출산 휴가 관련 정책이 본 과제의 핵심을 아니지만 보육서비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영아보육정책을 육아휴직 중심으로 하여 부모가 돌보도록 할 것이지, 아니면 보육서비스 중심으로 할 것인지와 같은 근본적 정책방향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VII. 일하는 여성 보육지원 강화 방안

제7장에서는 지역사회와 사업장의 일하는 여성을 위한 보육 지원 현황과 문제점을 바탕으로 일하는 여성을 위한 보육지원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정책제안은 지역사회 자녀양육 지원 정책과 직장에서의 지원 정책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앞서서 먼저 제1절에서는 일하는 여성 보육지원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제안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였다.

1. 정책제안의 기본원칙

일하는 여성을 위한 보육지원은 거주지 중심의 지역사회 보육정책 강화와 직장 중심의 보육지원 정책 추진의 두 가지 방향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여성근로자의 대다수의 사업체가 중소기업이고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이다. 2007년말 기준 여성 취업자는 약 969만명이며 이중 임금근로자는 694만명이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여성근로자는 약 321만명이다. 즉, 고용보험 가입 대상은 전체 여성 취업자의 33.1%이고 여성 임금근로자의 46.3%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마저도 모두 사업주로부터 직장보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근로자 300인 이상 규모의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는 여성 25%, 남성 28%에 불과하다. 대다수 사업장이 중소 규모임을 고려하면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유도하거나 사업체에 보육료 지원을 요구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사업장 중심의 보육지원 정책의 대상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일차적으로는 지역사회 보육정책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초기 보육정책이 취업모 자녀 보육을 전제로 시작되었고, 보편주의적 보육정책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점은 아직도 유의하다.

그러나 직장 중심 보육지원 정책은 여전히 강조되어야 할 영역이다. 외국의 경우 직장보육 지원을 법으로 강제하고 있지는 않고, 출산장려정책이나 노사관계 개선 정책의 일환으로 사업체의 근로자 보육 지원을 권장한다. 그러나 사업장이 채택하는 수단으로는 단축근로나 육아 휴직 등에 비하여 그 비중이 크지는 않다. 사업장이 근로자의 보육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직접 설치보다는 지역사회 보육시설을 활용하거나 보육경영 기업들의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직장보육을 법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남여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의 상징적 의미가 크다. 그러나 이제 실효성도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보육에서 직장보육이 차지하는 적정 비율이 어느 수준이어야 하는 지 준거는 없으나 관련법이 있는 만큼 법은 유지되어야 하고, 최소한 법이 정하는 바는 추진되어야 한다. 현재 보육 아동의 1.4%를 담당하고 있는 직장보육은 의무설치 사업장이 의무 이행과 더불어 보육아동의 3% 수준까지는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아울러 직장보육시설 서비스 내용이나 질적 수준에 대한 관리는 노동부 이외 보건복지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관여를 필요로 한다.

2. 지역사회 보육정책의 일하는 여성 지원 강화 방안

제2절에서는 지역사회 보육정책 중에서 여성 근로자 지원과 보다 밀접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에 한정하여 내용을 제안하였다(표 VII-2-1 참조).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VII-2-1〉 일하는 여성 지원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보육정책 방안

소분류	과제
보육시설	○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및 기능강화로 저소득층 지원 내실화 ○ 취약보육 강화 ○ 취업모 입소 우선 정책 ○ 이용시간과 비용 이원화 ○ 취업모 차등보육료 차등 적용
보육시설 이외	○ 공공 가정내보육서비스 이용 가능성 제고 ○ 취업모 자녀 양육비용 지원 강화 - 영아 양육수당 개선 - 세제지원 개선 ○ 다양한 이용시설 설치

가. 보육시설 관련 정책

1)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및 기능 강화

가) 필요성

일하는 여성의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향의 하나는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근로자 '가까이'에 두는 것이다. 살고 있는 집 가까이에 시설설비와 교육프로그램이 우수한 보육시설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가능하다면 직장보육시설이라는 특수한 보육시설의 설치를 기업에 의무화할 필요도 없고 자녀를 데리고 근로자가 멀리 이동해야 할 불편함도 없으므로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자녀양육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국·공립 보육시설이다. 그러므로 국·공립보육시설이 지역에 충분히 설치될 때 일하는 여성의 자녀 양육은 한결 어려움을 덜게 될 것이다.

직장보육시설 설립에 대한 수요가 높고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편이지만, 사업체에 따라 이용 수요가 고르지 않고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현실에서 직장보육시설에 맞벌이 가정의 자녀 양육을 의지할 수는 없다. 따라서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은 일하는 여성을 위한 보육지원으로서 가장 기본적인면서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방안이다. 무상보육 등 보육비용 지원이 현재 계획대로 확대되면 장기적으로 볼 때 국공립시설 설치가 더 예산 절약적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정책제안

지역사회 보육의 기본적인 인프라로서 국·공립보육시설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일정 비율이 되도록 균등한 지역적 배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균형 배치를 위하여 국고 분담 항목과 국고 지원 수준을 높이고, 나아가서 중앙 정부가 국가적 플랜을 세워서 국립시설로 설치하는 방안 추진을 제안한다. 특히 산업단지 등 근로자 밀집 지역에는 단지 조성 시부터 인근 적절한 주거지에 반드시 국공립시설이 함께 설치되어야 한다.

취업여성의 상당수가 보육료 지원 대상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국·공립보육시설을 중심으로 포괄적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저소득층 여성 취업을 지원하면서 한편으로는 실질적인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할 수 있다. 포괄적 보육 서비스는 단순한 보호와 교육의 결합된 서비스라기보다는 아동의 총체적 복지를 위하여 아동과 아동을 둘러싼 제반 환경에까지 개입하는 광범위하고 적극적인 보육서비스를 의미한다.⁶²⁾

62) 포괄적 보육서비스 내용은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석식 및 조식 반찬 도시락, 주변 결식아동 도시락 배달), 방과후 보호서비스, 숙제, 독서지도, 일기지도 등 학습지도 프로그램, 자치회, 위생지도 등 생활지도 프로그램, 상담서비스 및 병원 의뢰·동행서비스 등 정서지원 프로그램, 영화관람, 미술지도, 레크리에이션 등 문화활동 프로그램, 기타 목욕, 이용서비스 등 부모가 적절하게 해 주지 못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뿐만 아니라 부모취업 지원 등 부모 서비스도 사업 영역에 포함됨.

다) 고려사항

현재 국·공립보육시설 아동 우선 입소순위에서 저소득층 자녀와 장애아, 맞벌이 가정의 자녀가 모두 1순위에 속해 있다(여성가족부, 2008). 즉 일하는 여성이 있는 가정의 자녀라 할지라도 직장보육시설만큼 이용편의를 보장하고 있지는 않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이용 우선 순위가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지역사회에 속한 일반 보육시설의 특성상 우선순위 고려 없이 대기아 순으로 입소를 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일하는 여성의 정의를 어떻게 내릴 것인지에 대한 논란도 있다. 정규직-비정규직, 전일근무-시간제근무, 고용보험가입근로자-비가입근로자, 근로직-봉사직 등 등 구분에 따라 어디까지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것인지 분명치 않다.

따라서 국·공립보육시설이 저소득층 자녀, 맞벌이가정 자녀를 우선으로 입소시키는 목적을 가진 시설임을 운영자와 이용자가 모두 인지하여 실질적으로 일하는 여성의 자녀 양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국·공립시설을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일하는 여성’의 정의를 직장보육시설 이용자에 준하여 차별화하는 작업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2) 취약보육 서비스 강화

가) 필요성

보육시설에서 정규시간 외에 취약보육 즉, 야간 시간연장보육, 휴일보육이나 일시적 아픈 아동(환아)을 돌보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율은 매우 낮다. 대부분의 경우 영아 부모들은 취약보육 필요 시 보육시설 이용과는 별개로 필요한 시간만큼 친인척이나 조부모, 아이돌보미 등 다른 대안을 찾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안적 인력이 항시 활용 가능할 수가 없고 아이돌보미를 이용할 경우 추가적인 비용부담이나 자녀가 가질 수 있는 정서적 불안정감 등을 고려할 때, 자녀가 등록되어 있는 보육시설에서 부모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취약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일하는 여성의 자녀 양육부담은 한결 가벼워질 수 있다.

아픈 아동 보육의 경우도, 2007년 조사 결과 영아가 다니는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기고 투약을 의뢰할 수 있다는 응답이 90.2%로 매우 높으나, 병원 데려가기를 마 음 놓고 의뢰할 수 있다는 응답은 52.6%이었다. 취업모의 경우 자녀가 아프게 되면

일에 많은 지장을 받게 되는데, 현재 보육시설의 인력 구조로 보육시설에서 이러한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나) 정책제안

(1) 시간연장형 보육 기회의 확대

시간연장형 보육은 현재의 인건비 지원 방식을 통하여 시간연장형 보육을 실시하는 시설의 규모를 늘려나가야 한다. 특히 농어촌의 경우는 농번기와 같이 특정 기간 동안 기준 보육시간 외의 추가 보육이 요구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취약보육 서비스가 강화하여야 한다.

휴일보육과 24시간 보육은 현재 희망하는 보육시설에 대한 인건비 지원 방식에서 탈피하여 국·공립보육시설 등을 거점형 시설⁶³⁾로 육성하여 이들 시설을 중심으로 역량을 모으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 운영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취약보육을 실시하는 시설은 결코 바람직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므로, 비용을 제대로 지원하여 질 높은 인력에 의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아픈 아동을 위한 서비스 등 긴급 보육서비스의 제공

부모들이 안심하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취업모의 아픈 아동 등을 보살필 수 있는 별도의 긴급 지원체계 마련이 검토되어야 한다. 아픈 아동의 경우 기존 일부 보육시설에서 별도의 설비와 간호사 등 전문인력을 갖추고 아픈 아동을 돌볼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여 병원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특히 보육시설 내 설치 시에는 지역 의원, 병원 등 의료서비스 업체의 협조와 아이돌보미 파견사업, 지역 보건소 인력의 활용, 보육시설내 보건 공간의 설치 등 활용 가능한 요소들을 복합적인 연계하여 활용하여야 하고 별도의 국가 지원도 있어야 한다.

다) 고려사항

시간연장형 보육은 일하는 여성의 자녀 양육에 꼭 필요한 제도이기는 하나 부모의 입장만이 아니라 자녀의 발달,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가족의 역할 및 유지라는 측

63) 거점형 보육시설이란 일반적 보육서비스 제공 이외에 취약보육, 저소득층 포괄적 보육, 지역사회 타 보육시설 지원, 부모 지원 등 지역사회 보육을 위한 다기능을 하는 시설로 논의되고 있음. 그러나 아직 실체는 없음.

면을 생각해 보면 시간연장보육을 무조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다. 수요가 있는 곳은 현재와 같은 인건비 지원을 받으면서 시간연장형 보육을 확대해 가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되, 이용자의 사용일수나 사용시간에 한계를 두어 개인이 무한정 사용의 제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픈 아동을 위한 긴급 보육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전문성은 보장되지만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기존 보육 시설 내에서 별도의 긴급 인력이 투입될 것을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취업모 입소 우선 강화

가) 필요성

조사에 의하면 아동이 있는 가구 중 56.2%가 국·공립보육시설을 선호하고 있으나 선호도에 비해 수요가 턱없이 모자라 입학하기가 어렵다고 응답하였다(서문희 외, 2004). 따라서 중소기업 여성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병행하면서 근무할 수 있도록 국·공립보육시설을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보육시설 운영 원칙상 입소 우선순위는 1순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녀, 장애부모 자녀, 아동복지시설 영유아, 취업 부모 자녀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동일 순위 내에서 경합이 있을 경우, 보육환경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08). 이러한 원칙의 제시는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임의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어 원칙으로서 적용되기 힘들다. 예를 들어 한 입소희망자가 취업을 하고 있는 장애부모 자녀라면 두 조건에 적용이 되지만 이를 고려하지 않고 또 다른 입소희망자인 차상위계층 자녀를 입소시킨다고 해서 원칙에 위반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즉 보육시설 이용이 가장 필요하다고 할 수도 있는 취업모에 대한 배려가 입소 순위에 있어서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입소순위 원칙마저 현장에서는 별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취업모에 대한 입소 우선 순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나) 정책제안

입소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정책을 보다 정교하게 만들어서 보육이 긴급히 필요한 아동에게 우선권이 보장되도록 한다. 각각의 조건을 총 망라하고 각 항목을 점수화하여 해당 점수를 합산하여 점수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법이 효율적일

수 있다. 특히 국·공립보육시설은 대기자가 많으므로 우선순위가 있는 아동을 위하여 호주처럼 우선순위가 낮은 아동의 이용을 제한하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순위에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은 2순위에 속하는 입소희망자 자격을 포함해서, <표 VII-2-2>과 같은 방안을 적용할 수 있다.

〈표 VII-2-2〉 국·공립보육시설 우선 이용 대상자 선정을 위한 점수 예시

구분	점수(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0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1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	8
○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 3급인 정신지체인 또는 발달장애인으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의 자녀	10
○ 아동복지법 제 14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30
○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인 영유아	10
○ 결혼이민자가정 아동	8
○ 한부모가정 자녀	8
○ 조손가정 자녀	8
○ 입양된 영유아	8
○ 기타 저소득층	7
○ 세자녀 이상 가정 영유아	6

다) 고려사항

취업모와 기타 취약계층 자녀 중 어디에 우선권을 주어야 하는지가 논란이 될 수 있다. 또한 원칙적으로 시설 지원이 없는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입소 우선순위 방식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므로 이 방안은 국·공립보육시설에서 주도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며 국·공립보육시설 확충과 취업모 입소 우선순위 강화는 맞물려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4) 이용시간과 비용 다원화

가) 필요성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은 보육시설 운영시간을 12시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용시간에 대한 언급은 없다. 정부의 보육료 지원단가나 보육료 상한선이 한 가지이다. 즉, 운영시간과 이용시간을 동일시하여 12시간 한 가지로 획일화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의 실제 평균 보육시설 이용시간은 6시간 30분 정도이다. 영유아의 기관 이용시간 분포는 5시간 이하 및 5~6시간이 각각 14.6%, 19.1%로 30% 이상이다. 정부의 보육료 지원금은 이용시간을 따지지 않지만 일부 민간보육시설들이 보육료를 종일제와 반일제로 구분하여 수납하고 있다.

정부 지원이 이용시간 구별 없이 모두 종일제를 기준으로 적용된다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미취업모 자녀 0세아가 3~4시간을 이용하여도 월 40만원에 가까운 비용이 기본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고, 저소득층이라고 해도 이용시간을 따지지 않고 보육료가 전부 지원되는 것은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재고가 필요하다.

보편적 보육으로 선진국인 스웨덴의 경우도 2001년부터 미취업모 및 육아휴직 중인 모 자녀 주당 15시간 지원을 허용하였다. 2006년 현재 90%의 자방자치단체가 부모가 취업, 학업 상태인 경우는 주당 40시간, 미취업 및 육아휴직 상태에 있는 부모 자녀는 15시간 이용으로 차이를 두고 있다.

나) 정책제안

보육시설 이용시간을 다원화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평균 보육시설 이용시간을 반영하여 6시간 이하의 연장제와 12시간 종일제 아동으로 구분하고 이에 소요되는 보육비용을 산정하여야 한다. 또한 단시간 이용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육료 지원에 있어서도 종일제는 장시간 보육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는 원칙을 적용한다. 우선은 부모 희망에 따라 이용시간과 비용을 이원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모의 취업 등 가정 사정과 연계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종일제 적용을 조건부로 제한할 경우 모의 취업 이외에도 한 부모 가정, 질병, 가족간호, 구직, 직업훈련 등으로 가정에서 자녀를 적절하게 보호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보호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 고려사항

현재 표준보육비용을 12시간 단가로 적용하여 시간 단축 이용시 보육료를 하향 조정한다면 보육시설 운영비나 종사자의 처우에 필요한 운영비 확보 차원에서는 운

영비 감소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적정 단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종일제 비용을 중심으로 보면 연장제 비용과의 차이는 크지 않다. 인건비는 8시간분이 다 소요되므로 종일제 비용에서 간식비 1회분, 교재교구비와 관리운영비 일부만이 제외될 뿐이다. 반면에 종일제는 교사를 초과근무 수당이 아닌 하루 4시간 파트타임제로 고용할 경우 인건비의 1/2가 추가되어야 하므로 교사대 아동 비율을 조정하지 않는다면 종일제 비용의 증가는 우려되는 수준이다. 이 경우 보육재정 부담이 우려된다.

또한 보육서비스 지원 강화와 모의 취업은 상호 상승효과를 갖는다고 인식되고 있어서 취업모 아동 보육료 지원이 여성의 취업을 활성화한다면 지원 대상 아동 비율도 증가될 전망이므로 소요예산도 증가할 전망이다. 연령별 취업모 등 종일제 보육 필요 비율을 감안하여 연령별로 보육아동의 20~35%가 연장제로 추정된다.

5) 취업모 차등보육료 차등 적용

가) 필요성

보건복지부에서는 도시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까지 소득계층별로 차등화한 보육료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저소득층 중심 지원으로 맞벌이 근로자 가정은 거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즉, 부부가 모두 수입이 있는 경우 이들의 소득은 차등보육료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층에 속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차등보육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제로는 1세 영아 자녀 1명과 3세 유아자녀 1명이 보육시설에 다닌다고 볼 때 보육비용은 51만원 수준이고, 이 비용은 여성 근로자 평균소득 158만원의 32%나 되어 가정에서 여성 취업이 갖는 의의를 상실하게 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도 저해될 수 있다.

그러므로 차등보육료 지원방식을 일괄적으로 가계 총 재산과 소득에 맞추기보다는 맞벌이 가족의 경우 가구 수입 수준과 영유아 자녀 수 등을 고려하여 차등보육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차등보육료지원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 정책제안

현재 차등보육료 지원체계는 소득 기준만을 적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0세아와 만1세아에 한해서는 모의 취업여부를 반영하여 취업모를 더 지원하는 방향으로 지원 비율을 이원화한다. 구체적 방법으로 1안은 차등보육료 지원 비율에 취업모는

차등을 두는 방안이고, 2안으로 또는 취업모는 중산층이라도 차등보육료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전액 지원 대상 이상의 차등지원 소득계층부터는 지원 비율을 일반 지원비율보다 각 10%씩 상향 조정하고,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 이상 계층도 보육료의 30%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지원 대상은 앞에서 제시한 종일제 적용 기준과 마찬가지로 모의 취업 이외에도 한 부모 가정, 질병, 가족간호, 구직, 직업훈련 등으로 가정에서 자녀를 적절하게 보호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동을 포함한다.

취업여부 증명은 경기도에서 인정하는 증명 서류를 참고한다.

〈표 VII-2-3〉 경기도 취업여성 보육지원시 취업 증명

단위: %, 천원

구분	증명서류
상근근로자	재직증명서, 고용확인증명서,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내역서(고용보험센터), 직장의료보험 지경취득상실확인서(건강보험공단지사)
자영업자(명의대여자 제외)	사업자 등록증에 소득납부증명서 첨부
일용근로자 파트타임근무자	고용·임금확인서
가타 인정서류	취업여성으로 근무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근거 서류

자료: 경기도(2007). 2008년 보육지원사업 시행계획.

나) 고려사항

현재 자영업자 소득과약 체계가 미비하고, 2007년 여성 취업자의 임금근로자 비율은 68.8%이며 이 중 상용은 28.7%, 임시는 29.9%, 일용은 10.2%로, 여성근로자의 다수가 임시, 일용 및 비정규 근로에 종사하는 상태에서 취업여부를 증명하기가 어렵고 증명서를 제출한다고 하여도 신뢰성에 문제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경기도의 경우도 기타 인정서류로 취업여성으로 근무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근거 서류라고 막연하게 기술하고 있다. 점차 우리나라도 소득과약 체계가 정비될 것으로 기대하며, 제한적이거나 이러한 기준을 적용한다.

나. 보육시설 이외 정책

가정에서의 자녀 양육지원 강화 방안으로 가정내 보육서비스의 제도화, 공공 가정내 보육서비스의 다양성 및 접근성 확대, 영아 양육수당과 가정내 보육서비스 비용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세제지원과 같은 취업모 자녀양육비용 지원 강화, 상담 및 정보 제공 기구 설치 확대를 제안하였다.

1) 가정내 공공 보육서비스 이용 가능성 제고

가) 필요성

가정내 보육서비스의 역할은 시설보육의 대체적 역할과 병행 이용하는 보완적 역할을 모두 수행한다. 보육시설에서 기준 보육시간 외에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야근, 출장 등 이용시간대를 벗어난 경우 아무리 시설에서 시간연장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시설로의 접근성은 큰 장애가 될 수 있다.

2005년 노동부 조사 결과를 보면 2세 미만 자녀를 둔 취업여성은 자녀양육을 위한 가장 필요한 보육정책으로 부모나 가사 대리인에게 자녀를 맡겨도 보육비를 지원해야 한다가 33.6%로 영아보육시설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 45.4% 다음으로 비율이 높아서 가정내 보육이 영아보육으로 보편화되어 있음을 나타냈다.

나) 정책제안

가정내 보육서비스 제도를 시설보육에 대한 보완책으로 위상을 정립한다. 시설보육을 우선적 보육정책으로 추진하고, 시설 보육으로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모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가정내 보육을 추진한다.

현재 여성가족부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실시하는 시간제 아이돌보미 사업을 위탁 대상, 서비스 유형 등을 확대하는 형태로 발전시킨다. 정부가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외에도 다양한 비영리단체를 중심으로 사업을 위탁하고, 위탁 사업체의 운영비는 정부가 지원한다. 여기에는 보육인력의 상해보험, 아동배상보험 등 보험에 들어가는 비용과 운영자 인건비가 포함된다.

제공하는 서비스는 종일제, 시간제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모두 수용하며, 종일제는 입주도 기능하도록 한다.

다) 고려사항

아이돌보미는 현재 소득계층별로 3단계로 구분하여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는 규모가 작아서 문제 삼고 있지 않지만, 보육료 지원, 양육수당과의 중복 적용이 가능하여, 앞으로 사업 확대 시 중복 지원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이 사업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가정내 보육서비스 인력의 근로자성 확보 문제이다. 현재는 아이돌보미가 유급 자원봉사자 수준에 머물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새로운 일자리로서 자리매김하게 하기 위해 이들이 직업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절한 소득과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이 필요하다. 점차적으로 사업체가 최소한 단시간 근로의 형태로라도 소득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2) 취업모 자녀 양육비용 지원 확대

가) 필요성

2004년 전국보육교육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가구 소득수준, 모의 학력, 아동 연령, 자녀수 등을 독립변수로 하고 보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 결과 모의 취업이 미취업에 비하여 월평균 59,000원 정도를 더 지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교육·보육 비용에서 어머니가 취업하고 있는 경우가 취업하고 있지 않은 경우보다 지출이 많은 것은 우선 중산층 이상에서 어머니가 취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체로 맞벌이므로 소득수준이 보육시설, 유치원 이용 비용 차등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고, 영아의 경우는 기관 이외 방식의 개별적 보육 및 교육 서비스를 많이 이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재 어머니가 취업하고 있는 경우에 기관 이용 비용 지원으로 효과를 보기 어려우며, 다른 방법의 지원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정책제안

(1) 영아 양육수당 취업모 우선 적용

2009년부터 도입이 예정된 저소득층 보육시설 미이용 영아 양육수당을 바탕으로 하되, 취업모 영아 자녀에게 소득수준의 범주를 확대하여 양육수당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영아 양육수당은 보육시설 이용 영아에게는 기본보조금이 지원되므로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이외 아동에게 형평성 차원에서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양육수당은 예산의 제약이 있을 경우, 연령, 출생순위, 소득수준, 모의 취업여부 등 아동과 가정 특성을 고려하여 단수 또는 복수의 변수들을 조합하여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고려할 수 있는데, 저소득계층은 전체를, 그 상위계층은 부모의 취업상태를 고려하여 취업모만을 대상으로 지원하자는 것이다.

(2) 세제지원의 개선

세제지원 방법은 두 가지 방법으로 추진한다. 하나는 기존의 소득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과 두 번째는 세액감면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첫째,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현재는 영유아 보육료와 교육비를 연 200만원까지 공제해 주고, 보육수당을 1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하는데, 취업모에게는 보육료와 교육비 전액을 소득공제해주고 보육수당도 기업이 지급하는 전액을 비과세하여 취업모와 그 이외를 차별화하는 정책을 사용한다.

또한 취업모 가정내 보육서비스 비용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보육시설, 유치원 및 미술학원, 태권도 학원 등에 다니는 아동의 보육·교육 비용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이외에 이웃탁아모 등 비공식분야의 보육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취업을 위한 자녀 양육이라는 것이 증명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모색을 검토하여야 한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세액 감면제도(Child Care Tax Credit) 도입한다. 외국과 같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소요된 비용의 상당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세액 감면제도(Child Care Tax Credit)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연 60만원 정도를 기준으로 한다.⁶⁴⁾

다) 고려사항

시설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영아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것은 아동수당과 복지서비스가 혼합된 개념으로 농림부에서 실시하는 정책과 같다. 농림부에서는 농지규모가 5ha 미만인 농가원부에 등록된 가구 아동 중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을 대상으

64) 외국 세액공제제도는 근로유인을 위한 제도로는 영국WTC(자녀포함), 미국EITC(자녀포함), 뉴질랜드(FTC), 미국CDCTC가 있고,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는 캐나다 NCBS, 호주FTB, 뉴질랜드CTC, 영국CTC, 캐나다CCTB 제도가 있음.

로 놓여준 일손 돕기라는 명목의 현금을 지원한다. 이는 아동수당과 복지서비스 두 가지 정책이 혼합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아동수당은 현금을 지급하는 비기여적, 보편적인 가족급여이고, 보육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은 서비스 수요자의 서비스 이용에 따른 소득계층별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그 성격이 다르다. 또 다르게 보면 아동수당의 보육비용 병행 급여 조정 방식이라고도 볼 수 있다.

양육수당은 부모의 선택과 형평성을 존중한다는 의미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가정에 있는 것보다는 보육시설에 다니는 것이 아동발달에 더 유리한 저소득층이나 다문화가정 아동 등 취약가정의 경우 아동의 시설 이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장기적으로는 아동수당이 도입되어야 하고, 양육수당은 아동수당 도입을 위한 임시적 조치이어야 한다.

다음으로 세제지원 중 세액공제제도는 2008년부터 시행된 근로장려세제(EITC) 제도와 중복 가능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제도는 가구소득 1,700만원 미만의 저소득 근로자가구에 대해 근로소득금액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연간 최대 8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서 18세미만 자녀 2인이상 부양이 조건의 하나이므로 중복 지원 가능성이 있다.

3) 다양한 이용시설 설치: 정보 제공, 상담, 시설 이용 등

가) 필요성

오늘날 자녀를 기르는 대부분의 가정은 핵가족이기 때문에 젊은 부모들의 육아스트레스가 적지 않은데, 이를 지원할 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대부분 학부모 모임, 인터넷 동호회 등 비공식적 통로를 통하여 정보를 얻고 조언을 구하기도 한다. 이렇게 얻는 정보는 양과 질에서 불충분하다. 그러나 이마저도 취업모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역사회 사람들이나 자녀 또래친구 어머니들과 접촉할 기회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보육이나 자녀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다. 그러므로 특히 취업모들이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와 양육관련 상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전업주부로 자녀를 기르는 부모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취업부모들이 아이와 함께 다양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는 아동발달은 물론 아동과 부모 관계 형성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외국의 경우, 일본은 자녀양육지원센터가 보편화되어 있고, 프랑스, 스웨덴 등 대

부분의 국가는 아이와 부모가 부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놀이집단이나 개방형 보육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나) 정책제안

자녀를 보육하는 부모가 필요한 정보를 얻고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부모가 아이와 함께 가서 이용할 수 있는 아이와 부모를 위한 시설인 자녀양육지원 센터(가칭)를 공공보육시설 부설 또는 단독 건물로 설치한다.

현재 서울특별시의 육아 플라자, 여성가족부의 육아 휴게실의 기능을 포함하되 공간을 보다 확보하여 부모 상담은 물론 부모와 아동이 함께 와서 다양한 놀이활동 등을 할 수 있는 오프라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고, 시·군·구에 최소한 1개씩 설치하도록 한다. 이는 미취업모를 지원할 뿐 아니라 자녀를 기르는 모든 부모와 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현 보육정보센터와의 통합을 추진한다.

다) 고려사항

2008년 중에 서울특별시에서 가칭 ‘키즈센터’라는 이름의 복합 자녀양육지원 기능을 하는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은 국고지원사업에서 제외되고 있어서 전부 지방비로 충당하여야 한다. 또한 시군구 보육정보센터도 설치, 운영 모두 국고 지원은 없다. 시군구 단위로 별도의 건물을 설치하여 오프라인 서비스 위주로 부모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적지 않다. 따라서 지역별 격차가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고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3. 직장보육 지원 강화 방안

제3절에서는 직장보육시설을 포함하여 사업장에서의 여성 근로자의 자녀 양육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직장보육 일반, 직장보육시설 설치, 운영, 비용 지원, 서비스 및 지원으로 나누어서 제시하였다(표 VII-3-1 참조).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표 VII-3-1〉 일하는 여성을 위한 보육지원 강화 방안 제안 총괄표

분류	과제
직장보육 일반	○ 직장에서의 보육지원 확충 - 시설 설치 이외 인근 시설 위탁, 보육수당 활용 - 법적 지원 기준 준수 - 지역사회 보육시설 연계
직장보육시설 설치	○ 일반 직장보육시설 설치 확대 - 용자금 상한선 조정 - 설치 기준 탈력 적용 ○ 중소기업 근로자 밀집지역 직장보육시설 설치 확대 - 전문경영업체 활용 - 근로복지공단 보육시설 확충, 국공립시설화 - 소규모 보육시설 설치 - 정보제공과 설치 지원 강화 ○ 국공립보육시설 공동 설치 후 위탁 활용 ○ 환경개선비 무상 지원
직장보육시설 운영	○ 입소순위 기준 마련 ○ 위탁 기준 마련
직장보육시설 비용 지원	○ 표준보육 기준 마련 ○ 직장보육시설 지원 주체의 운영비 분담 기준 ○ 인건비 지원 방법 개선 - 취업모 비율 고려, 국공립시설에 준하는 지원 - 소규모 시설 인건비 지원 강화 - 인건비 지원 기간, 아동 기준 등 전면적 개선 ○ 유구비품비 지원 방법 개선 ○ 직장보육시설 국고 지원 병행
직장보육시설 서비스 및 지원	○ 서비스 내용 강화 ○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 지역사회 보육과 연계체계 구축 ○ 직장보육시설 지원 기능 강화

가. 직장에서의 근로자 일반 보육지원 강화

1) 시설 설치 이외 인근 시설 위탁, 보육수당 활용

가) 필요성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우선으로 하고 사업장의 제약 등으로 보육시설 설치가 어려울 경우에 한하여 인근 보육시설에 근로자 자녀 보육을 위탁 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직장보육 미이행 사업장에

서 직장보육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를 보면, 보육 대상 아동이 소수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6.6%, 사업장의 외곽이나 아동 보육에 적절하지 않은 장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21.6%로 나타났으며, 여성가족부의 2007년 직장보육시설 실태조사 결과도 이와 유사하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사업장들이 직장의 보육 지원 방안으로 대체로 보육시설 설치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다. 또한 의무설치 사업장 기준이 부적절하다는 비율이 40.9%인데, 기준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도 마찬가지로이다. 직장보육 의무 이행 방법으로 직장보육시설 설치 제공 이외에 인근 보육시설 위탁이나 보육수당 지급 방식도 존재하므로 영유아보육법상 의무 이행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직장의 보육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나) 정책제안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여력과 의지가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는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유도하고, 영유아 수가 소수이거나 사업장 소재지 특성 상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사업장을 대상으로는 인근 보육시설에의 위탁을 유도하거나 보육수당 지급을 적극 권장한다.

다) 고려사항

현재 의무사업장이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결정되는 데 대하여 대상 아동이 소수인 사업장은 의무 대상 사업장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의무 사업장은 사업장 규모에 의한 사회적 책무성도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보다는 직장보육 지원 의무로 개념을 다시 정리할 필요도 있다.

2) 법적 지원 기준 준수

가) 필요성

직장보육 지원 의무를 수행하는 사업장의 경우에 이행 실태를 보면 영유아보육법으로 정한 제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보육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사업주가 운영비의 50%를 지원하지 못하는 시설이 있고, 인근 보육시설 위탁 시에도 보육료 지원 수준이 일정하지 않으며, 보육수당 지급 시 금액이 법으로 정한 수준에 미달하는 사업장이 매우 많다. 특히 보육수당은 지급 실태를 보면 정액, 정률 등 지원 기준이 일정하지 않고, 대상도 연령이나 아동수로 제한하는 등 다양하며 그 액수도 사업장별 편차가 크다. 그러므로 이들 의무 이행 사업장에서 지원 수준도

법으로 정한 수준을 지키도록 할 필요가 있다.

나) 정책제안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운영비의 50%를 지원하며, 인근 보육 시설에 위탁한 경우 보육료의 50%를 지원하도록 지도한다. 또한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보육지원 단가의 50%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기준을 지키도록 사업장에 대한 지도를 강화한다.

다) 고려사항

의무 이행 사업장에서 법으로 정한 수준을 지키게 하는 법적 제제조치도 없고, 또한 사업체의 재정적인 이유로 법적 지원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운영비 지원 기준을 준수하도록 강제할 경우, 직장보육시설을 폐쇄하는 등 직장보육 지원 의무 자체를 이행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

3) 지역사회 보육시설 연계

가) 필요성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대기업 근로자들에 비해 월급여 총액이 낮고, 생계형 근로자가 많아 직장의 보육지원 혜택이 상대적으로 더 필요한 대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기에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보육수요가 있기는 하나 미미한 수준이어서 근로자에게 보육지원 혜택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지역사회 보육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직장보육 혜택을 주어야 할 것이다.

나) 정책제안

기존의 지역사회 보육시설을 이용하여 중소기업과 이들을 결연 맺도록 하고 결연된 기업 근로자의 자녀를 우선적으로 보육하게 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는 중소기업이 직장보육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방식에 대체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라 하겠다.

지역의 가정보육시설이나 민간보육시설을 특정 사업체 지정 보육시설로 규정하여 해당 사업체 근로자 자녀를 우선적으로 보육하도록 하고, 사업체가 보육료의 일부와 교재교구비나 비품 등을 지원한다.

다) 고려사항

결연을 맺은 민간보육시설의 위상이 모호해지고, 직장보육과 지역사회 보육을 동시에 담당함으로써 받게 되는 각종 지원 혜택으로 인한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결연을 맺은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를 우선 입소하게 하는 것이 기존의 대기자와의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나. 직장보육시설 설치 관련 정책 방안

1) 일반 직장보육시설 설치 확대

가) 필요성

본 사업장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가장 적절한 보육지원 방식으로 직장보육시설 설치가 75.3%, 보육시설 이용료 지원이 17.6%로 나타났고, 직장보육시설 이용이 가져다주는 양육부담 해소에 대해서도 85.1%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즉, 사업장에서 직장보육시설이 인근보육시설 위탁이나 보육수당에 비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직장보육시설 이용자도 보육료, 이용시간, 프로그램 등의 측면에서 73.5~88.3%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92.9%의 보육시설 이용자가 직장보육시설이 근무 병행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으며 69.8%가 현 직장을 선택하는 데 직장보육시설이 있다는 점이 영향을 주었다고 하였다. 업무 몰입도나 직무만족도도 상당히 상승되었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사 결과는 직장보육시설의 설치가 근로자들의 자녀 양육과 직업의 병행에 얼마만한 도움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만족해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이다. 그러므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일하는 여성의 자녀 양육지원으로서 가장 효과적이고 근로자와 사업장 모두에 큰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접근 방식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직장보육시설을 더욱 확충하고 촉진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생긴다.

나) 정책제안

(1) 보육시설 설치 용자 상한액 확대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확대하기 위하여 보육시설 설치 용자액의 상한선을 증액해

야 한다. 직장보육시설 설치 시 설치금 융자액 상한선은 5억이다. 토지비 매입에 대한 지원은 없으므로 일정 규모 이상을 신축 건물로 지어서 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 실제 기업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규모는 매우 크다. 따라서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 융자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조사에서 이를 요구한 비율은 36.7%이고 근로복지공단 조사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한 부분이었다.

2007년도 근로복지공단의 86개 직장보육시설 설치 사업장 조사 자료를 보면 직장보육시설 규모가 200~300인 규모일 경우 시설매입비가 평균 7억 7000만원⁶⁵⁾이 들어간다. 그러므로 약 7~8억원 정도까지 융자금의 한도를 늘린다면 대부분의 요구는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금액을 융자하는 사업체가 많지는 않을 것이다.

(2) 보육시설 설치 기준의 탄력적 적용

신설 또는 확충 요구가 있는 보육시설이 용이하게 설치하고 확충을 할 수 있도록 직장보육시설의 층수와 실외놀이터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요구되는 일정 기준의 안전 조건을 전제로 하여 이를 갖춘 경우 층수 제한을 풀거나, 실외 놀이터를 실내 놀이공간으로 대체하는 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한다.

현재 직장보육시설들이 대부분 보육시설 설치 기준상 층수 제한과 50인 이상 시설 어린이 놀이터 규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직장보육시설 규모가 평균 47명이다. 이는 사업장에 3층 이하 공간 확보가 용이하지 않고 또한 실외놀이터 이용 규정 때문에 50명 미만으로 시설을 설치하려 하기 때문이다. 민간 직장보육시설 설치 사업장 중 24.8%가 시설 확충을 필요로 하고 직장보육시설 이용 부모들의 시설에 가장 바라는 바가 시설 확충으로, 대기자를 두고 있는 민간 직장시설도 상당수이다. 따라서 보육시설의 안전을 보장하면서도 용이하게 시설을 설치, 확충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직장보육시설은 대표자 변경시 직장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운영의 연속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규정⁶⁶⁾을 탄력 적용할 필요도 있다.

다) 고려사항

직장보육시설의 시설 기준을 일반보육시설과 차별을 두게 되는 경우 일반 보육시

65) 부지매입비는 제외됨.

66) 현행 규정은 보육시설 대표자가 변경되면 신규 설치로 봄.

설과의 형평성으로 민원 발생이 예상된다. 또한 시설의 안전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층수기준에 대한 원칙의 준수를 외면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므로 직장보육시설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증명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하여 직장보육시설의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함으로써 보육시설 설치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데 대한 타당성을 제시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 경우 개별적 접근이 되어야 하므로 행정 비용 부담이 있다.

2) 중소기업 근로자 밀집지역 직장보육시설 설치 확대

가) 필요성

도시 산업단지에 밀집되어 있는 기업은 대부분 소규모이므로 이들이 자체적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한국고용정보원 통계에 의하면 전체 기업 중 99.7%가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체이고 81.4%가 30인 미만의 사업체이다. 기업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이지만 중소 규모의 사업체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비용 대비 효과성의 측면에서도 전혀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그럼에도 직장보육시설 설치가 가져다주는 일·가정 양립에 대한 효과나 만족도, 수요를 생각한다면 시설설치를 단순히 외면해버릴 문제가 아니라 중소 사업체 근로자가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직장보육시설을 설립하는 방향으로 접근해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정책제안

(1) 보육경영 전문업체를 통한 설치

현재 우리나라에는 직장보육시설을 사업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보육시설 운영 전문사업체가 여러 곳 있다.⁶⁷⁾ 이들 중에는 위탁뿐 아니라 자체적인 직영시설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기업도 있다. 이러한 전문업체가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들어가서 보육시설 설치와 운영을 맡을 수 있다면 중소기업 근로자는 상당한 편리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민간업체가 설립하는 보육시설은 민간보육시설일 뿐이므로 직장보육시설로서 주변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낮은 보육료 보장과 우선권 부여는 기대할 수 없다. 이를 해소할 방법은 이 보육시설을 직장보육시설로 인가받도록 하는 것이다.

67) 한국철도공사, 방승국 등의 직장보육시설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P보육경영, 한국농촌공사 등의 직장보육시설을 위탁운영하는 K보육경영회사 등이 그것임.

즉, 보육시설 운영 전문업체 역시 소규모 기업이고 사업장이므로 이를 대표 사업체로 두고 주변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직장보육시설을 설립하게 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하면 보육경영업체는 설치비 및 운영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공동참여 중소기업은 근로자가 낮은 비용으로,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직장보육의 이점을 얻을 수 있다.

이 같은 형태의 보육시설을 설립하기 위해 취해야 할 정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변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가진 보육수요를 파악하여 시설 설립을 위한 적재적소를 선정하여야 하고, 둘째, 민간 보육경영업체를 설득하여 참여를 유도하여야 하고, 셋째, 관련 중소기업들을 또한 설득하여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한다. 넷째, 중소기업들이 보육시설 설립주체로서 소액이더라도 출자하여 공동 직장보육시설을 설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공동시설 설립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각 사업체에 ‘근로자 직장보육 지원 우수업체’ 등의 간판을 달아 기업 이미지를 좋게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2) 근로복지공단의 보육시설 설치 사업 재개 및 국·공립시설화

근로복지공단이 설치, 운영하는 보육시설 사업은 2003년 설립을 마지막으로 중단된 상태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직장보육시설 설치가 여전히 미미한 상황에서 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보험기금을 이용한 보육사업을 재개하여 지속적으로 확충해갈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한 형태의 지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이 설치한 보육시설을 직장보육시설로 규정하고 운영, 지원하는 방법도 적극 검토해 보아야 한다.

(3) 소규모 직장보육시설 설립 유도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에 의하면 100~300인 미만 사업체 12,918개사에 근무하는 고용보험 가입 여성근로자는 약 406,000명으로 사업체당 평균 31명 정도이다. 2006년 연구(전병유 외, 2006)에 따르면 영유아 보육시설을 주로 이용할 것으로 기대되는 39세 이하 연령의 여성근로자는 전체의 71.6%이므로 100~300인 미만 중소기업에는 평균 22~23명의 40세 이하 여성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⁶⁸⁾.

68) 이 추정치는 근로자 수에 따른 구간별 기업체 수가 정확하지 않고 고용보험 가입자만 포함한 경우이므로 실제로는 편차가 매우 클 가능성이 있으나 평균치라는 점을 감안하여 받아들여야 함.

영유아보육법상 가정보육시설은 보육 아동수는 20인 미만이며 시설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도 있다. 직장보육시설은 상시 영유아 5인 이상이면 설치가 가능하다. 그러므로 보육수요를 가진 아동수가 많지 않은 중소기업의 경우 즉 설치비 1억 5천만원까지 무상지원을 받아 가정보육시설에 준하는 형태로 직장보육시설을 설립한다면 사업장의 설치 부담도 줄 수 있고 근로자의 보육문제도 해결이 가능하여 바람직한 해법의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시설장 및 취사부에 대한 임금 지원이 없으므로 운영에 애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소규모의 직장보육시설이 쉽게 설치되고 원활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20인 이상 시설에만 주어지는 시설장 인건비와 40인 이상에 적용되는 취사부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취사부 인건비가 시간제 비용일지라도 지원된다면 중소기업이 소규모 직장보육시설을 설립에 훨씬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⁶⁹⁾

(4) 관련 정보와 설치 절차 지원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사업장 이외에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도 직장보육 지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한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법 및 행정적 절차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런 업무를 위해 직장보육시설 지원 센터의 역할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다) 고려사항

비영리 사업체로 등록하고 직장보육 위탁전문 경영 사업을 하고 있는 보육경영 전문업체가 공동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데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데는 법적 걸림돌은 없으나 보육에 기업을 영입한다는 점에서 일부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이 공동대표사업체로서 직장보육시설 설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인할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인가도 찾아낼 필요가 있다. 비영리 보육사업체이기기는 하나 시설설치 및 운영이 국가지원금으로 원활히 이루어져 재정적 어려움이 없고 일자리 창출의 면에서도 기여할 수 있으며 신뢰가 가는 비영리 단체로서 인식되어 사회적 위상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 등 현실적·상징적인 장점들이 부각될 것이지만, 이것만으로 보육경영 전문업체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들 업체의 소재지도 시설 설치 장소의 한계 요인이 된다.

69) 현재 320개 보육시설 중 20인 이하 시설이 30개소, 40인 이하 시설이 119개소이므로 시설장 인건비와 취사부 인건비를 모두 월 80만원씩 추가로 지원하면 연 14억 3040원이 추가로 필요함.

근로복지공단 보육시설은 2001년과 2002년 고용보험기금운용평가단 평가결과 시설건립, 운영보다는 운영비(예: 바우처) 등 간접 지원이 타당하다는 지적에 따라 추가 건립이 중단되었다. 따라서 사업 재개가 쉽지는 않다. 그러나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꼭 필요하고 중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앞으로 다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3) 기업의 보육시설 설치 후 위탁 활용

가) 필요성

정부가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하는 계획을 세워 추진하지만 실제로 시설의 설치에 계획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가장 주된 원인은 운영의 문제보다는 중앙과 지자체의 재정이 충분치 못하여 대지와 건물을 마련하여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기업은 시설 설치도 어렵지만 설치 이후의 운영도 설치를 망설이게 만드는 주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공공보육시설을 확충하고 근로자의 보육지원을 도모하는 방안으로 기업과 정부가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나) 정책제안

기업이 보육시설을 설치하여 시군구에 무상 임대, 또는 기부채납 한 후 국·공립보육시설로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많은 사업장에서 직장보육시설은 설치도 어렵지만 운영비와 운영권자로서의 부담을 더 어려워하는 사례를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근로자의 이용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국·공립보육시설로 운영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 때 설립된 국·공립보육시설은 설치를 주도한 기업체가 다시 위탁을 받아 부분적으로 자사 근로자를 위한 직장보육 위탁시설로서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지자체와 기업체간 MOU가 성립될 수도 있다.

다) 고려사항

기업이 보육시설을 설립하여 지자체에 무상임대나 기부채납을 했을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의 차원에서 보육시설에 대한 위탁운영권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설치된 보육시설이 국·공립시설화되었음을 고려한다면 위탁운영권을 한 기업체에 무한정 부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기업과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탁운영권 사용에 적정한 기간을 설정해야 할 것으로 본다. 서울시는 설치에 기여한 경우 위탁기간을 20년으로 조례로 정하고 있다.

4) 환경개선비 지원

가) 필요성

직장보육시설을 자사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기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이해할 때 국가는 그러한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기업에 대해 격려하는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비영리사업인 보육시설운동을 추진해가는 것을 보다 더 장려하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장기적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운영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바, 일정기간이 지나면 주기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할 보육시설의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이 강화될 수 있다면 직장보육시설의 원활한 운영뿐만 아니라 질적 수준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개선점 및 보육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직장에 바라는 점을 보면 시설환경 개선과 관련된 요구가 많다. 시설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함께 조사된 다른 항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으며, 직장보육시설 미이용 이유로 환경을 이유로 든 비율이 높다.

나) 정책제안

직장보육시설에 개·보수비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직장보육시설 설치 후 보육 환경 개보수는 서비스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안이다.

현재 개·보수비는 영아·장애아 시설로의 기능 보강과 더불어 5억원까지 용자해 주고 있는데, 직장보육시설 설치 시부터 아동의 안전과 교육적 요소 등을 고려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나, 시설은 설치 후에도 지속적인 개·보수가 요구되므로 이 비용은 일정 부분까지 무상지원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다) 고려사항

직장보육시설의 환경은 모기업의 규모와 투자 수준에 따라 매우 차이가 크다. 대기업이 큰 보육 경영업체에 많은 위탁을 주고 운영하게 하는 경우 시설설비나 환경 면에서 민간이나 국·공립보육시설보다 월등히 우수함을 보이기도 하나, 기업이 지원하는 재정이 미미하여 운영이 어려운 직장보육시설의 경우 환경이 무척 열악한 곳도 있다. 그러므로 환경 개선비를 지원함에 있어 국가 재정의 한계를 고려한다면

직장보육시설 환경실태를 조사하고 모기업의 재무수준 등을 고려하여 우선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추진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직장보육시설 운영 관련 개선 방안

1) 입소순위 기준 마련

가) 필요성

현재 직장보육시설의 입소 순위가 분명하지 않으며, 동일순위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 의미가 없다. 직장보육시설은 인건비 지원 기준이 있으므로 이에 해당되는 아동에게 우선권이 주어짐을 당연하다. 그러나 일부 보육시설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아동을 우선순위에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야기되기도 한다. 따라서 통일된 직장보육시설 입소순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 정책제안

직장보육시설 입소순위는 해당 보육시설 특성을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하되, 일정한 기준을 정한다. ① 부모가 해당 사업장 근로자 자녀, ② 부 또는 모가 해당 사업장 근로자 자녀, ③ 부모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자녀, ④ 부 또는 모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자녀, ⑤ 고용보험 미 가입 근로자 자녀의 순을 제안한다.

동일순위의 경우에는 모의 취업, 소득수준, 요보호 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원을 더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우선순위를 둔다. 모든 아동에 공정한 출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환경이 어려운 아동일수록 질 좋은 보육서비스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 고려사항

사업장마다 여건이 달라 정해진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기준을 제시하되, 사업장이 처한 상황에 적합하도록 융통성 있는 적용이 요구된다.

2) 위탁 기준 마련

가) 필요성

직장보육시설은 직접 운영하는 사업장보다는 위탁 운영하는 사업장이 65.4%로 더 많고, 위탁 운영자도 개인, 단체, 전문 위탁업체 등 다양하다. 이들 위탁기관은 지침에 의해 위탁기관을 비영리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위탁조건에 대한 명확한 기준에 제시되어 있지 않아 위탁기관을 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위탁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영유아보육법 24조에서 직장보육시설 위탁도 필요한 사항은 하위법령으로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시행규칙은 국공립시설 위탁 관련 사항만 정하고 있다.

나) 정책제안

직장보육시설 위탁도 국·공립보육시설 위탁과 마찬가지로 위탁자, 위탁기간, 보육교사, 보육료, 지도감독 등 위탁조건에 관한 세밀한 기준을 정하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다) 고려사항

직장보육시설 위탁이 개별 사업장과 업체 간에 이루어지는 일이므로 영유아보육법으로 제도화한다고 하여도 현재 체제로서는 시·군·구의 지도·감독 기능이 작동할 수 있는 여지는 좁다는 문제는 있다.

라. 보육비용 지원 개선 방안

1) 직장보육시설 표준보육 기준 마련

가) 필요성

현재 직장보육시설 표준보육 모형은 없다. 국공립시설은 인건비와 보육료, 민간보육시설은 영아는 기본보조금과 보육료 상한선, 유아는 보육료 상한선이 비용으로 표시되는 서비스의 수준이다. 그러나 직장보육시설에는 어느 정도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지 준거가 없다. 현재 대체로 일반보육시설 기준이 있으나 시·군·구의 직접적인 관여가 없는 상태이므로 이 기준 적용에 대한 지도 감독은 미미한 실정이다. 교사대 아동 비율 등은 최소 법적 기준을 따르고 있으나, 그 이외 표준보육

기준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아동 대비 교사수도 제한하지 않고 교사 인건비를 지원한다. 그러나 그 이외 기준은 모호하다.

영유아보육법으로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사업주는 운영비를 50% 지원하라고 하지만 그 기준이 무엇인지는 설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의무를 다한다고 하여도 서비스 수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지원하여야 하는 운영비 수준은 많은 차이가 난다. 실제로 보육시설간의 서비스 수준 차이는 크다. 아동 1인당 소요되는 총 보육비용에서도 시설간에 차이가 나타난다.

보육시설 운영비는 사실 보육서비스의 질과 직결되므로 표준 모형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직장보육시설도 최소한의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는 보육모형이 마련되어, 모든 직장보육시설이 기준으로 정한 최저 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정책제안

직장보육시설 최소한의 표준보육을 지침으로 제시하여야 하고, 그 기준을 국공립 보육시설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최소한 지켜야 하는 것으로 제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적절할 것으로 제안한다.

또한 평가인증 지표를 활용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서비스 제공을 직장보육시설의 모형으로 설정하는 방안도 필요하다.⁷⁰⁾

다) 고려사항

직장보육시설 서비스나 소요 보육비용의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할 경우 두 가지 문제가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는 기준보다 높은 질적 수준과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보육시설은 하향 평준화 가능성이 있어서 우려된다. 두 번째로 제시한 기준에 미달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도 이를 관리할 주체가 없다.

따라서 기준을 제시하되, 이것이 최소한의 질적 수준임을 강조하여야 하고, 이 기준에 미달되는 보육시설은 서비스 수준이 개선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70) 2008. 10에 발표된 서울특별시 인증어린이집과 같은 모형도 고려할 수 있음. 서울형 인증 어린이집 조건을 부록에 첨부함.

2) 직장보육시설 운영비 분담 기준 정립

가) 필요성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전반에 대한 역할 정립 등 재정리가 필요하다. 현재는 노동부, 사업주, 보건복지가족부, 지방정부가 직장보육시설을 지원하는데, 노동부 인건비 지원과 보건복지가족부 시설별 지원이 상호 연계되고, 그 이외는 지원이 제 각각 이루어지고 있다. 보육료 지원의 경우나 지방비 사업 지원의 경우는 지방정부에 따라 국고사업 지원에 대한 해석이 각기 달라서, 시설에 따라 편차가 크고, 부모 부담 또한 시설마다 다르다.

정부 지원단가 수준으로 보육료를 수납하고, 인건비를 지원받고, 또 사업주가 50%를 지원하는 각각의 규정들에 대한 면밀한 상호 연계성이 불분명하다. 특히 사업주가 지원하여야 하는 운영비 50%라고 할 때 노동부 인건비 지원을 포함하는지 등 구체적인 기준도 없다⁷¹⁾.

또한 차등보육료와의 관계도 설정되어야 한다. 저소득층 아동이 있을 경우 보육료가 시설마다 각기 다른데 이와 무관하게 국공립보육시설 보육료를 기준의 차등보육료로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 기준 보육료 이상으로 지원되는 차등보육료 지원금을 시설에서 어떻게 분류하여 어떻게 사용하는 지 등이 불분명하다.

나) 정책제안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되는 인건비 지원은 고용보험기금이 고용주와 근로자의 공동 기여를 감안한다는 원칙을 적용한다. 따라서 최소한의 기준으로 적용하는 국공립시설 보육료 중 인건비 지원의 1/2에 해당되는 비용을 제외한 비용을 부모보육료 기준으로 설정하고, 운영비의 고용주 분담금 50%는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되는 인건비 지원분 1/2를 고용주 지원금에 포함한다.

다음으로 차등보육료는 실제 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료가 정부 지원단가보다 낮을 경우 실제 보육료를 기준으로 동일한 비율을 적용하여 지원금을 책정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합당하다.

다) 고려사항

논리적으로는 고용주의 운영비 지원이 증가하면 부모 보육료 부담도 함께 증가할

71) 일반적으로 노동부 인건비 지원이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음.

수 있다. 이 경우 보육서비스의 질은 크게 높아질 수 있다. 한편 사용자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 부모 보육료도 올라가지 않고, 서비스는 고정된 수준에 머물게 된다.

차등보육료는 실제 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료를 기준으로 책정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합리적이지만, 지방정부가 행정 편의상 지원 단가를 기준으로 지원할 경우 사용자의 부담도 조정을 고려할 수 있다.

3) 인건비 지원 방법 개선

가) 필요성

현재 직장보육시설 원장, 교사, 취사부 인건비 지원 방식은 세 가지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

첫째, 현재 시설장과 교사의 인건비 지원 기준은 직장보육시설에 사업장 근로자 자녀가 1/3이상, 또는 사업장 근로자 자녀가 1/4이상이고 고용보험 가입자 자녀가 1/2이상이면 교사 인건비를 지원한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사업장은 노동부 인건비 지원에서 제외된다. 조사대상의 13%의 시설은 인건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으며, 그 비율은 임의설치 시설에서 더 높다. 이렇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업장은 영세사업장으로 보육의 질도 낮을 수밖에 없다. 임의설치 사업장은 11.2%가 폐쇄를 검토하고 있다.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장 보육시설은 또 다른 사각지대로, 인건비 지원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두 가지 대립적 관점이 있을 수 있다. 우선 고용보험기금의 효율적 사용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아동만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공공보육시설 인프라로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야 한다.

둘째, 현재 시설장은 아동 20인 이상, 취사부는 40인 이상이 지원 대상이기 때문에 소규모 보육시설에는 시설장과 취사부 인건비 지원을 하지 않는다. 아동 20인 미만 시설에는 원장과 취사부가 없으므로 사실상 교사가 이 두 가지 역할을 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특히 취사부는 보육시설 규모가 작아도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인력이다. 취사부 미지원은 소규모 직장보육시설의 운영을 어렵게 하므로, 대상 아동이 적은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의 소규모 직장보육시설의 설치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셋째, 인건비는 분기별로 말일 아동수를 기준으로 지원하고, 지원금 기준은 월 80만원 정액이며, 지원금은 고용보험 가입 부모 자녀수에 비례하여 지원한다. 이러한 지원 방식에 대하여 개선 요구가 있다. 기준일을 분기별 말일로 하는 방안도 지나

치게 획일적인 방식이다. 또한 아동수 기준을 3개월마다 결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보육료 수납과 인건비 지급이 월 단위로 지급된다. 교사 인건비 정액지원도 경력 있는 교사의 채용을 어렵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다. 직장보육시설 교사의 평균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것이 이 문제를 잘 반영한다. 지원 금액은 고용보험 대상 아동수에 따라 비율로 결정되는데, 이러한 방식도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한다. 인건비 지원시 교사대 아동 비율 기준이 없는 것과 비교하면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나) 정책제안

(1) 인건비 지원 보육시설 확대

직장보육시설에 대해서는 공공보육시설이라는 관점에서 우선 이용자 부모의 고용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취업여부만으로 고용보험기금에 의한 인건비 지원 확대를 제안한다.

이것이 어렵다면 전체 아동 대비 취업모 자녀 비율을 고려하여 국·공립보육시설에 준하여 일반회계로의 지원 방안도 적극 모색되어야 한다.

(2) 인건비 지원 대상 개선

우선 직장보육시설 취사부 인건비는 모든 해당 직장보육시설에 지원한다. 시설 규모가 작을 경우에는 지원 비용 단가를 1/2로 낮추어 지원하여 시간제로라도 취사부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앞에서도 제시한 비와 같이 320개 직장보육시설 중 119개 보육시설이 40인 이하 시설이므로 이들 시설에 월 80만원의 취사부 인건비를 지원할 경우 연 11억 424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고⁷²⁾ 단시간 취사부를 지원할 경우 그 비용은 연 5억 7000만원 수준이 된다.

(3) 인건비 지원 방식 개선

직장보육시설 인건비 지원 방식을 다음과 같이 개선한다.

첫째, 정액제를 정률제로 개선한다. 국·공립보육시설 인건비 지원 방식 등과 같이 교사의 급여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대하여 정률을 지원하도록 방식을 변경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이는 경력이 높은 교사를 채용하도록 유도하는 의미가 있다.

둘째, 직장보육시설의 예산 집행이 월단위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지원 기간 단위

72) 800,000원×119개소×12월=1,142,400,000원

도 2001년 이전과 같이 월 단위로 실시되어야 한다.

셋째, 인건비 지원 기준일을 분기별 말일로 하는 방안에서 지역사회 보육시설 지원 방식과 마찬가지로 매월 15일 이상 이용하는 아동수 등 일정 기간 이용 아동수를 기준으로 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넷째, 인건비 지원액 산정시 고용보험 가입 등 지원 대상 해당 아동수에 따라 비율로 지원액을 삭감하기보다는 국공립시설 교사 인건비 지원 기준⁷³⁾ 등을 준용하여 일부 고용보험 가입 부모 등 해당 아동이 부족해도 정해진 금액은 전액 지원할 것을 제안한다.

다) 고려사항

인건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거나 지원 방식을 정액으로 전환할 경우 소요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소요액은 해마다 늘어나기 때문에 고용보험기금의 효율적 사용이라는 점에서는 역행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해당 아동수에 따라 비율로 인건비 지원액을 삭감하지 않는 것도 같은 관점에서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직장보육시설을 공공보육시설로 위상을 정립하여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다.

다음으로 월 단위로 인건비 지원 주기를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이 다수이지만 반대하는 시설장도 있는데, 반대하는 이유는 행정절차상 필요한 서류 때문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인건비 지원을 월단위로 전환하고 작성 서류의 간소화도 함께 추진한다.

4) 유구비품비 지원 방법 개선

가) 필요성

현재 노동부의 직장보육시설 유구비품 교체 주기는 5년이다. 이에 대해서는 직장보육시설장의 82.5%가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교재교구 등 유구 비품은 종류에 따라서 사용 가능한 기간이 1년에서 5년까지로 매우 다양하여 일률적으로 5년으로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또한 교구 및 장비 구입비 지원시 자부담 비율이 우선 지원 대상기업 20%, 기타 기업 40%로, 기업주에게 많은 부담을 준다. 이로 인하여 원활한 교구 및 장비 구입

73) 국공립시설의 경우 교사대 아동 비율을 기준으로 0세반은 3명 기준에서 1명, 1세반은 5명 기준에서 2명, 2세반은 7명 기준에서 3명, 3세반은 15명 기준에서 7명, 4,5세반은 20명 기준에서 9명까지 감소하여도 기준 인건비는 지원함.

에 애로가 있다.

아울러 지원을 받아 구입한 교재교구 중 파손된 교재교구에 대한 보관 기간이 길어서 공간이 협소한 대부분의 보육시설에서는 보관의 어려움을 겪는다.

나) 정책제안

유구비품비 지원 방식을 다음과 같이 개선한다.

첫째, 유구비품비 지원 주기를 단축하거나 매년 필요한 교재교구비를 심사하여 탄력적으로 지원하도록 개선한다. 지원 주기를 두어서 일괄 지원하기 보다는 필요한 경우에 신청과 심사 절차를 거쳐서 필요성이 인정되면 전체 상한선 내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유구비품비 지원시 자부담 비율을 하향 조정한다. 우선 지원 대상기업 10% 정도, 기타 기업 2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 경우에 지원 상한 액수를 현재 5년 5000만원에서 4000만원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다.⁷⁴⁾

셋째, 유구비품비를 지원을 받아 구입한 교재교구 중 파손된 교재교구에 대해서 폐기 처분을 인정하여 보관 장소 등의 애로사항을 해소한다.

5) 직장보육시설 국고 지원 병행

가) 필요성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시설별 국고지원은 매우 제한적이다. 시설당 교재교구비로 50만~120만원을 지원하고 장애아 전담교사, 시간연장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⁷⁵⁾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직장보육시설에는 노동부와 사업주가 지원하기 때문인데, 이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이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직장보육시설은 공공성이 강한 보육시설이다. 직장보육시설의 공익성, 공공성을 생각한다면 직장보육시설 지원은 국·공립보육시설에 준하여 지원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스웨덴 등 외국의 경우 기업이나 부모협동 등 비영리 민간이 설치한 보육시설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은 국가가 설치한 보육시설과 동일하다. 동일하게 운영하면서 동일한 기능을 하는 경우에 동일한 지원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적절하다.

74) 상한선을 낮출 경우, 유구비품비 액수가 크면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 수준이 낮아진다는 우려가 있으나, 실제 유구비품비 소요액이 크지 않음. 1994년에 설치하고 2007년에 처음으로 유구비품비를 지원 받은 한 사업장의 경우 총 소요액이 1242만원이었음.

75) 월 인건비의 50%를 지원함.

나) 정책제안

첫째, 국고에 의한 환경개선비를 지원을 직장보육시설에도 적용하는 방안 검토를 제안한다. 최소한 사업주와 공동으로 분담하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다.

둘째, 직장보육시설이 이용 아동 부모의 고용보험 미가입 등의 이유로 고용보험 기금에 의한 인건비 지원을 못 받는 경우 직장보육시설에 일정한 규정⁷⁶⁾을 두고 국공립보육시설과 동일하게 인건비 지원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다) 고려사항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국고지원은 직장보육시설 위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직장보육시설을 노동부 관할 시설로, 이를 설치한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자녀를 위한 보육시설로 규정하는 한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사업비 국고 지원은 한계가 있다. 이 보다는 관련 부처가 사회의 중요한 공공보육 인프라로 인정하는데 대한 합의가 국고 지원의 중요한 전제조건이 된다.

마. 서비스 및 지원

1) 서비스 내용 강화

가) 필요성

직장보육시설은 특히 민간 직장보육시설은 일반 보육시설에 비하여 시간연장형 보육 비율이 월등하게 높아서 취약보육이나 운영의 탄력성이 큰 장점이다. 이용자들도 이용시간에 대한 만족도가 비교적 높다. 그러나 아직도 사업장의 26.7%에서는 운영시간 연장 요구가 있기 때문에, 직장보육시설은 나름대로의 장점을 살려 나가도록 지방정부와 사업장이 지속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보육·교육 프로그램의 질이 확보, 유지되어야 한다. 이러한 필요성의 증거는 많다. 부모 조사 결과 현 직장보육시설 선택 이유나 마음에 드는 점으로 교사와 신뢰가 다수를 차지하지만, 보육프로그램을 꼽은 비율은 매우 저조하였다. 민간의 경우 현재 이용하는 직장보육시설을 그만두려는 비율이 36.6%이고, 그 이유는 전체의 35.8%가 더욱 질 좋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하였으며, 이들의 다수가 유치원 이용을 희망한다. 직장보육시설을 다

76) 예를 들면, 국고지원비 사용 내역 보고, 회계감사 등이 이에 해당됨.

너지 않는 이유는 타 교육기관 이용, 환경이 더 좋은 시설 이용, 집과의 거리, 동반 출퇴근 부담 등이므로, 집과의 거리와 동반 출퇴근의 부담이라는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환경과 특히 프로그램 면에서 지역사회 보육시설과의 경쟁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많은 아동들이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한다. 이는 보육시설 보육과 교육프로그램의 질적인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인근 보육시설들과 경쟁력 있는 질 높은 보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직장보육시설의 활용성 제고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정원 미충족은 시설 운영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 정책제안

(1) 서비스 다양화

직장보육시설의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를 활성화하며, 이를 위해 시간연장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을 정부와 사업장이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현재 실제 야간보육을 하면서 매일 야간보육 아동이 1명 이상 있어야 한다는 인건비 지원 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워서 인건비 지원을 안 받는 시설들이 많은데, 이 경우에는 사업장 차원에서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2) 보육프로그램의 질 제고

보육프로그램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육시설 평가인증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프로그램과 관련된 직·간접적인 지원은 지역사회 보육시설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다) 고려사항

사업장에서 별도로 시간연장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보육아동수, 보육기간, 보육시간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해야 한다.

2)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가) 필요성

보육교사의 질은 보육서비스의 질과 직결된다. 따라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

기 위해서는 우수한 보육교사를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 양호한 근무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직장보육시설에서 근무하는 교사 처우와 시설장이 느끼는 교사의 근무조건은 일반 보육시설과 비교하여 대체로 나은 편이다. 그러나 보육시설 간에 심한 편차가 존재한다. 평일 8시간 근로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직장보육시설이 41.2%이며,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직장보육시설도 21.8%에 이른다. 교사의 평균 근무년수가 3년에 불과한 것도 이러한 근무환경 수준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직장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선 근무환경이 열악한 시설의 여건을 개선하는 일이 필요하다.

나) 정책제안

8시간 근로 기준을 준수하고, 초과근무가 발생할 경우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요구된다. 야간보육이 정기적으로 실시될 경우에는 정규직 교사의 교대 근무제도나 시간제, 종일제 정규 보육교사를 고용하여 야간보육을 담당하도록 한다.

초과근무 수당 또는 추가 배치 교사 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은 사업주가 지원하며, 인건비 지원을 위한 시간연장 보육아동수, 보육기간, 보육시간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 고려사항

정기적인 시간연장 보육이 실시되는 경우는 사업주의 인건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겠는데, 부정기적인 시간연장 보육 요구가 있을 경우에 사실 상 사업주의 인건비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시간제 보육교사를 고용할 경우, 교사가 바뀔으로써 보육활동의 연계에 방해가 되며 아동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아동발달을 저해하지 않도록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이다.

3) 지역사회 보육과 연계체계 구축

가) 필요성

그 동안 직장보육시설 정책은 지역사회 보육정책과는 별개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노동부는 보육정책 중에서 재정 지원의 주체는 되지만 프로그램이나 보육내용에 관한 지도·감독은 취약하다.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주 관점에서 사업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으로는 첫째가 운영비 지원이고 그 다음이 프로그램 지원이

다. 특히 임의설치 직장보육시설에서는 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많다. 이는 보육서비스 내용에 대한 지원을 의미한다. 노동부가 재정적 지원을 담당하고 있으나, 보육내용이나 안전 등에 대한 지도나 감독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재정적으로도 노동부 지원에서도 제외되는 경우 시설에 따라서는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있다. 따라서 직장보육시설과 지역사회 보육 간의 연계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나) 정책제안

직장보육시설도 지역사회 보육시설과 같이 보건복지가족부, 시·도, 시·군·구 보육정책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평가인증 조력, 보육 프로그램 지원 등 시·군·구 보육지원 대상에 직장보육시설도 포함시켜 지역사회 보육시설과 동일하게 정책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 고려사항

지역사회 보육정책 대상으로 포함하기 위해서는 직장보육시설의 위상을 정립해야 하며, 시설 유형 중 어디와 가장 유사한지를 결정하여 일관성 있는 지원 기준이 필요 한데, 민간시설보다는 국공립이나 법인 보육시설과 성격이 유사하다는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4) 직장보육시설 지원 기능 강화

가) 필요성

직장보육시설 설치 사업자의 경우 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중에서 설치 비용 부담과 공간 확보가 가장 큰 애로사항이지만 그 이외에 법 및 행정상 절차가 20.6%, 정보부족이라는 지적이 7.9%를 차지한다. 특히 민간 사업장은 타 유형의 사업장에 비하여 설치 절차를 어려움으로 지적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민간 중에서도 임의설치 사업장에서 시설 설치 절차상의 어려움을 지적한 비율이 25%이고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고 지적한 비율도 14.5%로 의무설치 사업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았다. 따라서 의무사업장을 대상으로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심도 있는 지원을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설치된 보육시설들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현재는 부산에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시설지원센터가 설치되어서 사업장의 직장보육시설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역적으로 전국을 담당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 정책제안

직장보육지원센터의 사업장의 보육시설 설치와 운영 지원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직장보육지원센터를 수도권에 한 곳 정도 추가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육정보센터와의 유기적 관계를 강화하도록 한다.

사실 사업주를 대상으로 단순히 홍보를 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설치 절차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대기업의 경우는 직장보육시설 경영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시설을 설치할 수도 있겠으나 중소기업이 소규모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장보육지원센터가 이에 상응하는 역할을 지원하여야 한다.

4. 맺는 말

본 연구는 일하는 여성을 위한 보육 지원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지역사회 및 직장에서의 일하는 여성 보육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할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를 위하여 사업장, 직정보육시설,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직장보육의 실태와 요구를 파악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지역사회 보육을 살펴보고 일하는 여성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사실 일하는 여성을 위한 보육지원은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고 보육사업 추진 시부터 줄곧 강조되어온 주제이다. 여성근로자의 상당수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거나 비정규직 근로자이기 때문에 지역사회 보육이 취업모를 지원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편적 보육으로 정책 대상이 증가하고 예산이 늘어나면서 실제 지역사회 보육정책에서는 취업모를 별도로 배려한 사례는 중앙정부 정책에서는 거의 없고, 일부 지방정부 사업에 부분적으로 반영된 정도이다. 0세아를 포함한 영아보육 비용 지원에서도 어머니의 취업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있고, 보육시설 입소 우선순위조차도 저소득층 자녀, 한부모 가정 자녀, 장애아 부모 자녀 등 6개의 조건들이 공동 1순위로 나열되어 있다. 물론 차등보육료, 영아 기본보조금 등 보육비용 지원 대상이 확대되면서 수혜대상이 되

는 여성근로자가 증가된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나 어머니의 취업여부를 반영하는 외국 여러 나라의 보육정책들, 영아보육에 대한 기본 방침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보육료 전액지원을 확대하는 무차별적인 정책 속에 묻혀 버리기 쉽지만, 보육서비스는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제공되어야 국가 재정은 물론 아동에게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한편 직장보육시설은 그 범주가 기업규모로 위낙 한정되어 있어서 직장여성의 극히 일부가 적용 대상이 되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남녀고용평등, 일·가정 양립지원 정책에서 차지하는 상징성은 매우 큰 정책이다. 외국의 경우 직장보육시설의 설치나 보육서비스 지원을 강제하는 국가는 없다. 일본의 경우도 여러 가지 근로자 지원방안 중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는 정도이다. 정책의 우선순위도 육아 휴직, 탄력근무 등 부모권 보호를 위한 지원 방법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러한 육아휴직도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직장보육시설이 공공보육시설로 역할해 주기를 바라는 요구가 강하다. 다행이도 최근에 대기업이나 정부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앞으로 실효성도 기대된다.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은 사업주의 지원 이외에 고용보험기금으로 이루어진다. 고용보험기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나는 점은 분명하지만 직장보육시설이 우리나라에 많지 않은 공공인프라의 하나임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는 관계 부처가 둘로 나누어져서 있어서 지역사회보육과 직장보육시설의 기능이나 설치 목적이 다른 것처럼 인식되는 면이 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보면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지역사회보육이나 직장보육이나 모두 중요한 공공 보육 인프라로서, 기본적으로는 일하는 엄마를 지원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은 동일하다. 관련 부처들이 거시적 관점에서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경기도(2007). 2008년 보육지원사업 시행계획.
-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2007). 2007 교육통계 분석 자료집.
- 국회여성위원회(2005). 뉴질랜드·호주 시찰 결과 보고서 중심으로, 내부자료
- 국회입법조사처(2007). 중소기업근로자의 보육시설 이용 확대방안.
- 권미량·천혜영(2006). 직장보육시설의 의미에 관한 문화기술적 사례 연구-취업모의 삶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7(1), 31-44.
-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시설지원센터(2006). 2006년도 직장보육시설 운영실태조사 결과보고서.
-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시설지원센터(2007). 2007년도 직장보육시설 설치와 운영.
- 근로복지공단(2007). 2007년도 직장보육시설 지원사업 고객만족도 조사.
- 김교성·김경희(2003). 직장보육시설과 일반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여성근로자의 보육에 질에 대한 평가와 만족도 및 격리불안정도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33, 1-22.
- 김미숙 외(2007), 정부 내 바람직한 아동정책 수행 체계 개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리진·윤종희(2000).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에 관한 생태학적 연구-6세 이하 자녀를 둔 전문직, 사무직 및 생산직 여성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8(2), 47-59.
- 김선애·한유진(2005). 맞벌이 부모의 직장보육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태도와 복지향상 기대. 한국생활과학회지, 14(3), 351-363.
- 김유경·서문희·임유경(2003). 직장보육시설의 규제순응도 제고 및 운영개선방안.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은설·이정원·지성애·이세원(2007). 농어촌 지역 육아지원 방안 연구. 육아정책개발센터.
- 김주미(1995). 보육서비스가 취업모의 직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진이(2001). 「직장보육서비스 운영 개선방안」, 21C 보육사업 선진화를 위한 보육제도 개선안. 보육발전기획단·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태홍(2001). 기업의 가족친화적인 고용제도의 도입현황과 과제. 한국여성개발원.
- 김현주(2005). 국·공립 직장보육시설 이용 만족도가 취업모의 직무성과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시정연구논총, 11(38), 588-612.
- 김혜란(2006). 여성근로자의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만족 및 효과성 평가: 경기지역 여성근로자들을 중심으로. 한국영유아보육학, 43, 179-199.
- 김혜선(1997). 일터에서 만드는 어린이집: 직장보육시설 활성화 방안. 평등, 8월호.
- 나정·장영숙(2002). OECD 국가들의 유아교육과 보호정책 동향. 양서원.
- 노동부(2005). 영아를 둔 일하는 엄마의 보육 실태.
- 노동부(2008). 제4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 기본계획: 2008-2012.
- 배경화(2006). 강원지역의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가족친화기업 육성방안. 강원발전연구원.
- 보건복지가족부(2008). 보건복지가족부 자체 조사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2008). 보육통계(2007. 12).
- 서문희(2001). 「보육의 다양화와 질적 향상을 위한 과제」, 가정과 일 양립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여성단체연합.
- 서문희·이미화·김은설·이세원(2006). 농어촌지역 소규모 보육시설 확충 및 운영 방안. 농림부·육아정책개발센터.
- 서문희·조애저·김유경·최은영·박지혜(2005). 보육·교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 보고. 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서문희·최혜선(2007). 영아보육종합대책 방안. 육아정책개발센터.
- 서문희·홍승아·박수연·전영인(2007). 취약보육대안마련을 위한 저소득가정 영유아보육 실태조사 보고.
- 서문희·임유경·박애리(2002). 2002년도 전국 보육실태조사 보고.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성영혜·손지미(1999). 직장보육의 부모양육보충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4(1), 61-78.

- 손지미(1991). 우리나라 직장 탁아사업의 효과에 관한 조사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승주(1998). 고용주 지원 보육서비스의 다양화 방안. 한국여성개발원.
- 여성가족부(2006). 중장기 보육발전계획안: 새싹 플랜.
- 여성가족부(2006). 직장보육서비스 제공 실태 조사결과.
- 여성가족부(2007). 2006년 12월말 직장보육지원 이행현황 및 지원제도.
- 여성가족부(2008). 보육사업안내.
- 왕인순(1997). 「정부정책 제언 및 기업노조 실천지침 제시」, 직장보육시설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 직장탁아시설 활성화를 위한 연대모임.
- 이기숙·박은혜·김희진(2002). 취업여성 자녀를 위한 탁아시설 확충. 노동부.
- 이남순(1999). 직장보육사업의 효과성 인지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미화·장혜경·김경미·황정임·김영란·김영주·김혜금·나종혜·문혁준·박금희·박응임·이숙·이완정·류임량·이수현(2005). 보육시설 실태조사 보고. 여성부·한국여성개발원.
- 이순화(2001). 직장탁아시설에 대한 만족도 및 서비스 욕구에 관한 연구-서울시 여성공무원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일본 요코하마시(2006). 내부자료.
- 임재택(1993). 우리나라 직장보육시설의 운영 실태와 효과의 분석. 유아교육논총, 3, 5-39.
- 장지연 외(2005). 일·가족 양립체계의 선진국 동향과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장혜경 외(2006) 주요선진국의 가족 및 자녀사회화 지원정책 비교 연구: 영국, 프랑스, 호주, 핀란드를 중심으로. 일과 가족의 양립 국제심포지움 자료집.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전병유, 허재준, 김승택, 이승렬, 김혜원, 윤윤규, 이규용, 김동현, 나영선, 박영범 (2006). 한국의 고용전략수립에 관한 연구. 노동부
- 정인숙·홍성희(2000). 기혼취업남녀의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요구. 대한가정학회지. 143.
- 직장보육시설지원센터(2008). URL:<http://www.escac.or.kr>.

- 통계청·KOSIS(2007). 연령별추계인구.
- 하정희·강병재(2000). 직장보육이 기혼 직업여성의 양육만족과 직무에 미치는 영향. 국제여성연구소. 연구논총. 제9권.
- 한국여성개발원(2000). OECD 회원국의 여성고용정책. 한국여성개발원.
-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8). 일과 가족의 양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 황순욱(2007). 한국 직장보육시설과 외국 직장보육시설의 지원체계에 대한 비교 분석, 배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혜신(2007). 직장보육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전문직 여성 종사자를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16(1), 49-59.
- 日本 厚生労働省(2008). 2007年 就労条件総合調査 結果. URL:<http://www.mhlw.go.kr>
- 日本 全國保育團體聯合會·保育研究會(2006). 보육연보.
- 日本 全國保育團體聯合會·保育研究會(2007). 보육연보.
- 東京 世田谷區(2006) 保育サービスのごあんない.
- 日本 財團法人 こども未來財團(2007). 베이비시터育兒支援事業 實施要領.
- 日本 社團法人 全國 베이비시터協會(2006). 社團法人 全國 베이비시터協會 15年の あゆみ
- Australian Institute of Family Studies(2006). Snapshots of Australian Families with Adolescents.
- Australian Department of Family and Community Service and Department of Employment and Workplace Relations(2002). OECD Review of Family Friendly Policies: The Reconciliation of Work and Family Life" Australia's Background Report.
- Australian Department of Family and Community Service and Department of Employment and Workplace Relations(2002). "Australia's Country Note for the OECD Project-Family Friendly Policies: The Reconciliation of Work and Family Life", commonwealth Departments of Family and Community Services, Employment and Workplace Relations, OECD, 2002, Babies and Bosses, Volume 1

Guttaman, M. S.(1994). Common Sense for Uncommon Times. COS Books.

Families and Work Institute(2008). 2008 National Study of Employers

John, A.(1990). "Work place child care act: a prototypical of potential of potential public policies." Public personnel Management. 19.

OECD(2002). Babies and Bosses: Reconciling Work and Family Life, Vol.1.

Schiller, P. J.(1982). Employer/Employee perceptions of organizational responsibility for employee child care programs and benefi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exas Woman's university.

<http://www.f-deli.co.jp/index.html>

Abstract

Developing Policies of Child-care for Working Women with Young Children

Moonhee Suh, Eunseol Kim, Hyekyung Chang & Sooyeon Park

This study aimed to develop new child-care policies for working mothers that could be practiced by communities and their workplaces, which has been done on the base of reviewing the problems of mothers with both young children and out-of-home jobs. Concrete purpose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a.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current policies for supporting child-care and suggest ideas for improving them especially for working mothers
- b.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es, appropriateness, needs, and effectiveness of existing child-care supporting policies in companies
- c. To review child-care policies for working mothers in foreign countries and discover applicable implications from them
- d. To suggest ideas for developing the policies of child-care in workplaces including small size companies.

The research methods for this study are literature review, surveys, and holding forums. We have reviewed given statistics, previous studies, and current policies related to women's labor and child-care supports in workplaces of Korea and other countries. For the surveys, we collected data from three different groups: those who are in charge of child-care policies in 772 companies, 191 directors who manage child-care facilities attached to companies, and 1093 parents who send their children to child-care facilities that are managed by their companies. The surveys

were performed via phone or mail. For the forums, several specialists and consultants in this field who work in universities, research institutes, and the central government gathered 5 times and discussed about their ideas for improving national policies for child-care, especially for working women's families.

In the conclusion, we suggested two different approaches to elaborate child-care policies for mothers with job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nalyzing data, literature reviews, and meetings with consultants:

First, child-care policies in the community should be more focused on working mothers with young children. To achieve this, we, above all, suggested that child-care facilities in the public sector should be more increased than those in the private sector. Developing various types of child-care such as time-extension, weekend/holiday services, and 24-hour services, giving priority to working mothers in using child-care facilities, paying the child-care cost by hours, improving tax credit regulation, and utilizing in-home child-care services should also be considered.

Second, policy makers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leading companies to provide child-care services with their female employees with young children. They should increase the number of child-care facilities attached to companies, help companies support their child-care facilities, and improve the ways to support companies by providing a standard cost for child-care in workplace and establishing a standard criteria for financial duty of the companies. In addition, the government should make efforts to improve the quality of child-care program, working environments for staffs, and the connections with regular child-care facilities in the community, especially for child-care services managed by companies.

부 록

1. 부록 표
2. 서울형 어린이집 인증 운영 계획(안)
3. 조사표 3종

부록 1: 부록 표

〈부표 IV-1-1〉 사업장 노동 관련 단체 구성 및 활동

단위: %(개소)

구분	미구성	활동미약	활동 활발	활동 보통	계(수)
전체	26.0	6.2	57.7	10.0	100.0(769)
시설 의무 설치	33.3	7.6	51.1	8.0	100.0(276)
위탁	10.8	8.1	67.6	13.5	100.0(37)
보육수당	13.2	8.5	69.8	8.5	100.0(189)
미이행	24.6	3.0	59.9	12.5	100.0(232)
시설 임의 설치	62.9	2.9	20.0	14.3	100.0(35)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직장보육에 관한 사업장 조사」 결과임.

〈부표 VI-2-1〉 시군구 지원 여부 및 효용성

단위: %(개소)

구분	지원 안 받음	미지원시 운영 불가	비교적 많은 도움	다소 도움	별 도움이 안 됨	계(수)
교재교구비 지원						
전체	85.9	1.4	4.8	4.8	3.1	100.0(291)
설치 성격별						
의무 설치	86.3	1.4	6.6	4.3	1.4	100.0(211)
임의 설치	85.0	1.3	-	6.3	7.5	100.0(80)
시설 소유형태별						
국가·지자체	90.3	2.2	4.3	1.1	2.2	100.0(93)
대학	66.7	-	22.2	11.1	-	100.0(9)
민간	84.7	1.1	4.2	6.3	3.7	100.0(189)
야간보육교사 인건비						
전체	96.9	0.7	1.7	0.7	-	100.0(291)
설치 성격별						
의무 설치	96.2	0.9	1.9	0.9	-	100.0(211)
임의 설치	98	.8	-	1.2	-	100.0(80)
시설 소유형태별						
국가·지자체	96.7	-	2.2	1.1	-	100.0(92)
대학	88.9	11.1	-	-	-	100.0(9)
민간	97.4	0.5	1.6	0.5	-	100.0(191)
장애아통합보육교사 인건비						
전체	99.3	-	0.3	0.3	-	100.0(292)
설치 성격별						
의무 설치	99.1	-	0.5	0.5	-	100.0(211)
임의 설치	100.0	-	-	-	-	100.0(81)
시설 소유형태별						
국가·지자체	98.9	-	1.1	-	-	100.0(92)
대학	100.0	-	-	-	-	100.0(9)
민간	99.5	-	-	0.5	-	100.0(191)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직장보육에 관한 사업장 조사」 결과임.

〈부표 V-2-2〉 부모 조건별 입소 우선순위 분포

단위: %(개소)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고려하지 않음	계(수)
부모가 모두 보육시설 설치 사업체 직원 아동								
전체	81.0	4.5	0.6	0.6	-	-	13.4	100.0(179)
민간 의무설치	76.5	7.4	1.5	1.5	-	-	13.2	100.0(68)
민간 임의설치	87.5	2.5	-	-	-	-	10.0	100.0(40)
국가·지자체 의무설치	83.9	3.6	-	-	-	-	12.5	100.0(56)
어머니만 보육시설 설치 사업체 직원 아동								
전체	59.8	28.5	1.1	-	-	-	10.6	100.0(179)
민간 의무설치	67.6	25.0	1.5	-	-	-	5.9	100.0(68)
민간 임의설치	60.0	35.0	-	-	-	-	5.0	100.0(40)
국가·지자체 의무설치	55.4	30.4	-	-	-	-	14.3	100.0(56)
국가·지자체 임의설치	40.0	20.0	6.7	-	-	-	33.3	100.0(15)
아버지만 보육시설 설치 사업체 직원 아동								
전체	48.0	21.8	17.3	0.6	-	-	12.3	100.0(179)
민간 의무설치	42.6	33.8	14.7	-	-	-	8.8	100.0(68)
민간 임의설치	52.5	15.0	25.0	-	-	-	7.5	100.0(40)
국가·지자체 의무설치	53.6	14.3	17.9	-	-	-	14.3	100.0(56)
국가·지자체 임의설치	40.0	13.3	6.7	6.7	-	-	33.3	100.0(15)
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보육시설 설치 사업체 직원 혹은 비정규직 직원인 아동								
전체	34.1	17.9	3.9	9.5	1.1	-	33.5	100.0(179)
민간 의무설치	26.5	17.6	2.9	7.4	-	-	45.6	100.0(68)
민간 임의설치	35.0	20.0	2.5	17.5	5.0	-	20.0	100.0(40)
국가·지자체 의무설치	37.5	19.6	3.6	8.9	-	-	30.4	100.0(56)
국가·지자체 임의설치	53.3	6.7	13.3	-	-	-	26.7	100.0(15)
부모가 고용보험 가입자로 타 사업체 직원 아동								
전체	1.1	14.0	8.4	3.9	8.4	-	64.2	100.0(179)
민간 의무설치	1.5	10.3	5.9	2.9	7.4	-	72.1	100.0(68)
민간 임의설치	2.5	25.0	17.5	7.5	17.5	-	30.0	100.0(40)
국가·지자체 의무설치	-	10.7	7.1	1.8	3.6	-	76.8	100.0(56)
국가·지자체 임의설치	-	13.3	-	6.7	6.7	-	73.3	100.0(15)
부모가 자역주민 아동								
전체	0.6	7.8	11.7	2.2	2.2	7.8	67.6	100.0(179)
민간 의무설치	-	4.4	8.8	1.5	2.9	7.4	75.0	100.0(68)
민간 임의설치	-	12.5	12.5	5.0	2.5	17.5	50.0	100.0(40)
국가·지자체 의무설치	1.8	7.1	17.9	1.8	-	1.8	69.6	100.0(56)
국가·지자체 임의설치	-	13.3	-	-	6.7	6.7	73.3	100.0(15)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직장보육시설 시설장 조사」 결과임.

〈부표 V-2-3〉 2008년 5월 아동 1인당 평균 월 보육료 수납액

단위: 천원(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수)	F
0세						
전체	240.9	125.7	0	397.0	(55)	0.9
민간 의무설치	214.7	128.3	0	372.0	(18)	
민간 임의설치	264.9	149.9	0	397.0	(19)	
국가·지자체 의무설치	259.4	98.2	100.0	372.0	(14)	
가·지자체 임의설치	180.2	21.9	148.8	200.0	(4)	
만1세						
전체	237.5	97.9	0	397.0	(151)	0.7
민간 의무설치	247.1	93.2	0	350.0	(59)	
민간 임의설치	238.6	128.9	0	397.0	(31)	
국가·지자체 의무설치	225.0	85.3	75.0	372.0	(46)	
국가·지자체 임의설치	235.7	82.4	130.8	372.0	(15)	
만2세						
전체	194.8	79.1	0	340.00	(173)	0.8
민간 의무설치	205.6	74.7	0	300.0	(69)	
민간 임의설치	189.8	102.6	0	340.0	(36)	
국가·지자체 의무설치	183.8	66.7	75.0	270.0	(51)	
국가·지자체 임의설치	194.9	74.7	75.8	270.0	(17)	
만3세						
전체	145.6	61.7	0	330.0	(177)	1.4
민간 의무설치	157.1	57.7	0	260.0	(68)	
민간 임의설치	139.7	86.3	0	330.0	(40)	
국가·지자체 의무설치	135.4	42.7	74.0	185.0	(51)	
국가·지자체 임의설치	145.4	54.8	74.0	260.0	(16)	
만4세						
전체	134.9	56.0	0	340.00	(163)	1.1
민간 의무설치	144.7	53.1	0	240.0	(60)	
민간 임의설치	132.1	80.4	0	340.0	(35)	
국가·지자체 의무설치	126.0	37.1	66.8	147.0	(52)	
국가·지자체 임의설치	133.0	53.0	66.8	260.0	(16)	
만5세						
전체	124.6	59.3	0	240.0	(107)	0.6
민간 의무설치	137.9	68.7	0	240.0	(28)	
민간 임의설치	119.0	76.7	0	231.0	(29)	
국가·지자체 의무설치	120.6	39.3	42.0	167.0	(44)	
국가·지자체 임의설치	119.3	384.8	83.5	167.0	(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직장보육시설 시설장 조사」 결과임.

〈부표 V-2-4〉 2008년 5월 아동 1인당 평균 월 기타비용 수납액

단위: 천원(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수)	F
0세						
전체	21.3	8.2	0	45.0	(54)	3.7
민간 의무설치	26.5	10.9	0	45.0	(17)	
민간 임의설치	-	-	-	-	(19)	
국가·지자체 의무설치	10.7	4.0	0	15.0	(19)	
국가·지자체 임의설치	13.8	1.6	0	30.0	(4)	
만1세						
전체	5.5	14.1	0	80.0	(150)	0.3
민간 의무설치	4.5	13.8	0	70.0	(58)	
민간 임의설치	5.5	16.1	0	80.0	(31)	
국가·지자체 의무설치	5.2	13.2	0	70.0	(46)	
국가·지자체 임의설치	10.7	13.7	0	30.0	(15)	
만2세						
전체	13.1	20.0	0	90.0	(172)	1.6
민간 의무설치	9.3	16.6	0	70.0	(68)	
민간 임의설치	13.7	25.8	0	90.0	(36)	
국가·지자체 의무설치	16.7	20.4	0	80.0	(51)	
국가·지자체 임의설치	16.3	16.2	0	55.0	(17)	
만3세						
전체	21.3	27.1	0	115.0	(176)	0.9
민간 의무설치	17.3	26.3	0	108.8	(67)	
민간 임의설치	21.8	29.8	0	90.0	(40)	
국가·지자체 의무설치	24.6	28.1	0	115.0	(53)	
국가·지자체 임의설치	26.2	18.4	0	58.0	(16)	
만4세						
전체	25.3	29.9	0	120.0	(160)	0.5
민간 의무설치	21.5	29.1	0	108.8	(59)	
민간 임의설치	26.9	35.3	0	120.0	(35)	
국가·지자체 의무설치	28.2	29.8	0	115.0	(52)	
국가·지자체 임의설치	26.9	19.0	0	580.0	(16)	
만5세						
전체	27.5	30.0	0	125.0	(104)	0.0
민간 의무설치	26.3	26.6	0	72.0	(26)	
민간 임의설치	28.1	33.9	0	100.0	(28)	
국가·지자체 의무설치	27.5	31.4	0	125.0	(44)	
국가·지자체 임의설치	29.3	17.2	10.0	55.0	(6)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05$ 를 의미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직장보육시설 시설장 조사」 결과임.

〈부표 V-2-5〉 2008년 5월 아동 1인당 평균 월 수납 총액

단위: 천원(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수)	F
0세						
전체	243.0	126.3	0	417.0	(55)	0.7
민간 의무설치	217.2	131.9	0	417.0	(18)	
민간 임의설치	264.9	149.9	0	397.0	(19)	
국가·지자체 의무설치	260.5	983.0	100.0	372.0	(14)	
국가·지자체 임의설치	194.0	143.8	178.9	211.0	(4)	
만1세						
전체	241.1	995.2	0	407.0	(151)	0.7
민간 의무설치	251.4	937.9	0	397.0	(59)	
민간 임의설치	245.5	1309.5	0	407.0	(31)	
국가·지자체 의무설치	223.7	882.1	27.0	372.0	(46)	
국가·지자체 임의설치	244.3	801.4	160.8	357.0	(15)	
만2세						
전체	205.7	740.2	0	350.0	(173)	0.6
민간 의무설치	214.8	773.0	0	340.0	(69)	
민간 임의설치	200.0	1107.0	0	350.0	(36)	
국가·지자체 의무설치	195.6	738.3	27.0	325.0	(51)	
국가·지자체 임의설치	211.3	765.8	85.7	300.0	(17)	
만3세						
전체	166.9	689.7	0	390.0	(177)	0.6
민간 의무설치	174.8	644.8	0	330.0	(68)	
민간 임의설치	160.7	933.8	0	390.0	(40)	
국가·지자체 의무설치	160.0	549.5	75.0	257.0	(53)	
국가·지자체 임의설치	171.6	594.0	92.5	260.0	(16)	
만4세						
전체	159.8	663.8	0	460.0	(163)	0.2
민간 의무설치	165.1	620.4	0	310.0	(60)	
민간 임의설치	159.0	942.8	0	460.0	(35)	
국가·지자체 의무설치	154.3	508.6	75.0	247.0	(52)	
국가·지자체 임의설치	159.9	572.8	83.5	260.0	(16)	
만5세						
전체	154.1	679.2	0	310.0	(105)	0.5
민간 의무설치	168.3	781.9	0	310.0	(27)	
민간 임의설치	151.3	818.9	0	268.0	(28)	
국가·지자체 의무설치	147.9	535.1	42.0	247.0	(44)	
국가·지자체 임의설치	148.6	425.1	93.5	200.5	(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직장보육시설 시설장 조사」 결과임.

〈부표 V-3-1〉 사업장 특성별 보육서비스 만족도

단위: %(명)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계(수)	$\chi^2(df)$
보육료 만족도							
전체	0.7	2.7	19.5	44.3	32.8	100.0(1087)	
민간 의무설치	0.9	2.8	22.3	45.1	29.0	100.0(435)	
민간 임의설치	1.0	4.4	22.1	42.2	30.4	100.0(204)	na
국가·지자체 의무설치	0.3	1.8	14.1	47.8	36.1	100.0(341)	
국가·지자체 임의설치	0.9	1.9	20.6	34.6	42.1	100.0(107)	
교사의 질 만족도							
전체	0.5	0.5	9.1	46.5	43.5	100.0(1089)	
민간 의무설치	0.5	1.1	9.9	48.6	39.9	100.0(436)	
민간 임의설치	1.0	-	11.3	44.1	43.6	100.0(204)	na
국가·지자체 의무설치	0.3	-	7.3	46.5	45.9	100.0(342)	
국가·지자체 임의설치	-	-	7.5	42.1	50.5	100.0(107)	
보육 프로그램 만족도							
전체	0.6	1.5	17.1	51.9	29.0	100.0(1088)	
민간 의무설치	0.7	1.1	20.9	54.1	23.2	100.0(436)	
민간 임의설치	1.0	2.5	18.6	45.6	32.4	100.0(204)	na
국가·지자체 의무설치	0.3	1.2	12.6	54.4	31.6	100.0(342)	
국가·지자체 임의설치	-	1.9	13.2	47.2	37.7	100.0(106)	
이용 시간 만족도							
전체	0.6	1.5	12.7	51.4	33.8	100.0(1087)	
민간 의무설치	0.9	2.1	14.9	54.6	27.5	100.0(436)	
민간 임의설치	1.0	1.5	10.8	51.0	35.8	100.0(204)	na
국가·지자체 의무설치	0.3	0.6	10.6	50.0	38.5	100.0(340)	
국가·지자체 임의설치	-	1.9	14.0	43.9	40.2	100.0(107)	
등하원 방법 만족도							
전체	1.7	6.3	24.1	47.4	20.4	100.0(1088)	
민간 의무설치	1.8	7.6	26.1	47.9	16.5	100.0(436)	
민간 임의설치	2.9	4.9	21.6	42.6	27.9	100.0(204)	16.7(12)
국가·지자체 의무설치	1.2	5.6	23.5	49.6	20.2	100.0(341)	
국가·지자체 임의설치	0.9	6.5	22.4	47.7	22.4	100.0(107)	
시설·설비, 환경 만족도							
전체	1.4	8.8	24.0	40.7	25.2	100.0(1089)	
민간 의무설치	1.4	11.0	26.4	38.8	22.5	100.0(436)	
민간 임의설치	2.5	6.4	20.1	42.2	28.9	100.0(204)	16.5(12)
국가·지자체 의무설치	0.9	9.1	24.3	40.6	25.1	100.0(342)	
국가·지자체 임의설치	0.9	3.7	20.6	45.8	29.0	100.0(10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직장보육시설 이용자 조사」 결과임.

〈부표 V-4-1〉 사업장 특성별 보육시설 이용 후 변화

단위: %(명)

구분	매우 낮아짐	다소 낮아짐	변화 없음	다소 높아짐	매우 높아짐	계(수)
아이 안전에 대한 안도감						
전체	0.4	2.7	10.7	51.9	34.3	100.0(1078)
민간 의무설치	-	3.2	12.1	55.2	29.5	100.0(431)
민간 임의설치	1.5	2.5	9.5	45.8	40.8	100.0(201)
국가·지자체 의무설치	0.3	2.1	9.1	51.8	36.8	100.0(340)
국가·지자체 임의설치	-	2.8	12.3	50.9	34.0	100.0(106)
보다 좋은 환경에의 만족감						
전체	0.1	2.7	12.7	51.4	33.0	100.0(1075)
민간 의무설치	0.2	3.0	14.2	50.8	31.7	100.0(429)
민간 임의설치	-	2.5	13.0	48.5	36.0	100.0(200)
국가·지자체 의무설치	-	2.1	12.1	53.8	32.1	100.0(340)
국가·지자체 임의설치	-	3.8	8.5	51.9	35.8	100.0(106)
자녀와의 긍정적 관계						
전체	-	1.3	14.1	56.8	27.8	100.0(1069)
민간 의무설치	-	2.1	14.6	56.0	27.3	100.0(425)
민간 임의설치	-	2.0	12.6	52.8	32.7	100.0(199)
국가·지자체 의무설치	-	0.3	14.7	59.4	25.6	100.0(340)
국가·지자체 임의설치	-	-	13.3	59.0	27.6	100.0(105)
직장에 대한 애사심						
전체	0.2	0.8	29.8	50.4	18.9	100.0(1065)
민간 의무설치	-	0.7	30.4	50.4	18.6	100.0(425)
민간 임의설치	0.5	1.5	23.4	50.8	23.9	100.0(197)
국가·지자체 의무설치	0.3	0.6	32.9	49.0	17.2	100.0(337)
국가·지자체 임의설치	-	0	29.2	54.7	16.0	100.0(106)
업무 몰입도						
전체	0.2	1.4	21.4	52.5	24.6	100.0(1067)
민간 의무설치	-	1.2	24.4	50.9	23.5	100.0(426)
민간 임의설치	0.5	1.5	19.3	49.2	29.4	100.0(197)
국가·지자체 의무설치	0.3	1.8	20.4	55.0	22.5	100.0(338)
국가·지자체 임의설치	-	0.9	16.0	56.6	26.4	100.0(106)
직무 만족도						
전체	0.2	1.0	30.1	49.0	19.6	100.0(1065)
민간 의무설치	-	0.9	33.6	47.3	18.1	100.0(425)
민간 임의설치	0.5	1.0	26.5	46.4	25.5	100.0(196)
국가·지자체 의무설치	0.3	1.2	29.6	51.2	17.8	100.0(338)
국가·지자체 임의설치	-	0.9	24.5	53.8	20.8	100.0(106)

주: 빈도수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증이 적절하지 않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직장보육시설 이용자 조사」 결과임.

〈부표 VI-1-1〉 일본의 저출산 대책

구분	내용
엔젤플랜	- 보육서비스 등 육아지원서비스의 충실 0-2세아 보육소 수용확대 - 다양한 수요에 응하는 보육서비스 추진 - 재택아 포함 육아지원 추진 - 방과후 아동클럽 추진 - 일과 육아의 양립을 위한 고용환경 정비 - 육아 휴업과 직장복귀가 쉬운 환경 조성 - 육아, 일 양립환경 정비 - 출산 육아 퇴직자 재취직 지원 - 노동방법에 대한 성별역할분업이나 직장 우선 기업풍토 개선 - 모자보건 의료체제의 정비 - 지역에서 아이를 기르는 교육환경의 정비 - 아이들이 구김살 없이 자라는 교육환경 실현 - 교육에 수반하는 경제적 부담 경감 - 거주지나 마을 만들기에 의한 육아지원
신엔젤플랜	- 일과 육아의 양립을 위한 고용환경 정비 - 육아 휴업을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는 환경 정비 - 사업소내 보육시설 설치 등 아이를 키우며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 정비 - 육아를 위한 퇴직자 재취직 지원 - 다양한 보육서비스의 충실 - 보육체계의 다양화: 재택, 역형 0-2세아 보육 수용한도 확대, 연장 일시보육 확충 - 보육소 다가능 정비(보모배치충실, 상담지도, 육아서클지원) - 방과후 아동대책 충실 - 안심하고 아이를 기를 수 있는 모자보건 의료체제의 충실 - 주택 및 생활환경 정비 - 여유 있는 학교교육의 추진과 학교와 활동·가정생활의 충실 - 육아에 수반하는 경제적 부담 경감 - 맞벌이, 중간소득계층 부담 완화, 공평화 - 유치원 취원 장려 등 - 육아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
소자화대책 플러스원	<u>일하면서 아이를 기르는 사람을 위하여</u> - 남성을 포함한 노동방법 재검토, 다양한 노동방법 실현 - 일과 가정의 양립 추진 - 육아휴업 아이간호휴가, 단축근무 보급률 목표 설정 - 보육서비스의 충실 - 대기아동제로작전 - 파트타임 근로자 등을 위한 새로운 유연한 보육사업(주2-3일, 오전, 오후 등) - 보육마마 서비스의 시간, 날짜 등 탄력성 제고 <u>육아하는 모든 가정을 위하여</u> - 지역의 다양한 육아지원서비스의 추진과 네트워크의 수립 - 육아를 지원하는 생활환경 정비 - 사회보장에서의 차세대 지원 - 교육에 수반하는 경제적 부담 경감 <u>차세대를 기르는 부모가 되기 위하여</u> - 부모 되기 위한 만남 - 아동의 생활력 육성과 육아에 대한 이해 촉진 - 젊은이의 안정취업이나 자립생활의 촉진 - 아동의 건강과 안심·안전의 촉진 - 불임치료

(부표 VI-1-1 계속)

구분	내용
자녀양육 지원정책 (2005-2009)	1. 젊은이의 자립과 씩씩한 아이의 성장 - 청년 취업 지원 충실, 장학금 사업 충실, 학교체험활동 충실, 자녀 학업 지원 2. 일과 육아의 양립 지원과 노동방법의 재검토 - 기업의 행동계획 수립 등 기업 참여 촉진 - 육아 휴업제도 등 양립을 위한 근로환경 촉진 - 남성의 육아 참여 촉진 - 가정생활과의 조화, 개인생활을 배려한 노동시간 개선, 장시간 근로 시정 - 안심하고 임신, 출산 및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직장환경 정리 - 여성근로자 재취업 촉진 3. 생명의 소중함, 가정 역할에 대한 이해 - 중고생이 유아와 접할 기회 확대 제공, 중고등학교에서 육아 이해교육 추진 4. 육아의 새로운 육아지원연대 - 자녀 양육지원 전개 · 지역 자녀 지원 거점 정비: 광장사업, 지역육아지원센터 6000개소 등, 일시 특정보육 추진 · 취학전 교육보육 충실: 유치원 포함 · 지역주민의 주체적 자녀 양육 촉진: 패밀리 서포트, 고령자 활용 - 자녀 양육 가정에서 필요시 이용하도록 보육서비스 충실 · 대기아동제로 작전의 새로운 전개, 방과후 아동 보육, 다양한 보육수요에 대응 - 가정교육 지원 충실 -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지원 - 소아의료, 모자보건의료체계 정비 등
신소자화 대책 (2006)	1. 자녀지원책 <u>신생아기</u> - 출산육아일시지급금(35만엔) 지급 - 안심 출산 환경 정비: 임신시 검진 비용 지원과 불임치료비 지원 확대 - 유아기 자녀 가정 지원: 아동수당 3세 미만아 가산제도 <u>미취학기</u> - 자녀 양육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가정 지원 - 지역사회양육서비스 충실 <u>초등학생기</u> - 방과후 어린이 플랜 추진 <u>중소대 학생기</u> - 교육비 부담 경감, 학생을 베이비시터로 양성 2. 노동방식의 개혁 - 젊은이의 취업 지원 - 시간제근로자 처우 개 선 - 여성 계속 취업 및 재취업 지원 - 기업의 자녀양육지원 추진 - 장시간 근로 시정 등 근로방식 개선 - 민관일체 자녀양육지원운동 추진 3. 기타 주요 시책 - 자녀양육 세제 지원 검토 - 아동학대 방지 및 요보호 아동 대책 강화 - 모자가정 등의 종합적 자립지원 4. 국민운동 - 가족의 날 가족 주간 등

〈부표 VI-1-2〉 일본의 직장보육시설 사례: 후쿠오카시 Fountain Deli 주식회사

- 세븐일레븐의 삼각김밥과 도시락 제조 사업체로 365일 24시간, 요일 관계없이 공장 가동
 - 파트타임 직원은 240명으로 그 중에 주부가 220명이다. 연령층은 폭넓게 20대 전반에서부터 60대까지이고, 제일 많은 층은 35살에서 45살까지이다.
 - 자녀들의 연령층은 만 1세가 정도가 70%이다.
- 보육소 설치 이유는 두 가지로 첫째, 파트타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싶으나 우리 지역의 지역적인 특징에 핸디캡이 있고 또한 동업타사(같은 업종의 다른 회사)와 차별을 두고 싶었고, 두 번째로는 당사의 사장은 여성으로 주부들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직장생활을 하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이들을 위하여 최소한의 시설인 보육소를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하였다.
- 입소 등록한 영유아는 42명으로, 평일 이용아동은 보통 10명 정도이다.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도 오후에 회사의 보육소에 다시 맡길 수 있다.
 - 초등학생도 방과후 보육이 가능하고, 또는 방학 때는 종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일회성으로 이용한다.
- 입소 대상은 1살을 기준으로 이유식이 끝나고 혼자서 식사를 할 수 있으며 걸을 수 있어야 합니다. 등록할 때 면접은 필수로 하여 판단한다. 음식알러지(알레르기)가 있으면 아이를 맡을 수가 없다.
- 요일과는 상관없이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유시로 받고 있다.
 - 야근자는 아이들의 취침 후에 온다. 밤에 아이를 깨워서 놀게 할 수는 없다.
- 보육비는 3살 미만 12,000엔/월, 3살 이상 10,000엔/월, 단회적 이용이 1회 500엔입니다.
- 교통이 다소 불편한 곳에 공장이 있어서 통근버스를 운행한다. 상황에 따라 아침, 저녁, 밤으로 운행하고 있다. 그러나 넓은 주차장도 완비되어 있으므로 어린 자녀를 가지신 분들은 대부분 자동차로 통근한다.

자료: <http://www.f-deli.co.jp/index.html>

부록 2: 서울형 어린이집 인증 운영 계획(안)

□ 인증기준: 10개 항목 92개 지표 평가

※ 정부 평가인증 시설에 대해서는 7개 영역 80개 항목 평가 면제

- 맞춤보육: 온라인 서비스 신청제, 시간연장(야간) 보육수요 100% 충족, 휴일·24시간·장애아·다문화가정 보육서비스 제공
- 안심보육: 급식보존대 설치, 모니터링단 정기 점검, 급식단가 준수, 주치의 제도 도입
- 클린운영: 회계관리시스템 및 클린카드 전면 사용, 회계계좌 단일화, 운영위원회 분기 1회 이상 개최, 종사자 급여 등 국공립보육시설 기준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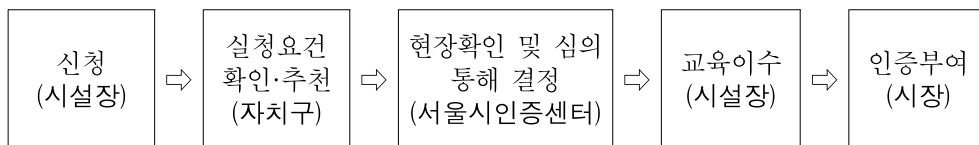
□ 회계관리시스템·클린카드 사용 의무화

- 클린카드 사용처 제한으로 회계부정 사전 예방
- 운영비 집행내역 실시간 검색 가능
 - 운영비 무단전용 및 보조금 유용 등 위법적 집행 방지
- 지도·감독의 효율성으로 시간 및 인력 절감
 - 시스템 점검 후 이상 시설에 대하여만 현장 점검 실시

□ 회계관리 계좌 단일화

- 보육시설의 모든 수입·지출을 단일계좌로 통합 운영
 - 시설 명의의 1개 통장으로 통합
- 별도, 복수 계O좌 운영으로 일부 운영비 예·결산 누락 등 편법 방지
 - 보육료 외 잡부금 편법 수납 방지

□ 인증절차: 인증시설에는 인증마크 부착



□ 사후관리

- 정기점검을 통해 인증기준 이행 여부 확인
- 매년 1회 운영보고서 제출 및 서울시 위원회 심사
- 사고·위법사례 발생 시 인증 취소 등 세부지침 마련

부록 3: 조사표 3중

사업체유형	지역번호	일련번호

사업장 조사표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개발센터는 노동부와 공동으로 직장보육에 대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보다 나은 보육을 위하여 통계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본 조사 연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8년 5월
육아정책개발센터 소장·노동부 장관

사업체명		전화번호	
주소	()시·도 ()군·구 ()읍·면	조사담당자	
직장보육형	① 보육시설 단독설치 ② 보육시설 공동설치		

※ 조사원은 자료에서 이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상시 근로자 수	여성근로자 수	영유아 수	직장보육 수혜 아동수
수	명	명	명	명

I. 사업장 특성 및 직장보육 법 제도 관련 의견

1. 귀 사업장의 특성을 묻는 질문입니다.

1-1. 사업장 특성	① 사무직 중심 ② 생산직 중심 ③ 서비스업 중심 ④ 기타()
1-2. 근로 특성	① 낮 근무가 원칙이고 대체로 정시에 출퇴근함. ② 야간근무가 잦음 ③ 교대근무로 근무시간 불규칙
1-3 노동단체(협의회) 구성 및 활동	① 미구성 ② 활동이 미약 ③ 활동이 활발 ④ 보통

2. 정부는 “여성고용촉진”과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 지원”을 목적으로 직장보육시설의 설치나 인근 보육시설 위탁 이용, 보육수당 지급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 조치들이 여성고용촉진과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 지원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2-1. 직장보육시설		<보기> ① 전혀 도움 안됨 ② 도움 안됨 ③ 보통 ④ 어느 정도 도움됨 ⑤ 많은 도움이 됨 ⑥ 모름
2-2. 인근 보육시설 위탁 이용		
2-2. 보육수당		

3. 정부가 상시 근로자 500명, 또는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에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설치가 어려울 때는 인근 보육시설에 위탁하거나 또는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의무규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적절 ② 부적절 ③ 잘 모름

3-1. 부적절하다는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4. 현재 우리나라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사업장의 시설 설치, 위탁, 보육수당 지급 등 의무를 이행하는 사업장은 50%를 조금 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의무이행율이 저조한 **가장 주된**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하나만 선택)

- ① 사업주(고용주) 인식부족 ② 정부의 지원 부족 ③ 사업주 비용 부담
④ 해당 아동 소수 ⑤ 설치 기준 등 규제 ⑥ 직원간 합의 부족
⑦ 기타() ⑧ 잘 모르겠음

5. 정부는 직장보육시설 설치 시 설치비를 융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융자 조건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보기
5-1. 융자 상한액 5억원	① 증액 필요 ② 적절 ③ 잘 모름 ④ 기타()
5-2. 거치기간 5년	① 연장 필요 ② 적절 ③ 잘 모름 ④ 기타()
5-3. 상환기간 5년	① 연장 필요 ② 적절 ③ 잘 모름 ④ 기타()
5-4. 이자율 1-2%	① 더 낮출 필요 ② 적절 ③ 잘 모름 ④ 기타()

6. 정부는 직장보육시설 설치 시 시설전환비와 교재교구 및 장비구입 비용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상한액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보기
6-1. 시설전환비 최고 1억원	① 증액 필요 ② 적절 ③ 잘 모름 ④ 기타()
6-2. 교구 및 장비 구입비 최고 5천만원	① 증액 필요 ② 적절 ③ 잘 모름 ④ 기타()

7. 정부는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의 7%를 세액공제해 주고, 운영비를 부동산소득 및 사업소득 총수입금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보기		
7-1. 시설설치비 7% 세액공제	① 증액 필요	② 적절	③ 잘 모름
7-2. 운영비 필요경비 인정	① 개선 필요	② 적절	③ 잘 모름

8. 현재 법으로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사업장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 운영비 및 수탁 아동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50% 이상을 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운영비 지원 비율 규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적절하다 ② 사업주 부담이 너무 적다 ③ 사업주 부담이 너무 크다

9. 2008년부터 직장보육시설에 사업체 근로자 자녀가 1/3이상, 또는 사업체 근로자 자녀가 1/4 이상이고 고용보험 가입자 자녀가 1/2이상이면 교사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이러한 지원 조건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적절하다 ② 지원조건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③ 지원조건을 더 완화할 필요가 있다. ④ 조건없이 지원하여야 한다

II. 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1. 직장보육시설 설치 연도는 언제입니까? ()년도

2. 직장보육시설 설치 과정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① 비용 부담 ② 법 및 행정적 절차 ③ 보육시설 설치에 대한 정보 부족
④ 공간확보 ⑤ 인력확보 ⑥ (위탁)업체 선정
⑦ 근로자 및 노조와의 이해관계 ⑧ 잘 모름 ⑨ 없음

3. 직장보육시설 설치시 지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얼마를 지원 받았습니까?

3-1. 설치비 융자	① 있음(억 만원) ② 없음 ③ 모름
3-2. 유구비품비, 교재교구 등 무상지원	① 있음(만원) ② 없음 ③ 모름
3-3. 설치비 세액공제	① 있음 ② 없음 ③ 모름
3-4. 시설전환비 무상지원	① 있음(억 만원) ② 없음 ③ 모름

- 3-5. (설치시 융자나 무상지원 지원을 받은 경우) 직장보육시설 설치 시 이러한 정부의 지원이 얼마나 도움을 주었습니까?

① 지원이 없었다면 설치하지 못했을 정도로 도움이 컸음
②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었음.
③ 별 도움이 안 되었음
④ 융자나 무상지원을 받지 않았음

4. 직장보육시설 운영 유형은 무엇입니까? 위탁 운영시 위탁체는 어디입니까?
① 사업체 직영 ② 위탁운영(어디:) ③ 기타()
5. 현재 노동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교사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받고 있다면 보육 시설 운영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까?

5-1. 지원여부	① 노동부 ② 기타 공공기관 ③ 노동부와 기타 공공기관 ④ 지원받지 않음		
5-2. 도움여부	① 전혀 도움 안됨	② 도움안됨	③ 보통
	④ 도움 됨	⑤ 매우 도움됨	⑥ 지원받지 않음

6. 현재 시군구로부터 다음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받고 있다면 각각 용도별로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까?

교재교구비		<보기> ① 지원 안 받음 ② 지원 없으면 운영 불가 ③ 비교적 많은 도움이 됨 ④ 다소 도움이 됨 ⑤ 별 도움이 안 됨 ⑥ 모름
야간보육교사 인건비		
장애아통합보육교사 인건비		

7. 정부 등 외부 지원 이외에 사업체가 직장보육시설에 지원하는 금액은 전체 보육시설 운영비의 어느 정도 됩니까?
운영비의 (%)
8. 직장보육시설 운영상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① 재정부담 ② 보육시설 운영 관리 미숙 ③ 보육아동 부족
④ 사고 등 책임 부담 ⑤ 교사 등 인력 채용 ⑥ 기타()
⑦ 없음

9. 직장보육시설 설치로 근로자 자녀 양육부담을 완화하여 줌으로써 사업체에 다음과 같은 긍정적 효과가 있습니까? 있다면 각각 어느 정도입니까?

구분	① 전혀 없음	② 거의 없음	③ 보통	④ 어느 정도 있음	⑤ 매우 큼
사업체 이미지 제고					
기업의 생산성 향상					
우수인력 확보					
여성인력 이직 또는 퇴직 감소					
직원의 직무 만족도 증가					
직원의 직무 몰입도 증가					
노사관계 개선					

10. 직원들이 직장보육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요구사항은 무엇입니까?
① 보육료 인하 ② 운영시간 연장 ③ 직장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수당 지급
④ 기타() ⑤ 없음

11. 직장보육시설 운영을 위하여 귀 사업체가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은 무엇입니까?

- ① 운영비 지원 확대 ② 개보수비 지원 ③ 세제 감면 확대
 ④ 시설설치 기준 완화 ⑤ 보육시설 운영기술 지원 ⑥ 다양한 보육프로그램 지원
 ⑦ 기타() ⑧ 없음

12. 현재 직장보육시설에 대하여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 ① 정원 확대 ② 축소 운영 ③ 현상태 유지
 ④ 폐쇄하고 다른 방법을 강구할 예정 ⑤ 기타() ⑥ 잘 모름

III. 인근 보육시설 위탁 관련

1. 언제부터 인근 보육시설을 활용하십니까? ()년도

2. 사업체가 보육시설에 보육료를 어떻게 지원하십니까?

- ① 연령별로 보육료의 일정 비율을 지원 (몇%: %)
 ② 연령과 무관하게 아동당 일정 금액을 일괄 지원 (얼마:)원
 ③ 운영비로 지원
 ④ 기타()

3. 사업체가 지원하는 금액은 사업체 근로자 자녀 보육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몇 %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4.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인근시설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적절한 장소를 확보하기 어려워서 ② 설치비가 부담되어서
 ③ 이용대상 아동이 적어서 ④ 운영비가 부담되어서
 ⑤ 범·행정절차가 복잡해서 ⑥ 보육시설 관리운영 자체가 힘들어서
 ⑦ 기타()

5. 직장보육 지원과 관련하여 직원들의 요구사항은 없습니까?

- ① 보육료 추가 지원 ② 운영시간 연장 ③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수당 지급
 ④ 직장보육시설 설치 ⑤ 기타() ⑥ 없음

6. 인근 보육시설 활용으로 사업체의 긍정적 효과는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구분	① 전혀 없음	② 거의 없음	③ 보통	④ 어느 정도 있음	⑤ 매우 큼
사업체 이미지 제고					
기업의 생산성 향상					
우수인력 확보					
여성인력 이직 또는 퇴직 감소					
직원의 직무 만족도 증가					
직원의 직무 몰입도 증가					
노사관계 개선					

7. 앞으로 계속 수당을 지급하실 생각이십니까?

- ① 계속 수당 지급 ②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예정
③ 인근 보육시설에 위탁할 예정 ④ 잘 모르겠음

II. 의무 이행 관련

1. 보육시설 설치 의무사업장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사업체 비용 부담 ② 대상 아동이 적어서 의무사업장 지정 자체가 부적절
③ 사업체 인식 부족 ④ 보육시설 관리운영의 어려움
⑤ 별척조항이 없어서 ⑥ 기타()

2. 보육시설 설치나 보육수당 지급에 대한 직원들의 요구가 있습니까?

- ① 요구가 매우 강함 ② 일부에서 요구가 있음 ③ 요구 없음

3. 앞으로 직장보육시설 설치, 인근 시설 위탁 또는 수당 지급을 추진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 ① 수당을 지급할 예정(질문 3-1로) ②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예정(질문 3-1로)
③ 인근 보육시설 이용 계획(질문 3-1로) ④ 별 계획 없음(질문 3-2로)

3-1. 언제 실시할 계획입니까? ()년

3-2. 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이 없는 경우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설치비 부담 ② 운영비 부담 ③ 공간 확보의 어려움
④ 대상 아동 부족 ⑤ 법·행정 절차 복잡 ⑥ 보육시설 관리운영 어려움
⑦ 기타()

4. 만약에 귀 회사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인근 보육시설을 위탁 이용하거나 또는 보육수당을 지급할 경우 다음과 같은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보기에서 번호를 골라 기입해 주십시오.

구분	직장보육시설	인근 시설 위탁 이용	보육수당 지급	
사업체 이미지 제고				<보기> ① 전혀 없을 것임 ② 거의 없을 것임 ③ 보통 ④ 클 것임 ⑤ 매우 클 것임
기업의 생산성 향상				
우수인력 확보				
여성인력 이직 또는 퇴직 감소				
직원의 직무 만족도 증가				
직원의 직무 몰입도 증가				
노사관계 개선				

지역번호		시설일련번호	

직장보육시설 시설장 조사표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개발센터에서는 노동부와 공동으로 직장보육에 대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보다 나은 보육을 위하여 통계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본 조사 연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8년 5월

육아정책개발센터 소장·노동부 장관

보육시설명		사업장명	
주소	시·도 시·군·구	연락처	() -

※ 각 질문에 대하여 해당하는 번호에 √ 표를 하시거나 ()안에 직접 써 주십시오.

1. 보육시설의 위치, 형태, 규모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귀 보육시설의 설치 유형과 운영방식을 무엇입니까?

설치 의무	① 의무 설치	② 임의 설치
설치 유형	① 단독 ②공동	③ 지역 보육시설 위탁 ④기타()
운영 방식	① 직접 운영	② 위탁운영(위탁체:)

2. 귀 보육시설은 다음 중 어떤 사업장(또는 기관)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 ① 민간 기업 ② 국가기관 ③ 지자체 ④ 학교 ⑤ 공사
- ⑥ 병원 ⑦ 기타()

3. 귀 보육시설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 ① 회사 내 단독건물 ② 회사 건물 일부 ③ 회사 밖 단독건물 ④ 일반주택
- ⑤ 아파트 ⑥ 상가건물 ⑦ 복지관 등 다른 시설내 ⑧ 기타()

3-1. 보육시설이 회사 밖에 위치한 경우, 회사 건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 ① 도보 5분 이내 ② 도보 10분 이내 ③ 도보 20분 이내
- ④ 도보 30분 이내 ⑤ 도보 30분 이상

4. 귀 보육시설은 건물의 몇 층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____층 건물의 ____층, ____층, ____층 사용

II. 다음은 귀 보육시설 이용 아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귀 보육시설이 인가받은 아동 정원 및 2008년 5월 말 현재 귀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현원과 대기아동 수를 각 연령별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0세아	만 1세아	만2세아	만3세아	만4세아	만5세이상아
1-1. 정원	()명			()명		
1-2. 현원	()명	()명	()명	()명	()명	()명
1-3. 대기아	()명			()명		

2. 현재 보육아동수가 정원에 미달되는 경우,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직원의 자녀 중 보육시설 이용 대상 아동이 부족해서
 ② 보육시설이 자녀를 데려오기에 불편한 지역에 위치해서
 ③ 보육시설의 환경이 열악해서
 ④ 보육프로그램에 대한 부모의 만족도가 낮아서
 ⑤ 기타 ()
 ⑥ 정원 충족됨

3. 2008년 5월 현재, 귀 보육시설 이용 아동 수를 부모의 특성에 따라 기입하여 주십시오.

구분	부모가 모두 보육시설 설치 사업체 직원인 아동	어머니만 보육시설 설치 사업체 직원인 아동	아버지만 보육시설 설치 사업체 직원인 아동 (어머니는 아님)	부모가 보육시설 설치 사업체 직원이 아닌 다른 사업체 근로자인 아동	지역 주민인 아동
아 동 수	()명 고용보험 가입 ()명 고용보험 미가입 ()명	()명 고용보험 가입 ()명 고용보험 미가입 ()명	()명 고용보험 가입 ()명 고용보험 미가입 ()명	()명 고용보험 가입 ()명 고용보험 미가입 ()명	()명

4. 귀 보육시설 이용 아동 입소 우선순위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순위가 같으면 동일한 번호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입소 순위에서 배제되는 경우는 ×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부모가 모두 보육시설 설치 사업체인 직원인 아동 ()순위
 ② 어머니만 보육시설 설치 사업체 직원인 아동 ()순위
 ③ 아버지만 보육시설 설치 사업체 직원인 아동 ()순위
 ④ 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보육시설 설치 사업체 직원이나 비정규직인 직원인 아동 ()순위
 ⑤ 부모가 고용보험가입자로서 보육시설 설치 사업체 직원이 아닌 다른 사업체 근로자인 아동 ()순위
 ⑥ 부모가 지역주민인 아동 ()순위

III. 다음은 귀 보육시설 종사자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08년 5월 현재, 귀 보육시설의 종사자 수를 기재하고, 각 종사자가 회사 직원 신분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 ×로 표시하여 주십시오.

구분	시설장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취사원	기타	전체
1-1. 직원수	()명	()명	()명	()명	()명	()명	()명
1-2. 회사직원							

2. 귀 보육시설에서 근무하는 시설장 및 보육교사의 급여는 얼마입니까?

구분	금액
2-1. 시설장	연간 () 만원
2-2. 경력 2년 보육교사	연간 () 만원

3. 귀 보육시설의 보육교사가 귀 시설에서 근무하는 평균기간은 몇 년 정도입니까?

평균 _____ 년

4. 귀 보육시설은 보육교사 근무시간과 관련하여 평일 8시간 근무를 잘 지키고 있습니까?

-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5. 귀 보육시설에서는 보육교사에게 야간, 주말 근무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야간근무는 하지 않는다

6. 일반 보육시설과 비교해 볼 때, 보육교사들이 느끼는 귀 시설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기에서 해당되는 번호를 골라서 써 주세요.

6-1. 급여수준		<보기> ① 매우 열악하다 ② 열악한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나은 편이다 ⑤ 매우 나은 편이다
6-2. 근무시간		
6-3. 휴가		
6-4. 경력인정		
6-5. 연수기회		
6-6. 근무분위기		

IV. 다음은 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귀 보육시설의 운영 시간 및 운영 일수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1-1. 공식적인 운영시간	오전 () 시 () 분 ~ 오후 () 시 () 분
1-2. 주간 운영일수	() 일

2. 귀 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보육서비스를 모두 골라 주십시오.

① 야간 보육서비스 ② 휴일보육서비스 ③ 장애아 보육서비스 ④ 기타 ()

3. 귀 보육시설은 평가인증을 받았습니까?

① 받음 ② 신청 중 ③ 미신청

4. 귀 시설에서 수납하고 있는 2008년 5월의 아동 1인당 평균 보육료는 얼마입니까?

구분	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월 보육료 수납액	원	원	원	원	원	원
기타(특별활동비 등)수납액	원	원	원	원	원	원
총액	원	원	원	원	원	원

5. 귀 보육시설은 노동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습니까?

① 받음 (질문 5-1로) ② 받지 않음 (질문 5-3으로)

- 5-1. 직장보육시설이 교사 등의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매분기 말일 보육아동 수를 기준으로 분기별로 지원합니다. 이러한 지원 방식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적절함 ② 월 단위로 지원방식 변경 필요 ③ 평균 보육아동수로 지원조건 변경 필요
④ 지원방식은 월단위로 지원조건은 평균보육아동수로 변경 필요 ⑤ 기타() ⑥ 잘 모르겠음

- 5-2. 노동부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다면, 보육시설 운영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까?

① 지원 없으면 운영 불가 ② 비교적 많은 도움이 됨 ③ 다소 도움이 됨
④ 별 도움이 안 됨 ⑤ 전혀 도움이 안 됨

- 5-3. 노동부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다른 곳에서 인건비 지원을 받음 ②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③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으로 ④ 기타()

- ① 받음 ② 받지 않음

① 적절함 ② 지원주기를 단축할 필요가 있음 (개선 지원주기: 년)

- ① 교재교구비 ② 영아(장애아) 기본보조금 ③ 시간연장보육 운영비
④ 장애아통합보육 운영비 ⑤ 기타()

① 전혀 도움이 안 됨 ② 별 도움이 안 됨 ③ 다소 도움이 됨
④ 비교적 많은 도움이 됨 ⑤ 지원없으면 운영 불가

- ① 치우개선비 ② 환경개선비 ③ 교재교구비 ④ 급간식비
⑤ 시간연장보육 운영비 ⑥ 장애아통합보육 운영비 ⑦ 상해보험비 ⑧ 차량운영비
⑨ 기타() ⑩ 지원받지 않음

- | 구분 | 부모로부터
수납하는
비용 | 사업주로부터
지원받는
비용 | 노동부로부터
지원받는
비용 | 노동부 이외
복지부, 지방정부,
공공단체로부터
지원받는 비용 | 월평균
운영비 총액 |
|---------|---------------------|----------------------|----------------------|--|---------------|
| 월 평균 금액 | 원 | 원 | 원 | 원 | 원 |
| 비율 | % | % | % | % | 100 % |

- ① 사업주 부담 ② 정부 부담 ③ 부모 부담
④ 사업주와 정부 부담 ⑤ 사업주와 부모 부담 ⑥ 정부와 부모 부담
⑦ 사업주, 정부, 부모 부담 ⑧ 기타()

11. 귀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데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우선순위에 따라 3가지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 ,)

- ① 운영비 지원 부족 ② 이용아동 확보 ③ 시설 환경 관리
④ 회사와 연계된 운영체계 ⑤ 부모나 노조의 요구 ⑥ 법적·행정적 제약
⑦ 프로그램 운영 ⑧ 교사 확보 ⑨ 기타()

12. 직장보육시설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에 따라 3가지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 ,)

- ① 정부의 운영비 지원 확대 ② 사업주의 관심 제고 및 지원확대
③ 직장보육시설 환경 개선 ④ 직장보육시설 이용부모의 교통(등하원) 지원
⑤ 직장보육시설 운영시간 연장 ⑥ 직장보육시설 프로그램 개선 및 개발
⑦ 기타()

13.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부모들의 가장 큰 요구사항은 무엇입니까?

- ① 직장보육시설 환경 개선 ② 직장보육시설 프로그램 개선
③ 이용아동 등하원 지원 ④ 운영시간 연장
⑤ 보육료 인하 ⑥ 기타()

14. (연장형 야간보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귀 직장보육시설에서 연장보육을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찬성 ② 반대 (질문 14-1로) ③ 모름 ④ 비해당(실시)

14-1 연장보육 실시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대상 아동 부족 ② 직원의 업무 부담 ③ 사업주 비용 부담으로 지원 어려움
④ 기타()

◆ 질문에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시설번호				가구일련번호	

직장보육시설 이용 부모 조사표

안녕하십니까?

노동부에서는 육아정책개발센터와 공동으로, 일하는 여성을 위한 보육지원 강화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가정의 이용현황과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결과는 노동부의 직장보육에 대한 정책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보다 나은 보육을 위하여 통계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본 조사 연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8년 5월
노동부장관·육아정책개발센터소장

주 소	()시·도 ()구·군 ()동·읍·면		
어 린 이 집 명		전 화 번 호	(DDD:) -
응 답 자 아동과의 관계	부 모 조부 조모 친인척	응 답 자 회사 내 직위	평사원 중간 관리자 고위 관리자 임원

※ 각 질문에 대하여 해당하는 번호에 √ 표를 하시거나 또는 ()안이나 빈칸에 직접 써 주시기 바랍니다.

I. 아동과 부모의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1. 현재 직장의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귀댁 자녀 수는 몇 명입니까? 이 자녀의 연령은 몇 살입니까? 나이가 어린 자녀부터 기록해 주세요
이용 아동 ()명 연령 ()세, ()세, ()세
2. 직장의 보육시설에 다니고 있는 귀댁 자녀는 만성 질병이나 장애가 있습니까?
① 질병이 있음 ② 장애가 있음 ③ 질병과 장애 모두 있음 ④ 건강함
3. 가족유형을 기입하십시오.
① (한)조부모+(한)부모+자녀 ② 부부+자녀 ③ 여성 한부모+자녀 ④ 남성 한부모+자녀
⑤ (한)조부모+자녀 ⑥ 친인척+자녀 ⑦ 기타

- ④ 부모의 직장이 본 사업체가 아니었으므로
⑤ 조부모 등 자녀양육을 맡아줄 인력을 이용했기 때문
⑥ 기타 ()
4. 자녀를 현 직장의 보육시설에 보내신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① 1개월 미만 ② 1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③ 6개월 이상 ~ 1년 미만
④ 1년 이상~2년 미만 ⑤ 2년 이상
5. 현 보육시설에 보내기 위해 대기자로 기다린 기간이 있었습니까?
① 없다 ② 1개월 미만 대기 ③ 1개월~2개월 미만 대기
④ 2개월~3개월 미만 대기 ⑤ 3개월~4개월 미만 대기 ⑥ 4개월 이상 대기
6. 직장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간은 주로 평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입니까?
오전 ()시 ()분 ~ 오후 ()시 ()분
7. 토·일요일이나 야간에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야간보육	① 이용 가능	② 이용 불가능	③ 잘 모르겠음
토요일 보육	① 이용 가능	② 이용 불가능	③ 잘 모르겠음
일요일 보육	① 이용 가능	② 이용 불가능	③ 잘 모르겠음
8. 2008년 5월 기준 보육시설에 지불한 월 비용은 얼마입니까?
기본 보육료 ()원 + 기타 비용 ()원

III. 보육시설 이용에 대한 만족도와 요구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귀 닥 가까이에는 믿고 자녀를 맡길 만한 보육시설이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③ 모름
- 1-1.현 직장 보육시설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이유 한 가지만 고르세요)
① 직장내에 있어 함께 등하원하기가 편리하기 때문 ② 가까이 데리고 있고 싶어서
③ 직장에서 운영하므로 급식, 교사 등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
④ 보육 프로그램이 훌륭하기 때문 ⑤ 시설, 환경이 우수하기 때문
⑥ 직장에서 보내기를 권유하기 때문 ⑦ 보육비가 저렴해서
⑧ 기타
2. 귀하가 이용하는 직장의 보육시설과 관련하여, 각 항목에 대한 만족 정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구분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만족
1) 보육료					
2) 교사의 질					
3) 보육 프로그램					
4) 이용 시간					
5) 등하원 방법					
6) 시설·설비, 환경					

3. 귀하는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한 후 다음과 같은 측면들은 얼마나 달라졌다고 보십니까? 적절한 정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구분	① 매우 낮아짐	② 다소 낮아짐	③ 변화 없음	④ 다소 높아짐	⑤ 매우 높아짐
1) 아이 안전에 대한 안도감					
2) 아이가 보다 좋은 보육 환경에 있다는 만족감					
3) 자녀와의 긍정적 관계					
4) 직장에 대한 애사심					
5) 업무 몰입도					
6) 직무 만족도					

4. 현 직장 근무를 결정하는 데 직장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이 장점으로 작용하였습니까?

① 장점으로 작용함 ② 별로 장점이 못됨 ③ 해당 없음

5. 귀하의 경우, 직장보육시설 이용이 육아를 병행하며 계속 직장 근무를 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②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음 ③ 보통
④ 조금 도움이 됨 ⑤ 큰 도움이 됨

6. 귀하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사업주 및 아동에게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① 전혀 없음	② 거의 없음	③ 보통	④ 비교적 큼	⑤ 매우 큼
1) 양육부담 완화로 인한 여성 근로자 고용 촉진					
2) 직원의 근무만족도 및 직무몰입도 향상으로 인한 생산성 증진					
3)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발달 도모					

7. 현 직장 보육시설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어떤 점입니까?

① 원장과 교사의 철학, 인품, 교육자적 태도, 자질 등 종사자
② 놀이터, 급식준비용 주방, 보육실 환경 등 물리적 시설의 면
③ 급·간식 등 건강·위생적인 면 ④ 일과 운영, 사용 교재 등 프로그램 측면
⑤ 타 시설 대비 교사당 아동비율이 적은 측면 ⑥ 야간보육 등 운영시간 측면
⑦ 직장 출퇴근에 맞출 수 있는 시간적 편리함 ⑧ 기타()

8. 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있다면,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 ① 어려움이 없다
- ② 아이를 데리고 출퇴근하기가 용이하지 않음(대중교통 이용 등)
- ③ 야근 등 퇴근 시간이 일정치 않아 불편함
- ④ 보육시설 이외 학원 등 사교육 기회를 가질 수가 없음
- ⑤ 입소하기까지 대기기간이 너무 길었음
- ⑥ 아이 귀가시간 때문에 퇴근시간에 자주 상사의 눈치를 보게 됨
- ⑦ 기타()

9. 보육시설에 가장 개선되기를 바라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 ① 셔틀버스를 운행(또는 노선을 확장·축소)
- ② 운영시간 더 연장
- ③ 프로그램 개선
- ④ 놀이터, 보육실 등 구조의 증·개축
- ⑤ 종사 인력(교사, 보조교사 등) 증원
- ⑥ 놀이시설, 교재·교구 등 다양화 및 신규 구비
- ⑦ 급·간식 등 영유아의 건강과 섭식 강화
- ⑧ 보육료 인하
- ⑨ 수용가능 아동 수 증가

10. 현재의 보육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직장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① 직장보육시설 이용 편의를 고려해주는 직장 환경 조성(수유시간, 부모교육참여 등)
- ② 더 많은 보육료 지원
- ③ 직장의 세부 일정과 보육시설 행사 일정의 조율
- ④ 보육시설의 현재 위치나 시설이 좋지 않으므로 환경 개선
- ⑤ 보육시설의 교재·교구나 다양한 프로그램 등 운영을 위한 더 많은 투자
- ⑥ 기타()

11. 앞으로 현재의 직장보육시설을 계속 이용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 ① 초등학교 보낼 때까지 계속 이용할 것이다 (바로 다음의 IV영역 1번으로 가세요)
- ② 중간에 그만 두고 다른 보육시설로 옮길 계획을 갖고 있다 (11-1번으로 가세요)
- ③ 중간에 그만 두고 유치원으로 옮길 계획을 갖고 있다 (11-1번으로 가세요)
- ④ 중간에 그만 두고 학원 등 다른 서비스를 이용할 것이다 (11-1번으로 가세요)
- ⑤ 중간에 그만두고 그냥 집에서 돌볼 예정이다 (11-1번으로 가세요)

11-1. 현 직장보육시설을 그만 두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현 직장을 그만두거나 옮길 것이기 때문
- ② 이용 가능 시간이 적절하지 않아서
- ③ 거리가 너무 멀거나 이동시간이 많이 걸려서
- ④ 보다 질 좋은 교육(보육) 서비스를 받게 하고 싶어서
- ⑤ 직장 일에 방해되는 경우가 있어서
- ⑥ 아이가 힘들고 싫어해서
- ⑦ 기타()

일하는 여성 보육지원 강화 방안

2008년 10월 인쇄

2008년 10월 발행

발행인 이영희

발행처 노동부 고용정책실 여성고용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노동부

인쇄처 대명기획 02) 2273-1292

사전 승인 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11-1490000-000347-01